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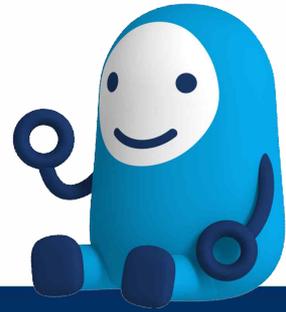
무배당

# 원더풀 종합보험 [24.04]

세만기형 | 1종·2종·3종·4종·5종·6종



#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 ①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②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b>약관 이용 가이드북</b>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b>시각화된 약관 요약서</b>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b>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b>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b>보험약관(주계약&amp;특약)</b>	주계약(보통약관)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약(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b>용어해설 및 색인 등</b>	약관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b>법률·보험용어</b> 의 해설, 가나다 順 특약색인, 관련 법규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 ③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이용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 ④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영상자료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 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 철회	제21조 (청약의 철회)	
3. 계약 취소	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4. 계약 무효	제23조 (계약의 무효)	
5.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6. 계약 後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7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7.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3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8. 부활(효력회복)	제3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9. 해약환급금	제4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43조 (해약환급금)	
10. 보험계약대출	제44조 (보험계약대출)	

## ⑤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 <b>약관 요약서</b> '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 시 유의사항, 민원 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b>약관 요약서</b>
2	' <b>약관 핵심 체크 항목 쉽게 찾기</b> '를 이용하시면 약관 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b>핵심 체크항목</b>
3	' <b>특약색인 (가나다순)</b> '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 계약에 부가된 <b>특약</b> 은 자유롭게 <b>선택, 가입</b> (의무특약 제외)할 수 있고 <b>가입특약</b> 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 <b>특약 색인</b>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b>용어해설, 약관 본문 Box안 예시</b>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b>용어 해설</b>
5	스마트폰으로 <b>QR 코드</b> 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b>QR코드</b>
6	' <b>기타 관계 법규</b> '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b>기타관계법규</b>
7	약관조항 등이 <b>음영·컬러화</b> 되거나 <b>진하게</b>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 ⑥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mggeneralins.com](http://www.mggeneralins.com)), 고객 콜센터(**1588-5959**)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 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FINE, [fine.fss.or.kr](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 I. 보험계약의 개요

### ① 상품의 주요 특징

- ◎ 보험료는 알뜰하게, 하나로 충분한 Total Care(해당 특약 가입 시)
  - 종합보장 : 총 300여가지 담보로 질병, 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장기요양 보장
  - 평생보장 :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위험을 100세까지 든든 보장
  - 알뜰보장 : 해약환급금미지급형 가입시, 여러 위험을 표준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단,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 사유 발생 시/해당종 가입시)
  - 2종, 5종 : 암(유사암제외)진단 시, 상해/질병 80% 후유장애 시
  - 3종, 6종 : 암(유사암제외)진단 시, 상해/질병 80% 후유장애 시,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으로 진단 확정 시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보험료 납입면제 지원금 특별약관(1종, 4종 가입 시)
  - 3대 납입면제지원 : 상해80%, 질병80%, 암(유사암제외)
  - 5대 납입면제지원 : 상해80%, 질병80%,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 8대 납입면제지원 : 상해80%, 질병80%, 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 10대 납입면제지원 : 8대 납입면제지원 +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 파킨슨병

### ②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원더풀  
종합보험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종합보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후50%)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으며,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II.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①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주의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면책 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질병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면책기간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가입 후 <b>90일동안</b> 보장 제외	
암수술비(유사암제외, 1회한)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		
특정암진단비		
여성특정암진단비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다빈치로봇암수술비(최초1회한)(갱신형)		
암주요통증완화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암주요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10회한)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 음경, 고환)암진단비		
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진단비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호흡기암진단비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감액없음)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감액없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갱신형)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 II
중증갑상선암진단비		

담보명		면책기간
통합형전이암진단비	림프절전이암	가입 후 90일동안 보장 제외
	간및간내담관전이암	
	종격·흉막·신경계통전이암	
	뇌및뇌막전이암	
	폐관련전이암	
	골·골수·복막전이암	
	특정소화기관전이암	
	특정전이암 I	
	특정전이암 II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 치료비(최초1회한) (비갱신형 및 갱신형)	유사암및소액암제외  소액암	
산정특례(중복암 및 재등록암)치료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중복암)치료비(최초1회한)	
통합형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위암및식도암	가입 후 90일동안 보장 제외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췌장암	
	폐관련암	
	심장암및뇌암	
	특정소화기관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 II	
	유방암및남녀생식기 관련암	
	4대특정암	
	12대특정암	
암수술비(유사암제외)(25%체증형)		
암으로인한3대특정수술비(급여, 각연간1회한)	급여 유방재건수술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가입 후 90일동안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해당없음)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원비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		
암직접치료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암직접치료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암사망보험금		가입 후 90일동안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해당없음)
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갱신형)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 II 제외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갱신형)		

담보명		면책기간
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진단비	항암방사선치료후4대경증합병증진단비(최초1회한)	가입 후 <b>90일동안</b>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해당없음)
	항암방사선치료후5대중증합병증진단비(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2대질병진단비(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3대질병진단비(최초1회한)	
암으로인한3대특정수술비(급여, 각연간1회한)	급여 림프부종수술	가입 후 <b>90일동안</b> 보장 제외 (단,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해당없음)
	급여 피부재건수술	
생활지원금(3대진단)		가입 후 <b>1년미만</b> 보장 제외
요로결석진단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갱신형)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비(갱신형)		
여성난임진단비(갱신형)		
파킨슨병진단비		
산정특례(중복암 및 재등록암)치료비(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재등록암)치료비(최초1회한)	
계속받는암진단비		첫번째암*/직전재진단암 발생 후 <b>2년동안</b> 보장제외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		첫번째유사암/직전재진단유사암 발생 후 <b>2년동안</b> 보장제외
계속받는뇌출혈진단비		첫번째뇌출혈/직전재진단뇌출혈 발생 후 <b>2년동안</b> 보장제외
계속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첫번째급성심근경색증/직전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발생 후 <b>2년동안</b> 보장제외

※ 갱신계약의 경우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첫번째암"은 가입 후 **90일동안** 보장이 제외됩니다.

### ▶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면책기간
경증이상치매진단비	가입 후 <b>1년미만</b> 보장 제외
산정특례(중증치매)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 갱신계약의 경우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상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감액 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 지급)**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상해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감액조건 및 비율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비갱신형 및 갱신형)보장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b>50%</b> 지급

▶ 질병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신부전증진단비	
간경변증진단비	
중등도이상만성신부전증진단비	
중등도이상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	
중등도이상폐렴진단비	
중등도이상천식진단비	
중등도이상기관지확장증진단비	
여성생식기암자궁적출수술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II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유사암진단비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유사암수술비	
암수술비(유사암제외, 1회한)	
암수술비(유사암제외)(25%체증형)	
유사암수술비(25%체증형)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정암진단비	
여성특정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수술비 II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II	
뇌출혈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수술비 II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II	
심뇌혈관질환수술비 II	
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II (25%체증형)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대상포진진단비	
대상포진눈병진단비	
통풍진단비	
상급종합병원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치료통원비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심장질환(특정 I)진단비	
심장질환(특정 II)진단비	
심장질환(특정 III)진단비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심장질환(특정Ⅳ)진단비	
관상동맥성형술보장(급여,연간1회한)	
뇌정위적방사선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급여,연간1회한)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보장(급여,연간1회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자궁근종)(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갱신형)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진단비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진단비	
자궁내막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백내장진단비	
특정녹내장진단비	
삼출성황반변성진단비	
질병실명진단비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비(급여,연간1회한)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진단비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진단비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호흡기암진단비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진단비	
급성신우신염진단비	
산정특례(결핵)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희귀질환)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뇌경색증(I63)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뇌경색증(I63)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중증갑상선암진단비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통합형전이암진단비	림프절전이암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간및간내담관전이암	
	종격·흉막·신경계통전이암	
	뇌및뇌막전이암	
	폐관련전이암	
	골·골수·복막전이암	
	특정소화기관전이암	
	특정전이암 I	
	특정전이암 II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 치료비(최초1회한) (비갱신형 및 갱신형)	유사암및소액암제외	
	소액암	
산정특례(유사암)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중복암 및 재등록암)치료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중복암)치료비 (최초1회한)	
CT, MRI 초음파, 뇌파, 뇌척수액검사지원비 (뇌심장질환, 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 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통합형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위암및식도암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췌장암	
	폐관련암	
	심장암및뇌암	
	특정소화기관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 II	
	유방암및남녀생식기 관련암	
	4대특정암	
	12대특정암	
통합형뇌관련진단비	뇌출혈	
	뇌졸중(뇌출혈제외)	
	기타뇌혈관질환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기타허혈성심장질환	
심방세동및조동진단비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뇌전증진단비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		
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비		
암으로인한3대특정수술비(급여, 각연간1회한)		
육창진단비		
육창중등증이상진단비(3, 4단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갱신형)	7대특정암	가입 후 180일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 II	가입 후 180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 II 제외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갱신형)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다빈치로봇암수술비(최초1회한)(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최초1회한)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최초1회한)	가입 후 180일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가입 후 180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 ※ 가입 1년 이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일부담보의 경우 질병 구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가입금액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	가입 후 2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비(갱신형)	
생활지원금(3대진단)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장해)	

- ※ 가입 2년 이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일부담보의 경우 질병 구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가입금액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보명	감액조건 및 비율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요양병원제외)(비갱신형 및 갱신형)보장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산정특례(뇌혈관)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심장)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CT,MRI검사지원비(치매,급여,연간1회한)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일당(1일이상365일한도)	정신 및 행동장애 : 가입 후 180일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0% 지급 가입 후 180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가입 후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기타 질병 : 가입 후 180일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0% 지급 가입 후 180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가입 후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

- ※ 가입 1년 이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일부담보의 경우 질병 구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가입금액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갱신계약의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단, 상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보장 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상해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보장한도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2일 이상 20일 한도로 보장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	1일 이상 20일 한도로 보장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중대한상해수술비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산정특례(중증화상)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생활지원금(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일반상해2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해 보장
산정특례(중증외상)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일반상해1~8중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골절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	연간 10회에 한해 보장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15회한)	연간 15회에 한해 보장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30회한)	연간 30회에 한해 보장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60회한)	연간 60회에 한해 보장

## ▶ 질병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보장한도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암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폐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개호유발특정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3대질병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질병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여성5대생활질환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	1일 이상 90일 한도로 보장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질병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2일 이상 20일 한도로 보장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질병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	1일 이상 20일 한도로 보장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암수술비(유사암제외, 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간경변증진단비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비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6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	
질병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담보명	보장한도	
말기간경화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말기신부전증진단비		
중등도이상폐렴진단비		
중등도이상천식진단비		
중등도이상기관지확장증진단비		
양성뇌종양진단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총수염(맹장)수술비		
여성생식기암자궁적출수술비		
만성당뇨합병증치료비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정암진단비		
여성특정암진단비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중대한질병수술비		
대상포진진단비		
대상포진눈병진단비		
통풍진단비		
요로결석진단비		
결핵진단비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뇌경색증(I63)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심장질환(특정 I)진단비		
심장질환(특정 II)진단비		
심장질환(특정 III)진단비		
심장질환(특정 IV)진단비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자궁근종)(갱신형)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비(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갱신형)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갱신형)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비(갱신형)		
다빈치료붓암수술비(최초1회한)(갱신형)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진단비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진단비		
자궁내막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백내장진단비		
특정녹내장진단비		
삼출성황반변성진단비		
질병실명진단비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		

담보명		보장한도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진단비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호흡기암진단비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감액없음)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진단비		
파킨슨병진단비		
급성신우신염진단비		
산정특례(결핵)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희귀질환)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갱신형)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 II	
중증갑상선암진단비		
통합형전이암진단비	림프절전이암	
	간및간내담관전이암	
	종격·흉막·신경계통전이암	
	뇌및뇌막전이암	
	폐관련전이암	
	골·골수·복막전이암	
	특정소화기관전이암	
	특정전이암 I	
특정전이암 II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 치료비(최초1회한) (비갱신형 및 갱신형)	유사암및소액암제외 소액암	
산정특례(유사암)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중복암 및 재등락암)치료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중복암)치료비 (최초1회한)	
	산정특례(재등락암)치료비 (최초1회한)	
생활지원금(3대진단)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담보명		보장한도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장해)		
통합형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위암및식도암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췌장암	
	폐관련암	
	심장암및뇌암	
	특정소화기관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 II	
	유방암및남녀생식기 관련암	
	4대특정암	
12대특정암		
통합형뇌관련진단비	뇌출혈	
	뇌졸중(뇌출혈제외)	
	기타뇌혈관질환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기타허혈성심장질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		최초 1회에 한해 보장기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		
특정순환계질환항응고제치료비(와파린/NOAC)(급여,최초1회한)(갱신형)		
심방세동및조동진단비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뇌전증진단비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		
육창진단비		
육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		
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진단비	항암방사선치료후4대경증합병증진단비	
	항암방사선치료후5대중증합병증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2대질병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3대질병진단비	
항암방사선치료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각각 최초1회에 한해 보장
항암약물치료비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갱신형)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중 최초1회에 한해 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갱신형)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 II 제외	
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각각 최초1회에 한해 보장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질병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해 보장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연간1회한)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담보명		보장한도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관상동맥성형술보장(급여,연간1회한)			
뇌정위적방사선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급여,연간1회한)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보장(급여,연간1회한)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암주요통증완화치료비(급여,연간1회한)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비(급여,연간1회한)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뇌경색증(I63)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CT,MRI초음파,뇌파, 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질병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15회한)		연간 15회에 한해 보장	
암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		연간 10회에 한해 보장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			
암직접치료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뇌혈관질환통원비(연간10회한)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연간10회한)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뇌졸중통원비(연간10회한)			
뇌졸중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뇌졸중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10회한)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연간 30회에 한해 보장
암직접치료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뇌혈관질환통원비(연간30회한)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연간30회한)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담보명	보장한도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연간 30회에 한해 보장
뇌졸중통원비(연간30회한)	
뇌졸중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뇌졸중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30회한)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30회한)	연간 60회에 한해 보장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60회한)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90회한)	연간 90회에 한해 보장
암으로인한3대특정수술비(급여,각연간1회한)	각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 ▶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보장한도
중증치매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경증이상치매진단비	
장기요양(1등급)진단비	
장기요양(1,2등급)진단비	
장기요양(1,2,3등급)진단비	
장기요양(1,2,3,4등급)진단비	
장기요양(1,2,3,4,5등급)진단비	
각막이식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중증치매)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산정특례(뇌혈관)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산정특례(심장)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교권침해피해보상금(연간1회한)	
수혈치료비(급여,연간1회한)	
CT,MRI검사지원비(치매,급여,연간1회한)	연간 3회에 한해 보장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경부)(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각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십자인대 반월판연골 아킬레스건수술비(각 연간1회한, 급여)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일당(1일이상365일한도)	1일 이상 365일 한도로 보장

###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보장한도
자동차운전면허정지(120일한도)(영업용)	최고 120일 한도
홀인원비용(갱신형)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 ※ 보장 제외

이 보험에는 일부 보장 제외 항목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상해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보장한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치아파절 보장 제외
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	
골절집스치료비(치아파절제외)	

### ▶ 질병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보장한도
질병수술비(백내장제외)	백내장 수술 제외
질병수술비(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	백내장 및 대장용종 수술 제외
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8대질병제외)	특정다빈도8대질병 수술 제외

### ▶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보장한도
집스치료비	부목치료 보장 제외

## ※ 자기부담금 차감

이 보험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자기부담금 차감 금액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매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민사소송법률비용	매 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행정소송법률비용	
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	

###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담보명	자기부담금 차감 금액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II (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 20만원))(갱신형)	매 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대인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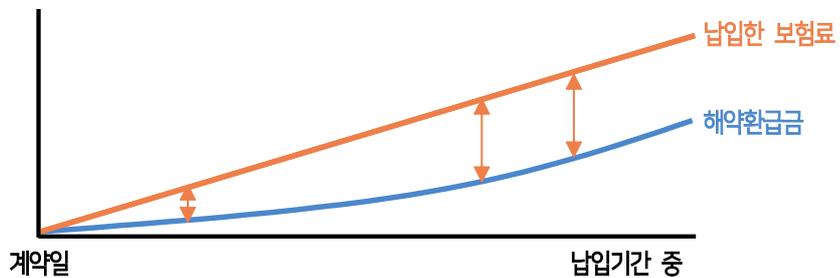
## ②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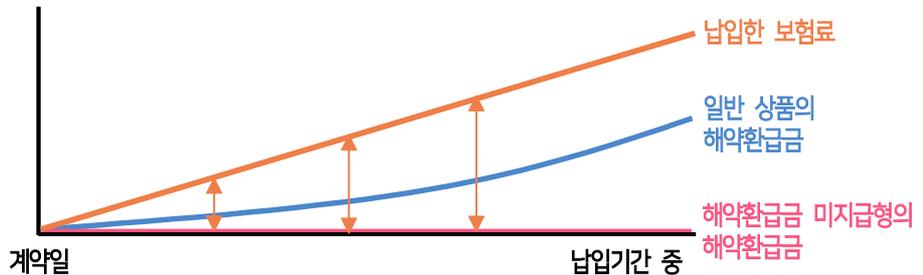


- 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②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납입지원선택형)), 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3대납입면제형)) 및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8대납입면제형))은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예시①  
4종,5종,6종  
표준형



예시②  
1종,2종,3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③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는 특약

특별약관 분류	담보명
상해 관련 특별약관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산정특례(중증외상)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산정특례(중증화상)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일반상해1~5종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분류	담보명
질병 관련 특별약관	일반상해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갱신형)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갱신형)
	항암양성지방사선치료비(갱신형)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자궁근종)(갱신형)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 호르몬약물치료비(갱신형)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갱신형)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비(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최초1회한)(갱신형)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산정특례(결핵)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산정특례(희귀질환)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질병1~5종수술비Ⅲ(갱신형)
	질병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갱신형)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Ⅱ(최초1회한)(갱신형)
	산정특례(유사암)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산정특례(중복암및재등록암)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정순환계질환항응고제치료비(와파린/NOAC)(급여,최초1회한)(갱신형)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산정특례(뇌혈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산정특례(심장)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산정특례(중증치매)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출인원비용(갱신형)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갱신형)

#### ④ 실손보상형 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보상형 특약

특별약관 분류	담보명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포함)(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민사소송법률비용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금
	자동차사고별금비용 II (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스쿨존자동차사고별금비용(대인,운전)(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자동차사고별금비용(대물,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II (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갱신형)
	의료사고법률비용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홀인원비용(갱신형)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행정소송법률비용	
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II (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갱신형)

## 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 보장성보험

(사망,상해,질병 등)

- ① 이 보험은 질병 및 상해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③ 가입한 특약의 경우 기본계약과 보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연동형

#### 보험

(적용금리변동)

- ① 4종,5종,6종(표준형)을 가입한 경우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입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 예금자보호

(KDIC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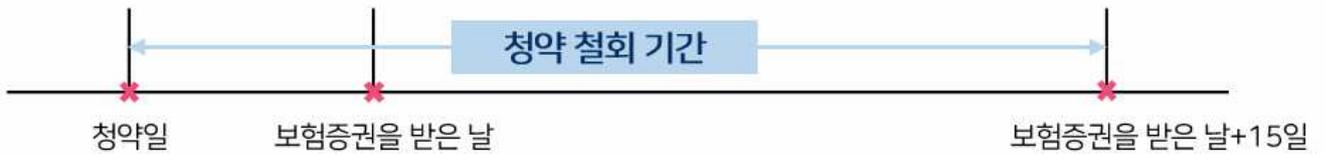
#### 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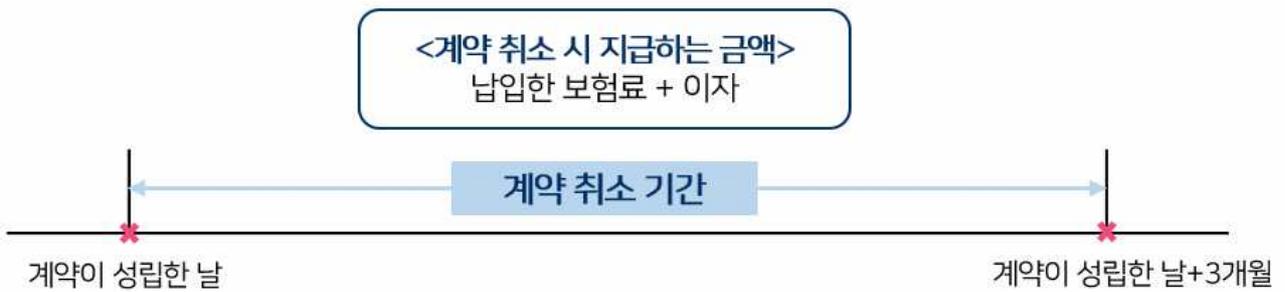
- ①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②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③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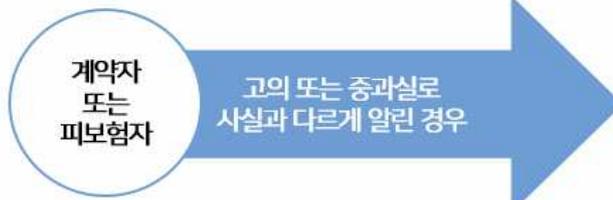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④ 보험계약前 알릴 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前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 법률 지식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 설계사에게 이야기 했다고요!!



청약서 질문표에는 다르게 기재하셨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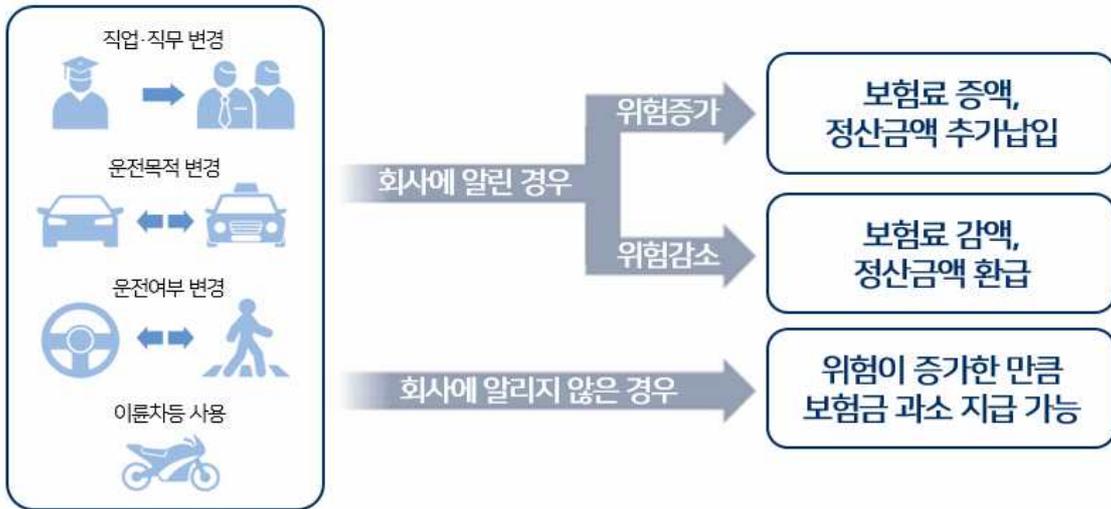
## ⑤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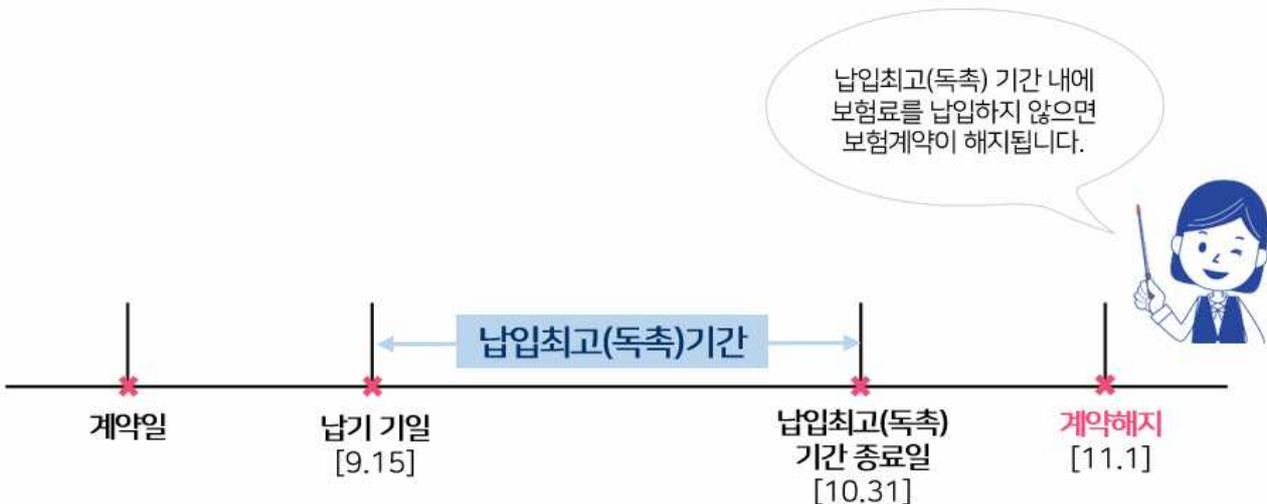
-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⑥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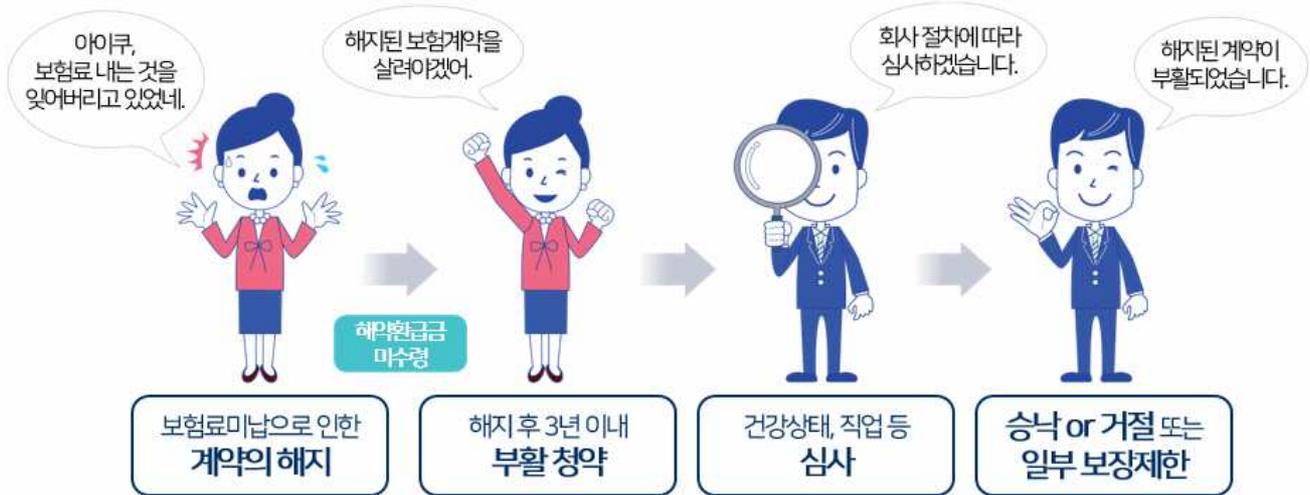


## ⑦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⑧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공제금액			실수령액
	원금	이자	계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 ㉓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MG손해보험 홈페이지(www.mggeneralins.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콜센터**(Tel. 1588-5959)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 청구 절차



### ※ 필요 서류



- ① **소액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입원	●			●	
통원	△	△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진단	●	●			
수술	●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I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

### 보험계약 前 알릴의무

A씨는 계약 체결 시 과거 치료이력이 별 것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약서의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함. 이후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장을 일부 제한

➔ 보험회사는 가입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안내

#### 중요한 사항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계약인수여부 또는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또한 청약서 상의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보험계약 後 알릴의무

B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쳤는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어 민원을 제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함을 안내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C씨는 1,2,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계약 체결 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약환급금이 미지급되어 민원을 제기

➔ 1,2,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4,5,6종(표준형)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은 상품으로, 해약환급금미지급형 계약 체결 시 해지시점에 따라 해약환급금 지급액 등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 해약환급금

D씨는 계약 체결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어 민원을 제기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은행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안내



## 암보장 개시일

E씨는 보험가입 후 2개월이 지나 위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되어 민원을 제기

▶ 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장되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을 안내



## 암직접치료 입원비 지급 여부

F씨는 위암으로 인해 위부분절제술 및 항암치료 시행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력 향상 및 후유증 완화 등의 약물치료를 포함한 입원치료를 받고 암직접치료 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면책 안내 받아 민원을 제기

▶ 암의 직접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및 부작용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과 면역력 향상 목적 등의 치료는 암 직접 치료 입원비에 해당하지 않음



##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암수술비 지급 여부

G씨는 항암방사선 치료를 통해 종양크기를 줄인 후 암수술을 받고 항암방사선 치료와 암수술 모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암수술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민원을 제기

→ 이 특약에서 수술은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치료는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 같은 종류의 질병으로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질병수술비 지급 여부

H씨는 척추협착증(유합술) 수술을 받은 후에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1년이 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고 최초수술과 재수술 모두에 대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하나의 건만 인정되어 민원을 제기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며,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에만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함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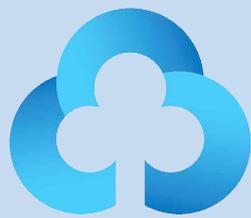


## 갱신형

씨씨는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 시점에서 자동갱신 안내문에 기재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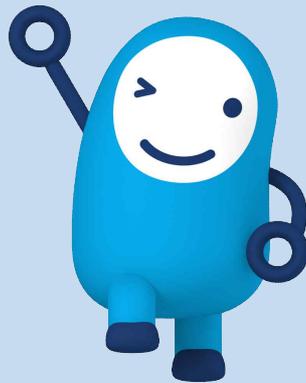
→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





오늘부터!

**MG 손해보험**





보험약관

※ 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무배당

# 원더풀 종합보험 (서민기형)<sub>[24.04]</sub>



오늘부터!

MG손해보험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고객이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공사실 통보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철회 요구권 및 연락중지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 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위의 권리행사(동 법률 제35조~38조)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 화 : 1588-5959
- ▶ 인터넷 : <http://www.mgeneralins.com>
- ▶ 서 면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MG손해보험빌딩

##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당사 개인정보 보호실무책임자 :

- ▶ (02)3788-256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 나. 대한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 (02)3702-8679/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 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 국번없이 133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장 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적립 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목차

[ 세만기형 :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

## ◇ 무배당 원더풀 종합보험(24.04)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	50
제2조(용어의 정의) .....	50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51
제4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51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51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	52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	52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52
제9조(「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적용 및 공시) .....	53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53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	53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54
제13조(주소변경통지) .....	54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54
제15조(대표자의 지정) .....	54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	54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55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56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	57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	57
제21조(청약의 철회) .....	57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	58
제23조(계약의 무효) .....	59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59
제25조(보험나이 등) .....	60
제26조(계약의 소멸) .....	60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60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61
제29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61
제30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61
제3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62
제32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62
제33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62
제34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62
제3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	62
제36조(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	65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66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66
제39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66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4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67
---------------------------------------	----

제4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67
제4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67
제4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67
제43조(해약환급금) .....	68
제44조(보험계약대출) .....	68
제45조(배당금의 지급) .....	68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6조(분쟁의 조정) .....	68
제47조(관할법원) .....	68
제48조(소멸시효) .....	68
제49조(약관의 해석) .....	69
제5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69
제5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69
제52조(개인정보보호) .....	69
제53조(준거법) .....	69
제5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69

◇ 무배당 원더풀 종합보험(24.04) 특별약관

【 상해관련 특별약관 】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	72
2.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73
3.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74
4.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75
5. 일반상해2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77
6.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78
7.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79
8.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81
9.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	83
10. 일반상해수술비 특별약관 .....	85
11. 일반상해1~5종수술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87
12. 교통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	89
13.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90
14. 음주, 무면허, 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	93
15.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특별약관 .....	95
16.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	96
17. 골절김스치료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	97
18. 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	98
19.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	99
20.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	101
21.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	102
22.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	104
23.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	105
24.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 특별약관 .....	106
25.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	108
26. 중대한상해수술비 특별약관 .....	110
27.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	112
28.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특별약관 .....	113
29.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특별약관 .....	115
30.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1급)(차등지급) 특별약관 .....	117
31.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II(1~14급)(차등지급) 특별약관 .....	119
32. 강력범죄피해보상금 특별약관 .....	121
33.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122
34.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123
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128
36.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	130
37. 산정특례(중증외상)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131
38. 산정특례(중증화상)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133

39.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135  
 40. 일반상해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 137  
 41. 생활지원금(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140  
 42. 일반상해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142  
 43.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특별약관 ..... 146  
 44.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특별약관 ..... 147  
 45. 골절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 특별약관 ..... 148  
 46.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15회한) 특별약관 ..... 150  
 47.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30회한) 특별약관 ..... 151  
 48.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60회한) 특별약관 ..... 153

**【 질병관련 특별약관 】**

1. 질병사망보험금 특별약관 ..... 155  
 2. 질병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156  
 3.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157  
 4. 질병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157  
 5.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158  
 6.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160  
 7.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162  
 8. 질병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 164  
 9.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167  
 10. 질병1~5종수술비Ⅲ(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169  
 11. 중대한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170  
 12.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 ..... 171  
 13.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특별약관 ..... 172  
 14. 말기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173  
 15. 말기간경화진단비 특별약관 ..... 174  
 16. 말기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 175  
 17. 간경변증진단비 특별약관 ..... 176  
 18.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 177  
 19. 중등도이상 폐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178  
 20. 중등도이상 폐렴진단비 특별약관 ..... 179  
 21. 중등도이상 천식진단비 특별약관 ..... 180  
 22.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진단비 특별약관 ..... 181  
 23. 양성뇌종양진단비 특별약관 ..... 182  
 24. 6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183  
 25.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 184  
 26. 호흡기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186  
 27. 총수염(맹장) 수술비 특별약관 ..... 187  
 28. 척추질환수술비(관혈/비관혈) 특별약관 ..... 188  
 29. 여성생식기암자궁적출수술비 특별약관 ..... 190  
 30.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191  
 31. 만성당뇨합병증치료비 특별약관 ..... 193  
 32.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94  
 33. 특정전염병진단비 특별약관 ..... 195  
 34.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196  
 35.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 특별약관 ..... 200  
 36. 7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203  
 37. 여성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205  
 38. 부인과질환수술비Ⅱ 특별약관 ..... 206  
 39. 여성만성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207  
 40. 갑상선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209  
 41. 안과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210  
 42.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212  
 43. 암사망보험금 특별약관 ..... 214  
 44. 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 216  
 45.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특별약관 ..... 218  
 46. 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 221  
 47.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특별약관 ..... 222

48.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224
49.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 특별약관	227
50. 암수술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230
51. 유사암수술비 특별약관	233
52.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특별약관	235
53.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237
54. 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239
55. 여성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241
56. 항암방사선치료비 특별약관	243
57. 항암약물치료비 특별약관	245
58.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247
59. 뇌졸중수술비 II 특별약관	248
6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250
61.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II 특별약관	251
62.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252
63.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253
64. 뇌혈관질환수술비 II 특별약관	255
65.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	256
66.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II 특별약관	257
67. 특정유마티스관절염진단비 특별약관	259
68.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갱신형) 특별약관	260
69.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265
70. 계속받는암진단비 특별약관	271
71.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감상선암,전립선암) 특별약관	275
72.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279
73.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원비 특별약관	282
74. 계속받는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285
75. 계속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287
76. 대상포진진단비 특별약관	289
77. 대상포진눈병진단비 특별약관	290
78. 통풍진단비 특별약관	291
79. 요로결석진단비 특별약관	292
80.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294
81.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295
82.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298
83. 결핵진단비 특별약관	300
84.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특별약관	301
85.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301
86.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304
87.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 특별약관	306
88. 암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308
89.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310
90. 상급종합병원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치료통원비 특별약관	312
91. 간질환수술비 특별약관	314
92. 감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특별약관	315
93. 질병수술비(백내장제외) 특별약관	317
94. 질병수술비(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 특별약관	319
95. 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8대질병제외) 특별약관	321
96. 심뇌혈관질환수술비 II 특별약관	323
97.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갱신형) 특별약관	324
98. 심장질환(특정 I)진단비 특별약관	327
99. 심장질환(특정 II)진단비 특별약관	328
100. 심장질환(특정 III)진단비 특별약관	329
101. 심장질환(특정 IV)진단비 특별약관	330
102. 관상동맥성형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331
103. 뇌경위적방사선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333
104.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334
105.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335
106.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및감상선암제외)(갱신형) 특별약관	336

107.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341

108.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자궁근종)(갱신형) 특별약관 ..... 343

10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345

1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350

111.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352

112.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354

113. 다빈치로봇암수술비(최초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357

114.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진단비 특별약관 ..... 363

115.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진단비 특별약관 ..... 364

116. 자궁내막증진단비 특별약관 ..... 366

117.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별약관 ..... 367

118. 백내장진단비 특별약관 ..... 368

119. 특정녹내장진단비 특별약관 ..... 368

120. 삼출성황반변성진단비 특별약관 ..... 369

121. 질병실명진단비 특별약관 ..... 370

122.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371

123.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372

124. 암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 특별약관 ..... 374

125.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90회한) 특별약관 ..... 376

126. 암주요통증완화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378

127. 여성5대생활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380

128. 탈장수술비 특별약관 ..... 382

129.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383

130. 폐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385

131. 여성5대생활질환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386

132. 개호유발특정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387

133.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389

134. 암으로인한3대특정수술비(급여,각연간1회한) 특별약관 ..... 391

135.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진단비 특별약관 ..... 394

136.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진단비 특별약관 ..... 396

137.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특별약관 ..... 398

138.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 특별약관 ..... 399

139.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 특별약관 ..... 401

140.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특별약관 ..... 403

141. 호흡기암진단비 특별약관 ..... 405

142.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특별약관 ..... 406

143. 중증갑상선암 진단비 특별약관 ..... 408

144. 통합형전이암진단비 특별약관 ..... 410

145.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413

146.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414

147.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416

148.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 특별약관 ..... 420

149.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 423

150.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 425

151. 근위축삭경화증(루게릭병)진단비 특별약관 ..... 427

152. 파킨슨병진단비 특별약관 ..... 428

153.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 특별약관 ..... 430

154. 질병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 433

155. 급성신우신염진단비 특별약관 ..... 435

156. 질병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 436

157.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II(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437

158. 산정특례(유사암)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441

159. 산정특례(중복암및재등특암)치료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443

160. 산정특례(결핵)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449

161. 산정특례(희귀질환)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450

162. CT, MRI, 초음파, 뇌파, 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452

163.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453

164. 통합형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 455

165. 통합형뇌관련진단비 특별약관 ..... 458

166.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 특별약관	460
167. 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462
168. 3대질병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464
169. 질병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467
170.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70
171.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72
172.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3
173.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5
174.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5
175.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6
176.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7
177.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8
178. 생활지원금(3대진단) 특별약관	479
179.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483
180.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 특별약관	486
181.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 특별약관	489
182.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492
183.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495
184. 암직접치료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498
185. 암직접치료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01
186.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03
187.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06
188. 뇌졸중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509
189. 뇌졸중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510
190. 뇌졸중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11
191. 뇌졸중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12
192. 뇌졸중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13
193. 뇌졸중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14
194. 뇌혈관질환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515
195. 뇌혈관질환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516
196.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17
197.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18
198.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19
199.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20
200.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521
201.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522
202.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23
203.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24
204.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25
205.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26
206.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527
207.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528
208.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29
209.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30
210.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31
211.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33
212. 암수술비(유사암제외)(25%체증형) 특별약관	534
213. 유사암수술비(25%체증형) 특별약관	537
214. 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II (25%체증형) 특별약관	539
215. 질병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541
216. 심방세동및조동진단비 특별약관	544
217.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특별약관	545
218. 뇌전증진단비 특별약관	546
219.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 특별약관	547
220. 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진단비 특별약관	548
221.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비 특별약관	551
222. 특정순환계질환항응고제치료비(와파린/NOAC)(급여,최초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554
223. 욕창진단비 특별약관	556
224. 욕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 특별약관	557

225.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15회한) 특별약관 ..... 558  
 226.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30회한) 특별약관 ..... 560  
 227.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60회한) 특별약관 ..... 561

**【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

1. 갑스치료비 특별약관 ..... 563  
 2.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 564  
 3.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 566  
 4.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 특별약관 ..... 568  
 5. 심자인대·반월판연골·아킬레스건수술비(각 연간1회한, 급여) 특별약관 ..... 570  
 6. 경증이상치매진단비 특별약관 ..... 572  
 7. 중증치매진단비 특별약관 ..... 575  
 8.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특별약관 ..... 577  
 9.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특별약관 ..... 578  
 10.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특별약관 ..... 580  
 11. 장기요양진단비(1,2,3등급) 특별약관 ..... 581  
 12. 장기요양진단비(1,2,3,4등급) 특별약관 ..... 583  
 13. 장기요양진단비(1,2,3,4,5등급) 특별약관 ..... 584  
 14.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586  
 15.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 587  
 16.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경부)(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 588  
 17. 산정특례(뇌혈관)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589  
 18. 산정특례(심장)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591  
 19.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593  
 20. 산정특례(중증치매)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594  
 21. 보형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 특별약관 ..... 597  
 22. 보형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 특별약관 ..... 601  
 23. 보형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 특별약관 ..... 605  
 24. 보형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 특별약관 ..... 609  
 25.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일당(1일이상365일한도) 특별약관 ..... 616  
 26. 교직원 질병·상해퇴직보험금(사망)(유치원) 특별약관 ..... 617  
 27. 교직원 질병·상해퇴직보험금(직권면직,사망)(유치원이외학교) 특별약관 ..... 618  
 28. 수혈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620  
 29. CT,MRI검사지원비(치매,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622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

1. 자동차사고별금비용II(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특별약관 ..... 624  
 2. 스쿨존자동차사고별금비용(대인,운전)(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 626  
 3. 자동차사고별금비용(대물,운전) 특별약관 ..... 629  
 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영업용) 특별약관 ..... 631  
 5. 자동차운전면허정지(120일한도)(영업용) 특별약관 ..... 632  
 6.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포함)(운전) 특별약관 ..... 634  
 7.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특별약관 ..... 638  
 8.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 특별약관 ..... 641  
 9.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 642  
 10. 민사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 643  
 11. 행정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 649  
 12. 교권침해피해보상금(연간1회한) 특별약관 ..... 654  
 13. 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655  
 14. 가족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상금 특별약관 ..... 659  
 15. 가족인터넷거래사기피해보상금 특별약관 ..... 660  
 16.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662  
 17.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664  
 18. 출원비용(갱신형) 특별약관 ..... 666  
 19.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특별약관 ..... 668  
 20.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II(운전) 특별약관 ..... 669  
 21.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운전) 특별약관 ..... 672  
 22.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 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갱신형) 특별약관 ..... 675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II(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갱신형) 특별약관 ..... 678

【 제도성 특별약관 】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685  
 2.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 685  
 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 ..... 686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687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 ..... 688  
 6. 전자서명 특별약관 ..... 689

◆ 별표

【별표1】 장 해 분 류 표 ..... 691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 706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707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707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 708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분류표 ..... 709  
 【별표5】 골절분류표 ..... 709  
 【별표6】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 710  
 【별표7】 화상분류표 ..... 710  
 【별표8】 5대골절 분류표 ..... 711  
 【별표9】 중대한특정상해 분류표 ..... 711  
 【별표10】 중증 화상 및 부식 ..... 712  
 【별표11】 외모특정상해분류표 ..... 712  
 【별표12】 척추상해분류표 ..... 713  
 【별표13】 척추질병분류표 ..... 714  
 【별표14】 심자인대질환 분류표 ..... 715  
 【별표15】 급어 심자인대수술 분류표 ..... 715  
 【별표16】 반월판연골질환 분류표 ..... 715  
 【별표17】 급어 반월판연골수술 분류표 ..... 716  
 【별표18】 아킬레스건질환 분류표 ..... 716  
 【별표19】 급어 아킬레스건수술 분류표 ..... 716  
 【별표20】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또는 CABG) ..... 717  
 【별표21】 심장판막수술(Heart Valve Surgery) ..... 717  
 【별표22】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Aorta Graft Surgery) ..... 717  
 【별표23】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 ..... 718  
 【별표24】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 ..... 718  
 【별표25】 말기 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 718  
 【별표26】 말기 간경화(End Stage Liver Cirrhosis) ..... 719  
 【별표27】 말기 신부전증(End Stage Renal Failure) ..... 719  
 【별표28】 간경변증 분류표 ..... 719  
 【별표29】 만성폐쇄성폐질환 분류표 ..... 720  
 【별표30】 폐렴 분류표 ..... 720  
 【별표30-1】 폐렴중등도(PSI : Pneumonia Severity Index) 지표 점수 산정 ..... 721  
 【별표31】 천식 분류표 ..... 721  
 【별표32】 기관지확장증 분류표 ..... 722  
 【별표33】 6대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 ..... 722  
 【별표34】 호흡기질환분류표 ..... 722  
 【별표35】 총수염 분류표 ..... 723  
 【별표36】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 723  
 【별표37】 자궁적출수술 분류표 ..... 724  
 【별표38】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 ..... 724  
 【별표39】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 ..... 725  
 【별표40】 식중독 분류표 ..... 726  
 【별표41】 특정전염병 분류표 ..... 726  
 【별표42】 新112대특정질환 분류표 ..... 727  
 【별표42-1】 중증7대특정질환 분류표 ..... 727

【별표42-2】 14대특정질병(II) 분류표 .....	728
【별표42-3】 20대특정질병 분류표 .....	730
【별표42-4】 68대생활질환질병 분류표 .....	731
【별표42-5】 백내장 분류표 .....	736
【별표42-6】 치핵 분류표 .....	736
【별표42-7】 후각특정질환 분류표 .....	736
【별표43】 7대특정질병 분류표 .....	737
【별표44】 여성특정질병 분류표 .....	738
【별표45】 부인과질환 분류표 II .....	739
【별표46】 여성만성질환 분류표 .....	740
【별표47】 갑상선질환 분류표 .....	740
【별표48】 안과질환 분류표 .....	741
【별표49】 이비인후과질환 분류표 .....	741
【별표50】 3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	741
【별표51】 여성특정암 분류표 .....	742
【별표52】 특정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743
【별표53】 뇌졸중 분류표 .....	743
【별표5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	744
【별표55】 뇌출혈 분류표 .....	744
【별표56】 뇌혈관질환 분류표 .....	744
【별표57】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	745
【별표58】 심장관련질환 분류표 .....	745
【별표59】 특정류마티스관절염 분류표 .....	746
【별표60】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746
【별표61】 1~5종 수술 분류표 III .....	752
【별표62】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 .....	757
【별표63】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 .....	758
【별표64】 대상포진 분류표 .....	759
【별표65】 대상포진뇌병 분류표 .....	759
【별표66】 통풍 분류표 .....	759
【별표67】 요로결석 분류표 .....	760
【별표68】 3대질환 분류표 .....	760
【별표69】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 분류표 .....	761
【별표70】 간질환 분류표 .....	762
【별표71】 아나필락시스 분류표 .....	762
【별표7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763
【별표7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	764
【별표74】 심장질환(특정 I) 분류표 .....	771
【별표75】 심장질환(특정 II) 분류표 .....	771
【별표76】 심장질환(특정 III) 분류표 .....	771
【별표77】 심장질환(특정 IV) 분류표 .....	772
【별표78】 관상동맥성형술 분류표 .....	772
【별표79】 뇌정위적방사선술 분류표 .....	773
【별표80】 특정뇌동맥질환 분류표 .....	773
【별표81】 혈관색전술 분류표 .....	774
【별표82】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 분류표 .....	774
【별표83】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775
【별표84】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776
【별표85】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 .....	777
【별표86】 당뇨병 분류표 .....	777
【별표87】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	778
【별표88】 급여 안면/경부 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	779
【별표89】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780
【별표8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	781
【별표89-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	781
【별표90】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781
【별표9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	782
【별표90-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	782
【별표90-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억제성분 .....	784

【별표91】	특정부위 분류표	784
【별표92】	특정질병 분류표	785
【별표9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787
【별표94】	만성폐질환 분류표	788
【별표95】	자궁내막증 분류표	788
【별표96】	전립선비대증 분류표	789
【별표97】	특정녹내장 분류표	789
【별표98】	삼출성 황반변성 분류표	790
【별표99】	주요바이러스질환 분류표	790
【별표100】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	790
【별표101】	급여 암주요재활치료 분류표	791
【별표102】	뇌·심혈관질환 분류표	792
【별표103】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 분류표	792
【별표104】	급여 신경치단·파괴술 분류표	793
【별표105】	여성5대생활질환 분류표	793
【별표106】	탈장 분류표	794
【별표107】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 분류표	794
【별표108】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	796
【별표109】	개호유발특정질병 분류표	796
【별표110】	요실금 분류표	797
【별표111】	급여 요실금수술 분류표	797
【별표112】	치매 분류표	798
【별표113】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 분류표	798
【별표114】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 분류표	799
【별표115】	위암 및 식도암 분류표	799
【별표116】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분류표	799
【별표117】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분류표	800
【별표118】	심장암 및 뇌암 분류표	800
【별표119】	호흡기암 분류표	801
【별표120】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분류표	801
【별표121】	카티(CAR-T) 보장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802
【별표122】	카티(CAR-T)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802
【별표123】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803
【별표124】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803
【별표124-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803
【별표125】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 분류표	804
【별표126】	파킨슨병 분류표	805
【별표127】	급성신우신염 분류표	805
【별표128】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806
【별표128-1】	중증질환자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	807
【별표128-2】	중증질환자 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	808
【별표128-3】	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	809
【별표128-4】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809
【별표129】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809
【별표130】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810
【별표131】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825
【별표132】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829
【별표133】	대장용종 분류표	830
【별표134】	특정다빈도8대질환 분류표	831
【별표135】	뇌심장질환 분류표	832
【별표136】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 분류표	834
【별표137】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	836
【별표138】	폐 관련암 분류표	837
【별표139】	특정소화기관암 분류표	837
【별표140】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분류표	838
【별표141】	4대특정암 분류표	838
【별표142】	12대특정암 분류표	839
【별표143】	뇌졸중(뇌출혈제외) 분류표	840
【별표144】	기타뇌혈관질환 분류표	840

【별표145】	기타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	840
【별표146】	7대특정암 분류표 .....	841
【별표147】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II 제외) 분류표 .....	841
【별표148】	통합형전이암 분류표 .....	843
【별표149】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	843
【별표150】	특정외상성뇌손상 분류표 .....	862
【별표151】	특정외상성장기손상 분류표 .....	862
【별표152】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 분류표 .....	862
【별표153】	급여 유방재건수술 분류표 .....	863
【별표154】	급여 림프부종수술 분류표 .....	863
【별표155】	급여 피부재건수술 분류표 .....	864
【별표156】	심방세동 및 조동 분류표 .....	865
【별표157】	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 .....	865
【별표158】	뇌전증 분류표 .....	866
【별표159】	일과성뇌허혈발작 분류표 .....	866
【별표160】	항암방사선치료후4대경증합병증 분류표 .....	867
【별표161】	항암방사선치료후5대중증합병증 분류표 .....	867
【별표162】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2대질병 분류표 .....	868
【별표163】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3대질병 분류표 .....	868
【별표164】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	869
【별표165】	욕창 분류표 .....	869
【별표166】	중등증이상 욕창 분류표 .....	870
【별표167】	급여 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	870
【별표168】	기타관계법규 .....	872



무배당  
원더풀 종합보험(24.04)  
보통약관  
[세만기형]

## 무배당 원더풀 종합보험(24.04)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 비용손해 또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 1) 상해 및 질병보장: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배상책임보장: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3) 비용손해보장: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나. 장애: 【별표1】(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라.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마.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바.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II(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갱신형) 특별약관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사.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아.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 가. 보험료 :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통약관의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나. 보장보험료 :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다.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라. 부가보험료 :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다시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마.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미

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 계산에서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단리계산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계산은 (원금+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단리와 복리 계산을 일반화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리 :  $S = A(1+r \times n)$

▷ 복리 :  $S = A(1+r)^n$

(S : 원금과 이자의 합계 / A : 원금 / r : 이자율 / n : 기간)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 제46조(분쟁의 조정)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제9조(「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로 하며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 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2%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3%일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2%)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부리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횡수에 제한 없이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4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제44조(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중도인출시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미지급형에 대해서는 중도인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한 보통약관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지급형에 대해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 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 제 13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 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 제 15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 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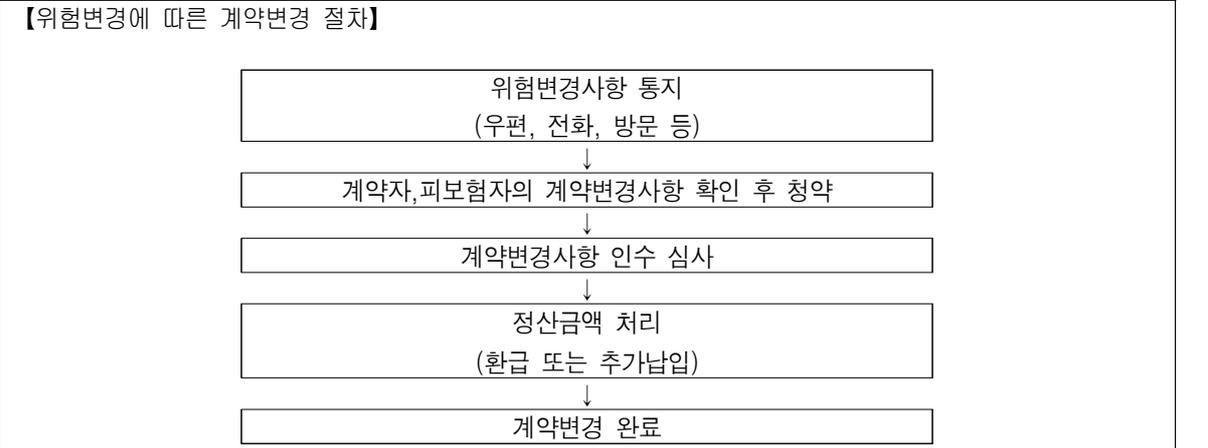
**【사례】**  
 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서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

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 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치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⑧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21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 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합니다. 단,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23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합니다. 단,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지산자가 되며, 금지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을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제25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95년 6월 2일, 현재(계약일) : 2021년 1월 10일  
→ 2021년 1월 10일 - 1995년 6월 2일 = 25년 7월 8일 = 26세

#### 【계약해당일 예시】

보험계약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계약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의 계약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일이 2020년 2월 29일인 경우 2021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제26조(계약의 소멸)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제4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44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29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0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3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32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서 “말기간경화”이라 함은 【별표26】(말기 간경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3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별표25】(말기 폐질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별표27】(말기 신부전증)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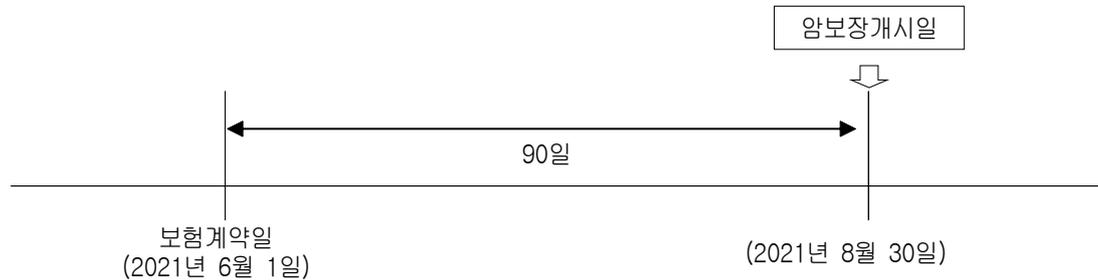
### 제3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이 상품은 1~6종으로 운영하며, 1종 또는 4종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2종, 3종, 5종 또는 6종에 가입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합니다.

#### 【2종, 5종 가입자용】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암보장개시일(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 합니다) 이후 제29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2.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암보장개시일” 예시】



- ② 제1항 제1호의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른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2.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이 동일부위에 발생하여 진단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④ 제3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⑧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사고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사고 사유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⑩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⑪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⑫ 이미 이 계약에서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⑬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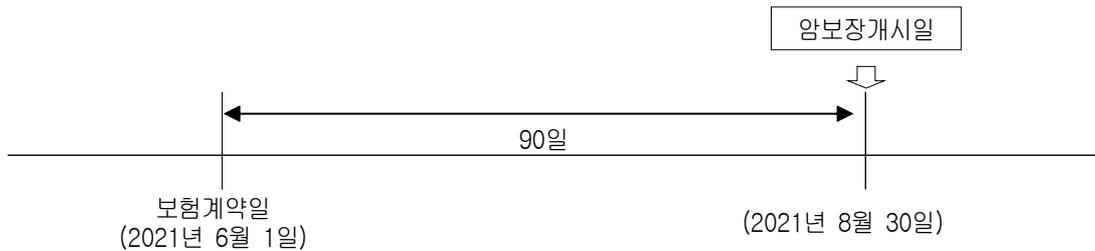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⑭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⑮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 차회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그 특별약관의 갱신 이후 보장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종, 6종 가입자용】**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 암보장개시일(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 합니다) 이후 제29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 2. 피보험자가 제30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3. 피보험자가 제3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4. 피보험자가 제32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5. 피보험자가 제33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6. 피보험자가 제34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7.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8.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암보장개시일” 예시】**



- ② 제1항 제1호의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른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2.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이 동일부위에 발생하여 진단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④ 제3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⑧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사고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사고 사유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⑩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⑪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⑫ 이미 이 계약에서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⑬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⑭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⑮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 차회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그 특별약관의 갱신 이후 보장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 ① 계약자는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 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납입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계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9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4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3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3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4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용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1.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납입지원선택형), 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3대 납입면제형) 및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8대 납입면제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입 기준의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2. 1. 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3. 회사는 해약환급금미지급형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제44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6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소멸시효)**

-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9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2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9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의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의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5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함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함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함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2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배당  
원더풀 종합보험(24.04)  
특별약관  
[세만기형]

## 【 상해관련 특별약관 】

###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기형을 남긴 장해(지급률5%)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팔의 손목이상을 잃은 경우(지급률7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7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를 차감한 6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단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일반상해2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일반상해20%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기형을 남긴 장해(지급률5%)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팔의 손목이상을 잃은 경우(지급률7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7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를 차감한 6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동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별표93】(의료기관의 시설규격)참조)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중환자실 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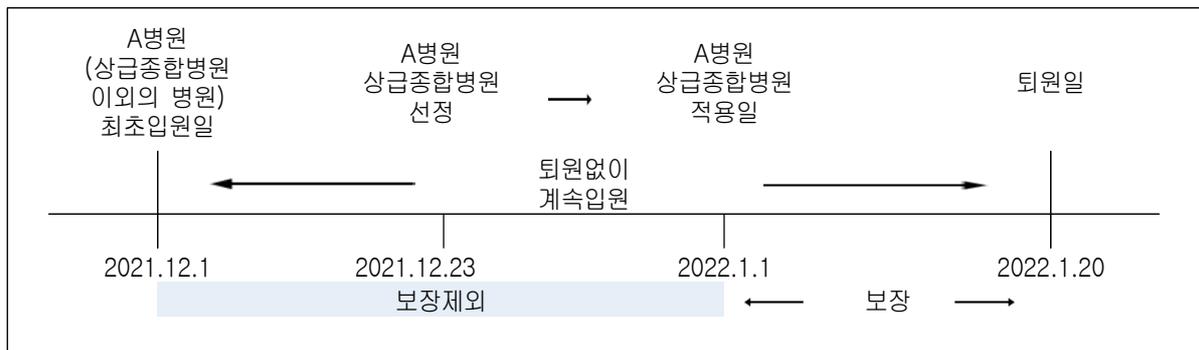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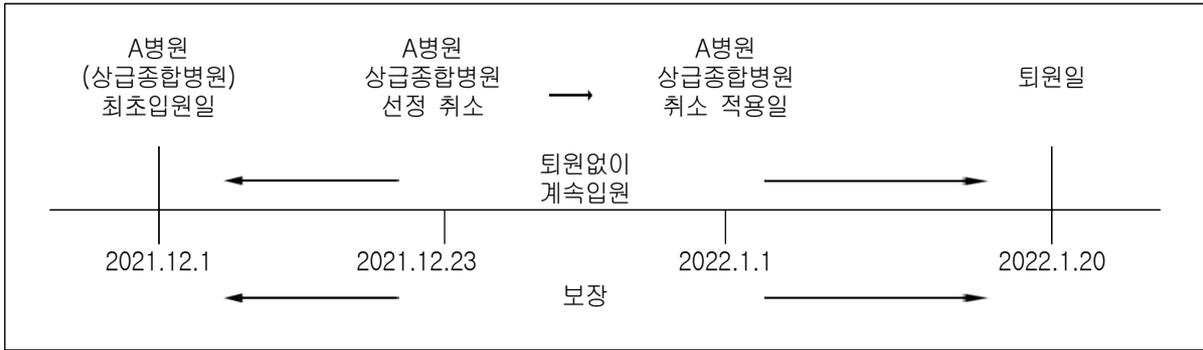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9.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지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최초입원일의 다음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3. 상기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함

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입원일로부터 180일 이전 또는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입원비를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최초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최초입원일		최종퇴원일		최종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① 수술시	② 수술시			③ 수술시	④ 수술시		
미보장	보장대상			보장대상	미보장		

①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전 수술시 미보장  
 ②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이내 수술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입원비를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  
 ③ 최종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입원비를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  
 ④ 최종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일반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 일반상해1~5종수술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일반상해1~5종수술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반상해1종수술비 보장
2. 일반상해2종수술비 보장
3. 일반상해3종수술비 보장
4. 일반상해4종수술비 보장
5. 일반상해5종수술비 보장

###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1~5종 수술분류표III”(【별표61】(1~5종 수술분류표III)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작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수술 “1~5종 수술분류표III”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Ⅲ”(【별표61】(1~5종 수술분류표Ⅲ)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일반상해1~5종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1종수술	일반상해1종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2종수술	일반상해2종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3종수술	일반상해3종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4종수술	일반상해4종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종수술	일반상해5종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 교통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범위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보장대상	해당없음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대상	보장대상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보장대상	보장대상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 ④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3.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②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범위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보장대상	해당없음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대상	보장대상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보장대상	보장대상

**【용어풀이】**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기형을 남긴 장애(지급률5%)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팔의 손목이상을 잃은 경우(지급률7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애지급률 7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애지급률 5%를 차감한 65%를 최종 장애지급률로 결정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보험금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 ④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 음주, 무면허, 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 및 “뺑소니사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음주운전사고”라 함은 타인이 일으킨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무면허운전사고”라 함은 타인이 일으킨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뺑소니사고”라 함은 타인이 일으킨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 “뺑소니사고”의 피해자(도로교통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합니다)가 되어 사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음주, 무면허, 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음주, 무면허, 뺑소니차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사망진단서
  3.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특별약관**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골절”이라 함은 【별표5】(골절분류표)에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는 1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6.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골절”이라 함은 【별표6】(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는 1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7. 골절깁스치료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골절”이라 함은 【별표6】(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제2조(“깁스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봉대 또는 섬유유리봉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치료”란 석고봉대 또는 섬유유리봉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을 받고 제2조(“깁스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 깁스치료비(치아파절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깁스치료비(치아파절제외)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8. 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골절”이라 함은 【별표6】(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제2조(“부목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sling, brace 등 치료 보조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는 “부목(Splint Cast)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을 받고 제2조(“부목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부목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 【별표5】(골절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지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아래에 사유로 인한 골절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함)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화상”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화상”이라 함은 【별표7】(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화상”의 정의)에서 정한 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상진단비는 1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화상”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화상”이라 함은 【별표7】(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화상”의 정의)에서 정한 화상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아래에 사유로 인한 화상수술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함)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2.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5대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5대골절”이라 함은 【별표8】(5대골절분류표)에 정한 1.머리의 으깬손상, 2.목의 골절, 3.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4.요추 및 골반의 골절, 5.대퇴골의 골절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5대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5대골절진단비는 1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5대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5대골절”이라 함은 【별표8】(5대골절분류표)에 정한 1.머리의 으깬손상, 2.목의 골절, 3.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4.요추 및 골반의 골절, 5.대퇴골의 골절을 말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제1조(“5대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5대골절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아래에 사유로 인한 골절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함)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 특별약관

#### 제1조(“척추상해”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척추상해”라 함은 【별표12】(척추상해분류표)에 정한 척추상해를 말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 2.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3.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제1조(“척추상해”의 정의)에서 정한 “척추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보험가입금액을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관혈수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비관혈수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과 비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5.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안면부	상지 · 하지
지급액	수술 1cm당 14만원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주) 길이측정이 불가능한 피부이식수술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만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만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등은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중대한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중대한 상해 수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대한 상해 수술이라 함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 손상(【별표9】(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9】(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操作)】**  
요도에서 내시경으로 방광, 전립선, 요도의 조직을 절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관혈적(非觀血的) 조작에 해당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지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치료를 목적으로 제1조(“중대한 상해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상해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으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상해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단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7.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 확정)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별표10】(중증 화상 및 부식)을 말하며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 확정)에서 정의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외모특정상해”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외모특정상해”라 함은 【별표11】(외모특정상해분류표)에서 정한 외모특정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1】(외모특정상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외모특정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모특정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  
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각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  
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9.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특별약관

#### 제1조(“운전중 사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운전중 사고”라 함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  
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  
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  
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의사 면허

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애,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성형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0.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1급)(차등지급)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별표7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1급)(차등지급)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20만원
8급~10급	15만원
11급	10만원

② 제1항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자동차사고의 범위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보장대상	해당없음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대상	보장대상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보장대상	보장대상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 ④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1.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 II (1~14급)(차등지급)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별표7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 II(1~14급)(차등지급)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100만원
7급	70만원
8급~10급	25만원
11급~14급	10만원

② 제1항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자동차사고의 범위	피보험자가 자가용운전자 또는 영업용운전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보장대상	해당없음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대상	보장대상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보장대상	보장대상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 ④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2. 강력범죄피해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피해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 및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항의 치료기간은 관할 검·경찰 기관에 피해 입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법원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향후 치료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노동쟁의

## 제4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2. 의사진단서
3. 기타관련 증빙서류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3.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제1조(“아나필락시스”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아나필락시스”라 함은 【별표71】(아나필락시스 분류표)에 정한 상병상을 말합니다.
- ② “아나필락시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항체, 항원검사, 유발검사 및 피부시험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아나필락시스”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연간1회한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아나필락시스”를 진단확정 받은 날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아나필락시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4.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34-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비갱신형 및 갱신형) 보장**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간병인의 주요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2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회사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계산 예시】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1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2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1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1년 4월 10일 ~ 4월 17일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88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이상에 해당.
      - 2만원 × 8일 = 16만원 지급
    - 2021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4일 오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52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미만에 해당.
      - 1만원 × 8일 = 8만원 지급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16만원 + 8만원 = 24만원 지급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제2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5. 회사는 실제 간병인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중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보장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장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

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보장의 갱신)

- ① 이 보장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보장의 소멸)에 의하여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4-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비갱신형 및 갱신형) 보장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간병인의 주요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2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회사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이하 ‘입원비’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제2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5. 회사는 실제 간병인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중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장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

장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장의 갱신)**

- ① 이 보장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보장의 소멸)에 의하여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 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2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2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행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6.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7. 산정특례(중증외상)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123】 (중증외상

한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권역외상센터 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증외상환자는 손상중증도점수가 측정된 진료기간의 최초 내원일로부터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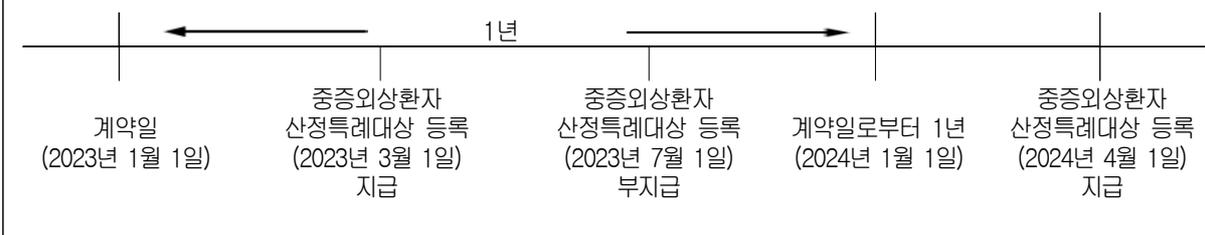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외상센터에 대하여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를 적용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에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특례(중증외상) 치료비(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산정특례(중증외상) 치료비(연간1회한)는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산정특례(중증외상) 치료비(연간1회한) 보장 예시】**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중증외상) 치료비(연간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

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손상중증도점수(ISS) 등 기입),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8. 산정특례(중증화상)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124】(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화상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적용이 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등록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특례(중증화상) 치료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상해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중증화상) 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재등록】**

법령에서 정한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기간(1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증화상의 수술(【별표 124-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참조)을 받는 경우(V306은 제외)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중증화상) 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9.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3(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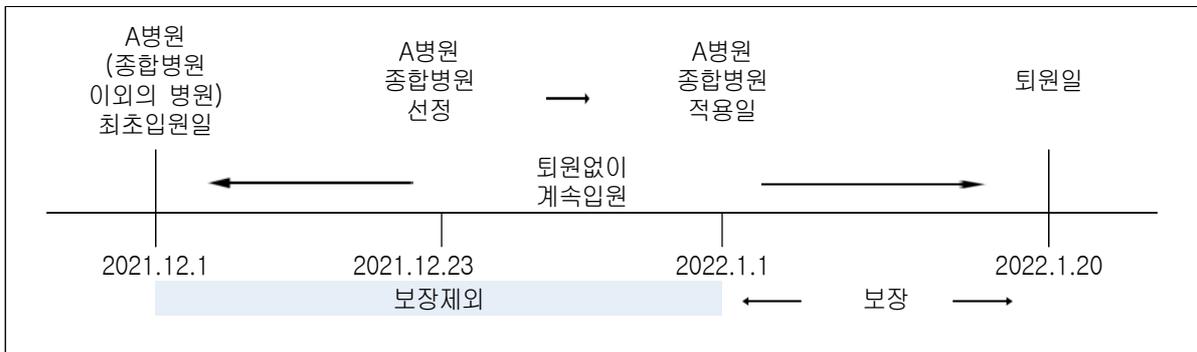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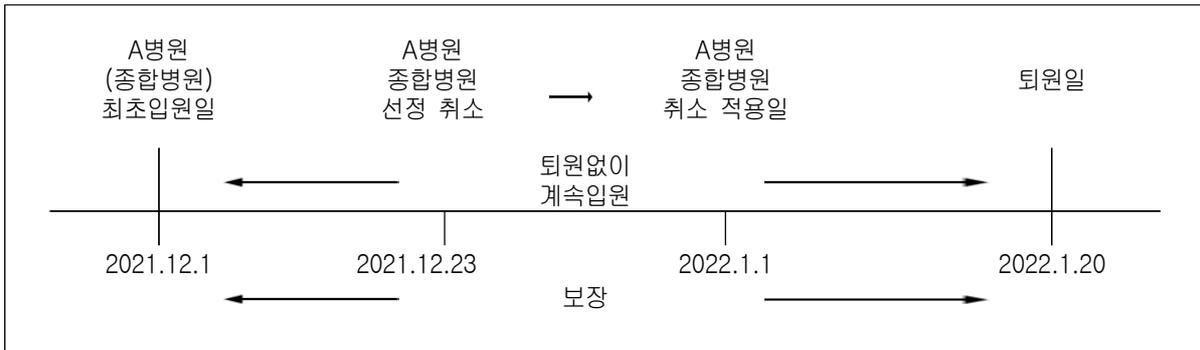
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0. 일반상해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에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 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이하 “수술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비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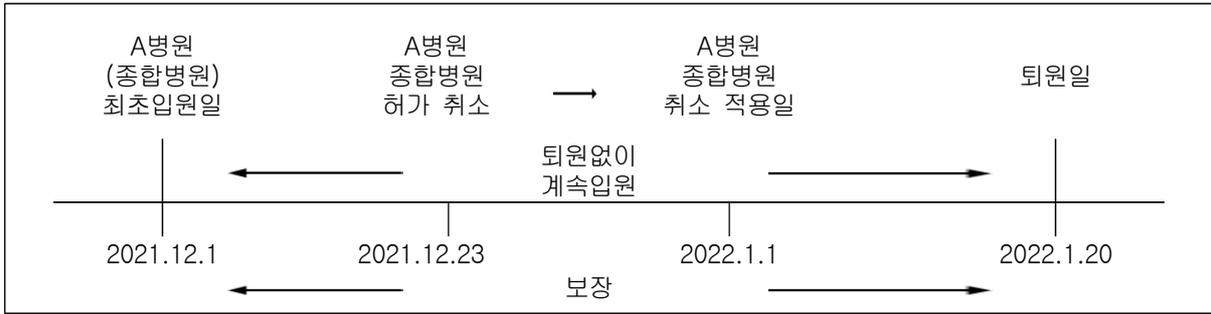
구 분	지급금액
일반상해입원치료수술비 (종합병원)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입원일수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수술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퇴원한 날까지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원 중 수술하였다면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백 폐 안 권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1. 생활지원금(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생활지원금(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지원금(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은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제2항에서 정한 ‘지급기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지급사유 발생일 예시】**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EX1) 지급사유 발생일 : 2023년 2월 1일 ⇒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 : 1일  
 EX2)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2월 29일 ⇒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 : 29일  
 (단, 해당월에 29일이 없는 경우 28일)

- ② 이 특약에서 ‘지급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단,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5년으로 합니다.

**【생활지원금(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지급 예시①】**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30세가입, 60세만기,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 : 2025년 3월 10일
- 지급사유 발생일 : 매월 10일
- 보험기간 종료일(전일) : 2053년 1월 1일(2052년 12월 31일)
- 지급기간 : 2025년 3월 10일 ~ 2052년 12월 31일(334회)

■ 보험금 지급 예시 표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5년 3월 10일	50만원
2025년 4월 10일	50만원
...	...
2052년 11월 10일	50만원
2052년 12월 10일	50만원

생활지원금 총액 : 1억 6,700만원  
 = 50만원(보험가입금액) × 334회(지급기간)

**【생활지원금(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지급 예시②】**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30세가입, 60세만기,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 : 2052년 3월 10일
- 지급사유 발생일 : 매월 10일
- 보험기간 종료일(전일) : 2053년 1월 1일(2052년 12월 31일)
- 지급기간 : 2052년 3월 10일 ~ 2057년 3월 9일(60회)

■ 보험금 지급 예시 표

지급시기	지급금액
2052년 3월 10일	50만원
2052년 4월 10일	50만원
...	...
2057년 1월 10일	50만원
2057년 2월 10일	50만원

생활지원금 총액 : 3,000만원

= 50만원(보험가입금액) × 60회(지급기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생활지원금(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생활지원금(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단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2. 일반상해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일반상해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반상해1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2. 일반상해2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3. 일반상해3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4. 일반상해4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5. 일반상해5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6. 일반상해6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7. 일반상해7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8. 일반상해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제1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수술 및 시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49】(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시술코드(이하 “수술시술코드”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 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로서, 진단과 시술명, 연령 등에 따라 입원환자를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 특약은 KDRG 버전 4.5(2023.1.1. 시행)의 ADRG 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ADRG(Adjacent DRG)】**  
 환자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의료행위<sup>주1)</sup>와 진단명<sup>주2)</sup>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주1) 의료행위 :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 가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주2) 진단명 : 진단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신체부위나 질병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수술시술코드에서 향후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개정으로 동일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수술시술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약의 체결시점에서 정한 수술시술코드를 따릅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ADRG”가 신규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49】(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수술시술코드를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술 및 시술 받은 시점에서 부여된 의료행위, 진단명 및 주진단범주(MDC) 등을 이 특약 체결시점의 “KDRG”기준에 적용합니다.
- 신의료수술 도입 등의 이유로 급여항목이 신규 추가되고 피보험자가 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를 확인한 후 이 특약 체결시점에 정한 수술시술코드를 기준으로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예시】**  
 이 특약 체결시점에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시술코드는 A010(KDRG 버전 4.5)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은 시점의 수술시술코드가 A080(KDRG 버전 5.0)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A010(KDRG 버전 4.5)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에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 및 시술이 향후 비급여항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수술 및 시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⑤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검사료) 및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방사선 치료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선형가속기(LINAC) 정위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치료는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선형가속기이용	HD1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선형가속기이용	HD112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HD115
양성자치료[1회당]	HD12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사이버나이프이용	HD2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사이버나이프이용	HD2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49】(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일반상해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이하 “수술비(시술포함)”)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시술코드 당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일반상해1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2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3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4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5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6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7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시술코드에 한하여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시술코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시술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수술시술종류가 높은 하나의 수술시술코드에 한하여 해당 종의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ADRG는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더라도 “K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됩니다. 이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49】(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의 수술시술종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유방재건술(J051)”(3종)과 “유방절제술(J061)”(7종)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ADRG는 “유방재건술(J051)”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유방절제술(J061)”에 해당하는 7종의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속입원 중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비(시술포함)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시술한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시술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제1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 【예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아래의 진단명 및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슬관절 및 하퇴골 골절 수술(I283)”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 진단명 : 경골 하단의 기타 골절(S82.38)
- 의료행위 :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N1604)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서 해당 입원기간 또는 통원일에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이 발생하는 다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 수술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포함)와 제5항의 수술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포함)를 각각 지급합니다.
- ⑦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1)」, 「개복에 의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2)」, 「분만및유산후관련장애(수술시행)(O0110)」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49】(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의 주2)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3.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특정외상성뇌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특정외상성뇌손상”이라 함은 【별표150】(특정외상성뇌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외상성뇌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또한 회사가 “특정외상성뇌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특정외상성뇌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公道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특정외상성뇌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인)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특정외상성뇌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인)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4.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특정외상성장기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인)**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이라 함은 【별표151】(특정외상성장기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단, 수술을 하지 않은 탈장 및 내부장기의 단순 부종이나 단순 울혈 등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외상성장기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이학적 검진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또한 회사가 “특정외상성장기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특정외상성장기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인)에서 정의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특정외상성장기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특정외상성장기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특정외상성장기손상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5. 골절특정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골절 특정재활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골절”이라 함은 【별표5】(골절분류표)에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골절 특정재활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의 골절 치료 중, 골절 치료 완료 후 골절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전문재활인력이 진단, 평가 및 치료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로 향상 및 유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라 함은 “골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별표152】(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결정합니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3항에서 정한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 외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병원에 입원 중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이하 “입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이하 “통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골절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은 연간 발생한 “입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와 “통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와 “통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입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통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통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단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6. 상해재활치료비(급여, 연간15회한) 특별약관

### 제1조(“상해재활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함은 상해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상해재활치료(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상해재활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

상해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제2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 중에 “상해재활치료(급여)”(이하 “입원 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이하 “통원 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15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15회한)은 연간 발생한 “입원 상해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상해재활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5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산정의 기준일자는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7. 상해재활치료비(급여, 연간30회한) 특별약관

### 제1조(“상해재활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함은 상해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상해재활치료(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상해재활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

상해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제2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 중에 “상해재활치료(급여)”(이하 “입원 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이하 “통원 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30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30회한)은 연간 발생한 “입원 상해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상해재활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산정의 기준일자는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8. 상해재활치료비(급여, 연간60회한) 특별약관**

**제1조(“상해재활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함은 상해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상해재활치료(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상해재활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상해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제2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 중에 “상해재활치료(급여)”(이하 “입원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이하 “통원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60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60회한)은 연간 발생한 “입원상해재활치료(급여)”와 “통원상해재활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6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산정의 기준일자는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질병관련 특별약관 】

### 1. 질병사망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질병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동일한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질병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동일한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제3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질병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50%이상후유장애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장애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동일한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에서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제3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50%이상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그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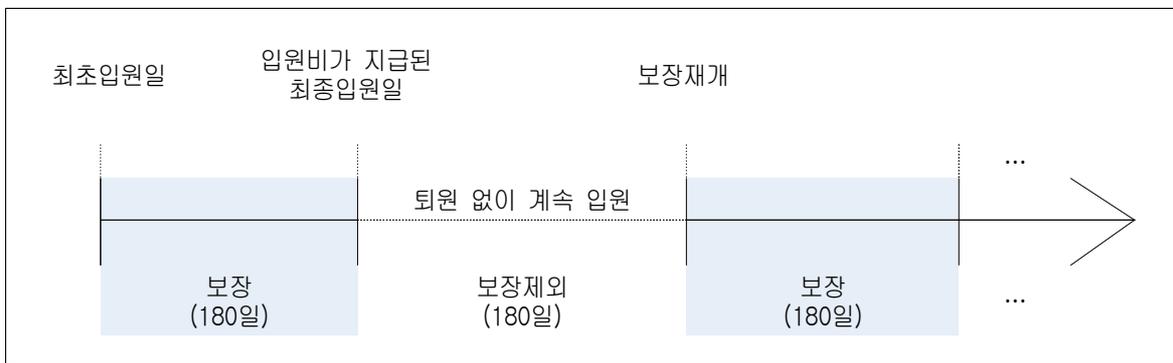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질병의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더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함)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성병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별표93】(의료기관의 시설규격)참조)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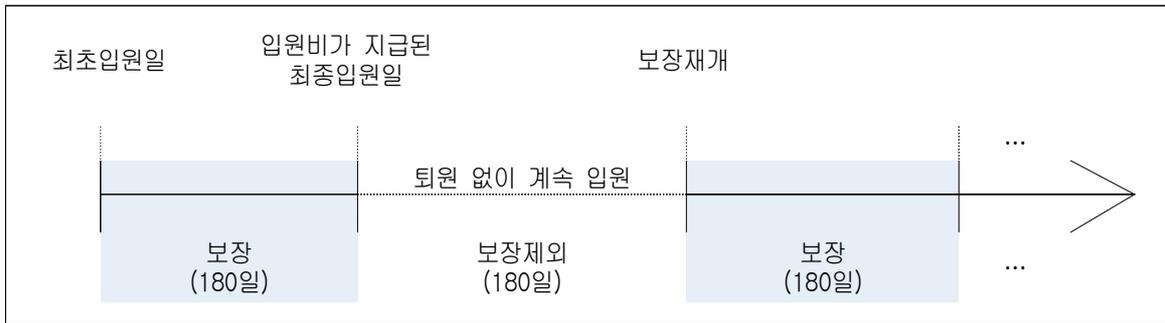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질병의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성병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7.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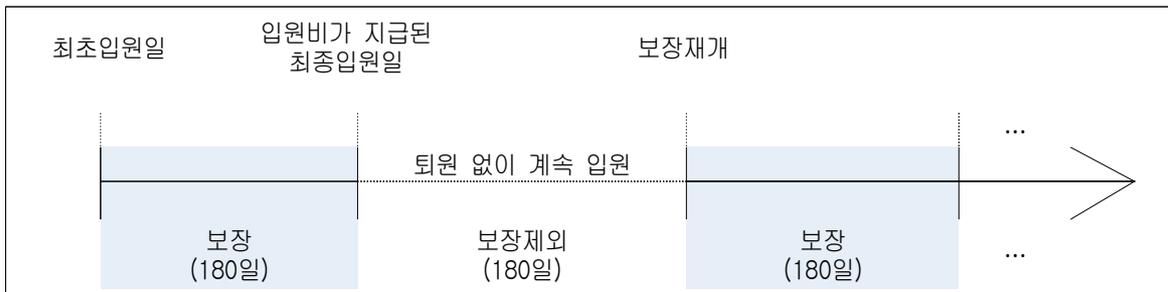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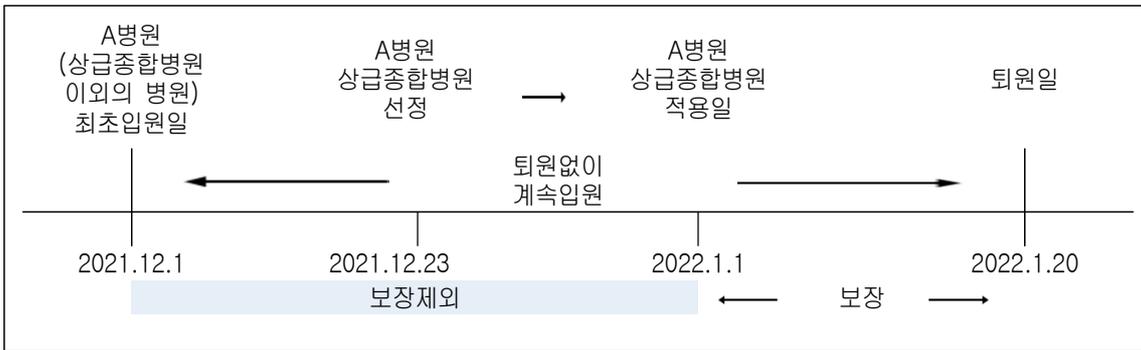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로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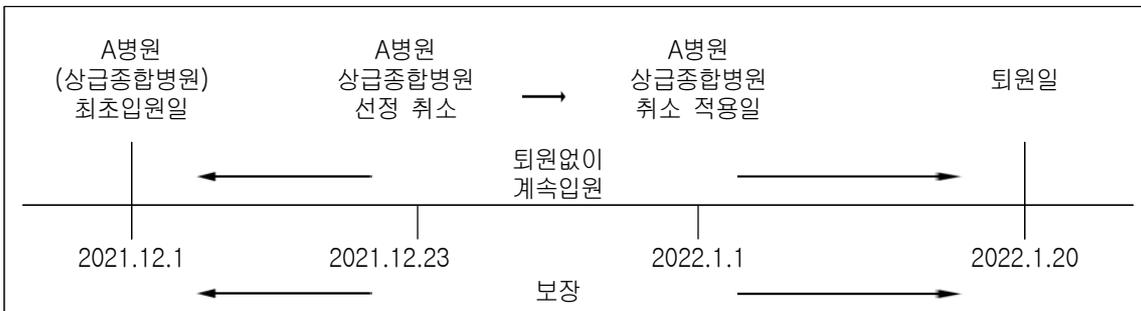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질병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질병의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콩다래끼,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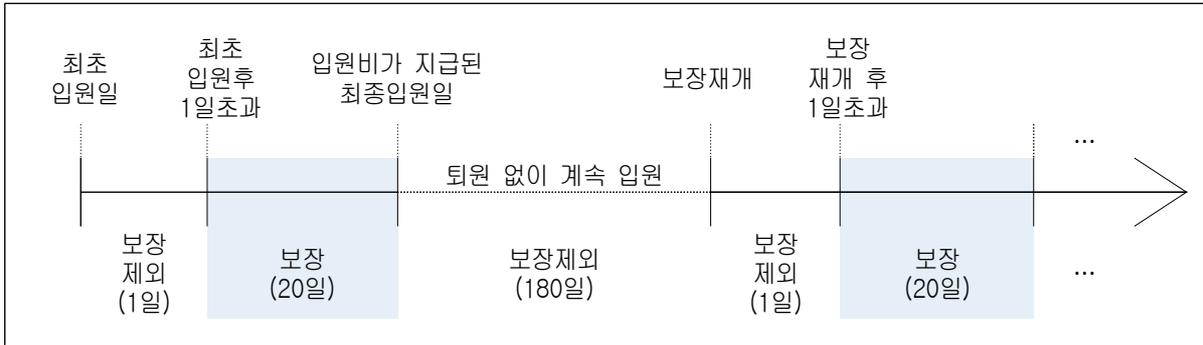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최초입원일의 다음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3. 상기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입원일로부터 180일 이전 또는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입원비를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최초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최초입원일	최종퇴원일	최종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① 수술시	② 수술시	③ 수술시	④ 수술시
미보장	보장대상	보장대상	미보장

- ①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전 수술시 미보장
- ②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이내 수술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입원비를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
- ③ 최종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입원비를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
- ④ 최종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부 록 안 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K62,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④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9.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콩다래끼,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K62,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0. 질병1~5종수술비III(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질병1~5종수술비III(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질병1종수술비III 보장
2. 질병2종수술비III 보장
3. 질병3종수술비III 보장
4. 질병4종수술비III 보장
5. 질병5종수술비III 보장

###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1~5종 수술분류표III”(【별표61】(1~5종 수술분류표III)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수술 “1~5종 수술분류표III”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III”(【별표61】(1~5종 수술분류표III)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질병1~5종수술비III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1종수술	질병1종수술비III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2종수술	질병2종수술비III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3종수술	질병3종수술비III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4종수술	질병4종수술비III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종수술	질병5종수술비III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III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1~5종수술비III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

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 중대한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중대한 질병수술”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수술”이라 함은 【별표20】(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별표21】(심장판막수술) 및 【별표22】(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말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 다만, 다래끼, 콩다래끼,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제1조(“중대한 질병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대한 질병수술”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수술”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질병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별표23】(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3.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 함은 【별표24】(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

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 말기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별표25】(말기 폐질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말기폐질환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말기폐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말기폐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5. 말기간경화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말기간경화”이라 함은 【별표26】(말기 간경화)의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말기간경화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말기간경화”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간경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말기간경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간경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말기간경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6. 말기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별표27】(말기 신부전증)의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말기신부전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7. 간경변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간경변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간경변증”이라 함은 【별표28】(간경변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간경변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간경변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간경변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간경변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간경변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간경변증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간경변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간경변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간경변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간경변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간경변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간경변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간경변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간경변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충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이라 함은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혈뇨와 같은 신장손상의 증거가 있는 등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N18(만성 신장병)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3개월 이상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 :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분당 60mL 미만의 만성신장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 신장의 크기 및 요로 폐쇄 징후 등을 확인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 이상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9.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 함은 【별표29】(만성폐쇄성폐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폐활량 측정법 검사 결과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 폐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1.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폐활량 측정법으로 FVC, FEV1을 측정하여 1초간 FEV1/FVC 이 0.70 미만
  2.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 검사가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 ② 제1항의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정기적인 흉부X선 소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과 같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폐기능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 중등도이상 폐렴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중등도이상 폐렴”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등도이상 폐렴(PSI 3,4,5등급)”이라 함은 【별표30】 (폐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PSI(Pneumonia Severity Index : 폐렴중등도 지표) 점수(【별표30-1】 (폐렴중등도 지표 점수 산정) 참조)가 71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등도이상 폐렴”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정기적인 흉부X선 소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과 같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폐기능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중등도이상 폐렴”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중등도이상 폐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폐렴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등도이상 폐렴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중등도이상 폐렴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중등도이상 폐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폐렴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등도이상 폐렴”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폐렴”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폐렴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중등도이상 폐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폐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등도이상 폐렴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 중등도이상 천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중등도이상 천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등도이상 천식”이라 함은 【별표31】(천식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받고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 : Forced Expiratory Volumn in 1 second, 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 검사가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폐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천식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중등도이상 천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정기적인 흉부X선 소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과 같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폐기능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중등도이상 천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중등도이상 천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천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등도이상 천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중등도이상 천식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중등도이상 천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천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등도이상 천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천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천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중등도이상 천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천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등도이상 천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이라 함은 【별표32】(기관지확장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받고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 : Forced Expiratory Volumn in 1 second, 1초에 최대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 검사가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과 같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폐기능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등도

이상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 양성뇌종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② 제1항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 (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양성뇌종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중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말합니다)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양성뇌종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양성뇌종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양성뇌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성뇌종양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 6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6대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6대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함은 아래 【별표33】(6대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6대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6대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6대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6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6대희귀난치성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6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6대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6대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6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6대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6대희귀난치성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6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5.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작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 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 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 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본인 또는 타인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 약 약 관

## 26. 호흡기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호흡기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호흡기질환”이라 함은 【별표34】(호흡기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상기도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천식지속 상태, 폐렴, 재향군인병,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폐렴이 합병된 홍역, 수두폐렴, 폐톡소포자충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호흡기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호흡기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호흡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호흡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호흡기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총수염(맹장)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총수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총수염”이라 함은 【별표35】(총수염 분류표)에서 정한 총수염의 질환을 말합니다.
- ② “총수염”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작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총수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총수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총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 수술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총수염(맹장)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총수염”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총수염”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총수염(맹장)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8. 척추질환수술비(관혈/비관혈) 특별약관

### 제1조(“척추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척추질환”라 함은 【별표13】(척추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척추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지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2.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3.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1조(“척추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척추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보험가입금액을 척추질환수술비(관혈/비관혈)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관혈수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비관혈수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과 비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9. 여성생식기암자궁적출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여성생식기암 및 자궁적출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별표36】(여성생식기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여성생식기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 특약에서 자궁적출수술(hysterotomy)이라 함은 자궁을 적출(외과적으로 제거함)하는 수술로써 【별표37】(자궁적출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말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여성생식기암 및 자궁적출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여성생식기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조(“여성생식기암 및 자궁적출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여성생식기암자궁적출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여성생식기암 자궁적출수술비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여성생식기암자궁적출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0.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이라 함은 【별표38】(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부전,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을 말합니다.
- ②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남성특정비뇨기계 질환수술비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1. 만성당뇨합병증치료비 특별약관

#### 제1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별표39】(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에서 정한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기타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만성당뇨합병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 당뇨병성 망막증: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2. 당뇨병성 신증: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질이 500mg 이상 검출된 경우(단백뇨군으로 분류),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1.5mg/dl 이상인 경우(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분류)
  3.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경전도검사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이상 소견을 보이거나 Ewing 방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4.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Ulcer), 괴저(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만성당뇨합병증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만성당뇨합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2.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식중독”이라 함은 【별표40】(식중독 분류표)에서 정한 기타 살모넬라감염, 시겔라증, 기타 세균성 장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아메바증, 기타 원충성 장질환,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성효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식중독”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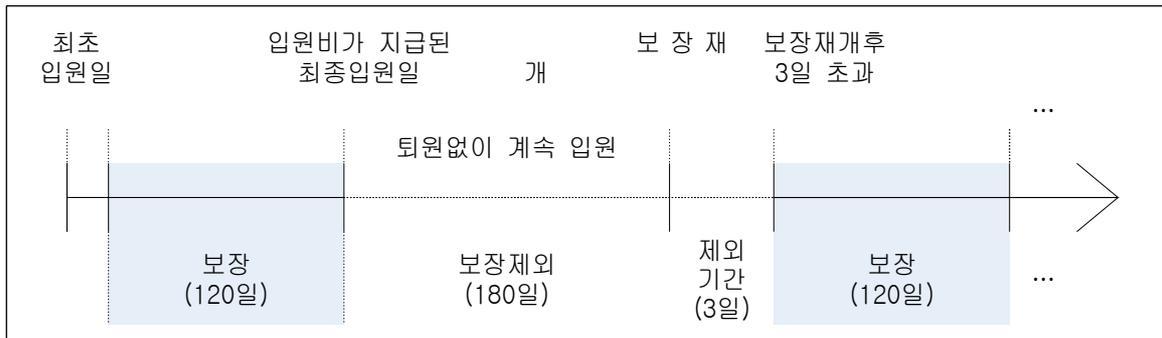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식중독”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식중독”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식중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는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식중독”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4일이상 계속입원한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3. 특정전염병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별표41】(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4.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1 (중증7대특정질병수술비, 14대특정질병(Ⅱ)수술비(관혈/비관혈))
2.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2 (20대특정질병수술비(관혈/비관혈))
3.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3 (68대생활질환질병수술비)
4.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4 (후각특정질병수술비)
5.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5 (백내장수술비)
6.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6 (치핵수술비)

### 제1조(“중증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중증7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42-1】(중증7대특정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파킨슨병, 2.다발경화증, 3.뇌성마비, 4.크로이츠펠트-야콥병, 5.조로증, 6.전신홍반루푸스, 7.전신경화증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증7대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14대특정질병(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14대특정질병(Ⅱ)”이라 함은 【별표42-2】(14대특정질병(Ⅱ)분류표)에서 정한 1.당뇨병, 2.심장질환, 3.고혈압, 4.뇌혈관질환, 5.간질환, 6.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동맥경화증, 8.만성하부호흡기질환, 9.폐렴, 10.결핵, 11.신부전, 12.대동맥류, 13.기관지·폐의 특정질환, 14.수막의 양성신생물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14대특정질병(Ⅱ)”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3조(“20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20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42-3】(20대특정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수막염, 2.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3.자율신경계통의 장애, 4.패혈증, 5.급성체장염, 6.체장질환, 7.중증근무력증, 8.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9.갑상선질환, 10.뇌하수체질환, 11.뇌전증, 12.안면신경장애, 13.마비, 14.수두증, 15.폐부종, 16.특정호흡기질환, 17.사구체질환, 18.신세뇨관-간질질환, 19.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20.녹내장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20대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4조(“68대생활질환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68대생활질환질병”이라 함은 【별표42-4】(68대생활질환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갑상선질환, 2.황반변성, 3.관절염 및 다발경화증, 4.관절증, 5.사지 후천변형, 6.관절장애, 7.전립선질환, 8.남성생식기관의 질환, 9.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10.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11.담석증, 12.사타구니탈장, 13.편도염, 14.축농증, 15.폐질환, 16.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17.간·담관·체장의 양성신생물, 18.상부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 19.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20.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21.조직의 양성신생물, 22.유방의 양성신생물, 23.생식기의 양성신생물, 24.난소의 양성신생물, 25.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26.눈의 양성신생물, 27.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28.비장질환, 29.손목터널증후군, 30.단일신경병증, 31.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32.유리체의 장애, 33.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34.외이의 질환, 35.중이 및 유도의 질환, 36.귀경화증, 37.내이의 질환, 38.귀의 기타장애, 39.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40.하지의 정맥류, 41.림프절염, 42.급성 상기도감염, 43.인후부위의 특정질환, 44.식도질환, 45.위공장궤양, 46.위십이지장질환, 47.특정부위의 탈장, 48.비강염성장염 및 결장염, 49.특정장질환, 50.복막의 질환, 51.담낭담도질환, 52.통풍, 53.전신결합조직장애, 54.특정 누적외상성질환, 55.척추변형, 56.척추병증, 57.추간판장애, 58.근육장애, 59.윤활막 및 힘줄장애, 60.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61.어깨병변, 62.골다공증, 63.뼈의 병증, 64.연골병증, 65.방광의 결석, 66.비뇨계통의 기타질환, 67.유방의 장애, 68.난소·난관의 질환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68대생활질환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5조(“후각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후각특정질환”이라 함은 【별표42-7】(후각특정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후각특정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백내장”이라 함은 【별표42-5】(백내장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백내장”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7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치핵”이라 함은 【별표42-6】(치핵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치핵”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8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 있어서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 2.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3.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1조(“중증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 7대특정질병 또는 제2조(“14대특정질병(II)”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4대특정질병(II)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1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1	중증7대특정질병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0%
	14대특정질병(II)수술시	관혈 수술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비관혈 수술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5%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3조(“20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20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2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2	20대특정질병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비관혈 수술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5%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4조(“68대생활질환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68대생활질환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3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3	68대생활질환질병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5조(“후각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후각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4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4	후각특정질환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6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5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5	백내장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⑥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7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6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6	치핵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 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과 비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11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2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5.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II 특별약관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II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II\_1 (중증7대특정질병수술비, 14대특정질병(II)수술비)
2.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II\_2 (20대특정질병수술비)
3.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II\_3 (68대생활질환질병수술비)
4.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II\_4 (후각특정질병수술비)
5.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II\_5 (백내장수술비)
6.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II\_6 (치핵수술비)

### 제1조 (“중증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중증7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42-1】(중증7대특정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파킨슨병, 2.다발경화증, 3.뇌성마비, 4.크로이츠펠트-야콥병, 5.조로증, 6.전신홍반루푸스, 7.전신경화증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증7대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 (“14대특정질병(II)”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14대특정질병(II)”이라 함은 【별표42-2】(14대특정질병(II)분류표)에서 정한 1.당뇨병, 2.심장질환, 3.고혈압, 4.뇌혈관질환, 5.간질환, 6.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동맥경화증, 8.만성하부호흡기질환, 9.폐렴, 10.결핵, 11.신부전, 12.대동맥류, 13.기관지·폐의 특정질환, 14.수막의 양성신생물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14대특정질병(II)”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3조 (“20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20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42-3】(20대특정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수막염, 2.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3.자율신경계통의 장애, 4.파혈증, 5.급성체장염, 6.체장질환, 7.중증근무력증, 8.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9.부갑상선질환, 10.뇌하수체질환, 11.뇌전증, 12.안면신경장애, 13.마비, 14.수두증, 15.폐부종, 16.특정호흡기질환, 17.사구체질환, 18.신세뇨관-간질질환, 19.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20.녹내장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20대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4조 (“68대생활질환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68대생활질환질병”이라 함은 【별표42-4】(68대생활질환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갑상선질환, 2.황반변성, 3.관절염 및 다발경화증, 4.관절증, 5.사지 후천변형, 6.관절장애, 7.전립선질환, 8.남성생식기관의 질환, 9.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10.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11.담석증, 12.사타구니탈장, 13.편도염, 14.축농증, 15.폐질환, 16.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17.간·담관·체장의 양성신생물, 18.상부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 19.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20.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21.조직의 양성신생물, 22.유방의 양성신생물, 23.생식기의 양성신생물, 24.난소의 양성신생물, 25.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26.눈의 양성신생물, 27.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28.비장질환, 29.손목터널증후군, 30.단일신경병증, 31.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32.유리체의 장애, 33.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34.외이의 질환, 35.중이 및 유도의 질환, 36.귀경화증, 37.내이의 질환, 38.귀의 기타장애, 39.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40.하지의 정맥류, 41.림프절염, 42.급성 상기도감염, 43.인후부위의 특정질환, 44.식도질환, 45.위공장궤양, 46.위십이지장질환, 47.특정부위의 탈장, 48.비강염성장염 및 결장염, 49.특정장질환, 50.복막의 질환, 51.담낭담도질환, 52.통풍, 53.전신결합조직장애, 54.특정 누적외상성질환, 55.척추변형, 56.척추병증, 57.추간판장애, 58.근육장애, 59.윤활막 및 힘줄장애, 60.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61.어깨병변, 62.골다공증, 63.뼈의병증, 64.연골병증, 65.방광의 결석, 66.비뇨계통의 기타질환, 67.유방의 장애, 68.난소·난관의 질환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68대생활질환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5조 (“후각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후각특정질환”이라 함은 【별표42-7】(후각특정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후각특정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

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백내장”이라 함은 【별표42-5】(백내장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백내장”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7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치핵”이라 함은 【별표42-6】(치핵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치핵”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8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查)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1조(“중증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 7대특정질병 또는 제2조(“14대특정질병(II)”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4대특정질병(II)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II\_1으로 보험수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 II_1	중증7대특정질병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0%
	14대특정질병(II)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3조(“20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20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II\_2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 II_2	20대특정질병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4조(“68대생활질환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68대생활질환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II\_3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 II_3	68대생활질환질병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5조(“후각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후각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II\_4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 II_4	후각특정질환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6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II\_5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 II_5	백내장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⑥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7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II\_6으로 보

협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수술시
新112대 특정질병 수술비 II_6	치핵수술시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II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11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2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6. 7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7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43】(7대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심장질환, 2.뇌혈관질환, 3.간질환, 4.고혈압, 5.당뇨병, 6.만성하부호흡기질환, 7.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7대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7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7대특정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7대특정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7. 여성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여성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여성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44】(여성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심장질환, 2.뇌혈관질환, 3.고혈압, 4.당뇨병, 5.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6.신부전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의 “여성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查)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1조(“여성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여성특정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일부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여성특정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8. 부인과질병수술비 II 특별약관

### 제1조(“부인과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부인과질병”이라 함은 【별표45】(부인과질병 분류표 II)에서 정한 부인과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의 “부인과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1조(“부인과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인과질병수술비II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9. 여성만성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여성만성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여성만성질병”이라 함은 【별표46】(여성만성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골다공증과 관절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의 “여성만성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1조(“여성만성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여성만성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0. 갑상선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갑상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별표47】(갑상선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갑상선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갑상선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지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갑상선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갑상선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

- 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1. 안과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안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인)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안과질환”이라 함은 【별표48】(안과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안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안과질환”의 진단 확인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콩다래끼,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안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안과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안과질환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안과질환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의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일부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

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2.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이비인후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이비인후과질환”이라 함은 【별표49】(이비인후과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이비인후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비인후과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이비인후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영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채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 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각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

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고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단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3. 암사망보험금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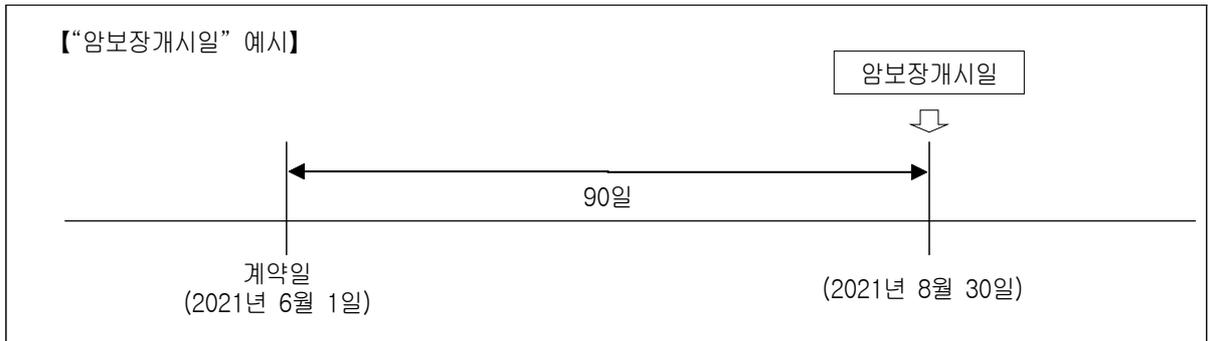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암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암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사망보험금, 갑상선암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암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4. 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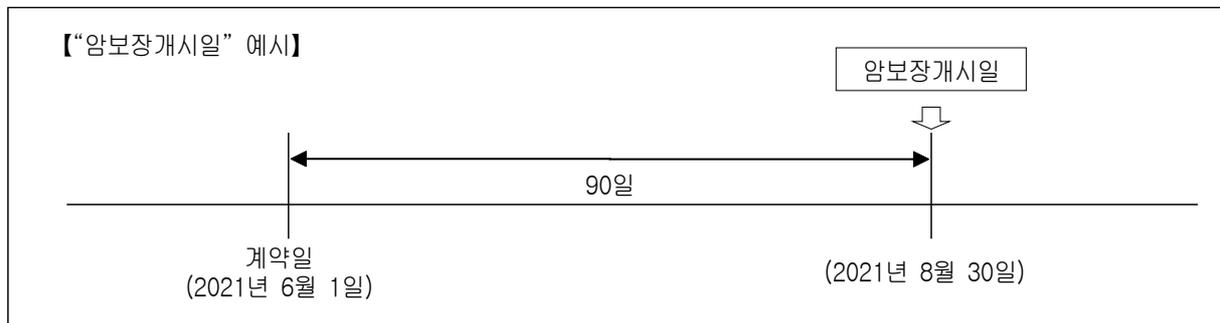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유사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5.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특별약관**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특정소액암”,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 및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릅니다.

대상 질병	분류 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또한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①	▲ 기저막(basement membrane)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②
점막하층(submucosa)		

( [ ]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①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②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⑥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⑦ 제6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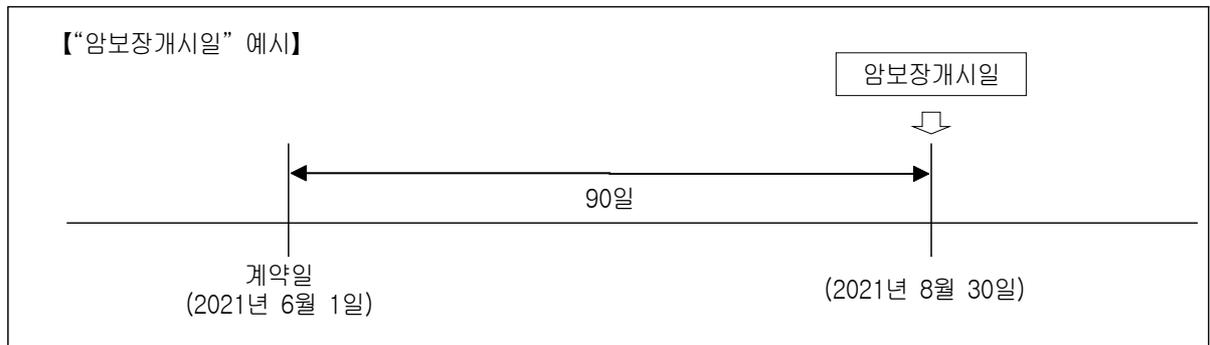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암진단비 (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6. 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진단확정시
유사암진단비	보험가입금액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사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7.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갑상선암(초기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에 해당할 것
  2. 병리학적으로 암 종양의 크기가 최대 2.0cm이하로서 갑상선 내부에 한정될 것
  3. 림프절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갑상선암일 것

- ③ 이 특별에서 “갑상선암(초기제외)”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에서 제2항에서 정한 “초기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갑상선암(초기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진단확정시
갑상선암(초기제외) 진단비	보험가입금액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초기제외)”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갑상선암(초기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갑상선암(초기제외)”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8.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 등의 질병”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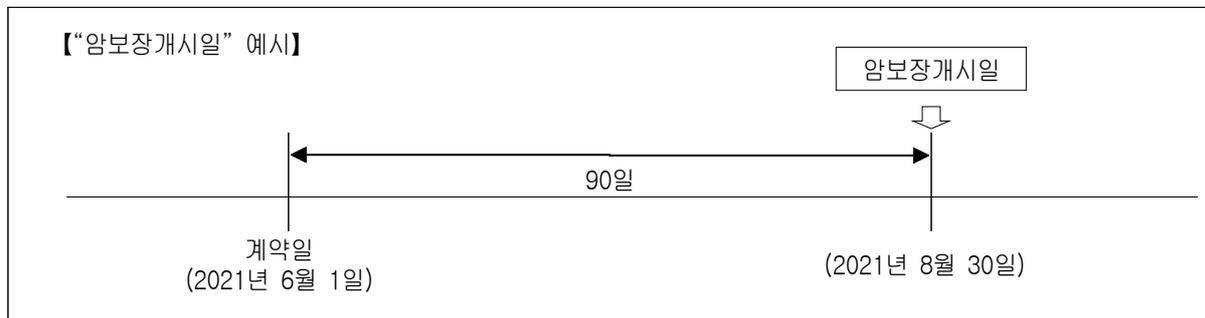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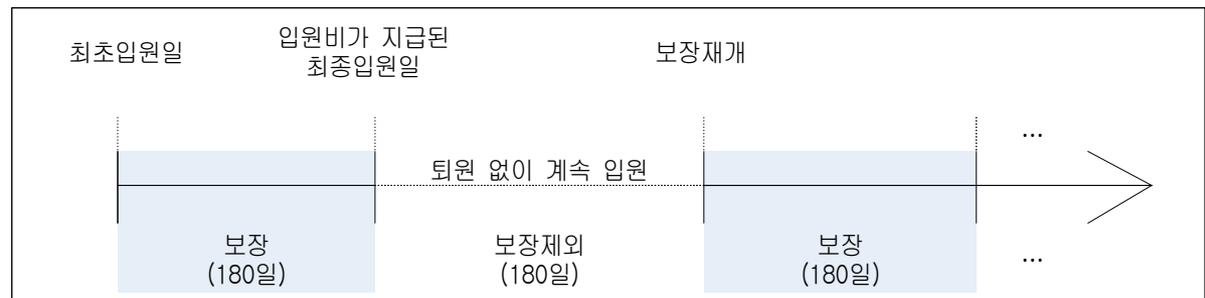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원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입원시
“암”으로 입원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으로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 등의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제3항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암 등의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80일을 한도로 입원비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입원비를 지급하며 입원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제8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9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9.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 등의 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 (기타관계법규)참조)에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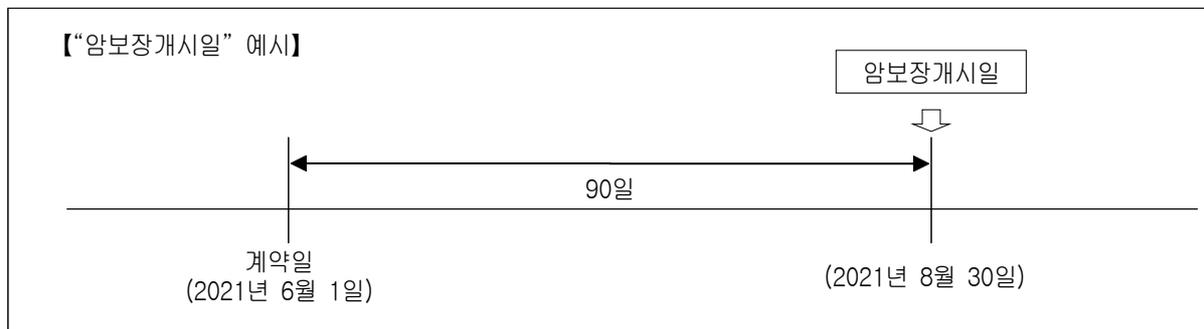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요양병원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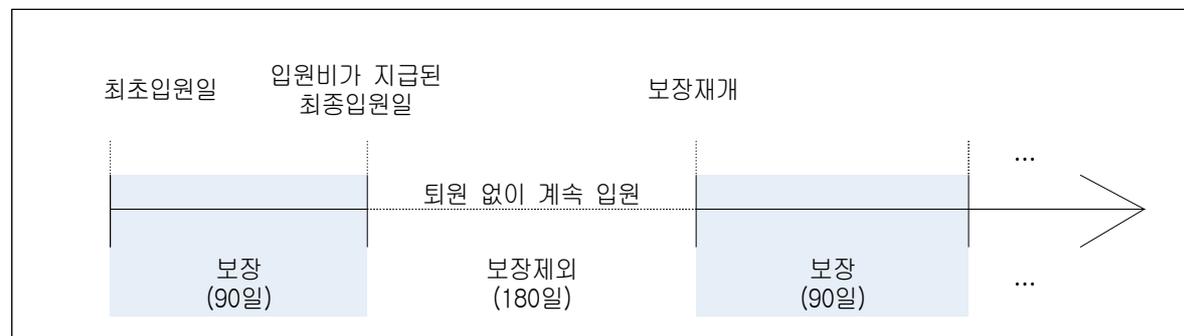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원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입원시
“암”으로 입원시	없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 등의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입원비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⑥ 제3항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암 등의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90일을 한도로 입원비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입원비를 지급하며 입원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제7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8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 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50. 암수술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의

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8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8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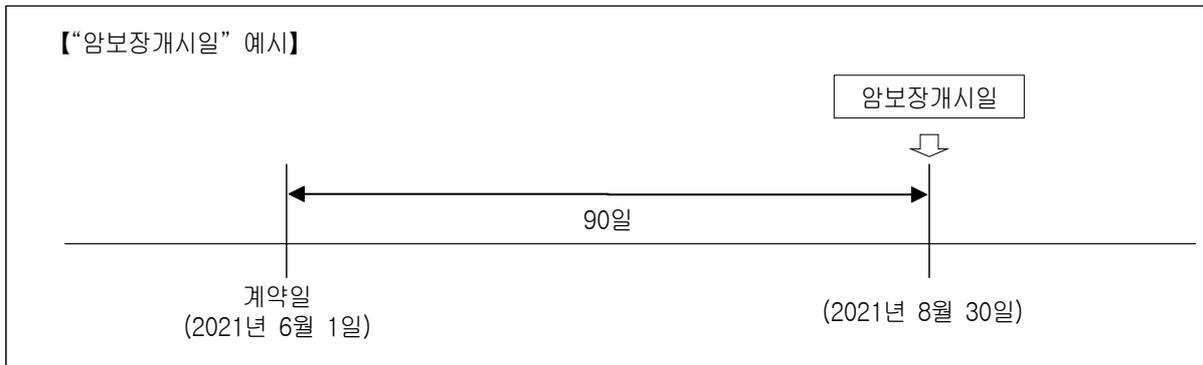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비(유사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암수술비(유사암제외)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③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 암수술비(유사암제외)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5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1. 유사암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8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8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유사암수술비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 유사암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암수술비(유사암제외, 1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8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8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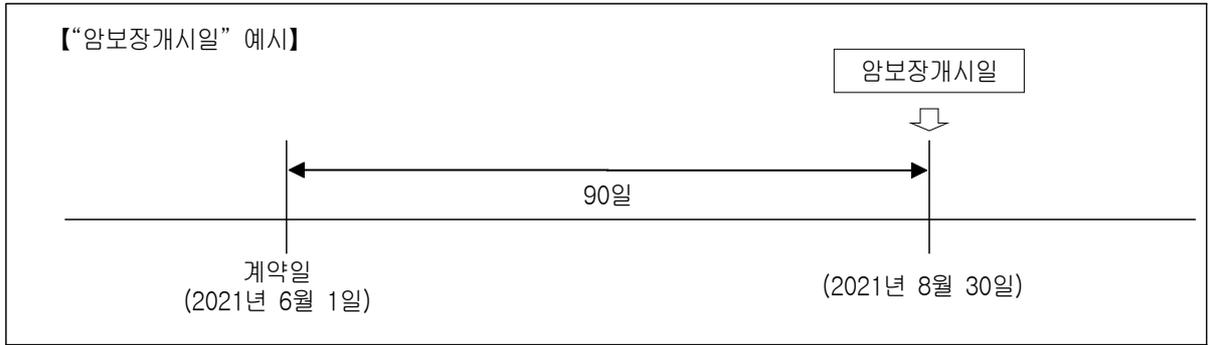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암수술비(유사암제외, 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암수술비 (유사암제외, 1회한)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③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5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수술비(유사암제외, 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3.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3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3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별표50】(3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3대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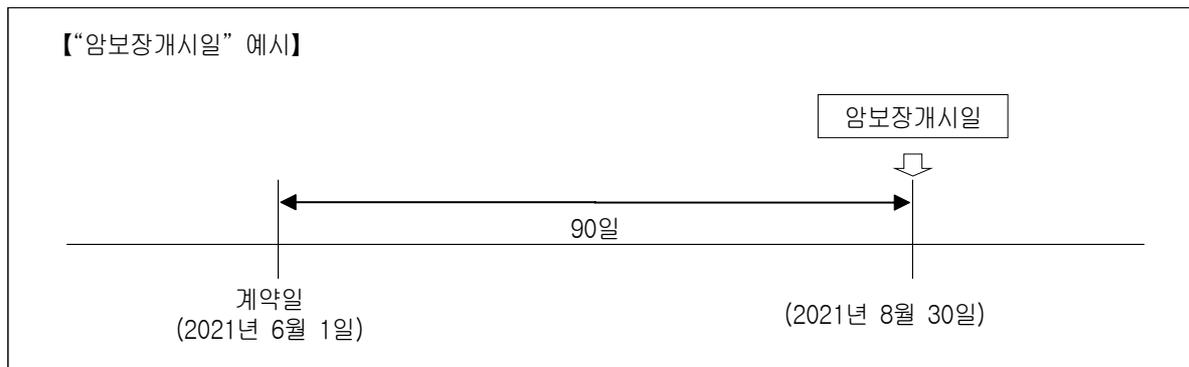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90일 초과 1년 미만 진단확정시	1년 이상 진단확정시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3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3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3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3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3대고액치료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4. 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별표52】(특정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1.식도의 악성신생물(암), 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3.담낭의 악성신생물(암), 4.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5.체장의 악성신생물(암), 6.기관의 악성신생물(암), 7.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8.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9.수막의 악성신생물(암), 10.뇌의 악성신생물(암), 11.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12.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13.만성 골수증식질환, 14.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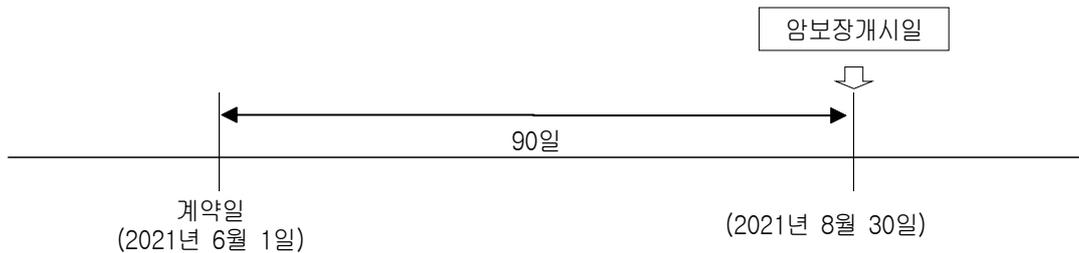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이후에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특정암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이후에 “특정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특정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5. 여성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여성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별표51】(여성특정암 분류표)에서 정한 1.유방의 악성신생물(암), 2.외음의 악성신생물(암), 3.질의 악성신생물(암), 4.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5.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6.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암), 7.난소의 악성신생물(암), 8.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태반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여성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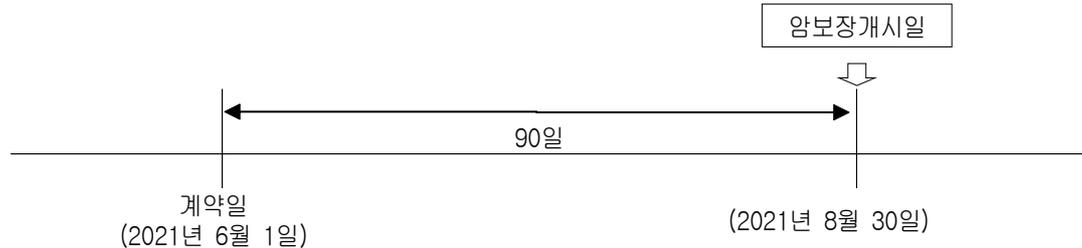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여성특정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여성특정암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여성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여성특정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여성특정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여성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여성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여성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여성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여성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여성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여성특정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여성특정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6. 항암방사선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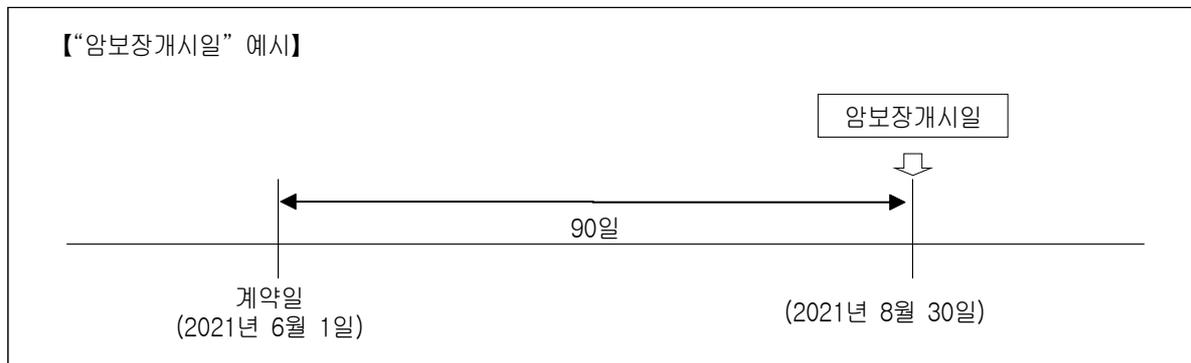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항암방사선치료비 또는 갑상선암항암방사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5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7. 항암약물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대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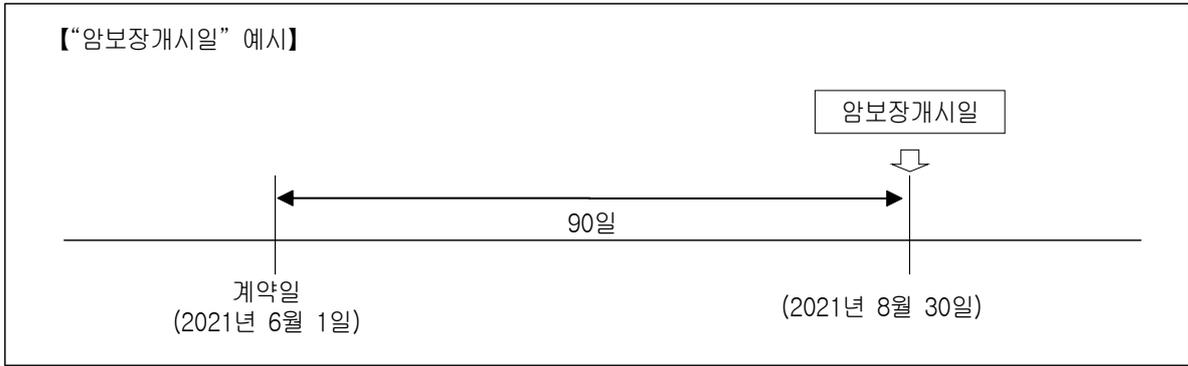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항암 약물 치료비	암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항암약물치료비 또는 갑상선암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제5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8.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뇌졸중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뇌졸중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9. 뇌졸중수술비 II 특별약관**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지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뇌졸중수술비II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졸중수술비 II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졸중수술비II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뇌졸중수술비II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61.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II 특별약관

####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p><b>【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외 충격파 쇄석술</li> <li>-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li> <li>-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li> <li>-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li> <li>-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li> <li>-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li> <li>-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li> </ul> <p>※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p>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II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II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II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II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2.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별표5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출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뇌출혈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뇌출혈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63.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64. 뇌혈관질환수술비 II 특별약관

###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직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查)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수술비 II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혈관질환수술비 II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수술비 II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뇌혈관질환수술비 II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65.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6.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II 특별약관**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수술시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67.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특정류마티스관절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이라 함은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행성 골관절염 등의 골관절염은 제외합니다.
  1.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이라 함은 【별표59】(특정류마티스관절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항류마티스약제(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 DMARDs)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하며, 항류마티스약제(DMARDs)로 치료 받았거나 치료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아세틸살리실산 제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제외합니다. 다만, 임상학적으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위해 항류마티스약제(DMARDs)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 또는 ‘나’에 해당됨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가. 부작용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항류마티스약제(DMARDs)로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
    - 나. 항류마티스약제(DMARDs)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대체 치료방법의 등장으로 인하여 항류마티스약제(DMARDs)로 치료받지 않는 경우
- ② 제1항의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확정은 해당 분야(류마티스내과 등)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특정류마티스관절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특정류마티스관절염”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특정류마티스관절염”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8.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갱신형)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치료비 II (갱신형)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7대특정암)
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 II)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 II 제외)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7대특정암”이라 함은 **【별표146】** (7대특정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이라 함은 **【별표140】**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2항의 “기타피부암”, 제3항의 “갑상선암”, 제4항의 “7대특정암” 및 제5항의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를 제외한 **【별표147】**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⑦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제외)”,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예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9년 8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60】**(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확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 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7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II	7대특정암	-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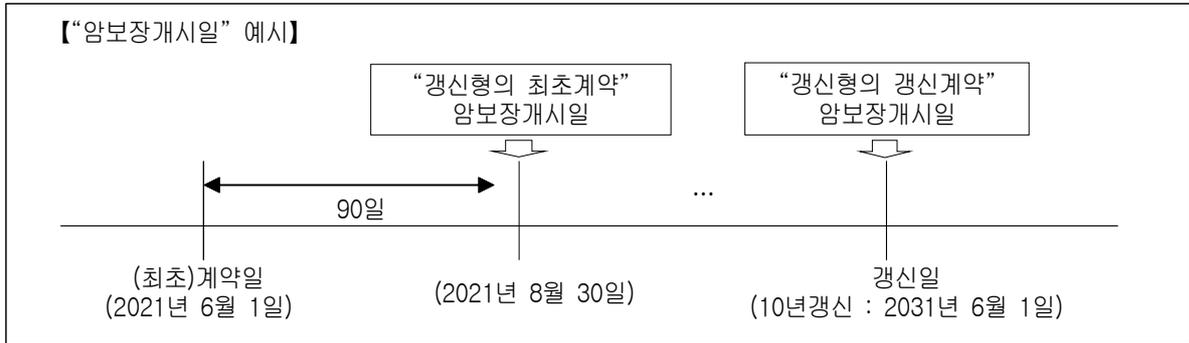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II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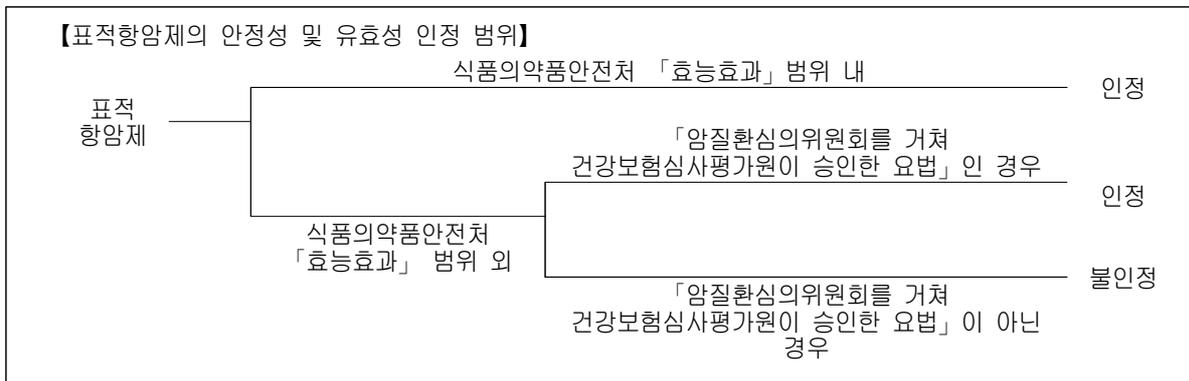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II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제외)	-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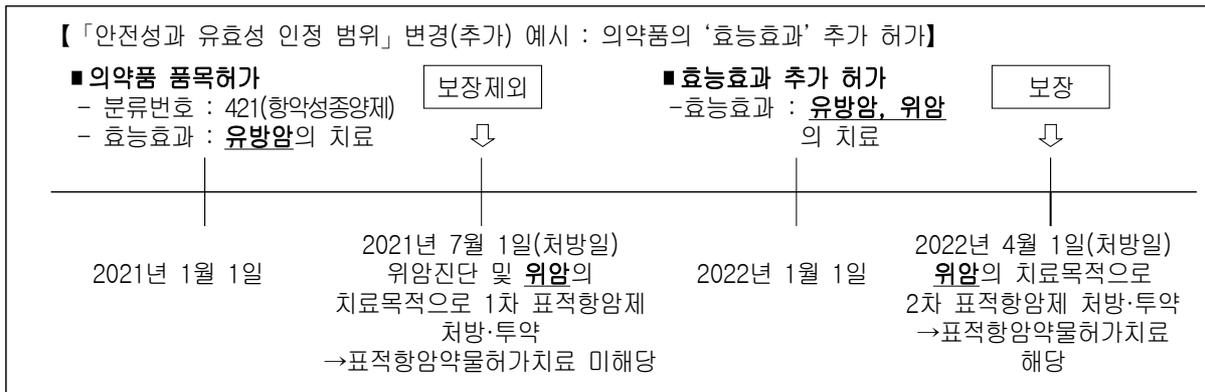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제10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인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8조(특약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제외)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각각 1회씩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 10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 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9.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별약관은 다음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 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癩)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9년 8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60】**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확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 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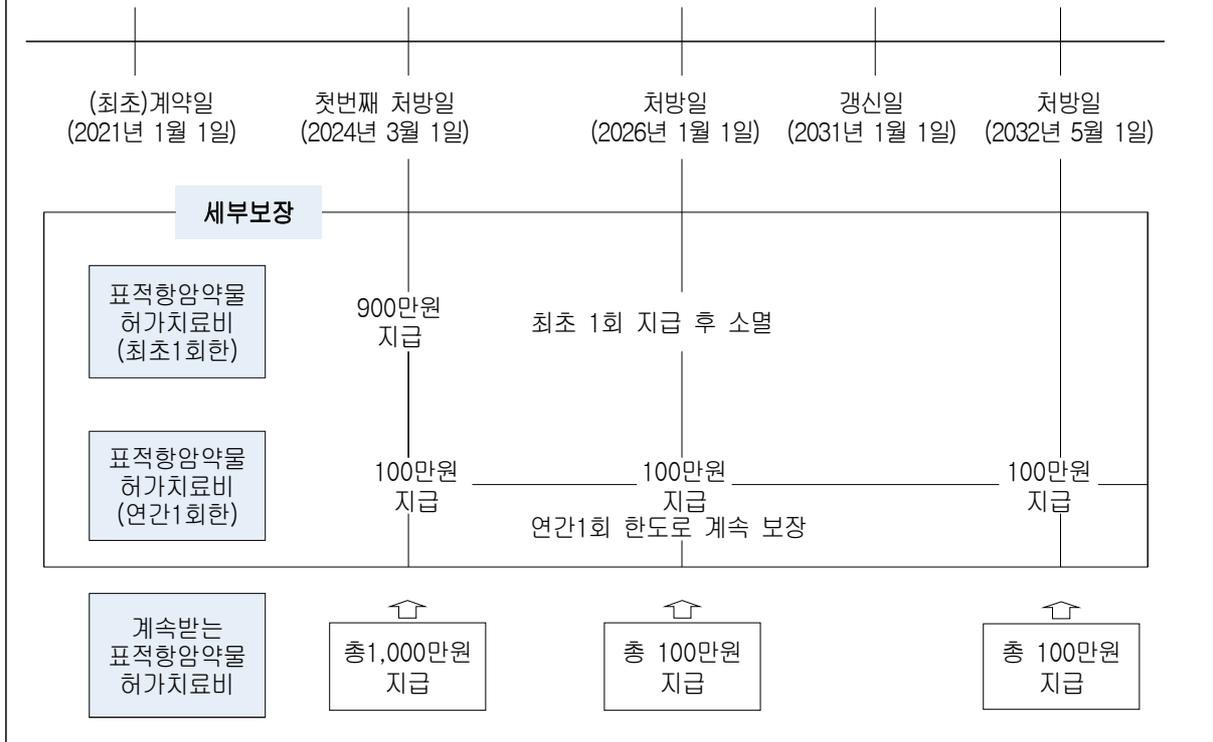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비 (최초 1회한)	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5%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5%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비 (연간 1회한)	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5%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5%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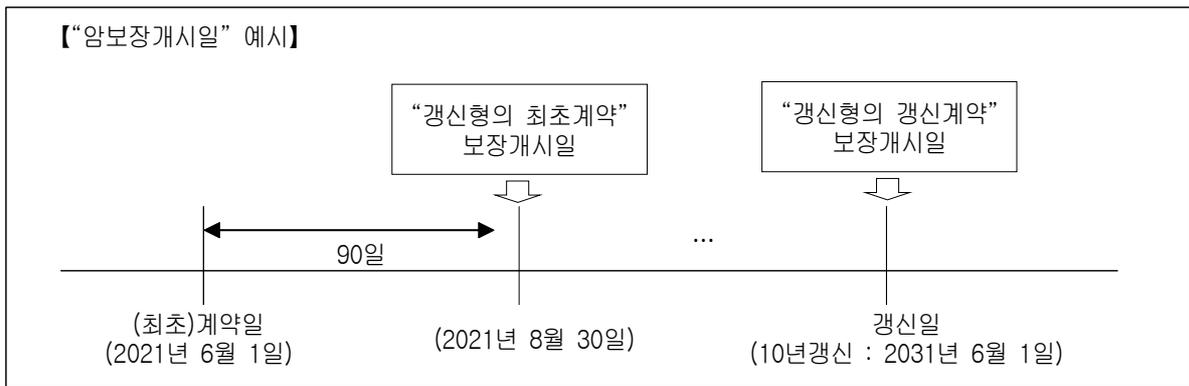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보장 예시】**  
 :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최초1회한) 900만원,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연간1회한) 100만원 가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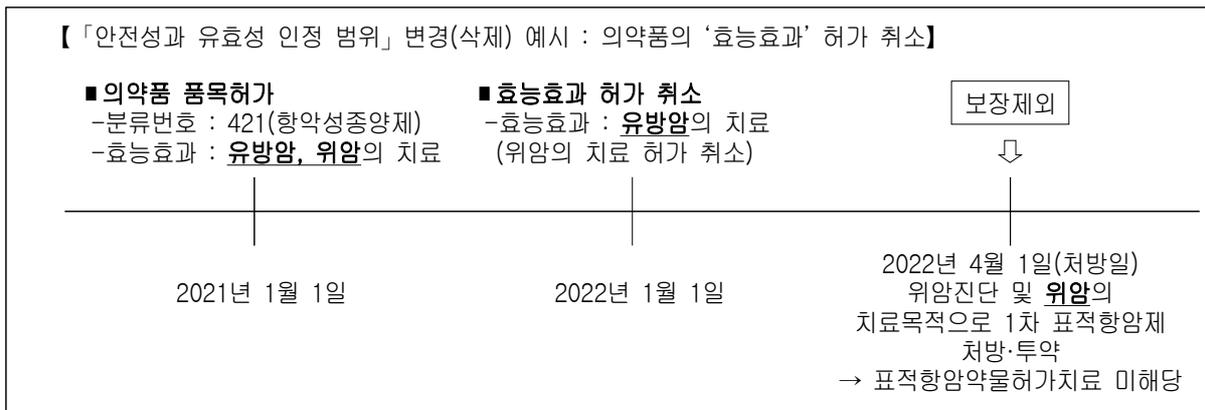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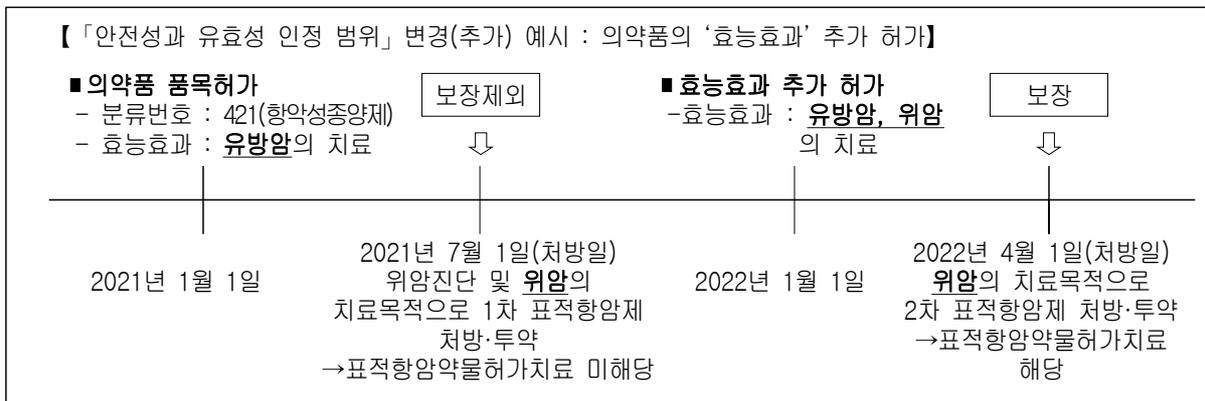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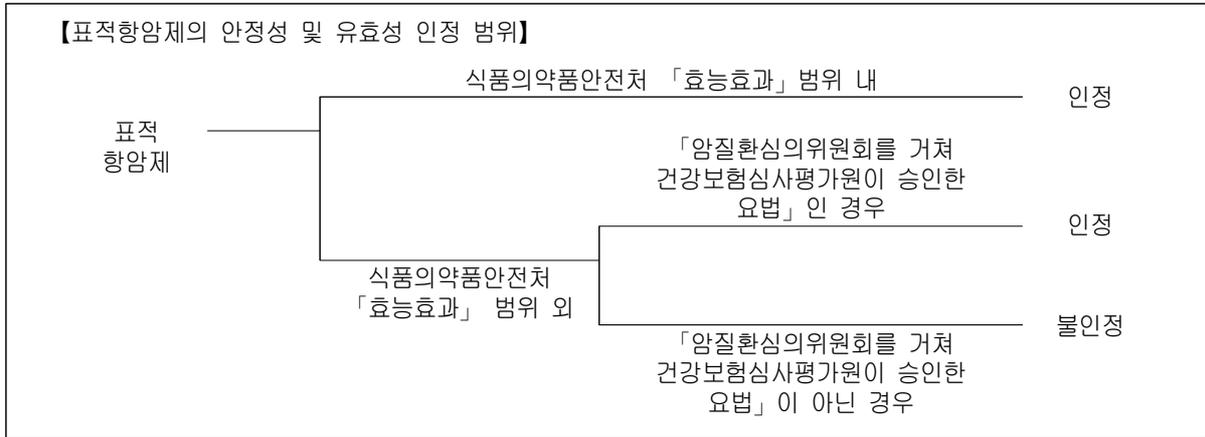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감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제10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향상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 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8조(특약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환) 세부보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 10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 또는 세부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 또는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 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70. 계속받는암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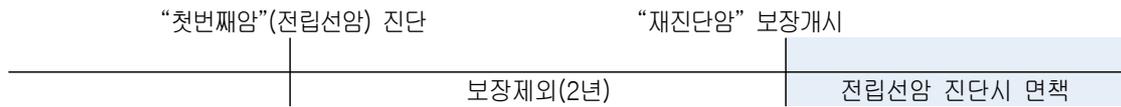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 “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다음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암”, “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에서 제외되는 악성신생물】

“암” 및 “첫번째암”에서 제외되는 악성신생물(암)	“재진단암”에서 제외되는 악성신생물(암)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 ② 이 특약에서 “재진단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 ③ 제2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라 함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을 말합니다.
- ④ 제2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 ⑤ 제2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 ⑥ 제2항에서 “잔여암”이란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번째암”이 “전립선암”(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인 경우,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의 보장은 개시하되, “전립선암”에 대한 계속받는암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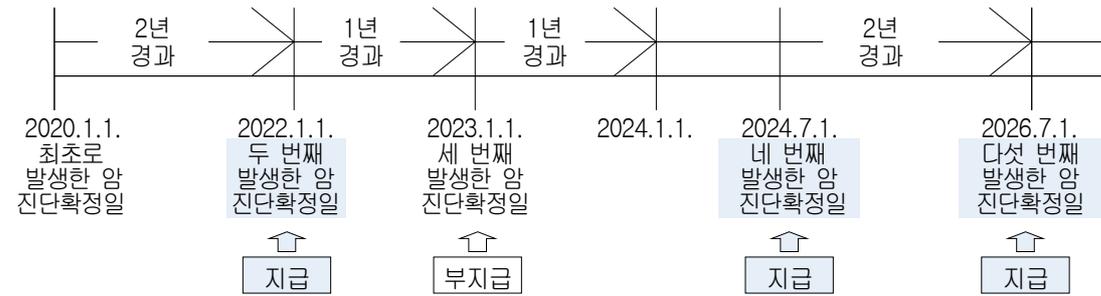
#### 【“첫번째암”이 “전립선암”인 경우 보장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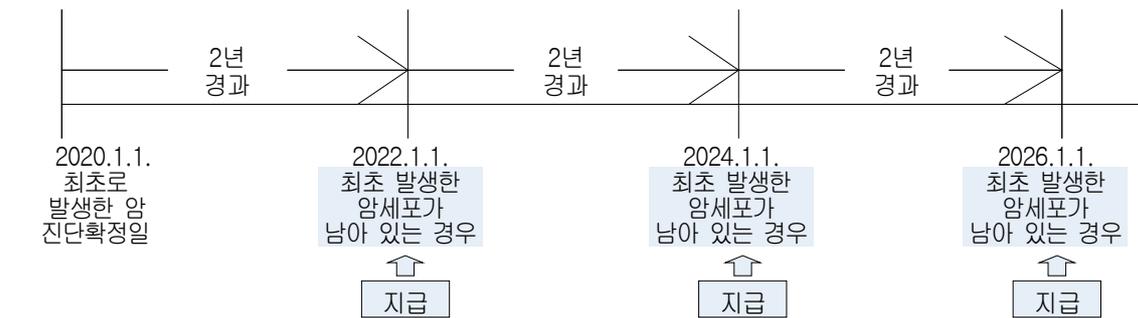
- ⑧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⑩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⑪ 제10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는 제외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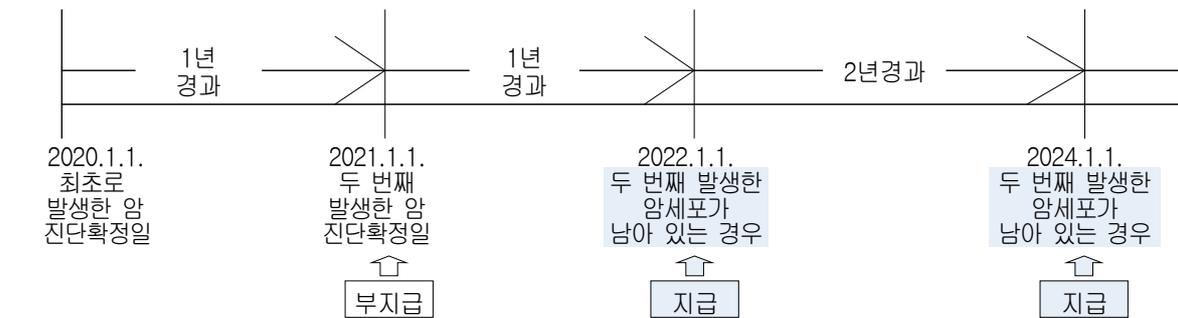
**【예시1 :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제2항 제1호 ~ 제3호의 예시)**



**【예시2 : 잔여암】 (제2항 제4호의 예시)**



**【예시3 : 잔여암】 (제2항 제4호의 예시)**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

-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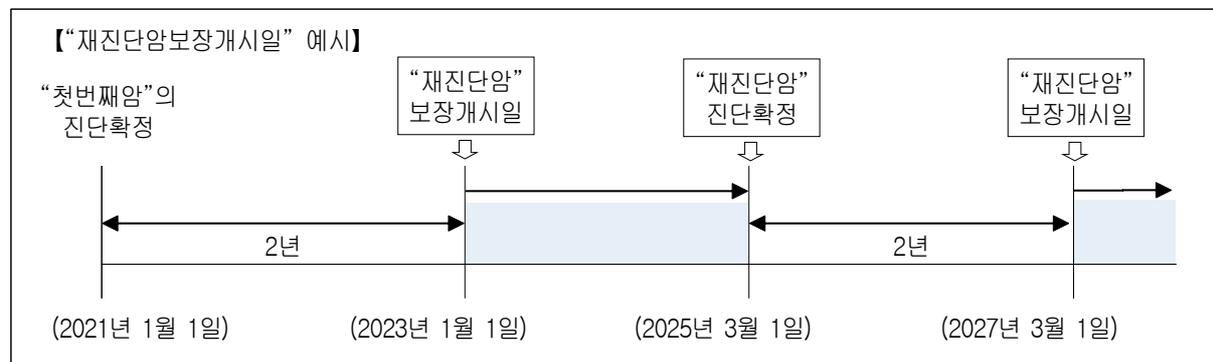
- ⑤ 제4항 제8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8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암노바, 헬릭소, 쉐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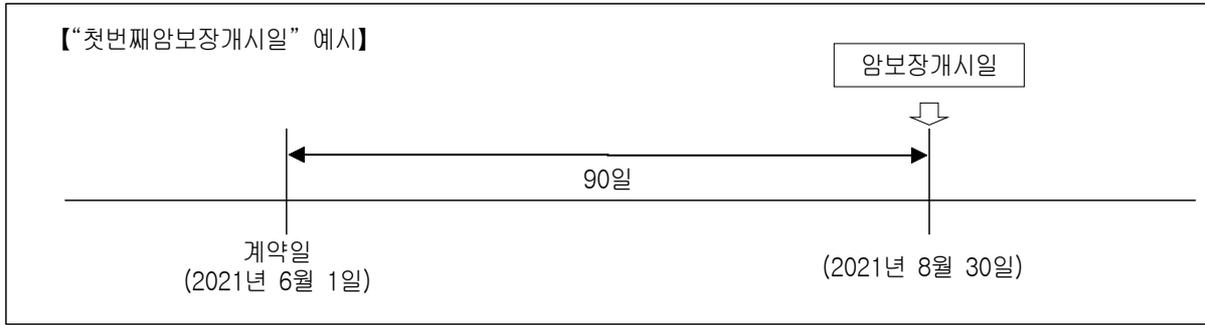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계속받는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이하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첫번째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재진단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계속받는 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제1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첫번째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첫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 2.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계속받는암진단비가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속받는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 1. 이 특약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을 다시 적용합니다.
  - 2. 이 특약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1.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특별약관**

**제1조(“첫번째유사암” 및 “재진단유사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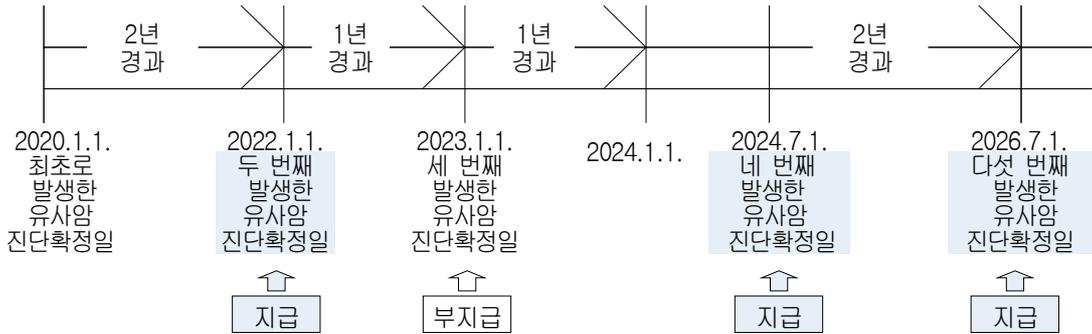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유사암”, “첫번째유사암” 및 “재진단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재진단유사암”은 다음 각 호의 “유사암”을 말합니다.
  - 1. 새로운 원발암
  - 2. 전이암
  - 3. 재발암
  - 4. 잔여암
- ⑥ 제5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라 함은 원발부위에 발생한 “유사암”으로 “첫번째유사암” 또는 “재진단유사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유사암”을 말합니다.
- ⑦ 제5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유사암”을 말합니다.
- ⑧ 제5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유사암” 또는 “재진단유사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유사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유사암”을 말합니다.
- ⑨ 제5항에서 “잔여암”이란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⑩ “첫번째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와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⑪ 제10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⑫ “재진단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와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⑬ 제1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

적 암치료)는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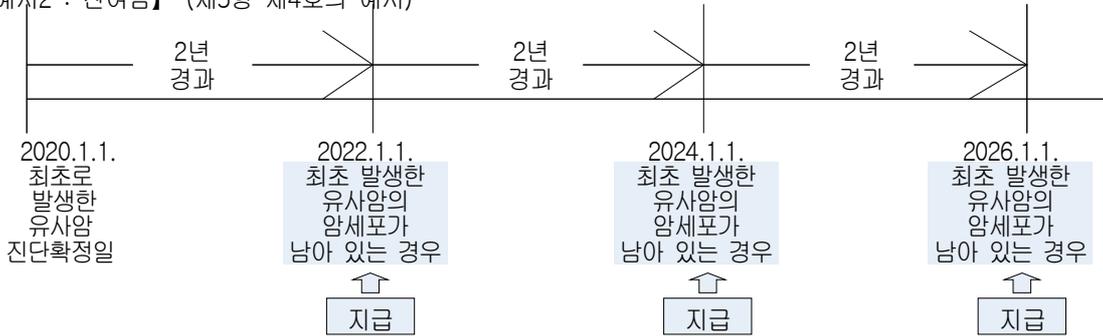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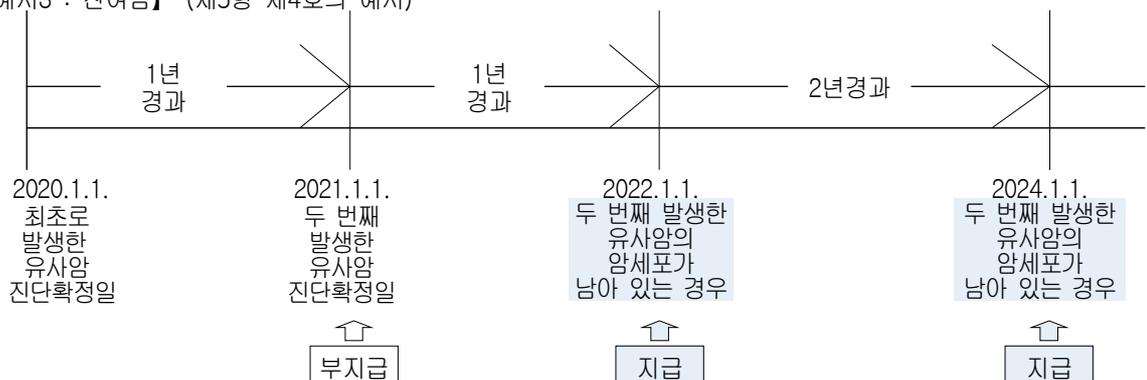
**【예시1 :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제5항 제1호 ~ 제3호의 예시)**



**【예시2 : 잔여암】 (제5항 제4호의 예시)**



**【예시3 : 잔여암】 (제5항 제4호의 예시)**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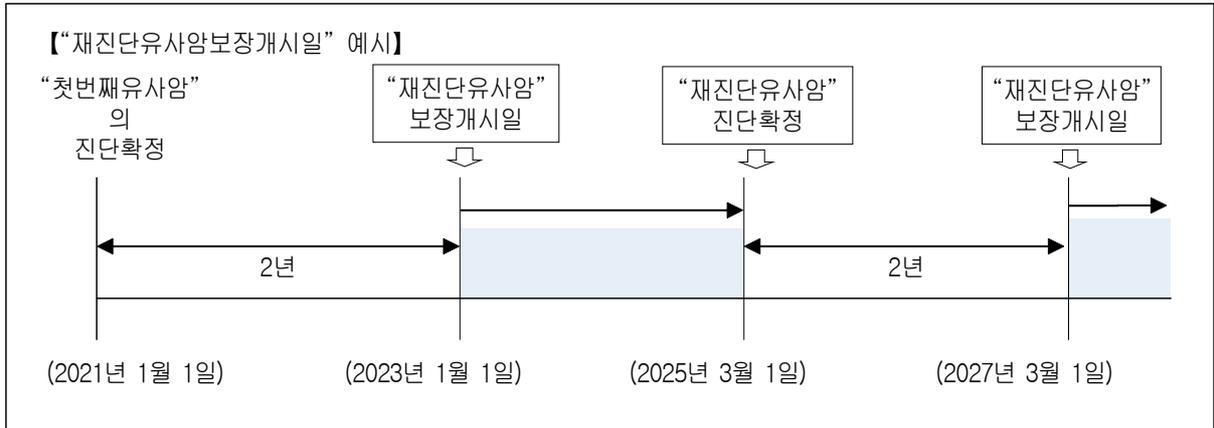
- ⑤ 제4항 제8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8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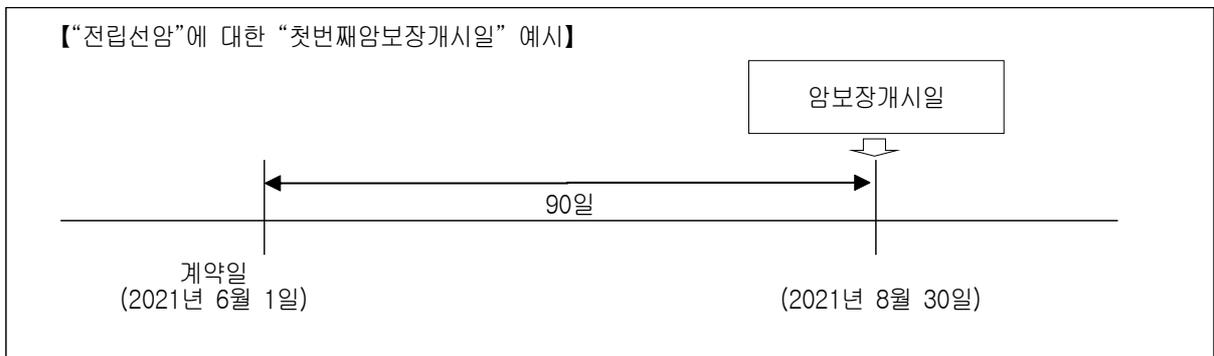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감상선암,전립선암)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첫번째유사암” 및 “재진단유사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유사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이하 “재진단유사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1. 첫 번째 “재진단유사암” : “첫번째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첫번째유사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유사암” : 직전 “재진단유사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첫번째유사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첫번째유사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재진단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재진단유사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재진단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제1조(“첫번째유사암” 및 “재진단유사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6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첫번째유사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첫번째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첫번째유사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2. “재진단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가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첫번째유사암” 및 “재진단유사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 1. 이 특약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을 다시 적용합니다.
  - 2. 이 특약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유사암” 또는 “재진단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2.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급여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별표62】(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별표62】(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에서 정한 의료행위 외에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제1항의 항암방사선치료가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급여 항암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⑥ 제5항의 “급여 항암약물”이라 함은 【별표63】(급여 항암약물 분류표)에서 해당하는 약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항암약물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항암약물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급여 항암약물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별표63】(급여 항암약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약제 외에 “급여 항암약물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 ⑨ 제5항의 항암약물치료가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니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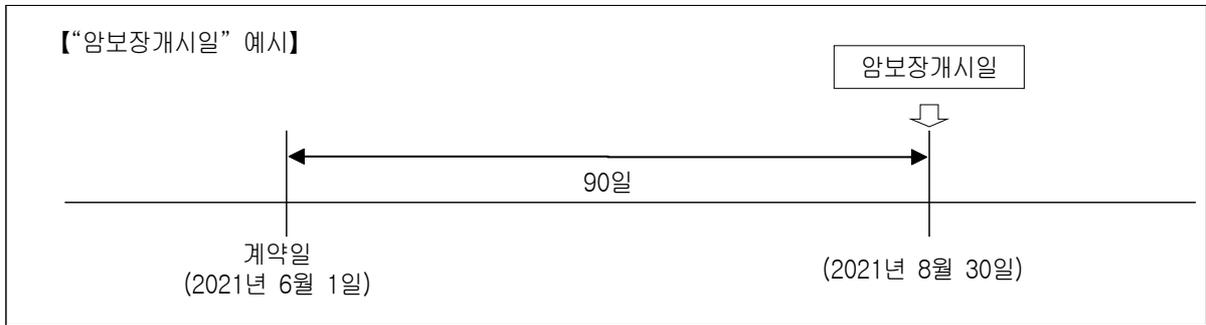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연간1회한)로 보형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받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연간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제5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3.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원비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 등의 질병”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5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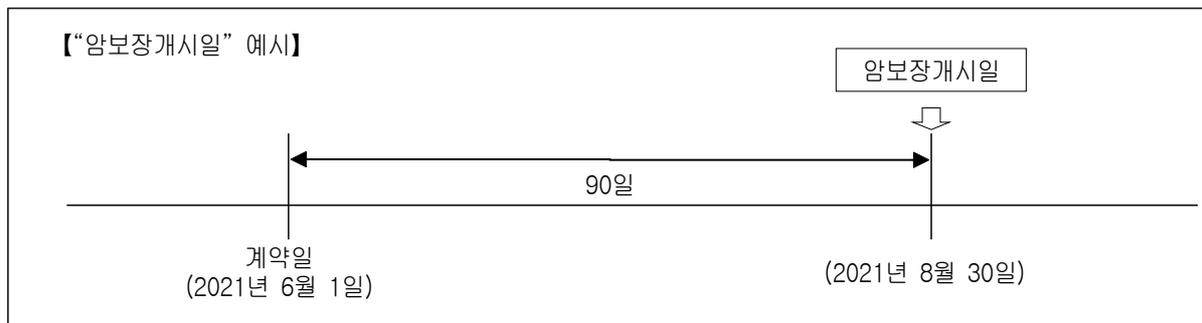
###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통원1회당 아래의 금액을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원비(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암”으로 통원시 (통원 1회당)	-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통원시 (통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제8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9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

약한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74. 계속받는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재진단뇌출혈”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별표5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재진단뇌출혈”이라 함은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뇌출혈”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다시 진단확정된 “뇌출혈”을 말합니다.
- ③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④ “재진단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재진단뇌출혈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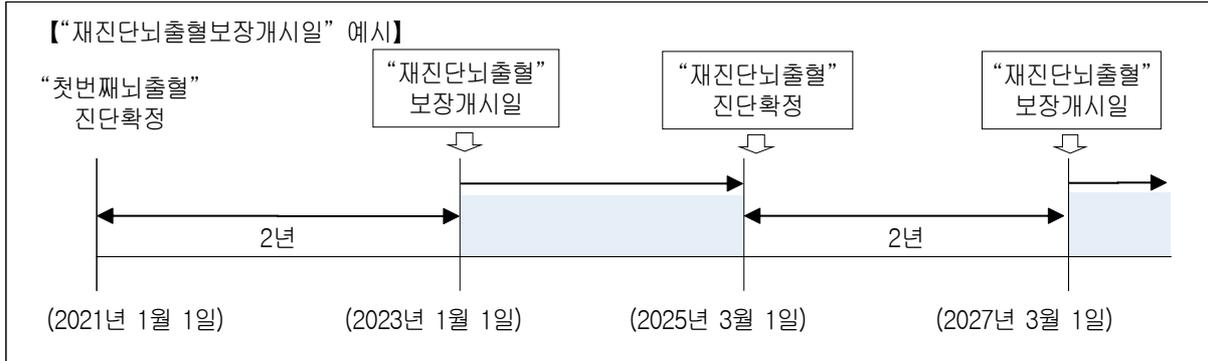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뇌출혈보장개시일” 이후에 제1조(“재진단뇌출혈”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계속받는뇌출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진단뇌출혈”의 보장개시

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이하 “재진단뇌출혈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 : 최초로 발생한 “뇌출혈”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 : 직전 “재진단뇌출혈”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이 특약에서 “첫번째뇌출혈”이라 함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1조(“재진단뇌출혈”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재진단뇌출혈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재진단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계속받는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재진단뇌출혈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재진단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첫번째뇌출혈”에 기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
  2.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계속받는뇌출혈진단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재진단뇌출혈에 기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
-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조(“재진단 뇌출혈”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첫번째뇌출혈”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2. “재진단뇌출혈”로 진단확정되어 계속받는뇌출혈진단비가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재진단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속받는뇌출혈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 1. 이 특약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2. 이 특약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뇌출혈” 또는 “재진단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계속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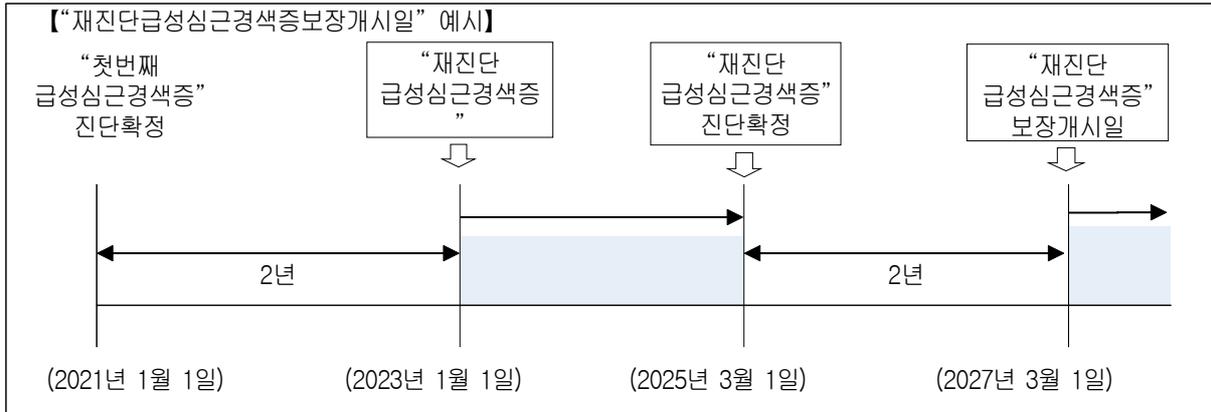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다시 진단확정된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123(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은 제외합니다.
- ③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④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보장개시일” 이후에 제1조(“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계속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이하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최초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이 특약에서 “첫번째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1조(“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계속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첫번째급성심근경색증”에 기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
  2.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계속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에 기인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
-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제1조(“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첫번째급성심근경색증”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2.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어 계속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가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속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 1. 이 특약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2. 이 특약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대상포진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대상포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대상포진”이라 함은 【별표64】(대상포진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대상포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대상포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대상포진”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대상포진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대상포진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대상포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상포진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대상포진”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상포진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대상포진”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상포진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77. 대상포진눈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대상포진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대상포진눈병”이라 함은 【별표65】(대상포진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대상포진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대상포진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대상포진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대상포진눈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대상포진눈병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대상포진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상포진눈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대상포진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

- 사유)에서 정한 대상포진노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대상포진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상포진노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상포진노병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78. 통풍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통풍”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통풍”이라 함은 【별표66】(통풍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통풍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임상학적 기준을 근거로 혈청 요산 검사, 관절액 채취 및 편광현미경 검사, 기타 혈액 검사 등의 검사 소견 및 초음파, 이중에너지 컴퓨터 단층촬영, 방사선 검사 등의 영상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통풍”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통풍”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통풍”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통풍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통풍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통풍”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풍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통풍”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통풍”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풍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 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통풍”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통풍”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풍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79. 요로결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요로결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요로결석”이라 함은 【별표67】(요로결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요로결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요로결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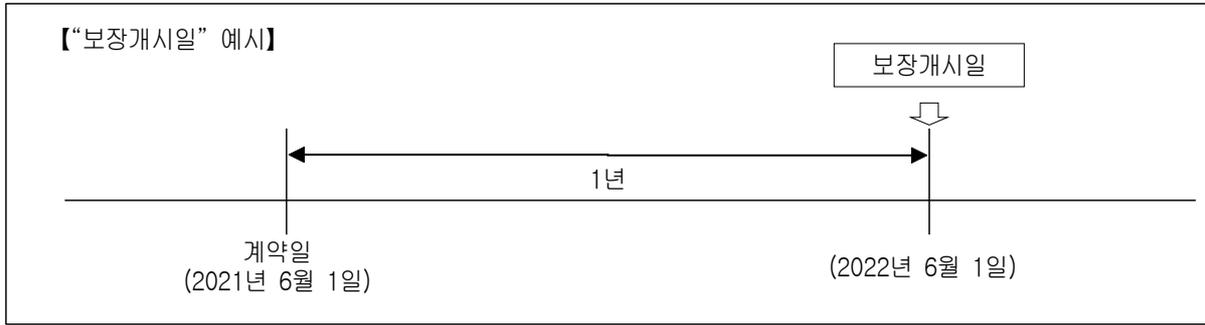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요로결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요로결석”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요로결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요로결석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요로결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요로결석”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요로결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요로결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요로결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요로결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요로결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요로결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요로결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요로결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0. MRI 검사지원비(3대질병, 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3대질병”이라 함은 【별표68】(3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3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급여촬영”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급여촬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급여촬영”은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3대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제2조(“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급여촬영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MRI검사지원비(3대질병, 급여, 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MRI검사지원비 (3대질병, 급여, 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MRI검사지원비(3대질병, 급여, 연간1회한)는 “3대질병”의 직접적인 원인, 종류 및 부위와 상관없이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촬영”을 받은 날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1.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등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자 치료】**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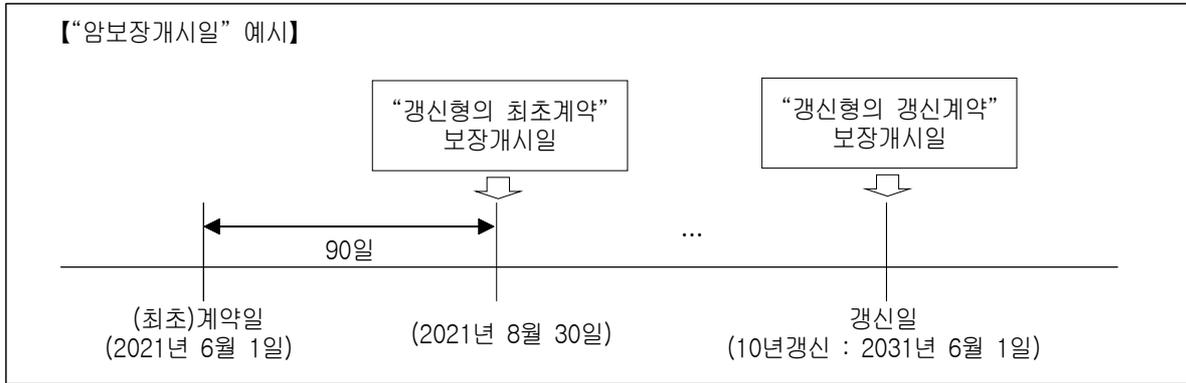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항암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최초1회한)	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제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특약이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제5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8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2.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이라 함은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 중 아래의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적출술(Radical Cystectomy)
  2. 신부분절제술 및 적출술(Partial Nephrectomy)
  3.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및 적출술(Radical Prostatectomy)
- ② 제1항의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sup>®</sup>	QZ961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이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과정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다빈치로봇이 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로봇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③ 제2항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로봇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조(“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세부수술별(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적출술, 신부전절제술 및 적출술,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및 적출술)로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 (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을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포함), 수술확인서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3. 결핵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결핵”이라 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제2급감염병) 가목’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병원체보유자(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결핵이 제외되는 경우에도 보장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며, 신고여부와 상관 없이 의사의 진단에 따릅니다.
- ④ 제1항의 “결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결핵”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결핵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결핵”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결핵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결핵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결핵”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핵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4.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이라 함은 【별표69】(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약제감수성검사(신속 내성 검사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에 내성이 있는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균이 발견된 경우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항의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 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균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5.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85-1. 혈전용해치료비(뇌경색증(I63))(최초1회한) 보장

### 제1조(“뇌경색증(163)”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뇌경색증(163)”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163(뇌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경색증(163)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163)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경색증(163)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경색증(163)’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경색증(163)”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경색증(163)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경색증(163)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2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경색증(163)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경색증(163) 혈전용해치료비 (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100%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경색증(163) 혈전용해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보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5-2. 혈전용해치료비(급성심근경색증(I21))(최초1회한) 보장

### 제1조(“급성심근경색증(I21)”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I21)”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21(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진단확정은 의로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급성심근경색증(I21)”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2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100%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로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보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6.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86-1. 혈전용해치료비(뇌경색증(163))(연간1회한) 보장

#### 제1조(“뇌경색증(163)”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뇌경색증(163)”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163(뇌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경색증(163)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163)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경색증(163)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경색증(163)’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경색증(163)”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경색증(163)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경색증(163)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2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경색증(163)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경색증(163) 혈전용해치료비 (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장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6-2. 혈전용해치료비(급성심근경색증(I21))(연간1회한) 보장**

**제1조(“급성심근경색증(I21)”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I21)”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21(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정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급성심근경색증(I21)”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2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 (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

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7.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말기암환자”,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암환자”라 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가목(【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호스피스전문기관”이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라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써,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에 따라 해당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가정형 호스피스 또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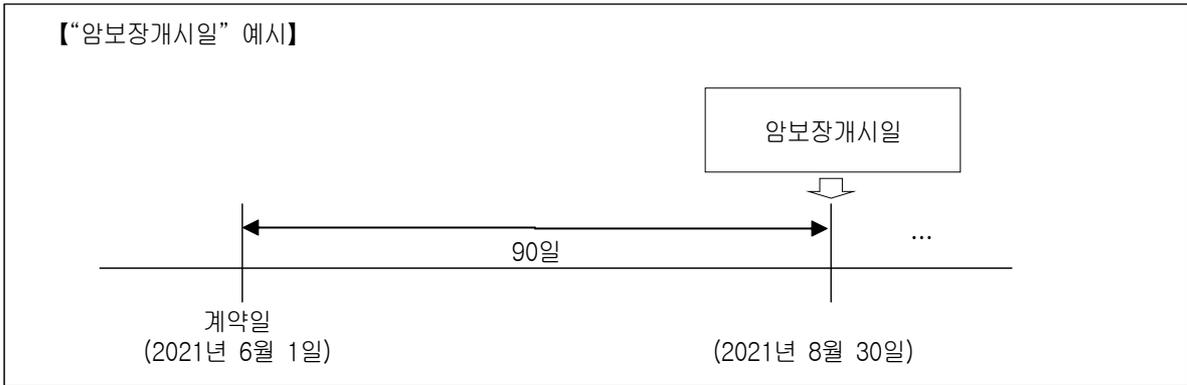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치료를 목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부터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 치료비	-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제5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8. 암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와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와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별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참조)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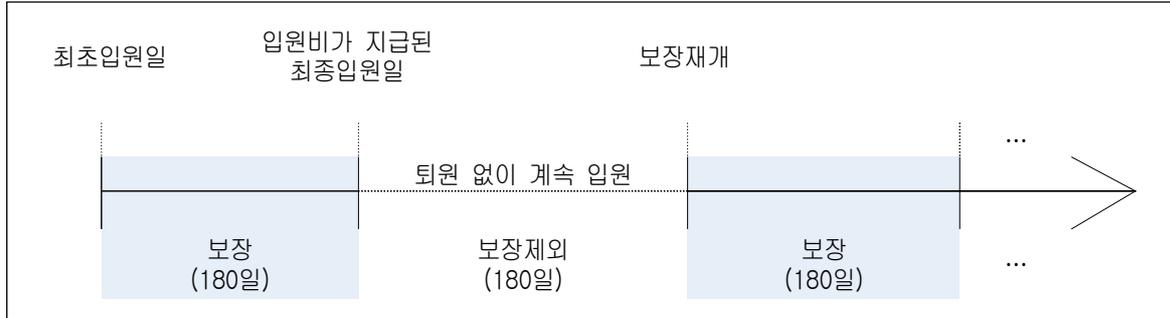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암 등의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횟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 등의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8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9.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별표93】(의료기관의 시설규격)참조)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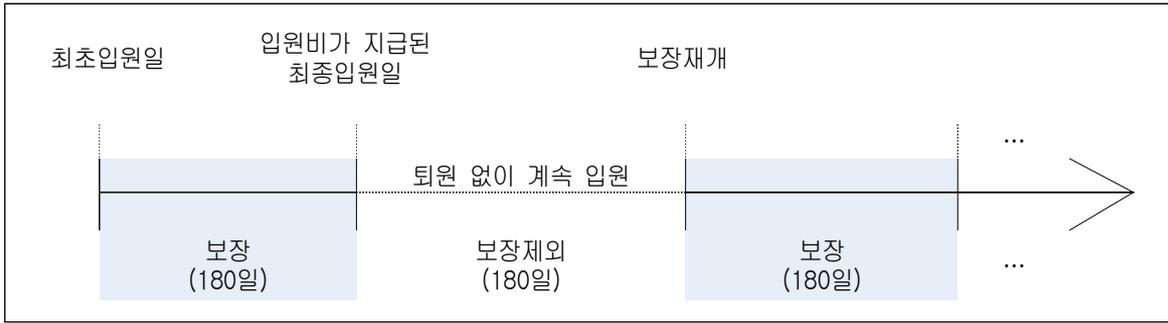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암 등의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횟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충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0. 상급종합병원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치료통원비 특별약관**

**제1조(“뇌졸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통원1회당 아래의 금액을 상급종합병원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치료통원비(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상급종합병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치료통원비 (통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91. 간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간질환”이라 함은 【별표70】(간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간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간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

- 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92.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특별약관

### 제1조(“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E05(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경우
    - :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절제술”이라 함은 갑상선엽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하는 “갑상선엽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및 “갑상선엽 아전절제술(Subtotal Thyroidectomy)”을 말합니다.
  2.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3. 항갑상선제를 60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 【방사선요오드 치료】

주성분이 요오드화 나트륨에 해당하는 치료

#### 【항갑상선제】

주성분이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carbimazole에 해당하는 약제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p><b>【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외 충격파 쇄석술</li> <li>-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li> <li>-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li> <li>-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li> <li>-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li> <li>-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li> <li>-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li> </ul> <p>※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p>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93. 질병수술비(백내장제외) 특별약관

###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콩다래끼,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단, 백내장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백내장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백내장”이란 【별표42-5】(백내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비(백내장제외)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백내장제외)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K62,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백내장 분류표(【별표42-5】(백내장 분류표))에서 정한 백내장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94. 질병수술비(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 특별약관

###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콩다래끼,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단, 백내장 및 대장용종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백내장”이란 【별표42-5】(백내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대장용종”이란 【별표133】(대장용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비(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백내장 분류표(【별표42-5】(백내장 분류표))에서 정한 백내장
  10.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별표133】(대장용종 분류표) 참조)의 내시경적 절제술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응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95. 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8대질병제외) 특별약관

###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콩다래끼,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查)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지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단, 특정다빈도8대질병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8대질병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다빈도8대질병”이란 【별표134】(특정다빈도8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백내장, 대장용종, 후각특정질환, 피부종양, 특정피부질환, 생식기질환, 하지정맥류 및 유방의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8대질병제외)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8대질병제외)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 5. 비만(E66)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9. 특정다빈도8대질병 분류표(【별표134】(특정다빈도8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백내장, 대장용종, 후각특정질환, 피부종양, 특정피부질환, 생식기질환, 하지정맥류 및 유방의장애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영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임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96. 심뇌혈관질환수술비 II 특별약관

### 제1조(“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심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및 【별표58】(심장관련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심장관련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심장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심장관련질병 중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查)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심뇌혈관질환수술비II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심뇌혈관질환수술비II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심뇌혈관질환수술비II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심뇌혈관질환수술비II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7.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

-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입자방사선치료】**  
 전자를 제외한 하전 입자를 가속하여 나타나는 브래그피크라는 물리적 특성을 암방사선치료에 활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양성자방사선 치료와 중입자방사선 치료(탄소선 혹은 헬륨) 등이 해당됩니다.

- ② 제1항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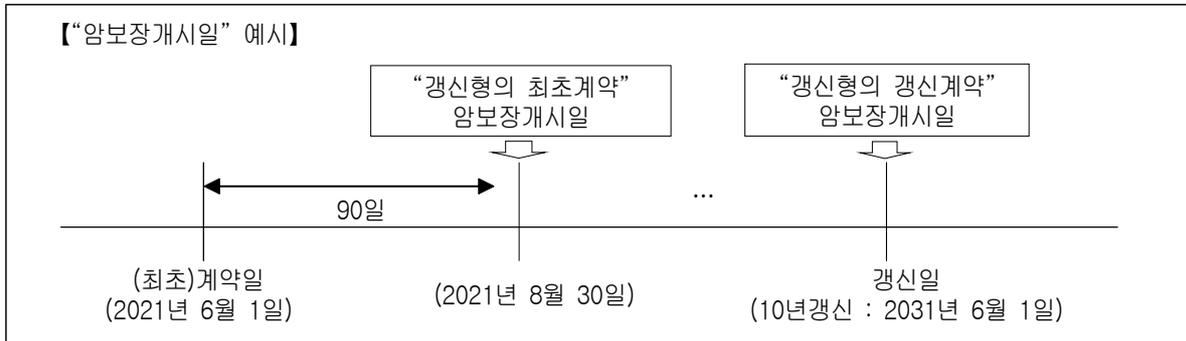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방사선치료(항암세기조절방사선)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최초1회한)	암	-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제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8. 심장질환(특정 I)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심장질환(특정 I)”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심장질환(특정 I)”이라 함은 【별표74】(심장질환(특정 I)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심장질환(특정 I)”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질환(특정 I)”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 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장질환(특정 I)”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심장질환(특정 I)”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 I)”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심장질환(특정 I)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심장질환(특정 I)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심장질환(특정 1)”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 1)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심장질환(특정 1)”)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 1)”)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 1)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심장질환(특정 1)”)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 1)”)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장질환(특정 1)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99. 심장질환(특정 II)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심장질환(특정 II)”)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심장질환(특정 II)”)이라 함은 【별표75】(심장질환(특정 II)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심장질환(특정 II)”)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질환(특정 II)”)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 I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장질환(특정 II)”)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심장질환(특정 II)”)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 II)”)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심장질환(특정 II)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심장질환(특정 II)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심장질환(특정 II)”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 II)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심장질환(특정 II)”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 II)”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 II)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심장질환(특정 II)”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 II)”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장질환(특정 II)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0. 심장질환(특정 III)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심장질환(특정 III)”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심장질환(특정 III)”이라 함은 【별표76】(심장질환(특정 III)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심장질환(특정 III)”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질환(특정 III)”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 II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장질환(특정 III)”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심장질환(특정Ⅲ)”)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Ⅲ)”)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심장질환(특정Ⅲ)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심장질환(특정Ⅲ)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심장질환(특정Ⅲ)”)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Ⅲ)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심장질환(특정Ⅲ)”)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Ⅲ)”)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Ⅲ)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심장질환(특정Ⅲ)”)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Ⅲ)”)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장질환(특정Ⅲ)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01. 심장질환(특정Ⅳ)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심장질환(특정Ⅳ)”)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심장질환(특정Ⅳ)”)이라 함은 【별표77】(심장질환(특정Ⅳ)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심장질환(특정Ⅳ)”)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질환(특정Ⅳ)”)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Ⅳ)”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장질환(특정Ⅳ)”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심장질환(특정Ⅳ)”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Ⅳ)”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심장질환(특정Ⅳ)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심장질환(특정Ⅳ)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심장질환(특정Ⅳ)”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Ⅳ)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심장질환(특정Ⅳ)”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Ⅳ)”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Ⅳ)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심장질환(특정Ⅳ)”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장질환(특정Ⅳ)”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장질환(특정Ⅳ)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02. 관상동맥성형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제1조(“관상동맥성형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관상동맥성형술”이라 함은 【별표78】(관상동맥성형술 분류표)에서 정한 관상동맥성형술 대상 “수카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관상동맥성형술”을 동반하지 않고 개흉술 및 개심술을 이용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및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관상동맥】**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나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관상동맥성형술보장(급여,연간1회한)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관상동맥성형술보장 (급여,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날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3. 뇌정위적방사선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뇌정위적방사선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정위적방사선술”이라 함은 【별표79】(뇌정위적방사선술 분류표)에서 정한 뇌정위적방사선술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뇌정위적방사선술”을 동반하지 않고 개두술을 이용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뇌정위적방사선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정위적방사선술보장(급여,연간1회한)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뇌정위적방사선술”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정위적방사선술보장 (급여,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뇌정위적방사선술”을 받은날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4.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특정뇌동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특정뇌동맥질환”이라 함은 【별표80】(특정뇌동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뇌동맥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뇌동맥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혈관색전술”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혈관색전술”이라 함은 【별표81】(혈관색전술 분류표)에서 정한 혈관색전술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서 정한 “특정뇌동맥질환” 이외의 척추혈관,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에 대해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및 “혈관색전술”을 동반하지 않고 개두술을 이용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급여,연간1회한)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혈관색전술”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 (급여,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혈관색전술”을 받은날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포함), 수술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5.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이라 함은 【별표82】(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 분류표)에서 정한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을 동반하지 않고 개흉술 및 개심술을 이용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보장(급여,연간1회한)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을 받은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보장 (급여,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을 받은날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06.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제3조(“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및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라 함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말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0년 9월 기준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83】(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확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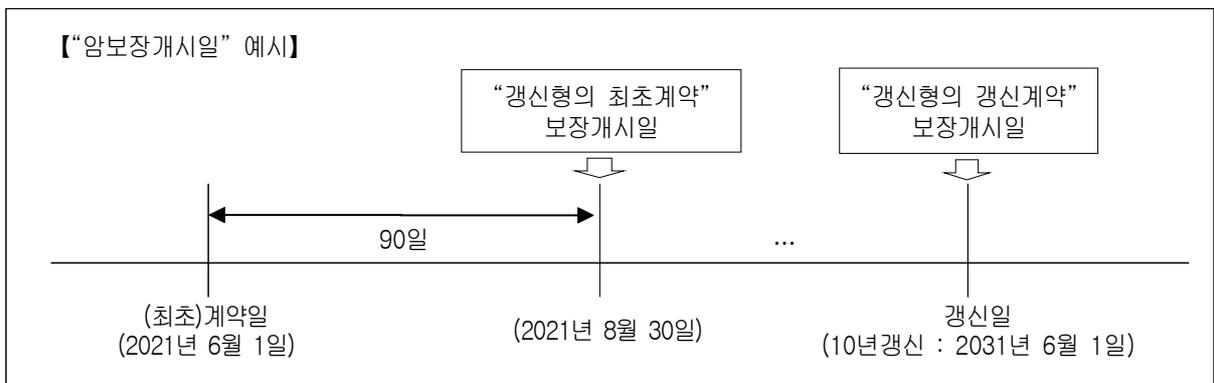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1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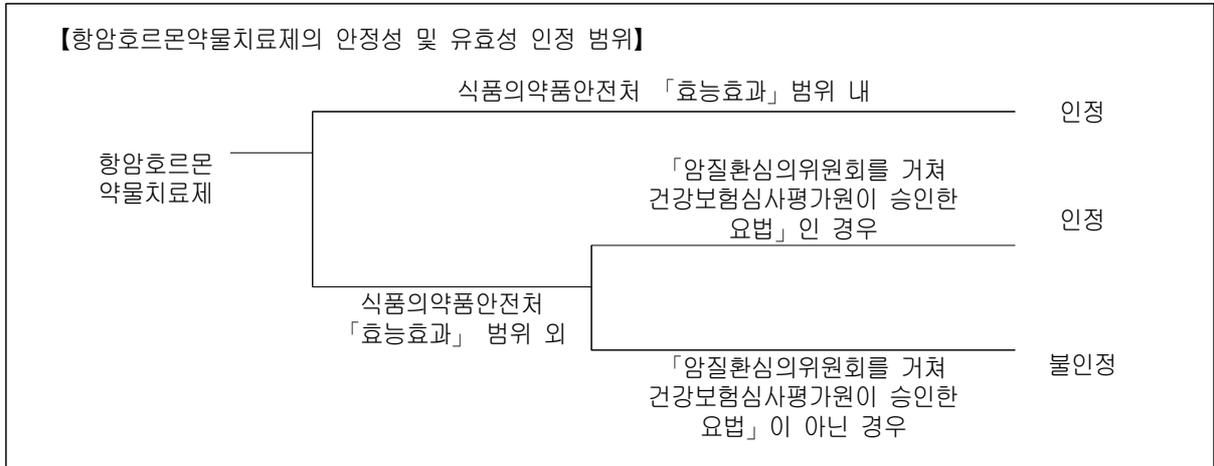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2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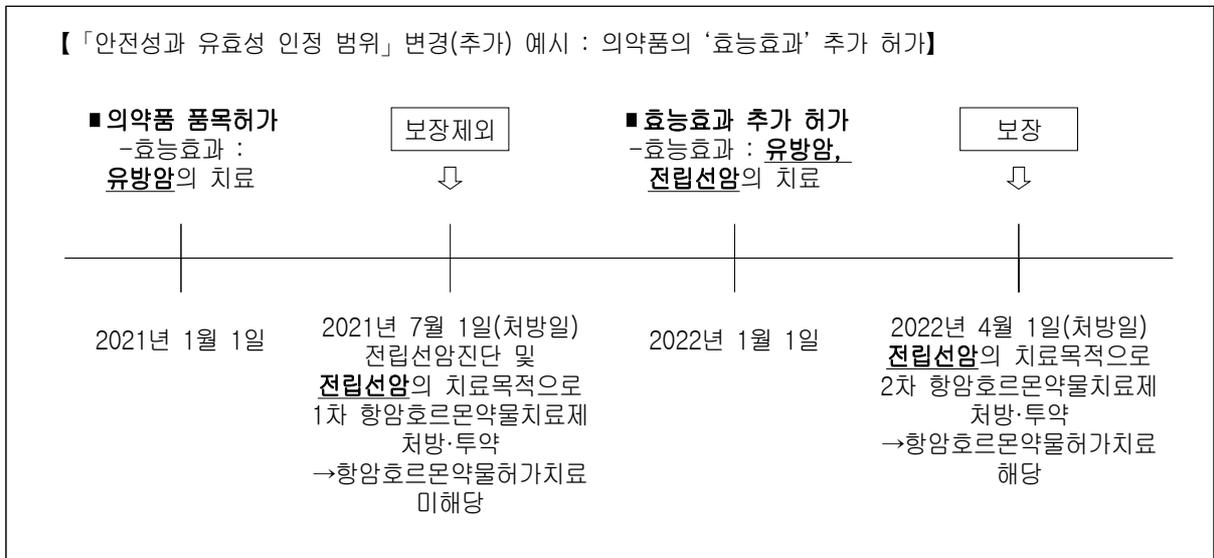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제10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및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9조(특약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0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

- 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7.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부  
편  
약  
관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 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8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8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라 함은 “갑상선암” 수술 후 갑상선자극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로 “갑상선암” 수술 후 치료 또는 재발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하며, “항암약물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84】**(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 증명서
    - 가.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 진단서 또는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계산서
  - 4.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8.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자궁근종)(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자궁근종”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궁근종”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D25(자궁의 평활근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자궁근종”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

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자궁근종”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궁근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신체의 절개없이 환자의 체외에서 자기공명영상(MR) 또는 초음파 유도하에 고강도초음파를 조사하여 종양을 응고괴사시키는 의료행위
  2. 【별표85】(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과 동일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 ④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궁근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자궁근종)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자궁근종)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기재), 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자궁근종)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0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109-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비갱신형 및 갱신형) 보장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보장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간병인의 주요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2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회사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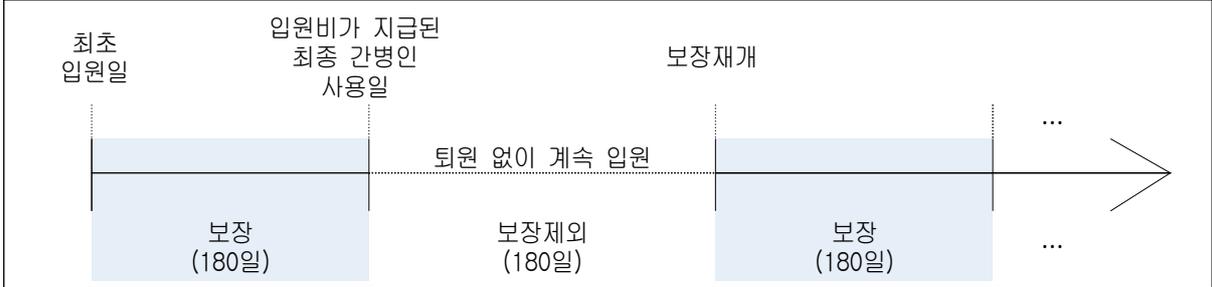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계산 예시】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1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2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1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1년 4월 10일 ~ 4월 17일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88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이상에 해당.  
→ 2만원 × 8일 = 16만원 지급
    - 2021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4일 오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52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미만에 해당.  
→ 1만원 × 8일 = 8만원 지급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16만원 + 8만원 = 24만원 지급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

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초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제2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5. 회사는 실제 간병인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보장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장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보장의 갱신)

- ① 이 보장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보장의 소멸)에 의하여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9-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비갱신형 및 갱신형) 보장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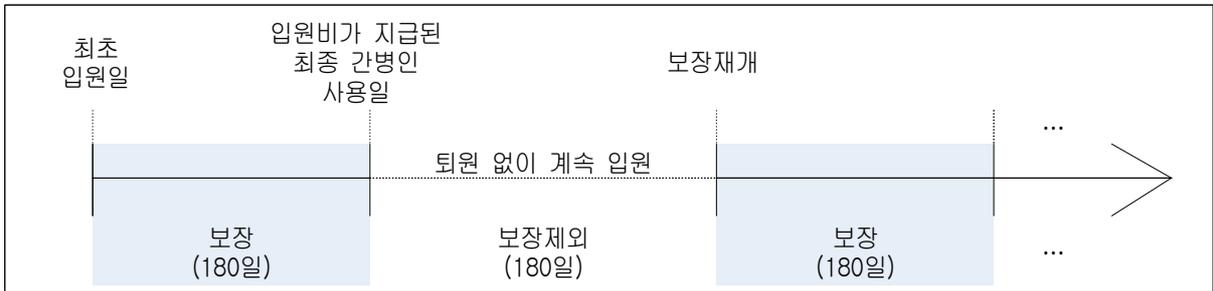
【간병인의 주요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2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회사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이하 ‘입원비’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성병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제2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5. 회사가 실제 간병인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장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장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장의 갱신)**

- ① 이 보장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보장의 소멸)에 의하여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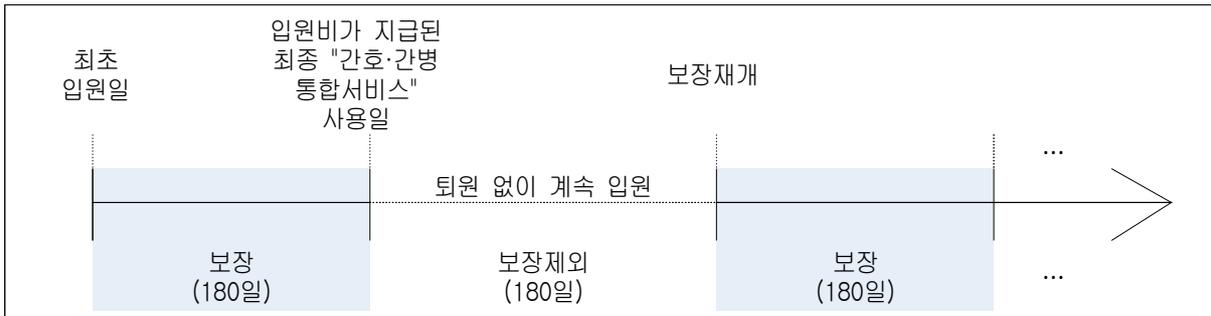
-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환자
    -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 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2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 회사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부 록 안 권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성병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2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단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1.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이라 함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 수치가 6.5% 이상을 만족하는 【별표86】(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bA1c)”란 “국제당화혈색소 측정표준화 프로그램(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NGSP)”에 의해 인증되고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DCCT)”에서 정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당화혈색소(HbA1c)】**  
 당화혈색소(HbA1c)란 체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혈색소)이 혈액내에 있는 포도당과 결합하여 당화된 상태를 말하며,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준을 반영합니다.  
 당화혈색소는 당뇨병의 진단에 이용되며, 치료시 혈당의 조절 정도를 반영하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주요한 지표로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권고되는 검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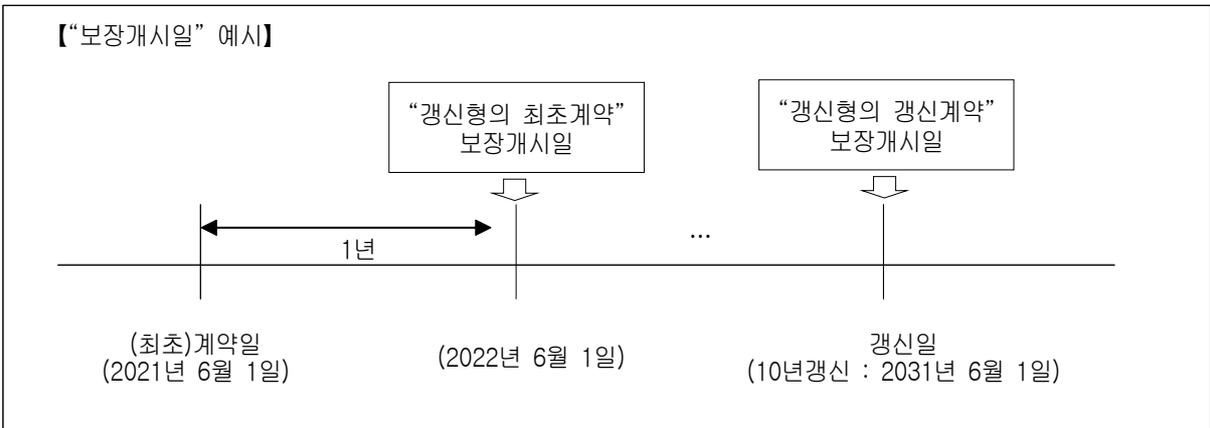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 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제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2.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이라 함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 수치가 7.5% 이상을 만족하는 【별표86】(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bA1c)”란 “국제당화혈색소 측정표준화 프로그램(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NGSP)”에 의해 인증되고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DCCT)”에서 정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당화혈색소(HbA1c)】**  
 당화혈색소(HbA1c)란 체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혈색소)이 혈액내에 있는 포도당과 결합하여 당화된 상태를 말하며,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준을 반영합니다.  
 당화혈색소는 당뇨병의 진단에 이용되며, 치료시 혈당의 조절 정도를 반영하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주요한 지표로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권고되는 검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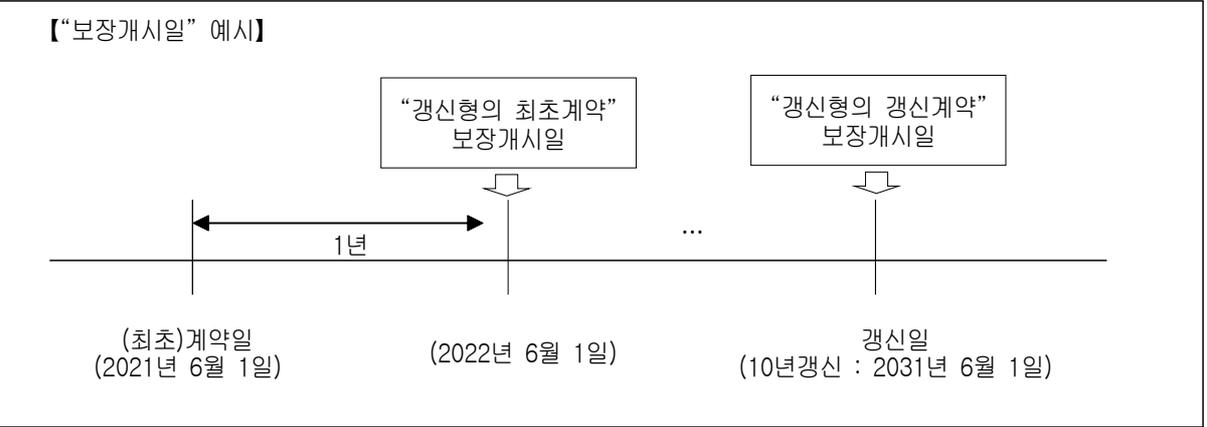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 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제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3. 다빈치로봇암수술비(최초1회환)(갱신형) 특별약관

#### 113-1.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최초1회환)(갱신형) 보장

##### 제1조(“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다빈치로봇 암수술”이란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sup>®</sup>	QZ961

##### 【다빈치로봇암수술】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 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② 제1항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과 동일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제3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8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8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암노바, 헬릭소, 셀레라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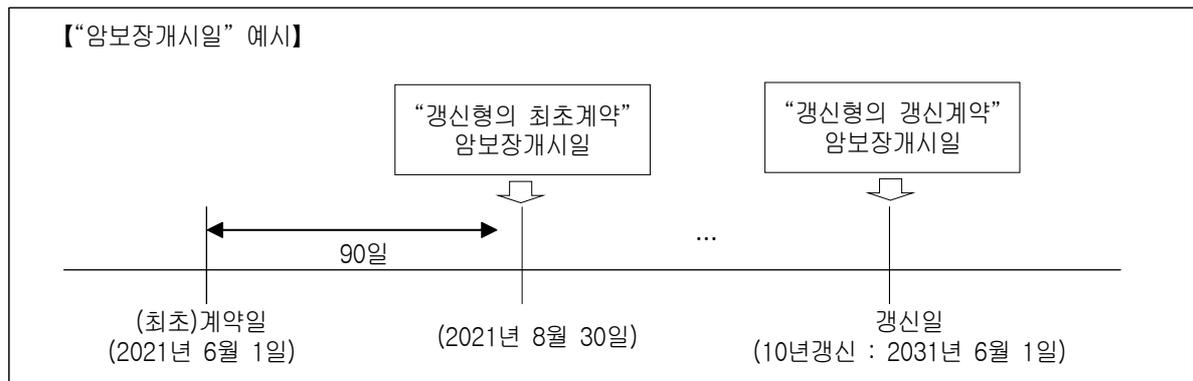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다빈치로봇암수술비 (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제10조(보장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보장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 기록지, 수술기록지포함), 수술확인서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장의 무효)**

이 보장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8조(보장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다빈치료보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보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

- 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10조(보장의 갱신)

- ① 이 보장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보장의 소멸)에 의하여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3-2.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최초1회한)(갱신형) 보장

### 제1조(“갑상선암및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및전립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갑상선암및전립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및전립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다빈치로봇 암수술”이란 “갑상선암및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sup>®</sup>	QZ961

**【다빈치로봇암수술】**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갑상선암및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② 제1항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과 동일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직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8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8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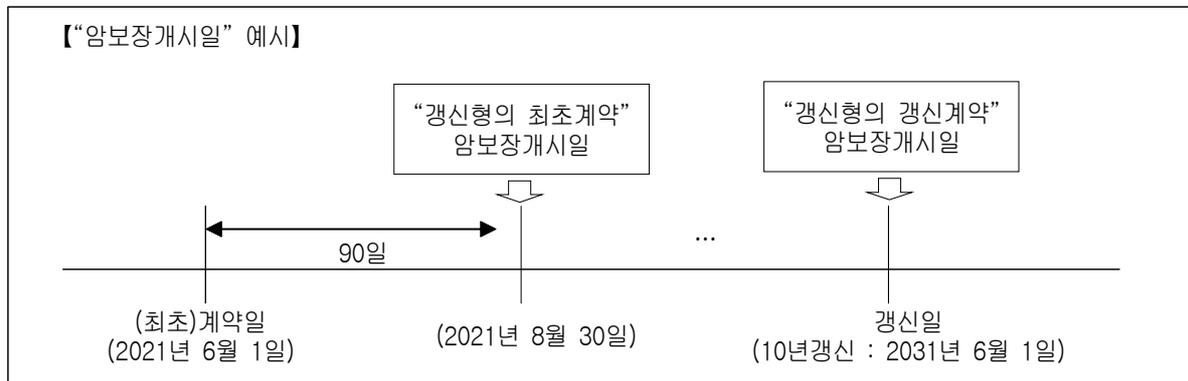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및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및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최초1회 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80일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다빈치로봇암수술비 (갑상선암및전립선암)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갑상선암및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및전립선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제10조(보장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보장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포함), 수술확인서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보장의 무효)

이 보장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및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8조(보장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보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보장의 갱신)**

- ① 이 보장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보장의 소멸)에 의하여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4.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이라 함은 【별표94】(만성폐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에서 폐장이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여서 그 결과 도보동작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제한되고 평생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제한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서 다음의 한 가지 기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폐기능 검사성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1.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40% 이하
  - 2. 비가역적인 만성 저산소증으로서 안정상태에서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상 동맥혈 산소분압(PaO2)이 65mmHg 이하
- ② 제1항의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의 진단확정은 정기적인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등의 검사 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만성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만성폐질환 (중등도이상)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5.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이라 함은 【별표28】(간경변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에서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절(regenerative nodules: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평가 상 등급이 B(7~9점) 또는 C(10점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Child-Pugh 분류법】

아래 분류법을 근거로 점수화하여 5~6점은 A등급, 7~9점은 B등급, 10점 이상은 C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구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mg/dL)	< 2.0	2.0 ~ 3.0	> 3.0
혈청 알부민(g/dL)	> 3.5	2.8 ~ 3.5	<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간성뇌증	없음	1도 ~ 2도	3도 ~ 4도
프로트롬빈 시간연장(초) /INR	< 4 / < 1.7	4 ~ 6 / 1.7 ~ 2.3	> 6 / > 2.3

※ Child-Pugh 평가는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를 판정합니다.

- ② 제1항의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의 진단확정은 정기적인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초음파 등)를 근거로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만성간질환 (CP B등급이상) 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6. 자궁내막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자궁내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자궁내막증」이라 함은 【별표95】(자궁내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자궁내막증」의 진단확정은 골반경(복강경)검사를 통한 병변의 조직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자궁내막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자궁내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자궁내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자궁내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자궁내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자궁내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자궁내막증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자궁내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궁내막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자궁내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자궁내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궁내막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자궁내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자궁내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궁내막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7.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전립선비대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전립선비대증」이라 함은 【별표96】(전립선비대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전립선비대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전립선비대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전립선비대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전립선비대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전립선비대증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전립선비대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립선비대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8. 백내장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백내장」이라 함은 【별표42-5】(백내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백내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백내장」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백내장」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백내장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백내장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백내장”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백내장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9. 특정녹내장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특정녹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특정녹내장」이라 함은 【별표97】(특정녹내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녹내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녹내장」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특정녹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녹내장」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녹내장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특정녹내장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특정녹내장”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특정녹내장”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녹내장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0. 삼출성황반변성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삼출성황반변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삼출성황반변성」이라 함은 【별표98】(삼출성황반변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삼출성황반변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삼출성황반변성」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삼출성황반변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삼출성황반변성」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삼출성황반변성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삼출성황반변성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삼출성황반변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삼출성황반변성”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삼출성황반변성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1. 질병실명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질병실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질병실명」이라 함은 질병으로 인하여 「비가역적인 영구적 시력상실」이 발생하고 시력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로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의한 더 나은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 렌즈, 굴절교정수술(라식, 라섹 등), 기타 시력교정술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얻은 최대시력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더 나은 눈”이라 함은 양쪽 눈 중 교정시력이 더 좋은 눈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질병실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질병실명」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질병실명”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실명」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질병실명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질병실명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질병실명”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질병실명”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실명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2.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주요바이러스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주요바이러스질환」이라 함은 【별표99】(주요바이러스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주요바이러스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요바이러스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주요바이러스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주요바이러스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	보험가입금액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주요바이러스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주요바이러스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주요바이러스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주요바이러스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주요바이러스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3.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제1조(“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폴립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폴립포함)」이라 함은 【별표100】(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폴립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	보험가입금액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폴립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폴립의 경우 내시경검사결과지로 대체 가능),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4. 암주요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급여 암주요재활치료”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암주요재활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의 암치료 중, 암치료 완료 후, 암생존 시기에 암 자체 또는 암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전문재활인력이 진단, 평가 및 치료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로 향상 및 유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라 함은 【별표101】(급여 암주요재활치료 분류표)의 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암주요재활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암주요재활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급여 암주요재활치료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별표101】(급여 암주요재활치료 분류표)에서 정한 의료행위 외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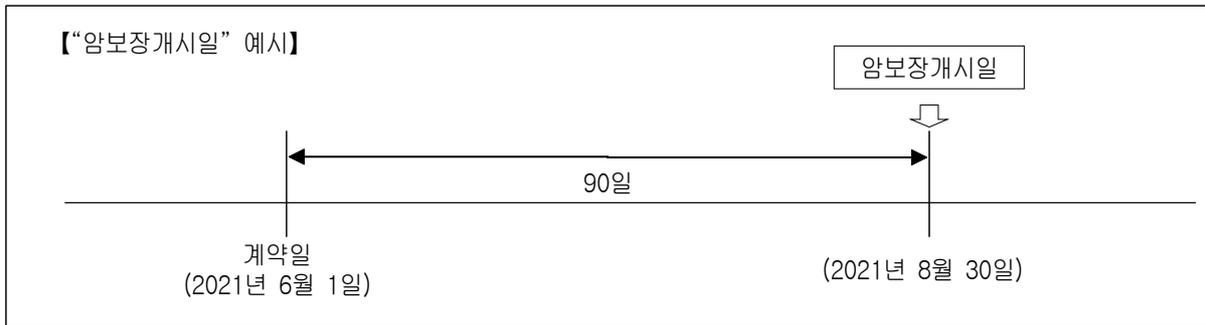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입원 중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를 받은 경우(이하 “통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라 합니다) 회사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주요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10회한)(이하 “암주요재활치료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암주요재활치료비 (1일 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주요재활치료비는 “입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와 “통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를 합산하여 연간 10회를 한도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원인” 필수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8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 10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5.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90회한) 특별약관

### 제1조(“뇌·심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102】(뇌·심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심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단, “뇌·심혈관질환” 중 “뇌혈관질환(II)”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혈관질환(II)”의 진단확정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심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심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が必要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의 뇌·심혈관질환 치료 중, 뇌·심혈관질환 치료 완료 후, 뇌·심혈관질환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전문재활인력이 진단, 평가 및 치료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로 향상 및 유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라 함은 【별표103】(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 분류표)의 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별표103】(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 분류표)에서 정한 의료행위 외에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입원 중에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를 받은 경우(이하 “통원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라 합니다) 회사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90회한)(이하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비는 “입원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와 “통원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를 합산하여 연간 90회를 한도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원인” 필수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6. 암주요통증완화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 확정된 “암”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급여 신경차단술” 또는 “급여 신경파괴술”을 받은 경우
  - 가. “급여 신경차단술” 및 “급여 신경파괴술”이라 함은 【별표104】(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별표104】(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분류표)에서 정한 의료행위 외에 “급여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급여 마약성진통제”를 “연간 3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
  - 가. 이 특약에서 “급여 마약성진통제”라 함은 아래의 약효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약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마약성진통제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급여 마약성진통제】**

·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약제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800	마약
810	알칼로이드 마약(천연)
811	아편알칼로이드계 제제
812	코카알칼로이드계 제제
820	비알칼로이드계 마약
821	합성 마약
829	기타의 비알칼로이드계 마약
890	기타의 마약

· 상기 약효분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과 심사지침」에서 정한 마약성 진통제 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 나. “연간 30일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날 2회이상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진통제”를 처방 받은 날로 합니다.
-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마약성진통제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급여 마약성진통제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마약성진통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약제 외에 “급여 마약성진통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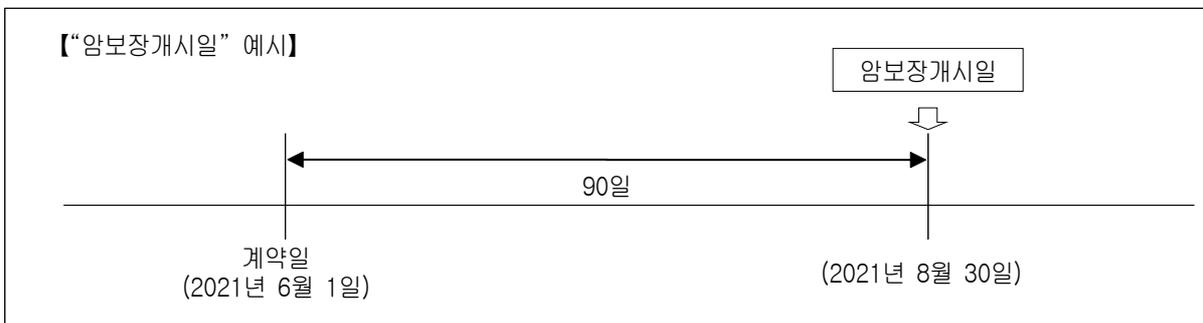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로 인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주요통증완화치료비(급여,연간1회한)(이하 ‘암주요통증완화치료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암주요통증완화치료비 (급여, 연간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 가. “급여 신경차단술” 또는 “급여 신경파괴술치료”를 받은 경우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나. “급여 마약성진통제”를 “연간3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 : 진단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병명 및 총 투여일수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7. 여성5대생활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 (“여성5대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여성5대생활질환”이라 함은 【별표105】(여성5대생활질환 분류표)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여성5대생활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여성5대생활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손목터널증후군, 하지정맥류	보험가입금액의 100%
성대결절, 족저근막염	보험가입금액의 60%
내향성 손발톱	보험가입금액의 10%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8. 탈장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탈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탈장”이라 함은 【별표106】(탈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탈장”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탈장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9.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비(급여, 연금1회한) 특별약관**

**제1조(“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이라 함은 【별표108】(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 특약에서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이라 함은 【별표107】(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별표107】(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의료행위 외에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비(급여,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비 (급여, 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을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포함), 수술확인서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30. 폐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폐렴”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폐렴”이라 함은 【별표30】(폐렴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폐렴”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별표93】(의료기관의 시설규격)참조)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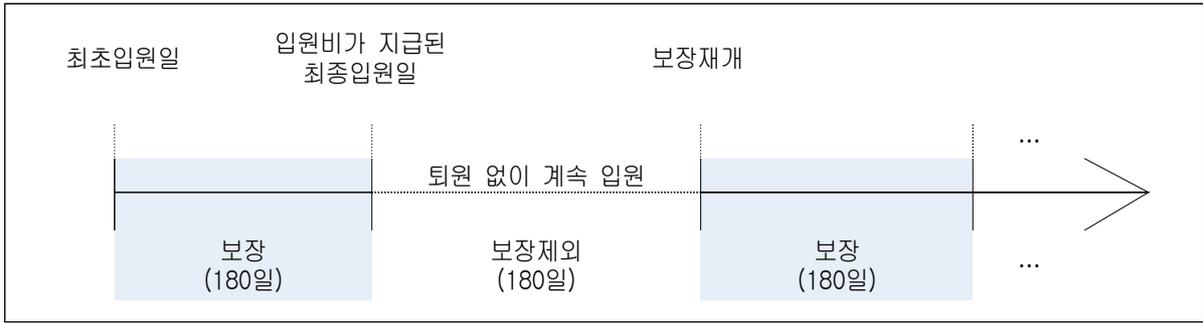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폐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폐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폐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폐렴”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폐렴”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폐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폐렴”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폐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폐렴”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폐렴”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폐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폐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폐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폐렴”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폐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1. 여성5대생활질환입원비(4일 이상 120일 한도) 특별약관**

**제1조(“여성5대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여성5대생활질환”이라 함은 【별표105】(여성5대생활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여성5대생활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여성5대생활질환”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여성5대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는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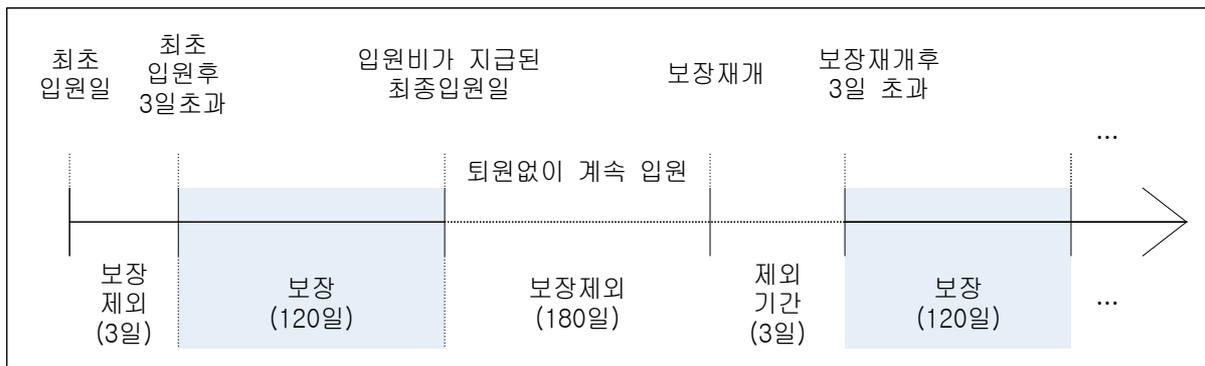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여성5대생활질환”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여성5대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여성5대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4일이상 계속입원한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여성5대생활질환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2. 개호유발특정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개호유발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개호유발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109】(개호유발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개호유발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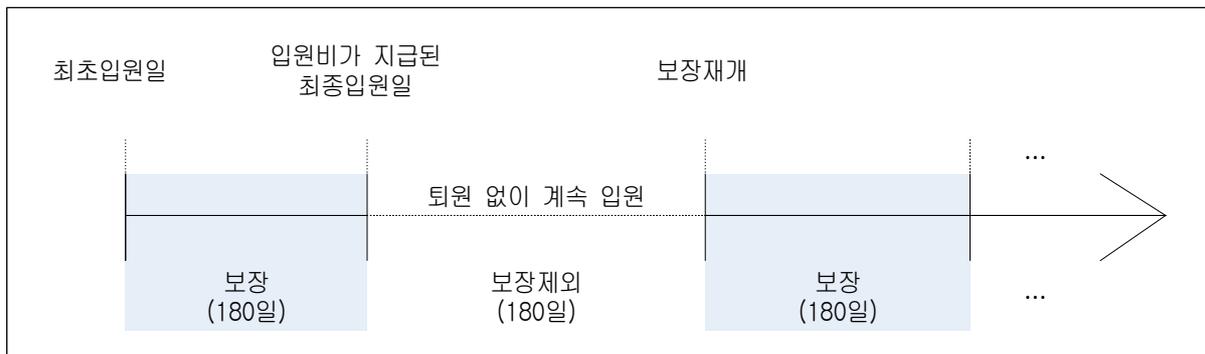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개호유발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개호유발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개호유발특정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개호유발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 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개호유발특정질병의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개호유발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개호유발특정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개호유발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개호유발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개호유발특정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개호유발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호유발특정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개호유발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9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3.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요실금”, “급여 요실금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요실금”이라 함은 【별표110】 (요실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요실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급여 요실금수술”이라 함은 「요실금수술 대상 수가코드」 【별표111】 (급여 요실금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실금수술 대상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실금수술 대상 수가코드」를 따릅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요실금”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요실금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요실금수술비 (급여, 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급여 요실금수술”을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 기록지, 수술기록지포함), 수술확인서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4. 암으로 인한3대특정수술비(급여,각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

-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유방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⑥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유방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⑦ 제6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유방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급여 유방재건수술”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유방재건수술”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에 의하여 유방암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별표153】 (급여 유방재건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유방재건수술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유방재건수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급여 유방재건수술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별표153】 (급여 유방재건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의료행위 외에 “급여 유방재건수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급여 림프부종수술”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림프부종수술”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에 의하여 암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별표154】 (급여 림프부종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림프부종수술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림프부종수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급여 림프부종수술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별표154】 (급여 림프부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의료행위 외에 “급여 림프부종수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급여 피부재건수술”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피부재건수술”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에 의하여 암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별표155】 (급여 피부재건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피부재건 수술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피부재건수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급여 피부재건수술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별표155】(급여 피부재건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의료 행위 외에 “급여 피부재건수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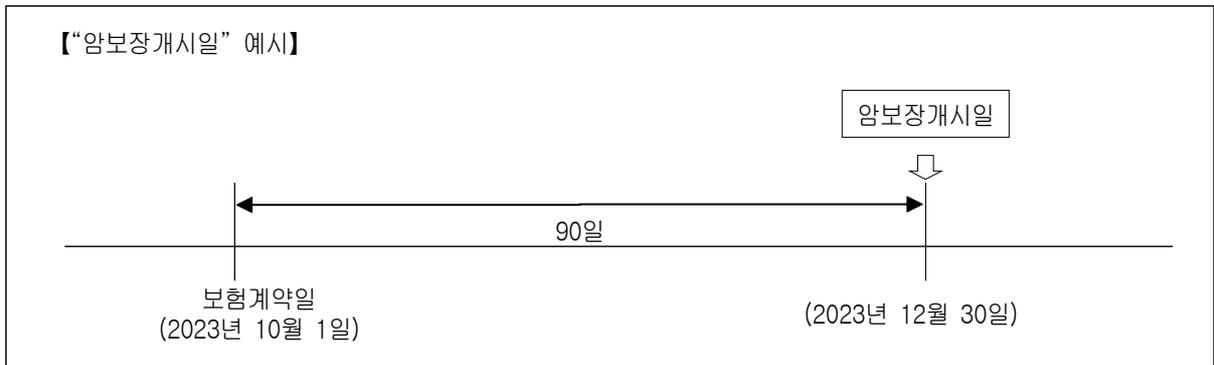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유방재건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2.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한 “급여 림프부종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3.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한 “급여 피부재건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급여 유방재건수술”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0%
“급여 림프부종수술”	암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0%
“급여 피부재건수술”	암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및 “유방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7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8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 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35. 남성생식기관연(전립선, 음경, 고환)암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 (“남성생식기관연(전립선, 음경, 고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남성생식기관연(전립선, 음경, 고환)암”이라 함은 【별표113】(남성생식기관연(전립선, 음경, 고환)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남성생식기관연(전립선, 음경, 고환)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남성생식기관연(전립선, 음경, 고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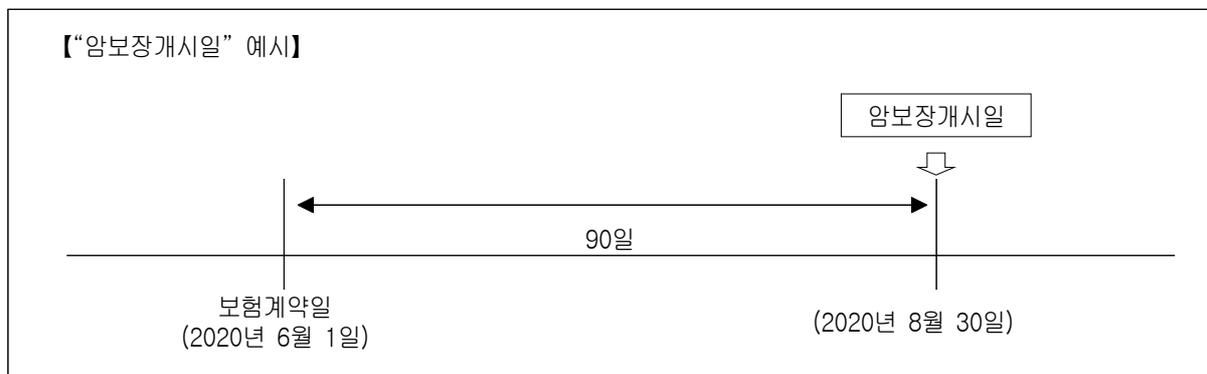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 음경,고환)암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남성생식기관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36. 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이라 함은 【별표114】(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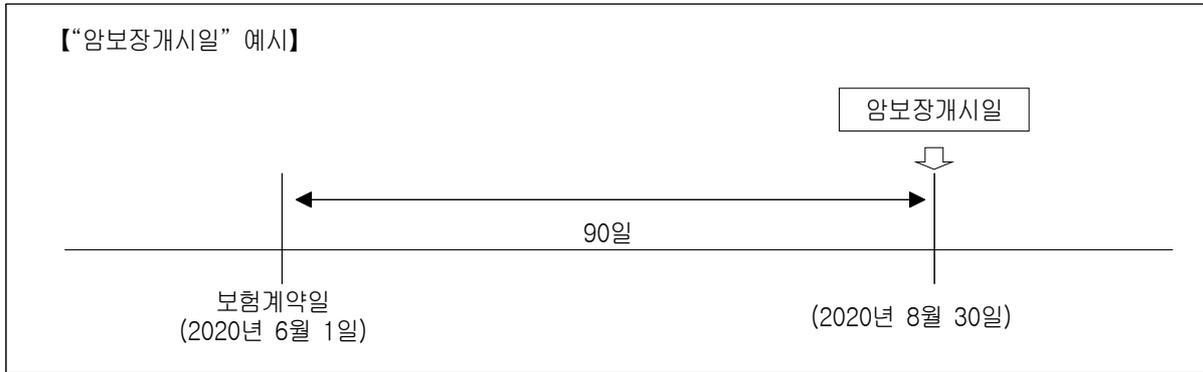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특약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7.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위암 및 식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위암 및 식도암”이라 함은 【별표115】(위암 및 식도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위암 및 식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와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위암 및 식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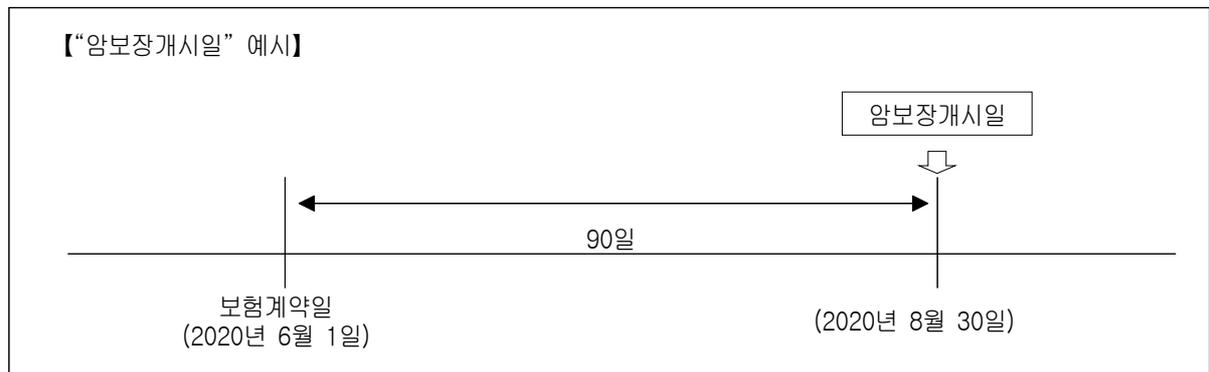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및 식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위암 및 식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위암 및 식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위암 및 식도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위암 및 식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위암 및 식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8.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이라 함은 【별표116】(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저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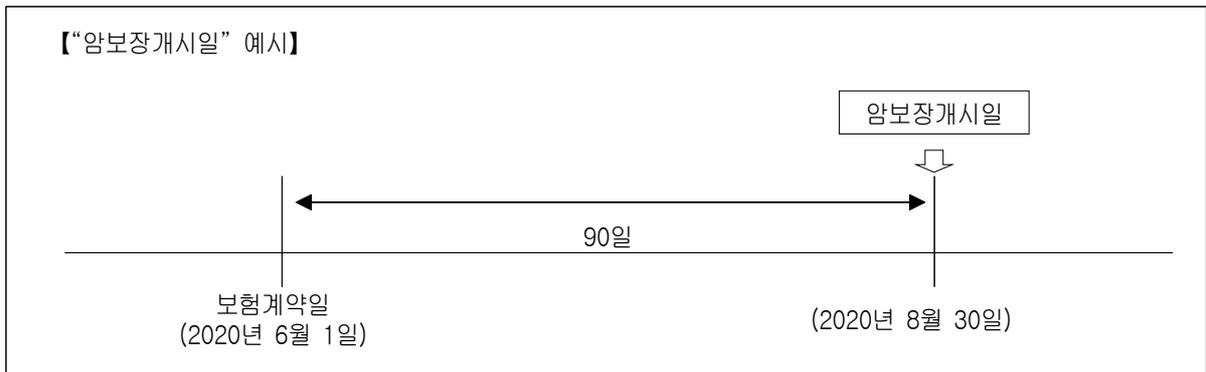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9. 간암 · 담낭암 ·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간암 · 담낭암 ·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이라 함은 【별표117】(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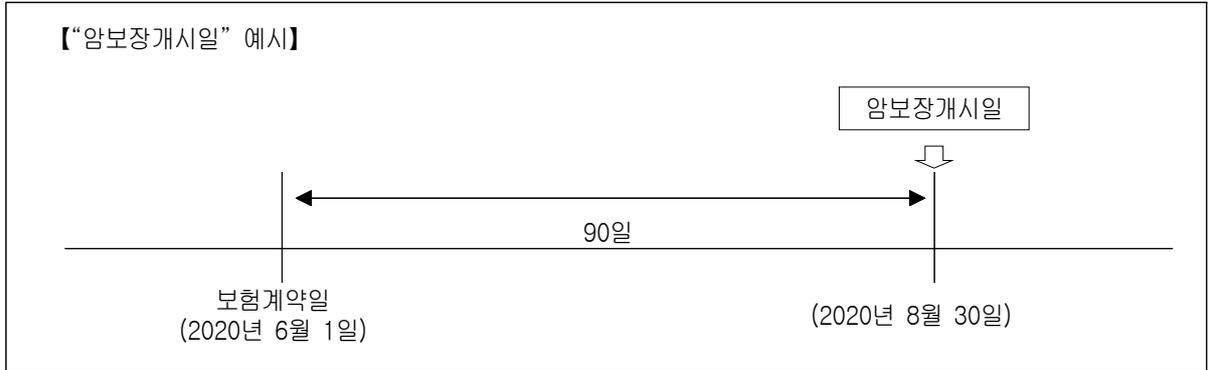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40.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심장암 및 뇌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심장암 및 뇌암”이라 함은 【별표118】(심장암 및 뇌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심장암 및 뇌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심장암 및 뇌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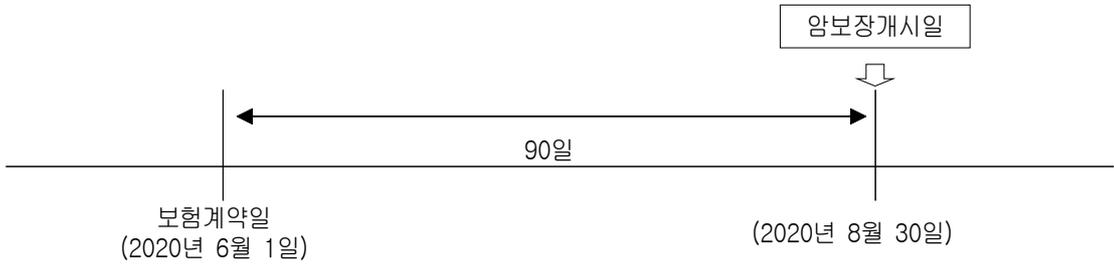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심장암 및 뇌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심장암 및 뇌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심장암 및 뇌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심장암 및 뇌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심장암 및 뇌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심장암 및 뇌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심장암 및 뇌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심장암 및 뇌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41. 호흡기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호흡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호흡기암”이라 함은 【별표119】(호흡기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호흡기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호흡기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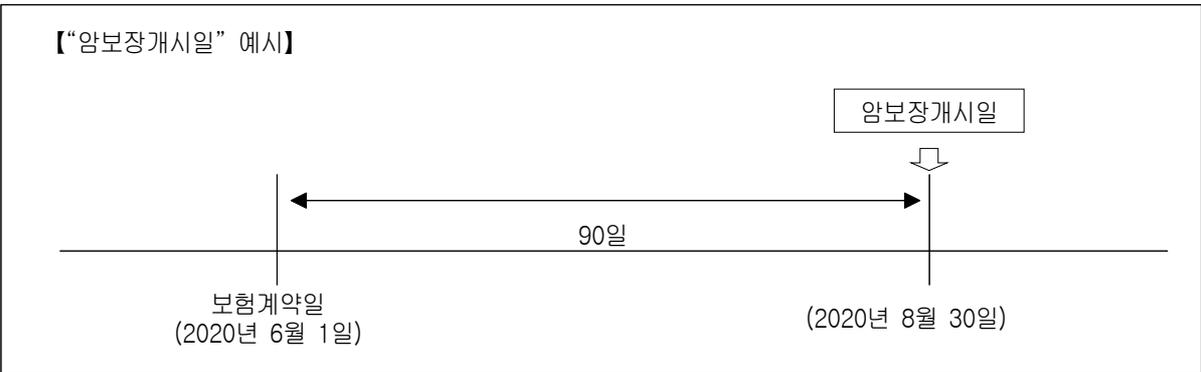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호흡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호흡기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호흡기암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호흡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호흡기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호흡기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호흡기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호흡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호흡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호흡기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호흡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호흡기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호흡기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2.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이라 함은 【별표120】(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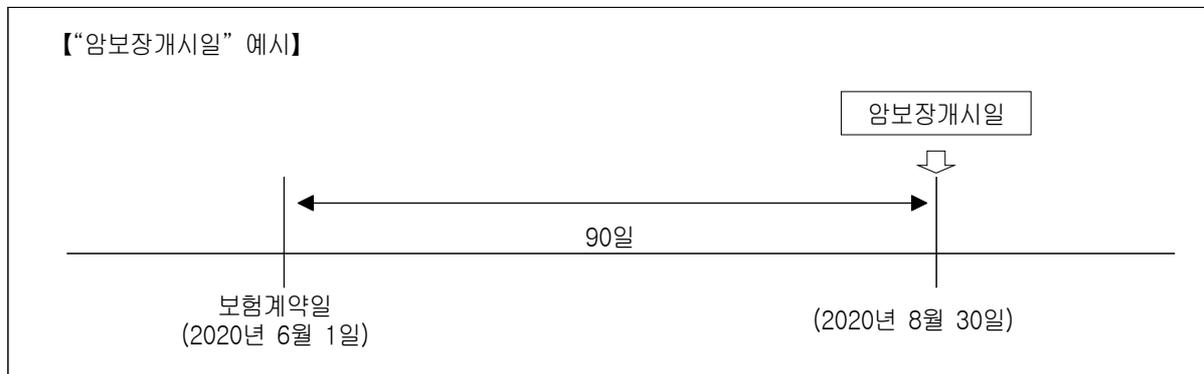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3. 중증갑상선암 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 “중증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중에서 “갑상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Undifferentiated, Anaplastic Thyroid Cancer)”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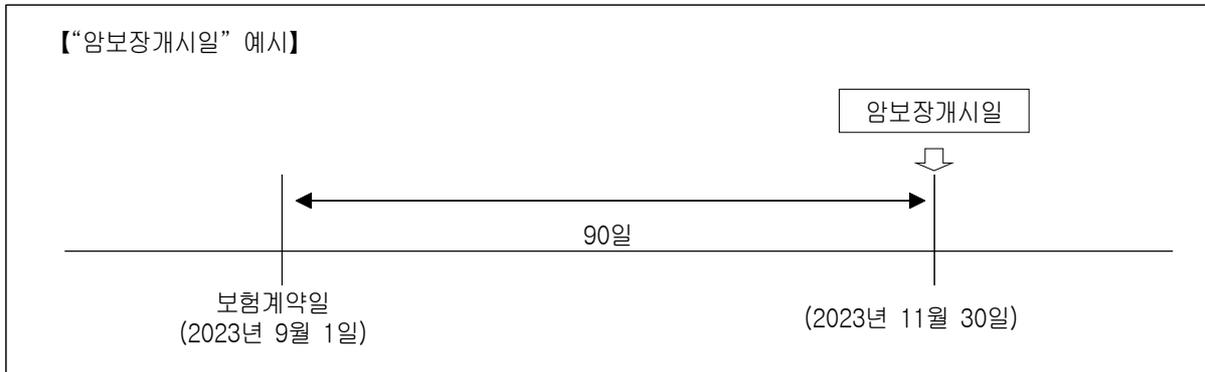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증갑상선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중증갑상선암 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증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증갑상선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44. 통합형전이암진단비 특별약관**

통합형전이암진단비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형전이암진단비(림프절 전이암)
2. 통합형전이암진단비(간 및 간내담관 전이암)
3. 통합형전이암진단비(중격·흉막·신경계통 전이암)
4. 통합형전이암진단비(뇌 및 뇌막 전이암)
5. 통합형전이암진단비(폐 관련 전이암)
6. 통합형전이암진단비(골·골수·복막 전이암)
7. 통합형전이암진단비(특정소화기관 전이암)
8. 통합형전이암진단비(특정전이암 I)
9. 통합형전이암진단비(특정전이암 II)

**제1조(“통합형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통합형전이암”이라 함은 다음의 1호 내지 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1. “림프절 전이암”이라 함은 【별표148】(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림프절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간 및 간내담관 전이암”이라 함은 【별표148】(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간 및 간내담관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중격·흉막·신경계통 전이암”이라 함은 【별표148】(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중격·흉막·신경계통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뇌 및 뇌막 전이암”이라 함은 【별표148】(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뇌 및 뇌막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폐 관련 전이암”이라 함은 【별표148】(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폐 관련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병을 말합니다.

6. “골·골수·복막 전이암”이라 함은 【별표148】(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골·골수·복막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특정소화기관 전이암”이라 함은 【별표148】(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소화기관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8. “특정전이암 I”이라 함은 【별표148】(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이암 I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9. “특정전이암 II”이라 함은 【별표148】(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이암 II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림프절 전이암”, “간 및 간내담관 전이암”, “종격·흉막·신경계통 전이암”, “뇌 및 뇌막 전이암”, “폐 관련 전이암”, “골·골수·복막 전이암”, “특정소화기관 전이암”, “특정전이암 I”, “특정전이암 II”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림프절 전이암”, “간 및 간내담관 전이암”, “종격·흉막·신경계통 전이암”, “뇌 및 뇌막 전이암”, “폐 관련 전이암”, “골·골수·복막 전이암”, “특정소화기관 전이암”, “특정전이암 I”, “특정전이암 I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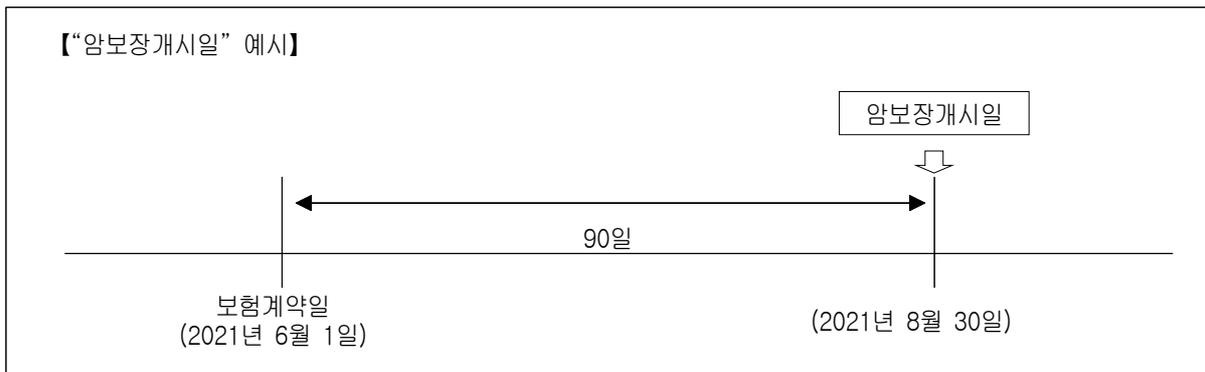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형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암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통합형전이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암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통합형전이암진단비	림프절 전이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간 및 간내담관 전이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종격·흉막·신경계통 전이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 및 뇌막 전이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폐 관련 전이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골·골수·복막 전이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화기관 전이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전이암 I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전이암 II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통합형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통합형전이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통합형전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통합형전이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형전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 전이암”, “간 및 간내담관 전이암”, “종격·흉막·신경계통 전이암”, “뇌 및 뇌막 전이암”, “폐 관련 전이암”, “골·골수·복막 전이암”, “특정소화기관 전이암”, “특정전이암 I”, “특정전이암 II”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각각 1회씩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통합형전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5.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제1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질병의 진단을 위해 생체에서 세포, 조직의 일부를 바늘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바늘생검(Needle Biopsy)을 통해 조직의 병리를 진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②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에는 주사기에 달린 바늘로 조직을 찔러서 내용을 빨아들여 묻어 나온 세포 또는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흡인생검을 통한 갑상선의 조직병리진단이 포함됩니다. 다만, 종양 또는 의증이 되는 병변부위를 절개하여 일부만 절취하는 절개생검 및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생검을 통한 갑상선의 조직병리진단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③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은 보험기간 중 갑상선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갑상선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정의)에서 정한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병리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정의)에서 정한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6.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질병의 진단을 위해 생체에서 세포, 조직의 일부를 바늘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바늘생검(Needle Biopsy)을 통해 조직의 병리를 진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②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에는 주사기에 달린 바늘로 조직을 찔러서 내용을 빨아들여 묻어 나온 세포 또는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흡인생검을 통한 전립선의 조직병리진단이 포함됩니다. 다만, 종양 또는 의증이 되는 병변부위를 절개하여 일부만 절취하는 절개생검 및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생검을 통한 전립선의 조직병리진단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③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은 보험기간 중 전립선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내린 진단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남성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전립선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정의)에서 정한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병리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정의)에서 정한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7.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카티(CAR-T)보장대상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카티(CAR-T)보장대상암”이라 함은 【별표121】(카티(CAR-T) 보장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카티(CAR-T)보장대상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카티(CAR-T)보장대상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로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제3조(“카티(CAR-T)치료제” 및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카티(CAR-T)치료제”라 함은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하고 체외에서 유전자 도입(변형)을 통해 제조 및 증폭된 키메라항원수용체T세포[카티(CAR-T)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함으로써 암세포의 표면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암세포를 공격하여 사멸시키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카티(CAR-T)치료제】**

카티(CAR-T)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항체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카티(CAR-T)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카티(CAR-T)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7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22】**(카티(CAR-T)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카티(CAR-T)보장대상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카티(CAR-T)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확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카티(CAR-T)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카티(CAR-T)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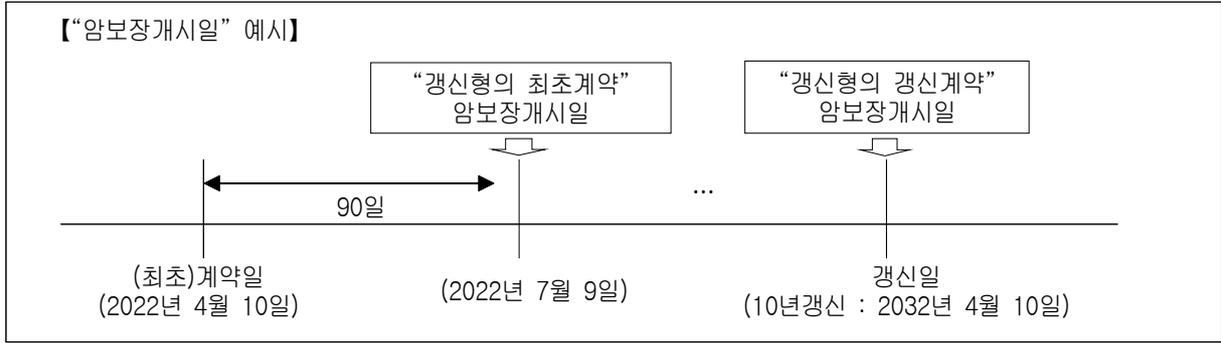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카티(CAR-T)보장대상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80일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이상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 (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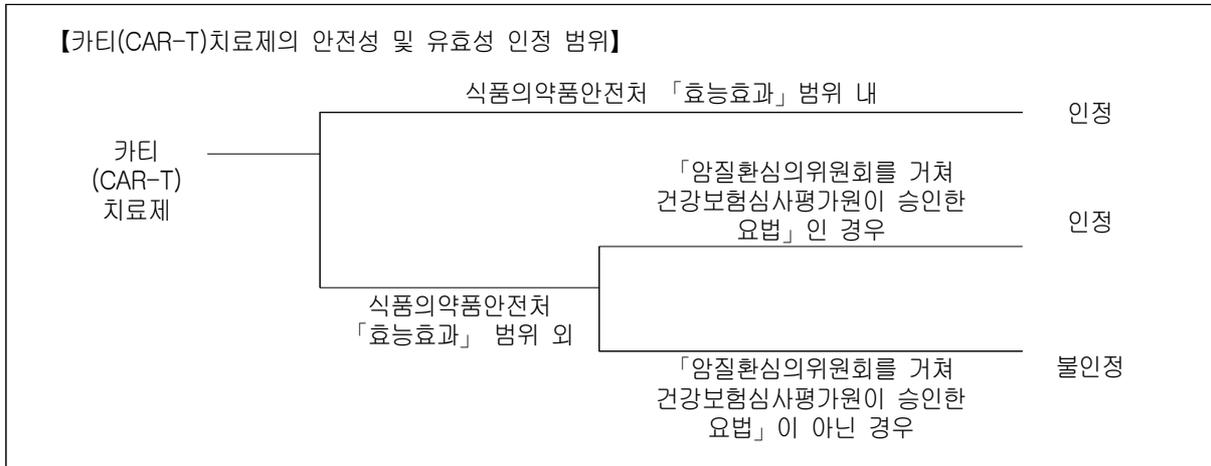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카티(CAR-T)보장대상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카티(CAR-T)보장대상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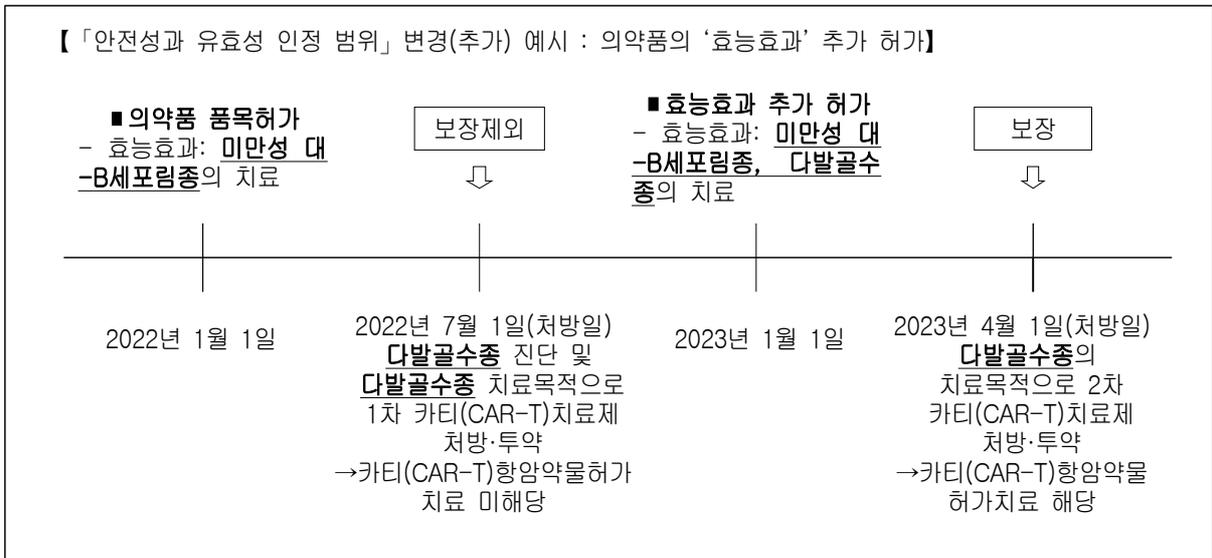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제10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카티(CAR-T)보장대상암”의 진단 확정 이전에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③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카티(CAR-T)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④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카티(CAR-T)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카티(CAR-T)치료제” 및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에 따라 카티(CAR-T)보장대상임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⑥ 카티(CAR-T)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내에 카티(CAR-T)치료제를 처방 받았으나 의사와 일정 협의 등으로 보험기간 이후에 약물을 투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카티(CAR-T)보장대상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8조(특약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10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8.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 특별약관

**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은 매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해당년도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유사암진단)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②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 끝날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예시】**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EX1) 지급사유 발생일 : 2023년 2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1일

EX2)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마지막날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지급 예시】**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20년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 발생일 : 2025년 3월 10일

- 납입경과월수 = 27회 (2년 3개월, 2023년 1월 1일~2025년 3월 10일)
- 잔여보험기간 = 17년 9개월 (이 특약의 보험기간(20년) - 납입경과월수(2년 3개월))
  -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 17년
  -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9개월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3월 10일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5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26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
2041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42년 3월 10일	9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9)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금 총액 : 2,130만원  
 (12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17년)  
 + 9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9개월))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소멸되어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9.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감액없음)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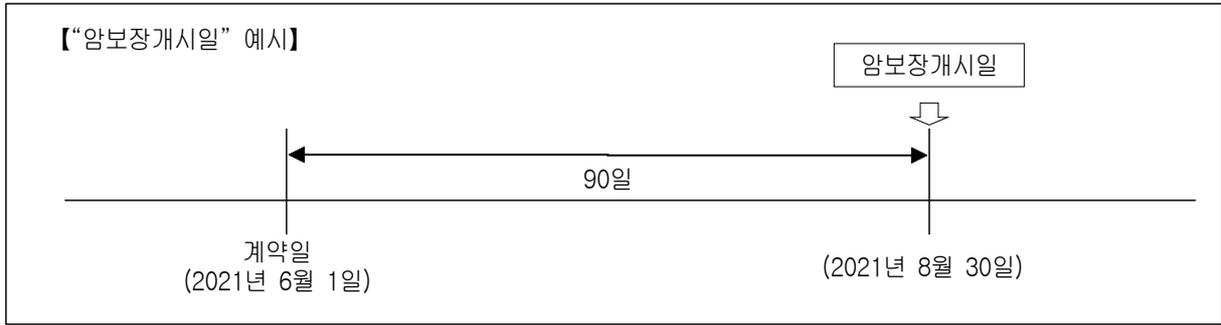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유사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50.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감액없음) 특별약관

###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특정소액암”,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 및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릅니다.

대상 질병	분류 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또한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①	▲ 기저막(basement membrane)
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	②	
점막하층 (submucosa)		

( [ ]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①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 ②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⑥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대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암진단비 (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1.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5】(근위축측삭경화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CSF), 근육생검(Muscle Biopsy), 근전도검사(EMG), 경부 X-선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척수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근위축측삭경화증 (루게릭병)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52. 파킨슨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파킨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파킨슨병”이라 함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운동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며 떨림, 경직, 운동완서의 3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6】(파킨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운동완서】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완만한 것, 육체적 및 정신적 반응이 둔한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파킨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도파민-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 파킨슨병의 평가도구(UPDRS),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파킨슨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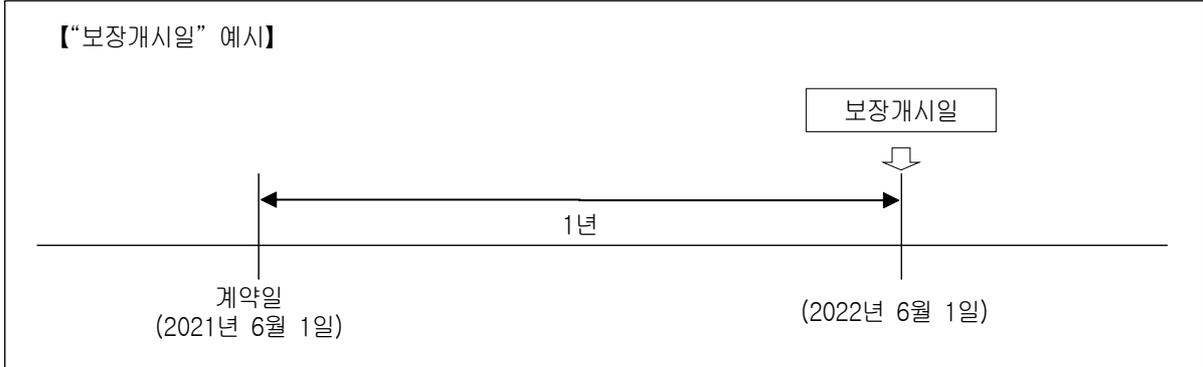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1조(“파킨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파킨슨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파킨슨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파킨슨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파킨슨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파킨슨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9조(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1조(“파킨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10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파킨슨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12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53.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 특별약관

###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콩다래끼,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및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지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K62,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54. 질병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외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콩다래끼,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종합병원)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에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비(종합병원)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종합병원)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 5. 비만(E66)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K62,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

- 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5. 급성신우신염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급성신우신염”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성신우신염”라 함은 【별표127】(급성신우신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신우신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급성신우신염진단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급성신우신염”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신우신염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급성신우신염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신우신염”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신우신염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급성신우신염”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급성신우신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신우신염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급성신우신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신우신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성신우신염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56. 질병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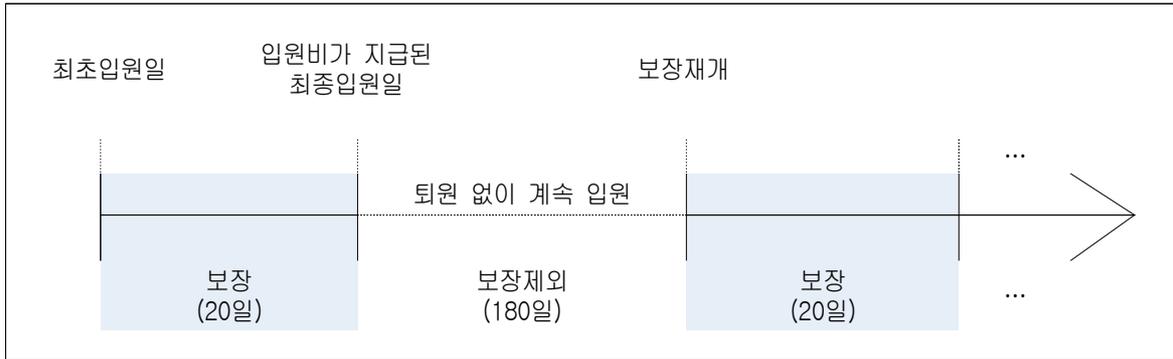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질병의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성병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7.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 II (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 II (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 II (최초1회한) (유사암및소액암제외)
2.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 II (최초1회한) (소액암)

**제1조(“중증질환자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증질환자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별표128-1】(중증질환자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중증질환자 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별표128-2】(중증질환자 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산정특례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중증질환자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신규암”으로, 【별표128-4】(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산정특례 소액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제2항 “중증질환자 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신규암”으로, 【별표128-4】(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신규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암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중증질환자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D32(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D33(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⑩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 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적용이 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 암(유사암및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등록”이 된 경우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Ⅱ(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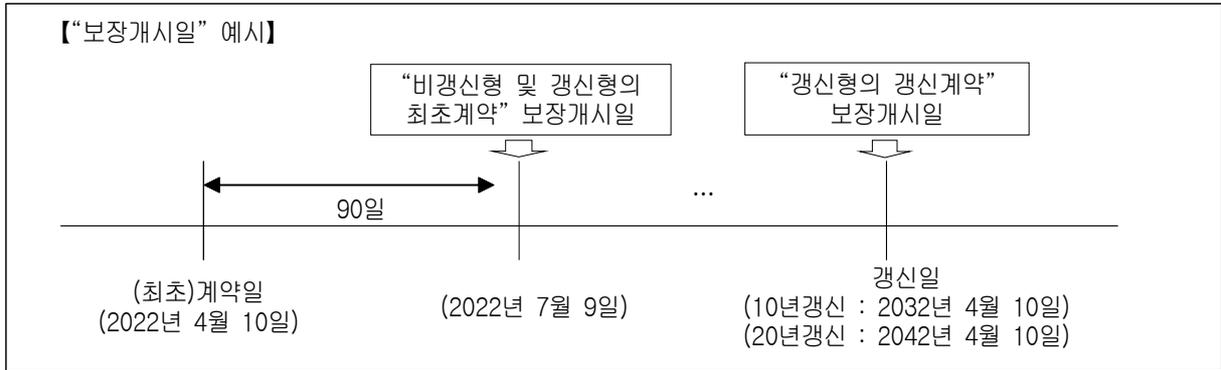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Ⅱ(최초1회한)	유사암및소액암제외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 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소액암 등록”이 된 경우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Ⅱ(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Ⅱ(최초1회한)	소액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중증질환자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등의 정의)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제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②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산정특례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등록” 또는 “산정특례 소액암 등록” 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 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5조(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1조(“중증질환자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등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암(유사암및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Ⅱ(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Ⅲ(소액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각각 1회씩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8. 산정특례(유사암)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 (“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별표128-3】(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산정특례 유사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신규암”으로, 【별표128-4】(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신규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암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적용이 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유사암 등록”이 된 경우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산정특례(유사암)치료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산정특례(유사암)치료비 (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산정특례 유사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유사암)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제1항 “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유사암)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9. 산정특례(중복암및재등록암)치료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159-1. 산정특례(중복암)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보장**

**제1조(“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별표128】(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 있어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복암”으로, 【별표128-4】(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중복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4항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

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중복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④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D32(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D33(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적용이 됩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4항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암환자로 등록된 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다른 암종(전이암 제외)에 대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암의 진단확진일로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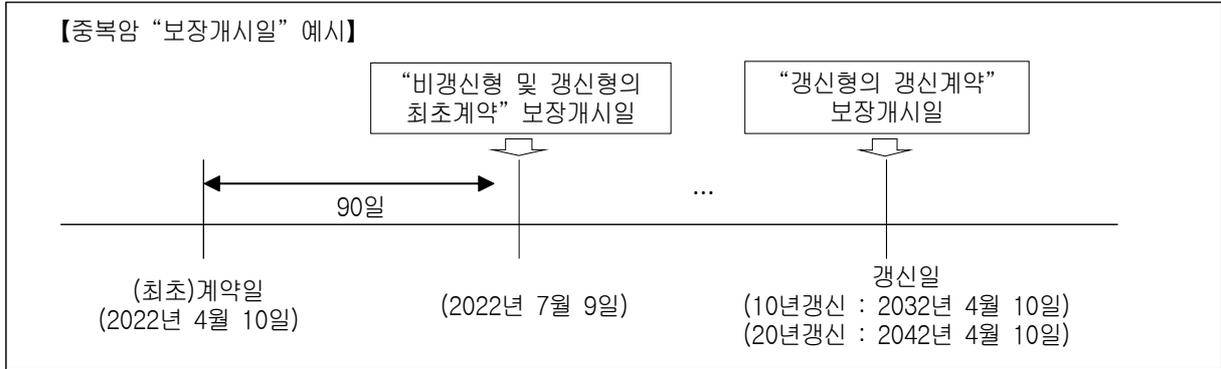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 된 경우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산정특례(중복암)치료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산정특례(중복암)치료비 (최초1회한)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등의 정의)에서 정한 “중복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제8조(보장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보장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②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중복암)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보장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1조(“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등의 정의)에서 정한 중복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7조(보장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중복암)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이 보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장의 갱신)**

- ① 이 보장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보장의 소멸)에 의하여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9-2. 산정특례(재등록암)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보장**

**제1조(“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별표128】(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 있어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재등록암”으로, 【별표128-4】(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재등록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재등록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④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D32(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D33(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

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적용이 됩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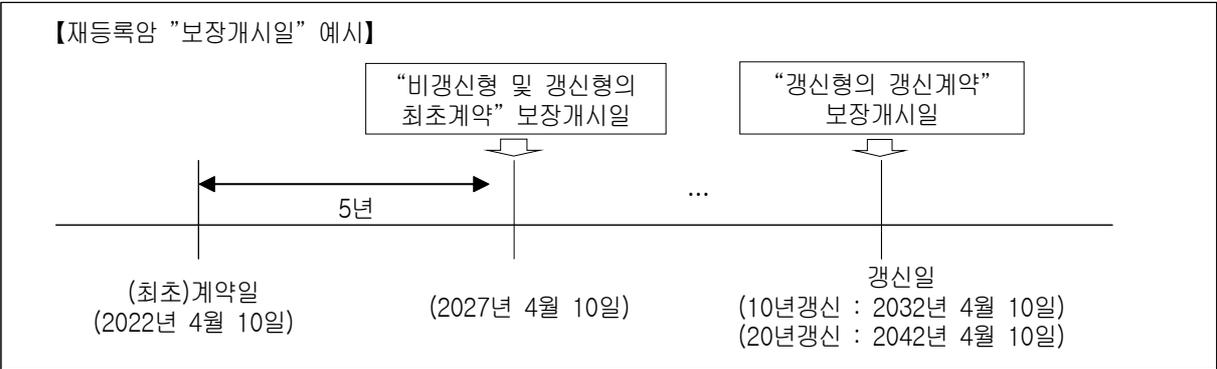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이 된 경우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산정특례(재등록암)치료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초과	
산정특례(재등록암)치료비 (최초1회한)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등의 정의)에서 정한 “재등록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 신청일이 보장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 신청일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제8조(보장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보장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②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재등록암)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보장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1조(“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등의 정의)에서 정한 재등록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단,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 신청일이 보장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7조(보장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재등록암)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보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장의 갱신)**

- ① 이 보장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보장의 소멸)에 의하여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보장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60. 산정특례(결핵)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129】(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결핵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결핵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등록된 경우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산정특례(결핵)치료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산정특례(결핵) 치료비(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결핵) 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결핵) 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61. 산정특례(희귀질환)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130】(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희귀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선천질환”이라 함은 【별표130】(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희귀질환 중 상병코드Q로 시작하는 질병으로 특정기호 V239, V214, V240, V179, V180, V143, V291, V144, V225, V269, V226, V145, V146, V147, V270, V148, V271, V272, V149, V150, V241, V181, V264, V227, V292, V265, V151, V182, V228, V183, V154, V229, V266, V230, V215, V242, V155, V300, V184, V156, V204, V216, V157, V185, V158, V243, V244, V186, V267, V159, V160, V205, V217, V021, V218, V245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희귀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다만 【별표 130】(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의 III~V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이 사전에 승인한 요양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그 중 IV~V에 해당하는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 위원회로부터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질환임을 판정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희귀질환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산정특례(희귀질환) 치료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산정특례(희귀질환) 치료비(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선천질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희귀질환) 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재등록】**

법령에서 정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기간(5년, 상세불명희귀질환은 1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이며, 해당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 위원회로부터 임상 결과 검토 결과 재등록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희귀질환) 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62. CT, MRI, 초음파, 뇌파, 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 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뇌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뇌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135】(뇌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급여 뇌심장질환 검사”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별표136】(급여 뇌심장질환 검사 분류표)에 해당하는 뇌CT, 심장CT, 뇌MRI, 심장MRI, 심장초음파,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별표136】(급여 뇌심장질환 검사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제2조(“급여 뇌심장질환 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CT,MRI초음파,뇌파, 뇌척수액검사지원비 (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 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제2조(“급여 뇌심장질환 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행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63.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행) 특별약관**

### 제1조(“뇌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뇌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135】(뇌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별표137】(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은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별표137】(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제2조(“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 (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제2조(“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64. 통합형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통합형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형암진단비 (위암 및 식도암)
2. 통합형암진단비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3. 통합형암진단비 (폐 관련암)
4. 통합형암진단비 (심장암 및 뇌암)
5. 통합형암진단비 (특정소화기관암)
6. 통합형암진단비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Ⅱ)
7. 통합형암진단비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
8. 통합형암진단비 (4대특정암)
9. 통합형암진단비 (12대특정암)

### 제1조(“통합형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통합형암”이라 함은 다음의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1. “위암 및 식도암”이라 함은 【별표115】(위암 및 식도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이라 함은 【별표117】(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폐 관련암”이라 함은 【별표138】(폐 관련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4. “심장암 및 뇌암”이라 함은 【별표118】(심장암 및 뇌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5. “특정소화기관암”이라 함은 【별표139】(특정소화기관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6.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이라 함은 【별표140】(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7.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8. “4대특정암”이라 함은 【별표141】(4대특정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9. “12대특정암”이라 함은 【별표142】(12대특정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위암 및 식도암”,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폐 관련암”, “심장암 및 뇌암”, “특정소화기관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 “4대특정암” 또는 “12대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위암 및 식도암”,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폐 관련암”, “심장암 및 뇌암”, “특정소화기관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 “4대특정암” 또는 “12대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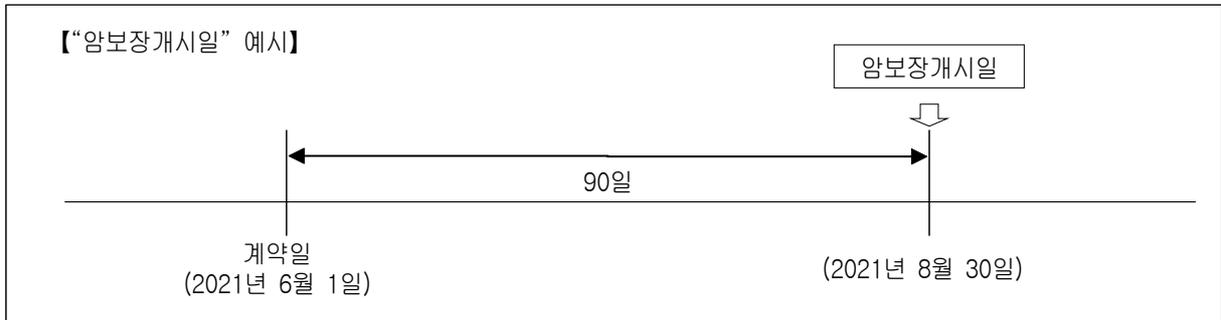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형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암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통합형암진단비(유사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암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통합형암진단비 (유사암제외)	위암및식도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췌장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폐관련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심장암및뇌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화기관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 II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유방암및남녀생식기 관련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12대특정암	-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통합형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통합형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통합형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통합형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폐 관련암”, “심장암 및 뇌암”, “특정소화기관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 “4대특정암” 또는 “12대특정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각각 1회씩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통합형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65. 통합형뇌관련진단비 특별약관

통합형뇌관련진단비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형뇌관련진단비 (뇌출혈)
2. 통합형뇌관련진단비 (뇌졸중(뇌출혈제외))
3. 통합형뇌관련진단비 (기타뇌혈관질환)

####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별표5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 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뇌졸중(뇌출혈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졸중(뇌출혈제외)”이라 함은 【별표143】(뇌졸중(뇌출혈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뇌출혈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뇌출혈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뇌출혈제외)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기타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144】(기타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출혈 또는 경색 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기타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기타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 “뇌졸중(뇌출혈제외)”, “기타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통합형뇌관련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통합형뇌관련 진단비	뇌출혈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졸중(뇌출혈제외)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뇌혈관질환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뇌출혈”, “뇌졸중(뇌출혈제외)”, “기타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형뇌관련진단비(뇌출혈), 통합형뇌관련진단비(뇌졸중(뇌출혈제외)), 통합형뇌관련진단비(기타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각각 1회씩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 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뇌출혈”, “뇌졸중(뇌출혈제외)”, “기타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66.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 특별약관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 (협심증)
2.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3.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 (기타허혈성심장질환)

### 제1조(“협심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협심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20(협심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협심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협심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협심증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3조(“기타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145】(기타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기타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기타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기타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	협심증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성심근경색증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허혈성심장질환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기타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협심증),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기타허혈성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각각 1회씩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기타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67. 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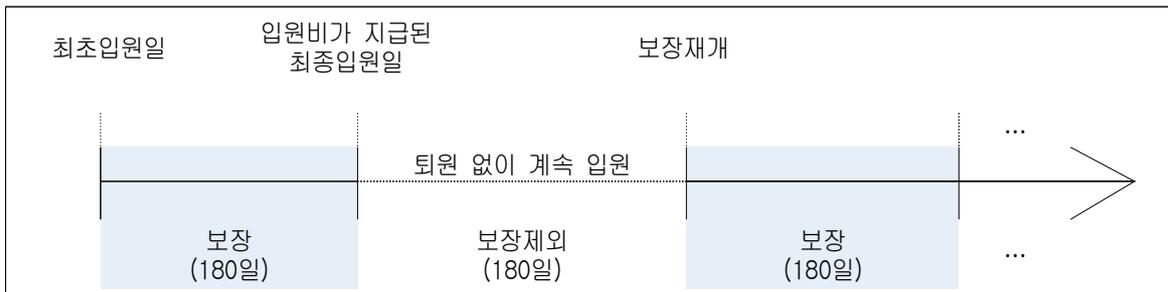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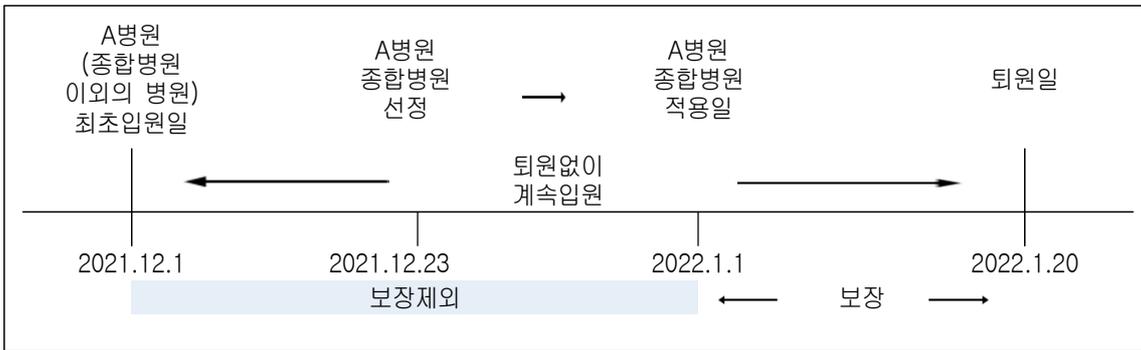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로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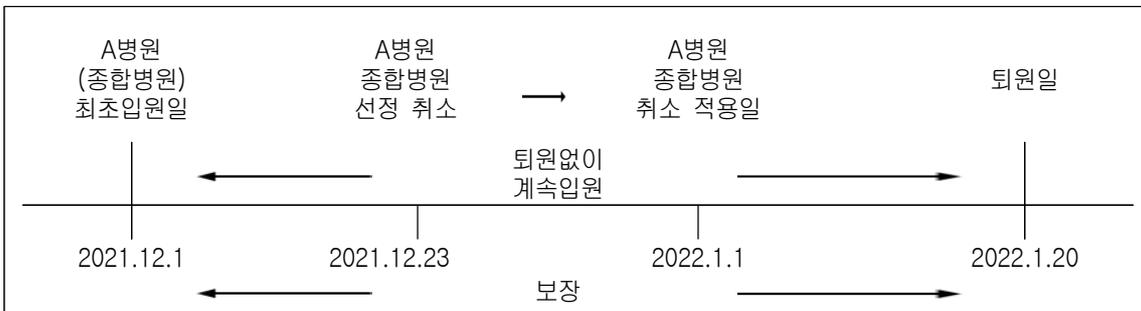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성병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68. 3대질병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제1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형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질병의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6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에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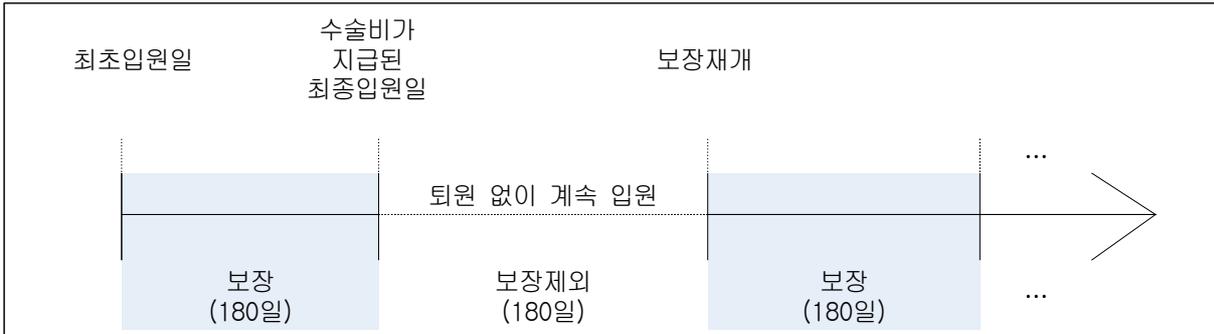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3대질병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이하 “수술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비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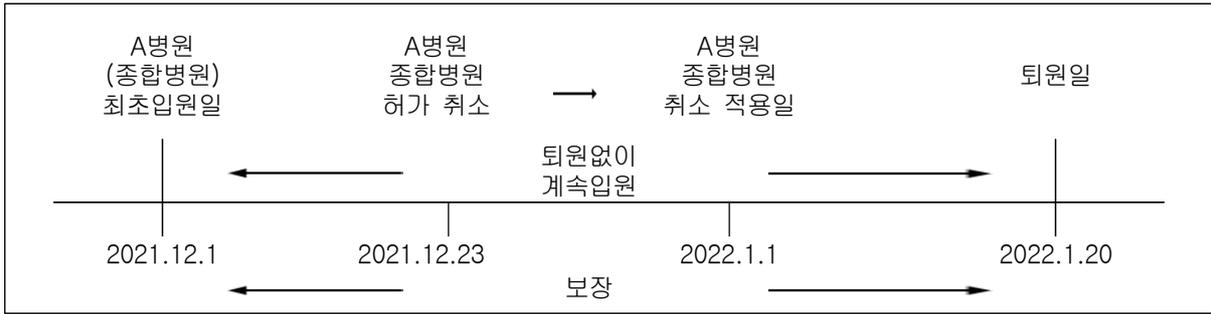
구 분	지급금액
3대질병입원치료수술비 (종합병원)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입원일수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수술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수술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수술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퇴원한 날까지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원 중 수술하였다면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69. 질병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질병의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확정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에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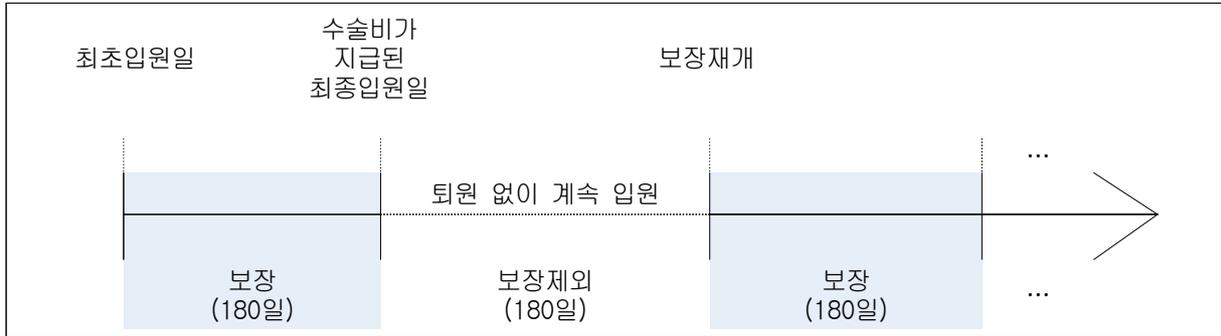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이하 “수술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비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질병입원치료수술비 (종합병원)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입원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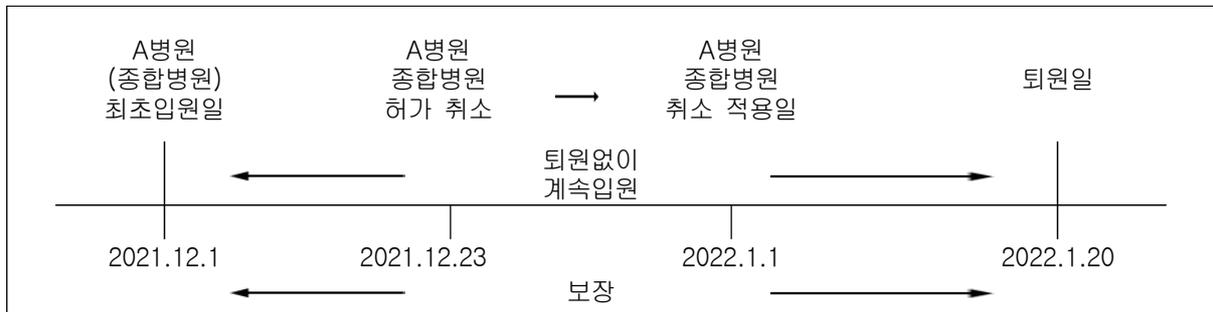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수술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수술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수술비를 계속 보장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퇴원한 날까지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원 중 수술하였다면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도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③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④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70.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

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비(유사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71.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특정소액암”,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 및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릅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또한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①	▲ 기저막(basement membrane)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②
점막하층(submucosa)		

( [ ]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①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 ②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⑥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⑦ 제6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비(유사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72.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체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체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와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사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73.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졸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뇌졸중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74.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별표5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출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뇌출혈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75.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

- 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76.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77.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78. 생활지원금(3대진단)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생활지원금(3대진단)”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지원금(3대진단)은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제2항에서 정한 ‘지급기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 1.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 2.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 3.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지급사유 발생시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 미만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상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 미만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상
생활지원금 (3대진단)	지급기간 5년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지급기간 5년 초과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사유 발생일 예시】**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EX1) 지급사유 발생일 : 2023년 2월 1일 ⇒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 : 1일  
 EX2)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2월 29일 ⇒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 : 29일  
 (단, 해당월에 29일이 없는 경우 28일)

- ② 이 특약에서 ‘지급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단,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5년으로 합니다.

**【생활지원금(3대진단) 지급 예시①】**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30세가입, 60세만기,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3월 10일
- 지급사유 발생일 : 매월 10일
- 보험기간 종료일(전일) : 2053년 1월 1일(2052년 12월 31일)
- 지급기간 : 2024년 3월 10일 ~ 2052년 12월 31일(346회)

■ 보험금 지급 예시 표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4년 3월 10일	25만원
2024년 4월 10일	25만원
...	...
2029년 1월 10일	25만원
2029년 2월 10일	25만원
2029년 3월 10일	5만원
2029년 4월 10일	5만원
...	...
2052년 11월 10일	5만원
2052년 12월 10일	5만원

생활지원금 총액 : 2,930만원

= 25만원(보험가입금액의 50%)  
 × 60회(최초 지급사유발생일부터 5년 미만)  
 + 5만원(보험가입금액의 10%)  
 × 286회(최초 지급사유발생일부터 5년 이상)

**【생활지원금(3대진단) 지급 예시②】**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30세가입, 60세만기,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 : 2025년 3월 10일
- 지급사유 발생일 : 매월 10일
- 보험기간 종료일(전일) : 2053년 1월 1일(2052년 12월 31일)
- 지급기간 : 2025년 3월 10일 ~ 2052년 12월 31일(334회)

■ 보험금 지급 예시 표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5년 3월 10일	50만원
2025년 4월 10일	50만원
...	...
2030년 1월 10일	50만원
2030년 2월 10일	50만원
2030년 3월 10일	10만원
2030년 4월 10일	10만원
...	...
2052년 11월 10일	10만원
2052년 12월 10일	10만원

생활지원금 총액 : 5,740만원

= 50만원(보험가입금액)  
 × 60회(최초 지급사유발생일부터 5년 미만)  
 + 10만원(보험가입금액의 20%)  
 × 274회(최초 지급사유발생일부터 5년 이상)

**【생활지원금(3대진단) 지급 예시③】**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30세가입, 60세만기,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 : 2052년 3월 10일
- 지급사유 발생일 : 매월 10일
- 보험기간 종료일(전일) : 2053년 1월 1일(2052년 12월 31일)
- 지급기간 : 2052년 3월 10일 ~ 2057년 3월 9일(60회)

■ 보험금 지급 예시 표

지급시기	지급금액
2052년 3월 10일	50만원
2052년 4월 10일	50만원
...	...
2057년 1월 10일	50만원
2057년 2월 10일	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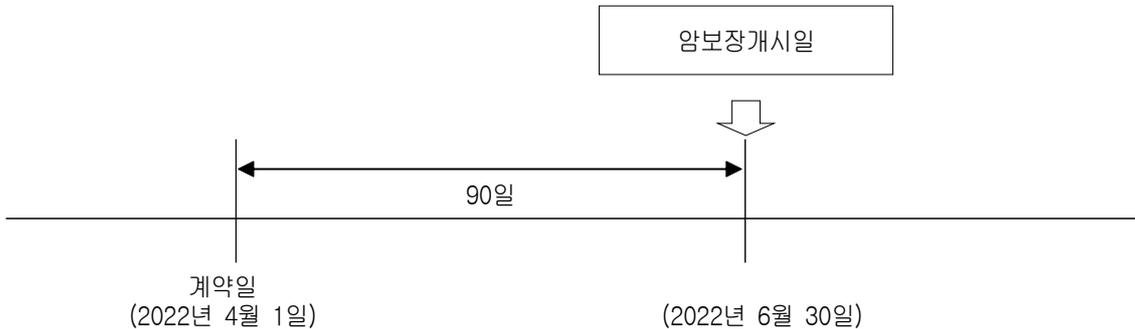
생활지원금 총액 : 3,000만원

= 50만원(보험가입금액) × 60회(지급기간)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생활지원금(3대진단)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생활지원금(3대진단)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사고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사고 사유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생활지원금(3대진단)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생활지원금(3대진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3대진단)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79.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장해)”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장해)은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제2항에서 정한 ‘지급기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생활지원금 (질병80%이상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사유 발생일 예시】**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EX1) 지급사유 발생일 : 2023년 2월 1일 ⇒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 : 1일

EX2)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2월 29일 ⇒ 매월 지급사유 발생일 : 29일  
(단, 해당월에 29일이 없는 경우 28일)

② 이 특약에서 ‘지급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단,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5년으로 합니다.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장해) 지급 예시①】**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30세가입, 60세만기,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3월 10일

- 지급사유 발생일 : 매월 10일

- 보험기간 종료일(전일) : 2053년 1월 1일(2052년 12월 31일)

- 지급기간 : 2024년 3월 10일 ~ 2052년 12월 31일(346회)

■ 보험금 지급 예시 표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4년 3월 10일	25만원
2024년 4월 10일	25만원
...	...
2052년 11월 10일	25만원
2052년 12월 10일	25만원

생활지원금 총액 : 8,650만원

= 25만원(보험가입금액) × 346회(지급기간)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장해) 지급 예시②】**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30세가입, 60세만기,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 : 2025년 3월 10일

- 지급사유 발생일 : 매월 10일

- 보험기간 종료일(전일) : 2053년 1월 1일(2052년 12월 31일)

- 지급기간 : 2025년 3월 10일 ~ 2052년 12월 31일(334회)

■ 보험금 지급 예시 표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5년 3월 10일	50만원
2025년 4월 10일	50만원
...	...
2052년 11월 10일	50만원
2052년 12월 10일	50만원

생활지원금 총액 : 1억 6,700만원

= 50만원(보험가입금액) × 334회(지급기간)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장해) 지급 예시③】**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30세가입, 60세만기,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 : 2052년 3월 10일
- 지급사유 발생일 : 매월 10일
- 보험기간 종료일(전일) : 2053년 1월 1일(2052년 12월 31일)
- 지급기간 : 2052년 3월 10일 ~ 2057년 3월 9일(60회)

■ 보험금 지급 예시 표

지급시기	지급금액
2052년 3월 10일	50만원
2052년 4월 10일	50만원
...	...
2057년 1월 10일	50만원
2057년 2월 10일	50만원

생활지원금 총액 : 3,000만원

= 50만원(보험가입금액) × 60회(지급기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장애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동일한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에서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장해)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80.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⑦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 또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간경화”이라 함은 【별표26】(말기 간경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별표25】(말기 폐질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별표27】(말기 신부전증)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은 매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해당년도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유사암진단)(8대진단용)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②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 끝날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예시】**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EX1) 지급사유 발생일 : 2023년 2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1일

EX2)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마지막날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지급 예시】**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20년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 발생일 : 2025년 3월 10일

■ 납입경과월수 = 27회 (2년 3개월, 2023년 1월 1일~2025년 3월 10일)

■ 잔여보험기간 = 17년 9개월 (이 특약의 보험기간(20년) - 납입경과월수(2년 3개월))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 17년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9개월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3월 10일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5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26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
2041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42년 3월 10일	9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9)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금 총액 : 2,130만원

(12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17년)

+ 9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9개월))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특약의 소멸)**

- ①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은 소멸되어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3.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1.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⑦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 또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4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간경화”이라 함은 【별표26】(말기 간경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별표25】(말기 폐질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별표27】(말기 신부전증)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7조(“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5】(근위축측삭경화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CSF), 근육생검(Muscle Biopsy), 근전도검사(EMG), 경부 X-선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척수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8조(“파킨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파킨슨병”이라 함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운동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며 떨림, 경직, 운동완서의 3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6】(파킨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운동완서】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완만한 것, 육체적 및 정신적 반응이 둔한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파킨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도파민-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 파킨슨병의 평가도구(UPDRS),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파킨슨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은 매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해당년도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유사암진단)(10대진단용)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②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③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 끝날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예시】**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EX1) 지급사유 발생일 : 2023년 2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1일  
 EX2)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마지막날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지급 예시】**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20년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 발생일 : 2025년 3월 10일

■ 납입경과월수 = 27회 (2년 3개월, 2023년 1월 1일~2025년 3월 10일)  
 ■ 잔여보험기간 = 17년 9개월 (이 특약의 보험기간(20년) - 납입경과월수(2년 3개월))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 17년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9개월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3월 10일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5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26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
2041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42년 3월 10일	9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9)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금 총액 : 2,130만원  
 (12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17년)  
 + 9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9개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특약의 소멸)**

- ①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은 소멸되어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또는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3.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파킨슨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2.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⑦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 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 등의 질병”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 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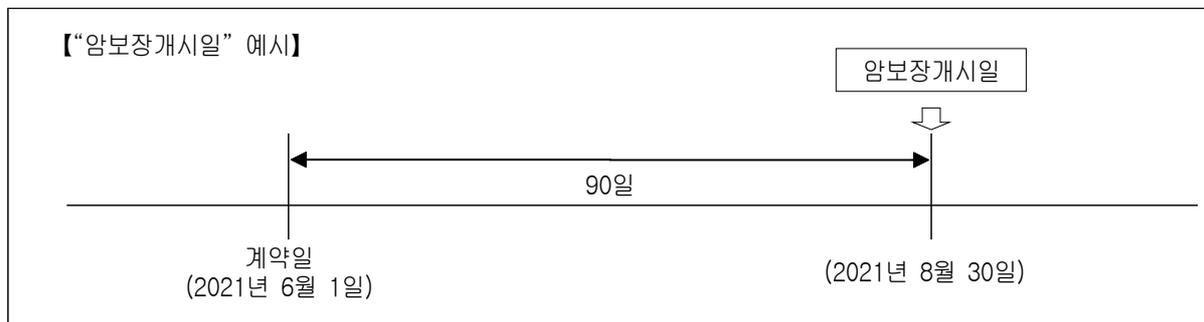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암구분”별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구분	암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암직접치료통원비 (연간30회한)	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유사암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3.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⑦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 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 등의 질병”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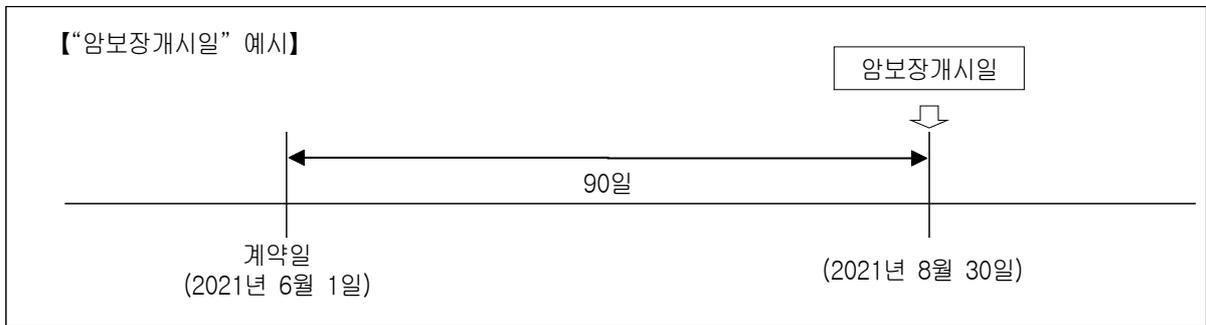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암구분”별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구분	암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암직접치료통원비 (연간10회한)	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유사암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84. 암직접치료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⑦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 등의 질병”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3(종합병원)(【별표168】(기

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암구분”별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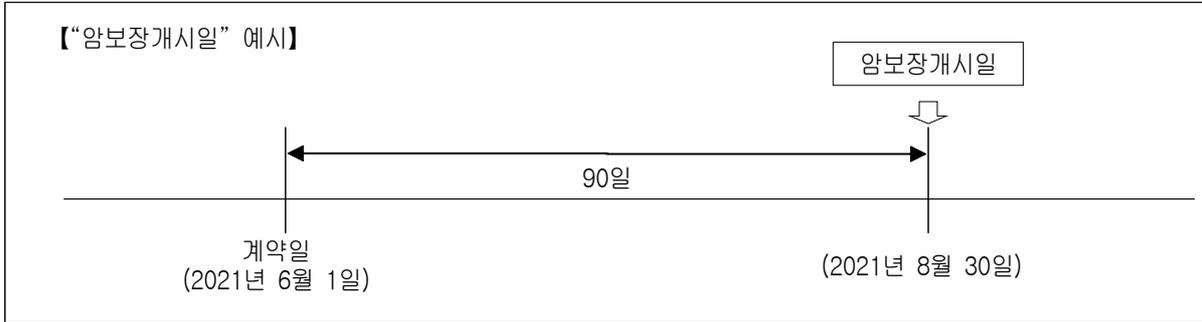
구분	암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암직접치료통원비 (종합병원)(연간30회한)	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유사암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

형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⑦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 등의 질병”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3(종합병원)(【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하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약관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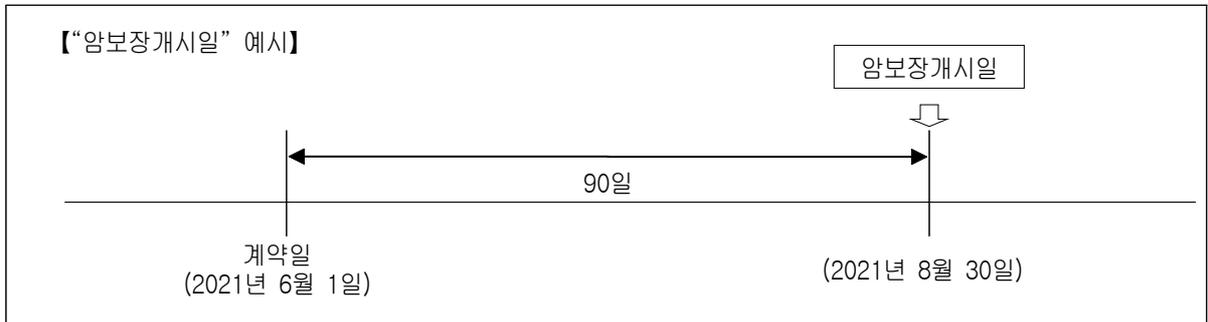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암구분”별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구분	암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암직접치료통원비 (종합병원)(연간10회한)	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유사암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로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6.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체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체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⑦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 등의 질병”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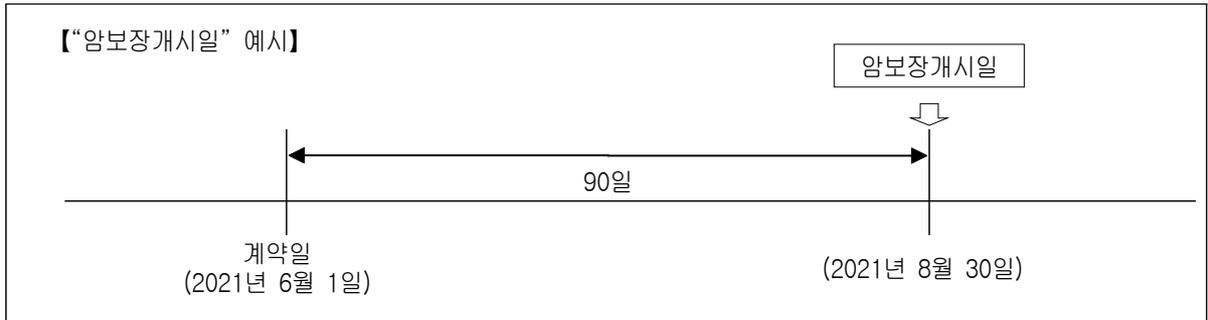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암구분”별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구분	암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암직접치료통원비 (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유사암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87.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⑦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 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 등의 질병”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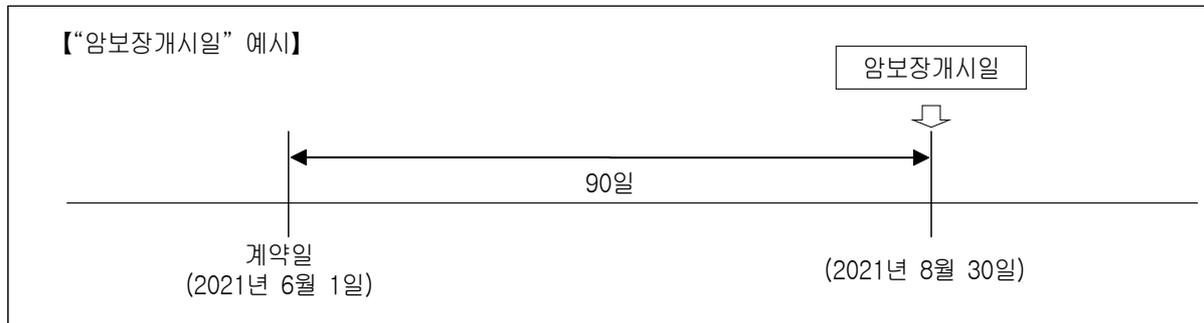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암구분”별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구분	암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암직접치료통원비 (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유사암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로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8. 뇌졸중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졸중통원비(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89. 뇌졸중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졸중통원비(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90. 뇌졸중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3(종합병원)(【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졸중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91. 뇌졸중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3(종합병원)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졸중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92. 뇌졸중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졸중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 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93. 뇌졸중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졸중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 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94. 뇌혈관질환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차액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통원비(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95. 뇌혈관질환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통원비(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96.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차액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3(종합병원)(【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 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충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97.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3(종합병원)【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

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 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98.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99.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1.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

- 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3(종합병원)(【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3.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3(종합병원)(【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4.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5.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6.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7.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

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8.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3(종합병원)(【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9.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3(종합병원)(【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10.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3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1.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의 지정)(【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연간 10회 한도로 통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이하 ‘통원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비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통원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2. 암수술비(유사암제외)(25%체증형)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작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8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8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라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비(유사암제외)(25%체증형)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암수술비(유사암제외) (25%체증형)	-	체증형 지급금액의 50%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 ② “체증형 지급금액”은 수술회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구분	체증형 지급금액	
암수술비(유사암제외) (25%체증형)	1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2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25%
	3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75%
	5회차 수술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2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 ②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 암수술비(유사암제외)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3. 유사암수술비(25%체증형) 특별약관

### 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니다.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8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8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수술비(25%체증형)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유사암수술비 (25%체증형)	체증형 지급금액의 50%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 ② “체증형 지급금액”은 수술회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구분	체증형 지급금액	
유사암수술비 (25%체증형)	1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2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25%
	3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75%
	5회차 수술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20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 유사암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14. 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II (25%체증형) 특별약관**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25%체증형)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 (25%체증형)	체증형 지급금액의 50%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② “체증형 지급금액”은 수술회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구분	체증형 지급금액	
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 (25%체증형)	1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2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25%
	3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75%
	5회차 수술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200%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25%체증형)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25%체증형)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5. 질병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질병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질병1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2. 질병2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3. 질병3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4. 질병4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5. 질병5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6. 질병6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7. 질병7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8. 질병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보장

### 제1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수술 및 시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49】(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시술코드(이하 “수술시술코드”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 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로서, 진단과 시술명, 연령 등에 따라 입원환자를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 특약은 KDRG 버전 4.5(2023.1.1. 시행)의 ADRG 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 【ADRG(Adjacent DRG)】

환자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의료행위<sup>주1)</sup>와 진단명<sup>주2)</sup>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주1) 의료행위 :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 가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주2) 진단명 : 진단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신체부위나 질병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시술코드에서 향후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개정으로 동일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수술시술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약의 체결시점에서 정한 수술시술코드를 따릅니다. 다만, 이 특약체결시점 이후 “ADRG”가 신규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49】(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수술시술코드를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술 및 시술 받은 시점에서 부여된 의료행위, 진단명 및 주진단범주(MDC) 등을 이 특약 체결시점의 “KDRG”기준에 적용합니다.
- 신의료수술 도입 등의 이유로 급여항목이 신규 추가되고 피보험자가 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를 확인한 후 이 특약 체결시점에 정한 수술시술코드를 기준으로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예시】**

이 특약 체결시점에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시술코드는 A010(KDRG 버전 4.5)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은 시점의 수술시술코드가 A080(KDRG 버전 5.0)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A010(KDRG 버전 4.5)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에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 및 시술이 향후 비급여항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수술 및 시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검사료) 및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방사선 치료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선형가속기(LINAC) 정위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치료는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선형가속기이용	HD1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선형가속기이용	HD112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HD115
양성자치료[1회당]	HD12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사이버나이프이용	HD2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사이버나이프이용	HD2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7】(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질병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이하 “수술비(시술포함)”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시술코드 당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질병1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2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3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4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5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6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7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시술코드에 한하여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시술코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시술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수술시술종류가 높은 하나의 수술시술코드에 한하여 해당 종의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ADRG는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더라도 “K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됩니다. 이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49】(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의 수술시술종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유방재건술(J051)”(3종)과 “유방절제술(J061)”(7종)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ADRG는 “유방재건술(J051)”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유방절제술(J061)”에 해당하는 7종의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속입원 중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비(시술포함)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시술한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시술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제1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아래의 진단명 및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의 경우)(E012)”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포함)를 지급합니다.

- 진단명 : 기관의 악성 신생물(C33)
- 의료행위 :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선형가속기이용(HD111)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서 해당 입원기간 또는 통원일에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이 발생하는 다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 수술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포함)와 제5항의 수술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포함)를 각각 지급합니다.
- ⑦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1)», 「개복에 의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N032)», 「분만및유산후관련장애후수술(수술시행)(O0110)」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4.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5.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 ~ P96)
- ③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49】(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의 주2)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6. 심방세동및조동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심방세동 및 조동”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심방세동 및 조동”이라 함은 【별표156】(심방세동 및 조동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심방세동 및 조동”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심전도 혹은 심조율 기록지,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심방세동 및 조동”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또는 의학검사 방법에 의해 진단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방세동 및 조동”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심방세동 및 조동”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심방세동 및 조동”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심방세동및조동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심방세동및조동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심방세동 및 조동”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방세동및조동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심방세동 및 조동”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심방세동 및 조동”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방세동및조동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심방세동 및 조동”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심방세동 및 조동”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방세동및조동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17.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갑상선기능저하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함은 【별표157】(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선천성 요오드결핍증후군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갑상선자극 호르몬(TSH) 검사, 유리 싸이록신(free T4)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감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감상선기능저하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감상선기능저하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감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감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감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보험가입금액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감상선기능저하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감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감상선기능저하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감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감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감상선기능저하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감상선기능저하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8. 뇌전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뇌전증”이라 함은 【별표158】(뇌전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거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전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검안서 제외)상 사인이 “뇌전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전증”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전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뇌전증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뇌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전증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전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전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뇌전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9.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일과성뇌허혈발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일과성뇌허혈발작”이라 함은 【별표159】(일과성뇌허혈발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완전기억상실(G45.4), 신생아의 신생아뇌허혈(P91.0), 뇌출혈 및 뇌경색증(I60~I63), 뇌전증(G40), 편두통(G43), 실신 및 허탈(R55)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일과성뇌허혈발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의학적으로 “일과성뇌허혈발작”으로 인정되는 병력·신경학적 검진 및 뇌영상검사 등 해당 질병의 진단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정해 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일과성뇌허혈발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또는 의학검사방법에 의해 진단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일과성뇌허혈발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일과성뇌허혈발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일과성뇌허혈발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진단확정시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일과성뇌허혈발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일과성뇌허혈발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일과성뇌허혈발작”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일과성뇌허혈발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일과성뇌허혈발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20. 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의

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후 4대경증 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후 4대경증 합병증”이라 함은 【별표160】(항암방사선치료후4대경증합병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항암방사선치료후 4대경증 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항암방사선치료후 4대경증 합병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중증 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중증 합병증”이라 함은 【별표161】(항암방사선치료후5대중증합병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중증 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중증 합병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항암방사선치료후 4대경증 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방사선치료후4대경증합병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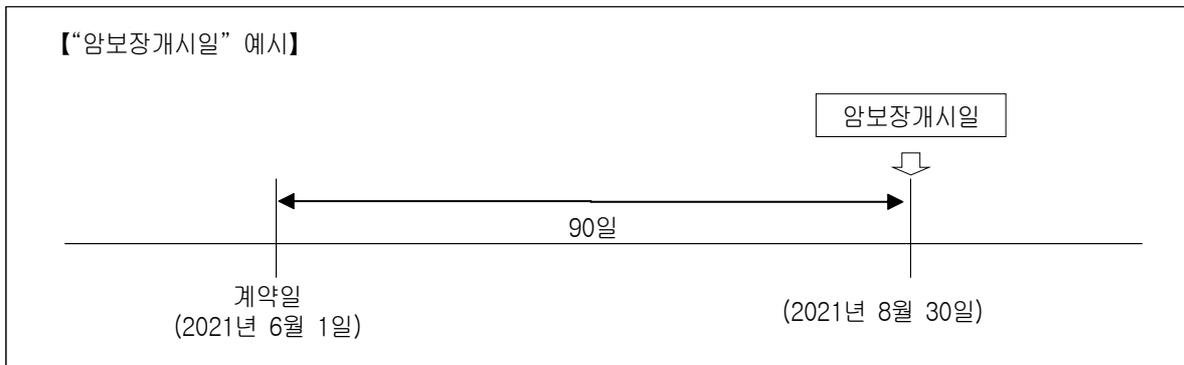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항암방사선 치료후 4대경증 합병증 진단비 (최초1회한)	암	-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중증 합병증” 중 1년 이내에 골괴사, 방사선장염, 방사선방광염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90일 이내에 폐렴, 뇌부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방사선치료후5대중증합병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항암방사선 치료후 5대중증 합병증 진단비 (최초1회한)	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내 “항암방사선치료후 4대경증 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다만,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중증 합병증” 중 폐렴 또는 뇌부종의 경우에는 90일)내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중증 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항암방사선치료후 4대경증 합병증” 또는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중증 합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진단확정일이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다만,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중

증 합병증” 중 폐렴 또는 뇌부종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8조(특약의 소멸)**

- 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후4대경증합병증진단비, 항암방사선치료후5대중증합병증진단비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각각 1회씩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항암방사선치료후 4대경증 합병증” 또는 “항암방사선치료후 5대중증 합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 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21. 항암방사선악물치료후5대질병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 또는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2대질병”이라 함은 【별표162】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2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2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2대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3대질병”이라 함은 【별표163】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3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3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3대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2대질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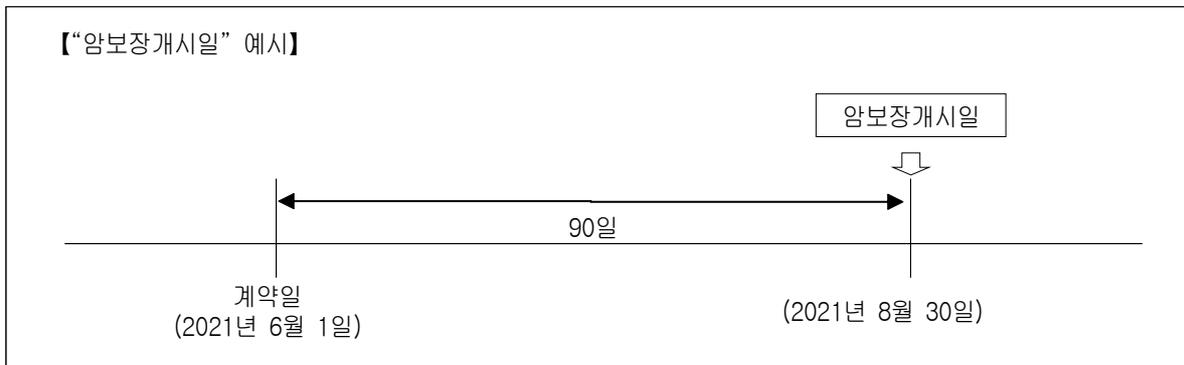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후 2대질병 진단비 (최초1회한)	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3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3대질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후 3대질병 진단비 (최초1회한)	암	-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2대질병” 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3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진단확정일이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8조(특약의 소멸)**

- 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2대질병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3대질병진단비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각각 1회씩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2대질병” 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3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 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22. 특정순환계질환항응고제치료비(와파린/NOAC)(급여, 최초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특정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별표164】(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제2조(“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라 함은 의사가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에 해당하는 약제를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처방한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혈액응고저지제”에 준하는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약제 중 아래의 성분명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 wafarin sodium
- ③ 제2항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 제3조(“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라 함은 의사가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NOAC”에 해당하는 약제를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처방한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NOAC(New Oral anticoagulant)”이라 함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혈액응고저지제”에 준하는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약제 중 경구용 혈액응고인자 Xa저해제나 경구용 트롬빈 직접 저해제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에서 정한 분류번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p><b>【경구용 항응고제-NOAC(New Oral anticoagula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구용 혈액응고인자 Xa 저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ixaban 경구제,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 Rivaroxaban 경구제</li> </ul> </li> <li>- 경구용 트롬빈 직접 저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bigatran 경구제</li> </ul> </li> </ul>
---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특정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특정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 또는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순환계질환항응고제치료비(와파린/NOAC)(급여,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 또는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 처방일요건 등을 일부만 충족한 상태에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 또는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 처방일 요건 등을 전부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전부 충족한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보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치료” 또는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치료” 처방일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충족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보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급여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치료일수” 또는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NOAC) 치료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포함),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항응고제치료비(와파린/NOAC)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23. 욕창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욕창”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욕창”이라 함은 【별표165】(욕창 분류표)에서 정한 욕창개양 및 압박부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욕창개양 및 압박부위란 신체에 일정한 부위에 압력 혹은 마찰과 응전력이 결합한 압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가해짐으로써 모세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허혈성 조직 괴사로 생기는 피부나 하부조직의 손상상태를 의미합니다.
- ③ 제1항의 “욕창”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욕창”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욕창”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욕창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욕창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육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육창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육창”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육창”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육창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육창”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육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육창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24. 육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 특별약관**

**제1조(“중등증이상 육창”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등증이상 육창”이라 함은 【별표166】(중등증이상 육창 분류표)에서 정한 육창계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와 요창계양 및 압박부위 제4단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육창계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란 밑에 있는 근막까지 확장된 피하조직의 과사와 손상을 포함한 전층 피부손실을 동반한 육창(압박)계양을 의미합니다.
- ③ 제1항의 육창계양 및 압박부위 제4단계란 근육, 뼈, 또는 지지구조(즉, 힘줄 또는 관절낭)의 과사를 동반한 육창(압박)계양을 의미합니다.
- ④ 제1항의 “중등증이상 육창”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등증이상 육창”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중등증이상 육창”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육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육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중등증이상 옥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옥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등증이상 옥창”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등증이상 옥창”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옥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제1조(“중등증이상 옥창”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등증이상 옥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옥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25.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15회한) 특별약관

### 제1조(“질병재활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함은 질병 자체 또는 질병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재활치료(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질병재활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

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제2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질병재활치료(급여)”(이하 “입원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이하 “통원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15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15회한)은 연간 발생한 “입원 질병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질병재활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5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산정의 기준일자는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26. 질병재활치료비(급여, 연간30회한) 특별약관

### 제1조(“질병재활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함은 질병 자체 또는 질병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재활치료(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질병재활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

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제2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질병재활치료(급여)”(이하 “입원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이하 “통원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재활치료비(급여, 연간30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재활치료비(급여, 연간30회한)은 연간 발생한 “입원 질병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질병재활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산정의 기준일자는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27. 질병재활치료비(급여, 연간60회한) 특별약관**

**제1조(“질병재활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함은 질병 자체 또는 질병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

- 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재활치료(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질병재활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제2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질병재활치료(급여)”(이하 “입원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질병재활치료(급여)”(이하 “통원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재활치료비(급여, 연간60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재활치료비(급여, 연간60회한)은 연간 발생한 “입원 질병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질병재활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6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산정의 기준일자는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 해 및 질 병 관 련 특 별 약 관 】**

**1.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같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부목(Splint cast)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제1조(“깁스(Cast)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5대장기이식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5대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제1조(“5대장기이식수술” 등의 정의)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장기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각막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제1조(“각막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각막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단체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뇌혈관질환 · 심장관련질병 · 인공관절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인공관절수술”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이라 함은 아래에 정한 인공관절치환수술 및 인공 골두삽입술을 말합니다. 단,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단, 인공 골두삽입술은 제외)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 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제외합니다.

1. 인공관절치환수술이라 함은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의학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특수 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로 이하 “인공관절”이라 함)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2. 인공골두삽입술이라 함은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3조(“심장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심장관련질병”이라 함은 【별표58】(심장관련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류마티스열,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쇄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수막알균성 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장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조(“인공관절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거나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제3조(“심장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심장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8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십자인대 · 반월판연골 · 아킬레스건수술비(각 연간1회한, 급여) 특별약관

### 제1조(“십자인대질환” 및 “급여 십자인대수술”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십자인대질환”이라 함은 【별표14】(십자인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십자인대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십자인대수술”이라 함은 넙다리뼈와 정강뼈 사이의 무릎관절 안에 위치한 전방십자인대 또는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십자인대를 접합, 성형 또는 재건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급여 십자인대 수술”은 【별표15】(급여 십자인대질환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십자인대 수술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십자인대수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십자인대수술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제2조(“반월판연골질환” 및 “급여 반월판연골수술”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반월판연골질환”이라 함은 【별표16】(반월판연골질환 분류표)에서 정의한 상병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반월판연골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반월판연골수술”이라 함은 넙다리뼈와 정강뼈 고평부(Plateau) 사이에서 있는 ‘C’ 자형의 발달모양의 연골이 손상되어 반월판(반월상)연골을 봉합, 절제 또는 이식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급여 반월판연골수술”은 보험기간 중에 【별표17】(급여 반월판연골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반월판연골수술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반월판연골수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반월판연골수술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제3조(“아킬레스건질환” 및 “급여 아킬레스건수술”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질환”이라 함은 【별표18】(아킬레스건질환 분류표)에서 정의한 상병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아킬레스건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아킬레스건수술”이라 함은 발뒤꿈치뼈(Calcaneus)와 종아리 근육 사이에 있는 힘줄인 아킬레스건이 손상되어 아킬레스건을 봉합,재건 또는 연장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급여 아킬레스건수술”은 보험기간 중에 【별표19】(급여 아킬레스건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급여 아킬레스건수술 인정기준”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아킬레스건수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아킬레스건수술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술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급여 십자인대수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급여 반월판연골수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30%
“급여 아킬레스건수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1.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십자인대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2. “반월판연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반월판연골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3.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아킬레스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각 세부보장은 수술 부위, 수술 종류 등에 관계없이 연간 2개 부위 또는 하나의 부위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각 보장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수술을 받은날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8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경증이상치매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경증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경증이상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결과가 1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애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될 수 있습니다.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③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하며,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증이상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됩니다.
- ④ 제3항의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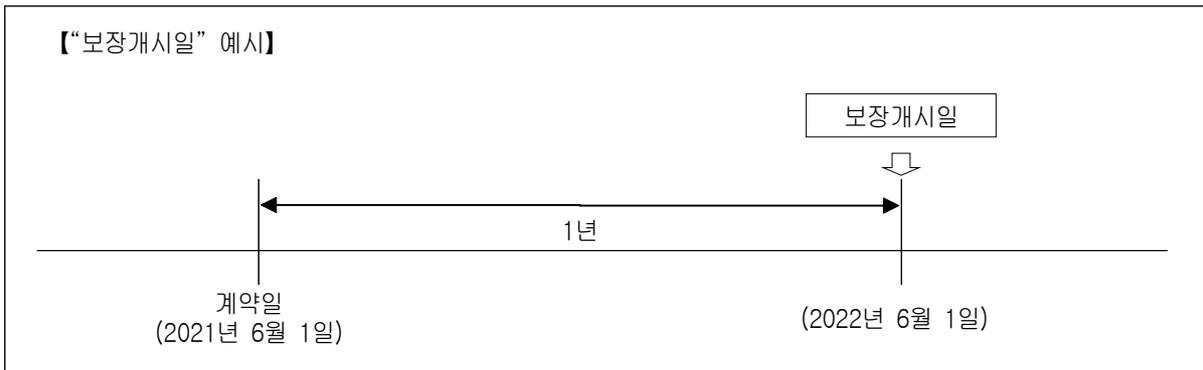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제1조(“경증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경증이상치매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경증이상치매진단비	-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경증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경증이상치매상태”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증이상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경증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경증이상치매상태”에 따라 CDR 1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도 경증이상치매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9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조(특약의 무효)**

이 특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제11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경증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증이상치매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서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13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7. 중증치매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다음 중 제1호에서 정한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 version), 1989년)의 결과가 19점 이하(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이고, 동시에 다음 중 제2호에서 정한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1.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 1989년)는 인지기능 선별검사로서 점수의 범위는 0~30점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2. CDR척도(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③ “중증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

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됩니다.

- ④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인)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치매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인)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가 되어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 “중증치매상태”가 지속되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치매진단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9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9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0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치매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특별약관

#### 제1조(“응급실”, “응급환자”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응급환자”이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9.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

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9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등급)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 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0.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9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 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 장기요양진단비(1,2,3등급)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2,3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9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2,3등급)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할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 장기요양진단비(1,2,3,4등급)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2,3,4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8】(기타단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9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2,3,4등급)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 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장기요양진단비(1,2,3,4,5등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2,3,4,5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9조(특약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2,3,4,5등급)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급여촬영”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p><b>【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b>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얻는 핵의학 영상법</p> <p><b>【의료행위】</b>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p>
--

- ② 제1항의 “급여촬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급여촬영”은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 촬영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사에 의하여 질병 및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제1조(“급여촬영”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급여촬영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 1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지원비 (급여,연간1회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의 진단 및 치료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는 질병 및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 종류 및 부위와 상관없이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촬영”을 받은 날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3회한) 특별약관**

**제1조(“급여 창상봉합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여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별표 87】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 창상봉합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급여 창상봉합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3회한)(이하 “창상봉합술치료비”라 합니다)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상봉합술치료비는 연간 3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③ 제2항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

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구분	창상붕합술(안면 또는 경부)	창상붕합술(안면과 경부 이외)
지급기준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6. 창상붕합술치료비(안면/경부)(급여, 1일1회한, 연간3회한) 특별약관

### 제1조(“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창상붕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붕합술”이라 함은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별표88】 급여 안면/경부 창상붕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은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을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경부)(급여,1일1회환,연간3회환)(이하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경부)”)라 합니다)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경부)는 연간 3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③ 제2항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산정특례(뇌혈관)치료비(연간1회환)(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89】(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없이 자동등록이 되며, 등록시 최대 30일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동안 재수술시 재수술일로부터 최대30일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늘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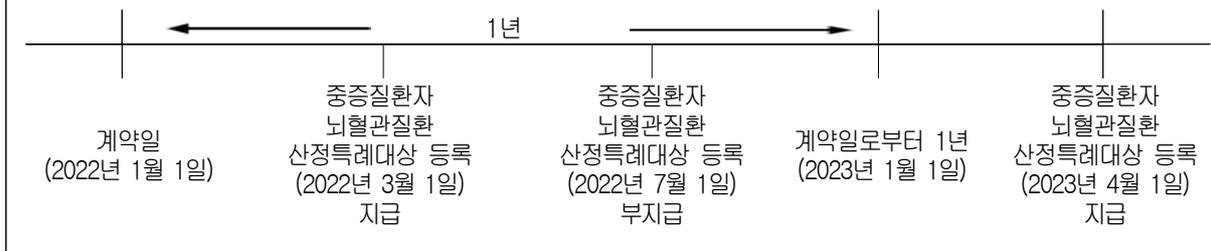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산정특례(뇌혈관)치료비(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산정특례(뇌혈관) 치료비(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의 산정특례(뇌혈관)치료비(연간1회한)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산정특례(뇌혈관) 치료비(연간1회한) 보장 예시】**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뇌혈관) 치료비(연간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산정특례(심장)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90】(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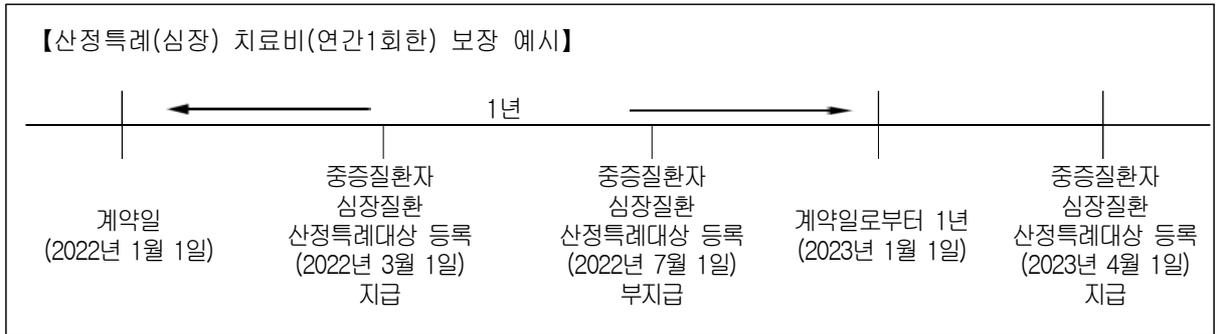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증질환자 심장질환의 산정특례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없이 자동등록이 되며, 등록시 최대 30일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심장질환 산정특례 기간 동안 재수술시 재수술일로부터 최대30일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늘어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산정특례(심장)치료비(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산정특례(심장) 치료비(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의 산정특례(심장)치료비(연간1회한)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 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심장) 치료비(연간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131】(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제외)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제외)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신생아의 호흡곤란(상병코드 P22.0, P22.8, P22.9)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인체면역바이러스질환(상병코드 B20~B24)은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제외)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 치료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비갱신형 및 갱신형의 최초계약		갱신형의 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 치료비(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16 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재등록】**  
법령에서 정한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기간(5년) 종료시점에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이며, 해당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 산정특례(중증치매)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132】(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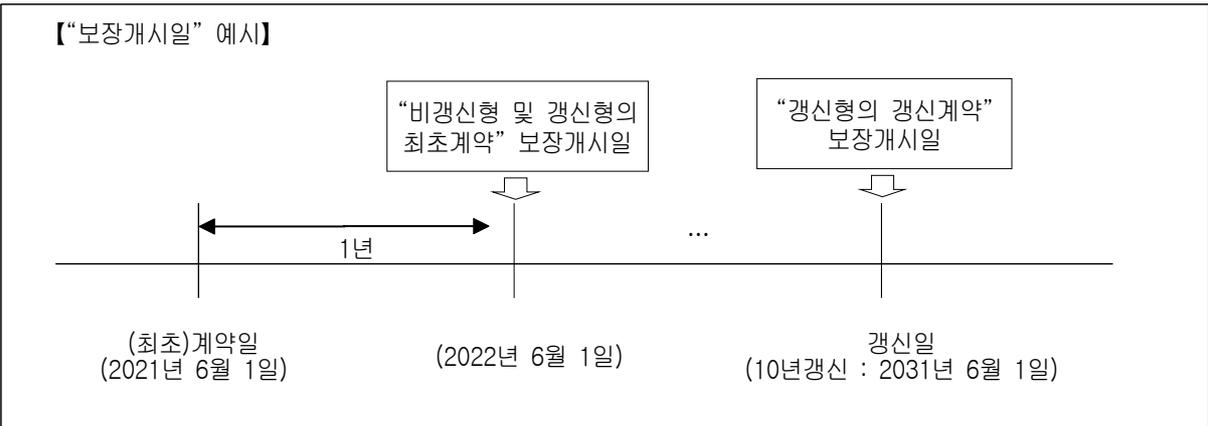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치매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중증치매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단 【별표132】(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의 특정기호 V810의 산정특례는 등록일 기준 최대 120일간 적용이 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특례(중증치매)치료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중증치매)치료비(최초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단,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등록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③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중증치매)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재등록】**

법령에서 정한 중증치매 산정특례기간(5년, 단 【별표132】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의 특정기호 V810의 경우 연간 최대120일) 종료시점에 등록된 중증치매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9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5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조(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장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1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중증치매)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3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1.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은 매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해당년도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1.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2.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3.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구 분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3대진단)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②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 끝날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예시】**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EX1) 지급사유 발생일 : 2023년 2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1일  
 EX2)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마지막날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지급 예시】**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20년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지급사유 발생일 : 2025년 3월 10일

- 납입경과월수 = 27회 (2년 3개월, 2023년 1월 1일~2025년 3월 10일)
- 잔여보험기간 = 17년 9개월 (이 특약의 보험기간(20년) - 납입경과월수(2년 3개월))
  -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 17년
  -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9개월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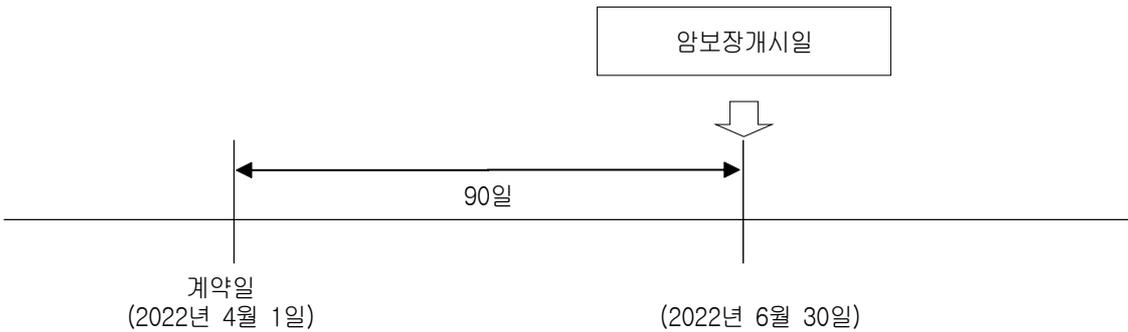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5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26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
2041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42년 3월 10일	9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9)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금 총액 : 2,130만원  
 (12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17년)  
 + 9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9개월))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사고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사고 사유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이미 이 특약에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장애지급률 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⑩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2.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3】 (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

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별표5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은 매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해당년도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1.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2.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5.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구 분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5대진단)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②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예시】**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EX1) 지급사유 발생일 : 2023년 2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1일  
 EX2)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마지막날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지급 예시】**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20년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지급사유 발생일 : 2025년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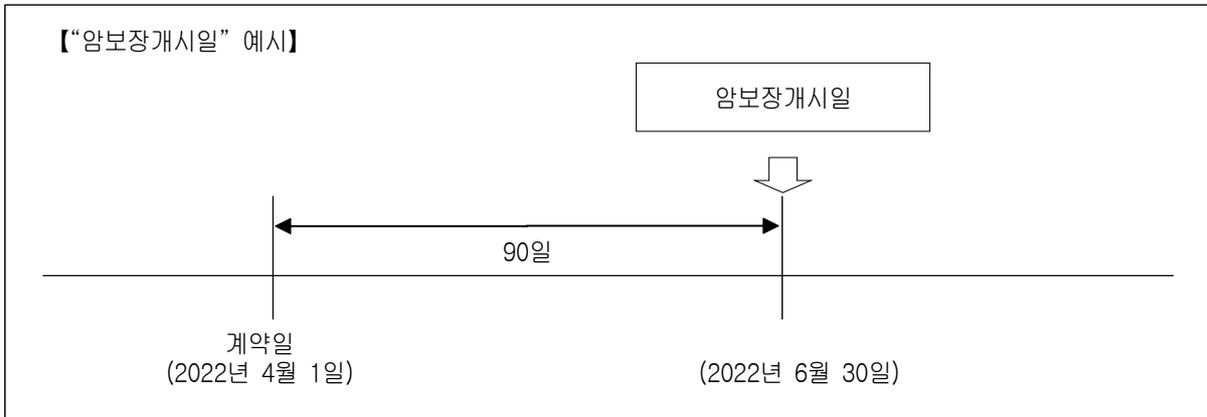
- 납입경과월수 = 27회 (2년 3개월, 2023년 1월 1일~2025년 3월 10일)
- 잔여보험기간 = 17년 9개월 (이 특약의 보험기간(20년) - 납입경과월수(2년 3개월))
  -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 17년
  -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9개월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3월 10일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5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26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
2041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42년 3월 10일	9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9)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금 총액 : 2,130만원  
 (12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17년)  
 + 9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9개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을 지급합니다.
- ④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⑥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사고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사고 사유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⑧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애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이미 이 특약에서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장애지급률 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⑪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4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간경화”이라 함은 【별표26】(말기 간경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별표25】(말기 폐질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별표27】(말기 신부전증)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은 매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해당년도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1.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2.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4.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5.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6. 제4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간경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7. 제5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8. 제6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구 분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8대진단)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②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예시】**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EX1) 지급사유 발생일 : 2023년 2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1일

EX2)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마지막날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지급 예시】**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20년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지급사유 발생일 : 2025년 3월 10일

- 납입경과월수 = 27회 (2년 3개월, 2023년 1월 1일~2025년 3월 10일)
- 잔여보험기간 = 17년 9개월 (이 특약의 보험기간(20년) - 납입경과월수(2년 3개월))
  -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 17년
  -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9개월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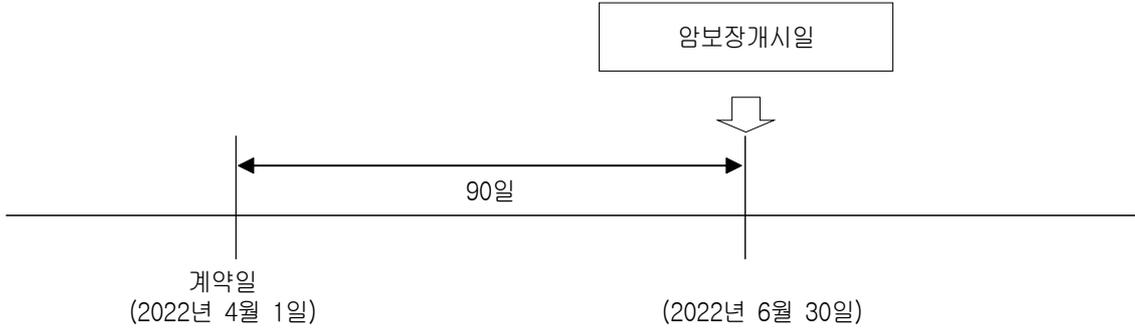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5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26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
2041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42년 3월 10일	9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9)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금 총액 : 2,130만원  
(12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17년)  
+ 9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9개월))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또는 “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을 지급합니다.
- ④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⑥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사고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사고 사유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⑧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이미 이 특약에서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⑪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10조(특약의 소멸)

- ①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또는 “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12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 특별약관

###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56】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별표57】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임이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 (“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간경화”이라 함은 【별표26】(말기 간경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별표25】(말기 폐질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별표27】(말기 신부전증)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5】(근위축측삭경화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CSF), 근육생검(Muscle Biopsy), 근전도검사(EMG), 경부 X-선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척수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파킨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파킨슨병”이라 함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운동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며 떨림, 경직, 운동완서의 3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6】(파킨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운동완서】**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완만한 것, 육체적 및 정신적 반응이 둔한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파킨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도파민-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 파킨슨병의 평가도구(UPDRS),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파킨슨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은 매년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해당연도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1.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2.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5.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6. 제4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간경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7. 제5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8. 제6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9. 제7조(“근위축측상경화증(루게릭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근위축측상경화증(루게릭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10.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파킨슨병보장개시일” 이후 제8조(“파킨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파킨슨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구 분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10대진단)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②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이 끝날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예시】**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EX1) 지급사유 발생일 : 2023년 2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1일

EX2) 지급사유 발생일 : 2024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마지막날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 지급 예시】**

-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일 (20년만기 전기납,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지급사유 발생일 : 2025년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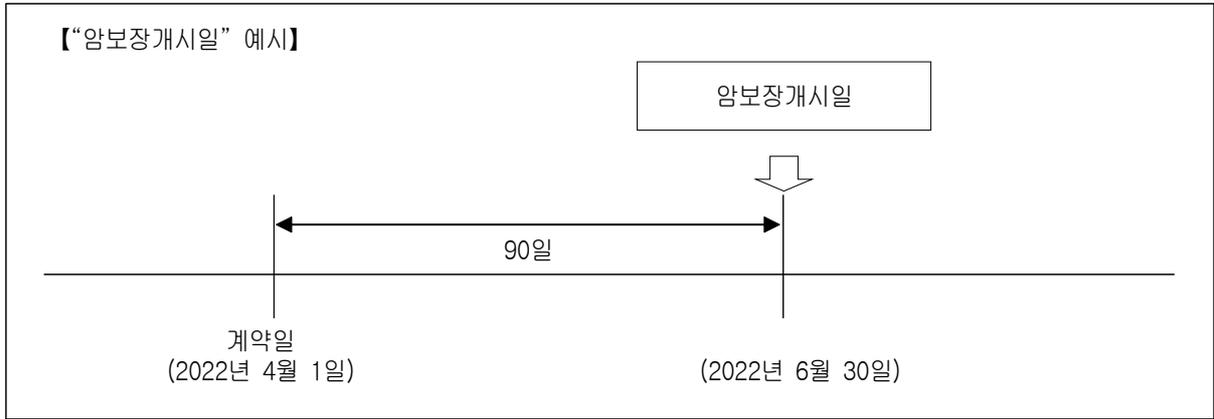
- 납입경과월수 = 27회 (2년 3개월, 2023년 1월 1일~2025년 3월 10일)
- 잔여보험기간 = 17년 9개월 (이 특약의 보험기간(20년) - 납입경과월수(2년 3개월))
  -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 : 17년
  -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월) : 9개월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3월 10일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5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26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
2041년 3월 10일	12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2042년 3월 10일	90만원 (보험가입금액10만원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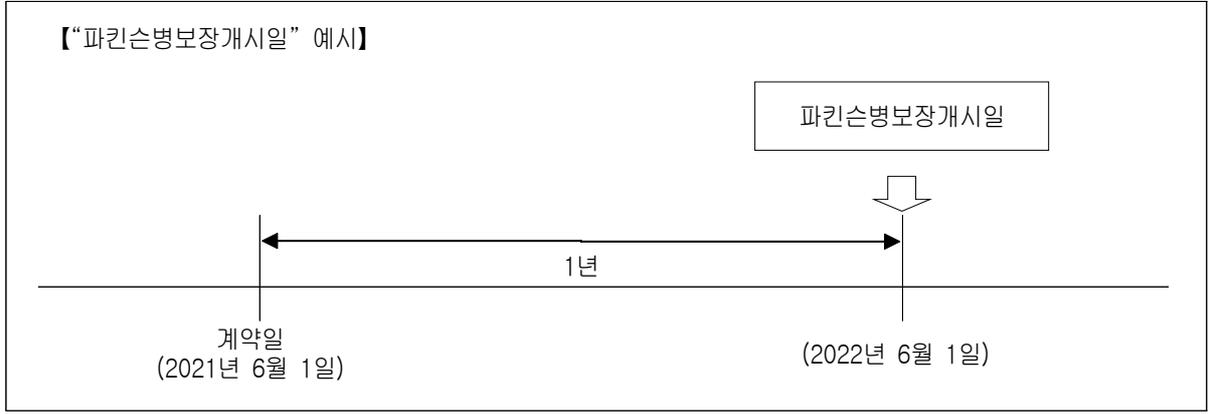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금 총액 : 2,130만원  
(12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12)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기간(17년)  
+ 90만원(보험가입금액10만원 × 보험료 납입면제지원 잔여기간(9개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파킨슨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파킨슨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이하 “파킨슨병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또는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파킨슨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파킨슨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을 지급합니다. 다만, “파킨슨병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⑥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⑧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사고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사고 사유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⑩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⑪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⑫ 이미 이 특약에서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장애지급률 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⑬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12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1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2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1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 1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6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2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6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7조(특약의 소멸)**

- ①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 또는 “파킨슨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파킨슨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파킨슨병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 1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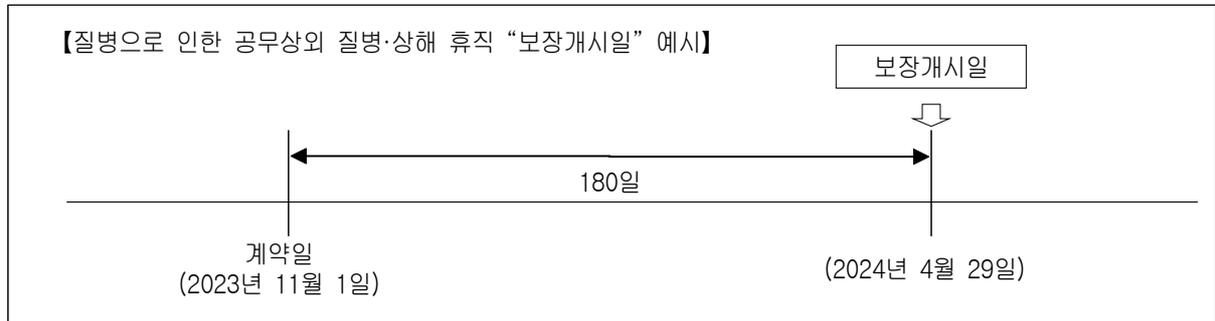
## 25. 공무원외 질병·상해 휴직일당(1일이상365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로 “공무원외 질병·상해 휴직”에 들어간 경우, 휴직을 시작한 첫날부터 휴직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무원외 질병·상해 휴직일당(1일이상365일한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지원금의 지급일수는 1회 휴직당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휴직을 시작한 날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	휴직을 시작한 날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휴직을 시작한 날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상해		100%		
질병	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	-	25%	50%
	기타	-	50%	100%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상해로 인한 휴직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공무원외 질병·상해 휴직】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서 정한 공무원외 질병 또는 상해를 사유로 한 휴직을 말합니다.

#### 【공무원외 질병 또는 상해】

국·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2](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에 따라 공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또는 상해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복직할 후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재휴직 하는 경우에는 이를 1회 휴직으로 보아 각 휴직기간을 합산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휴직기간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복직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휴직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365일을 한도로 공무원외 질병·상해 휴직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규정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으로서, '질병·상해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불임·난임 치료
  - 2. 공무상 질병 또는 상해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상해 또는 질병으로 휴직신청 당시 제출서류)
- 4. 휴직사유(공무상외 여부)가 기재된 휴직증명서(해당 학교의 장(長) 발행) 및 휴직·복직에 관한 인사발령통지서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교직원 질병·상해퇴직보험금(사망)(유치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상해로 인해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교직원 질병·상해퇴직보험금(사망)(유치원)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은 인사행정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하며,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교직원 질병·상해퇴직보험금(사망)(유치원)’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국·공·사립유치원의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및 행정직원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자는 제1항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퇴직에 관한 인사발령통지서
- 4. 퇴직증명서(해당 학교의 장(長) 발행) 등 객관적으로 퇴직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사망 퇴직의 경우 사망 확인서 제출)
-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교직원 질병·상해퇴직보험금(직권면직, 사망)(유치원이외학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상해 휴직 후 직권면직을 당하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교직원 질병·상해퇴직보험금(직권면직, 사망)(유치원 이외 학교)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사유	지급금액
질병·상해 휴직 후 직권면직	보험가입금액의 10%
사망 퇴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질병·상해 휴직후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질병 또는 상해로 휴직 후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임용권자로부터 직권으로 면직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퇴직사유 중 사망 퇴직은 인사행정상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하며,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교직원 질병·상해퇴직보험금(직권면직, 사망)(유치원 이외 학교)’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교원 및 직원은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합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행정직원
  - 2.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행정직원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자는 제1항의 교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5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휴직(질병·상해 휴직 후 직권면직에 한함) 및 퇴직에 관한 인사발령통지서
  - 4. 퇴직증명서(해당 학교의 장(長) 발행) 등 객관적으로 퇴직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사망 퇴직의 경우 사망 확인서 제출)
  -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8. 수혈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제1조(“수혈”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혈”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별표167】(급여 수혈 의료행위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진료행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의 진료행위 외에도 해당하는 “수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혈”에 준하여 “수혈 보장 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 “수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수혈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제1조(“수혈”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수혈”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혈치료비(급여,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진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전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⑤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의료행위’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2022.9.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1. 조혈모세포의 주입(‘의료행위’코드 X5131~X5137)
  2.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의료행위’코드 X5051)
  3. 자가수혈(‘의료행위’코드 X5062,X5064,X5132,X5134,X5136) 및 자기수혈-채혈료(‘의료행위’코드 X6001~X6008)
  4.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IV(‘의료행위’코드 EA001~EA004)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포함),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9. CT, MRI 검사지원비(치매, 급여, 연간1회환) 특별약관**

**제1조(“치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치매”이라 함은 【별표112】(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2조(“급여 치매 CT·MRI 촬영”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치매 CT·MRI 촬영”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매”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이하 ‘급여 일반전산화단층영상(CT)’라 합니다) 또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이하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라 합니다)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치매 CT·MRI 촬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코드 중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mputed Tomography)’ 또는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 발생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급여 치매 CT·MRI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가코드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전 급여인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일반전산화단층영상(CT) 또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여 치매 CT·MRI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제1조(“치매”의 정의)에서 정한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제2조(“급여 치매 CT·MRI 촬영”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급여 치매 CT·MRI 촬영”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CT, MRI 검사지원비(치매, 급여, 연간1회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 치매 CT·MRI 촬영”을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6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6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9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0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6조(지정대리청구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0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치매”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포함), 진료비계산서

- 등) 단, 진료기록부에 【별표112】(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진료기록부에서 “치매”의 진단 및 치료의 필요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1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2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

### 1. 자동차사고별금비용 II (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특별약관

#### 제1조(“운전중 사고”의 정의)

- ① 이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운전중 사고”라 함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판정 받은 벌금을 자동차사고별금비용 II(스쿨존3천,대인2천)(운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

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1사고당 3,000만원을 한도로 판정 받은 벌금을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벌금비용}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를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형 확정 이유의 아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에는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도 포함됩니다.

1.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액이 확정되고 보험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2.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3.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스쿨존자동차사고별금비용(대인, 운전)(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 제1조(“운전중 사고”의 정의)

- ① 이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운전중 사고”라 함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1사고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천만원 한도로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인,운전)(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인,운전)(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형 확정 이유가 아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인,운전)(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에는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도 포함됩니다.
  - 1.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2.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액이 확정되고 보험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2.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3.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자동차사고별금비용(대물,운전) 특별약관

#### 제1조(“운전중 사고”의 정의)

- ① 이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운전중 사고”라 함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1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판정 받은 벌금을 자동차사고별금비용(대물,운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별금비용(대물,운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별금비용(대물)}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cdot \text{계약1 : } \text{보상액}(48) = \text{실제 손해액}(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cdot \text{계약2 : } \text{보상액}(32) = \text{실제 손해액}(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동차사고별금비용(대물,운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에는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도 포함됩니다.

1.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④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액이 확정되고 보험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2.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3.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운전중 사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운전중 사고”라 함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영업용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면허”라 합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1사고마다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영업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서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자동차운전면허정지(120일한도)(영업용) 특별약관

#### 제1조(“운전중 사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운전중 사고”라 함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면허정지기간”의 정의)

이 특약에서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

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영업용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면허”라 합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1일당 최고 120일을 한도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운전면허정지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정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포함)(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을 사망하게 한 경우 : 회사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
  2.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나.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형법 제268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형법 제268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3.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로 인하여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의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회사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보험 가입 금액 구분	제1호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제2호 ‘가’목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제2호 ‘나’목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제2호 ‘다’목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42일~69일 진단시	70일~104일 진단시	105일~139일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3천만원	3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5천만원	5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5천만원 한도	5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1억원	1억원 한도	2천만원 한도	7천만원 한도	8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억원 한도	5천만원 한도
1.5억원	1.5억원 한도	2천만원 한도	8천만원 한도		1.5억원 한도	1.5억원 한도	5천만원 한도
2억원	2억원 한도	2천만원 한도	8천만원 한도		1.5억원 한도	2억원 한도	7천만원 한도

2. 제3호의 경우 : 500만원 한도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 (대검찰청 업무지침, 2009.2.27.)】**

- ① 생명에 대한 위험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②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 ③ 불치나 난치의 질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상해”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으로 중상해의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포함)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한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⑥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5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

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8항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제8항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8항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라 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29호, 2019.12.24., 2020.3.25. 시행)의 시행일(2020.3.25.) 이후 발생하여, 【별표7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11에 해당하는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
- 2. 계약자의 고의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7.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사고증명서(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
  5.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6.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중상해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등)
  8.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제3호의 경우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사고증명서(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중상해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등)
  7.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제3호의 경우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게 한 경우 단, 피해자의 진단기간은 추가 진단기간을 합산한 최종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구분	1일~21일 진단시	22일~27일 진단시	28일~41일 진단시
3백만원	3백만원 한도		
5백만원	2백만원 한도	5백만원 한도	
1천만원 II	5백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한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항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④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3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⑤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6항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제6항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6항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자가용인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최초 진단 후 추가 진단을 받아 최종진단일이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4.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보복운전”이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4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할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보복운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타인이 자동차를 수단으로 피보험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합니다.
1.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정한 특수상해
  2.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상해
  3.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특수폭행
  4.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5.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특수협박
  6.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5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7.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특수손괴

### 제2조(자동차 운전중 사고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공소장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죄명, 불기소이유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참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회사는 1사고당 1심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법률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월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의료사고법률비용}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무연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5조(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0. 민사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의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나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다

- ③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제2항에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민사소송 법률비용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변호사비용	인지액 + 송달료
지급금액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	500만원 한도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2. 손해배상의 경우 : 해당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연간 하나의 사건】**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되는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송】**

대법원의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이송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라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민사소송법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비용 한도
300만원까지	30만원
300만원 초과 ~ 2,000만원까지	[30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10%]
2,0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	[200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8%]
5,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4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6%]
1억원 초과~1억5,000만원까지	[74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4%]
1억5,000만원 초과~2억원까지	[94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5,000만원)×2%]
2억원 초과~5억원까지	[1,040만원+(소송목적의 값 - 2억원)×1%]
5억원 초과	[1,3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억원)×0.5%]

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아래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한도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5%
1천만원 ~ 1억 미만	5,000원 + 소송목적의 값 × 0.45%
1억 ~ 10억 미만	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 0.40%
10억 이상	5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 0.35%

주1) 항소심의 경우 상기 한도의 1.5배, 상고심의 경우 2.0배를 적용 합니다.

주2)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3. 대법원의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아래 송달료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심급별	송달료 한도
1심 민사소액	94,000원
민사단독	141,000원
민사합의	141,000원
항소심	112,800원
상고심	75,200원

주) 대법원의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품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393조(항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가족】**

아래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소송 상 조정, 소송 상 화해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9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피보험자의 소송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권 및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합니다)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정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진행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3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 14조(특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이 특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1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1. 행정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행정소송 법률비용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의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구분	행정사건	사건별 부호
1심	행정1심합의사건	구합
	행정1심단독사건	구단
항소심	행정항소사건	누
상고심	행정상고사건	두

- ③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소송은 제2항에서 정한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행정소송 법률비용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변호사비용	인지액 + 송달료
지급금액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	500만원 한도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국가기관 및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송】**  
 대법원의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변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sup>주)</sup>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이송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라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sup>주)</sup>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sup>주)</sup>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행정소송법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비용 한도
300만원까지	30만원
300만원 초과 ~ 2,000만원까지	[30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10%]
2,0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	[200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8%]
5,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4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6%]
1억원 초과~1억5,000만원까지	[74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4%]
1억5,000만원 초과~2억원까지	[94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5,000만원)×2%]
2억원 초과~5억원까지	[1,040만원+(소송목적의 값 - 2억원)×1%]
5억원 초과	[1,3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억원)×0.5%]

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아래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한도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5%
1천만원 ~ 1억 미만	5,000원 + 소송목적의 값 × 0.45%
1억 ~ 10억 미만	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 0.40%
10억 이상	5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 0.35%

주1) 항소심의 경우 상기 한도의 1.5배, 상고심의 경우 2.0배를 적용 합니다.

주2)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3. 대법원의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아래 송달료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심급별	송달료 한도
행정1심 / 행정1심재정단독	94,000원
행정항소심	94,000원
행정상고심	75,200원

주) 대법원의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중급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행정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품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국민투표무효소송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선거 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당선 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
19.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20.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국민의 구체적 권익의 구제와는 관련이 없는 기관소송(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결무효 소송,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을 말합니다.)

21.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소송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sup>주)</sup>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sup>주)</sup> 393조(항소의 취하), 동법<sup>주)</sup>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  
 민사소송법<sup>주)</sup>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sup>주)</sup>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sup>주)</sup>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sup>주)</sup>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말합니다.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2.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소송 상 조정, 소송 상 화해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무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begin{aligned} \cdot \text{계약1} : \text{보상액}(48) &= \text{실제 손해액}(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cdot \text{계약2} : \text{보상액}(32) &= \text{실제 손해액}(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end{aligned}$$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9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피보험자의 소송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권 및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합니다)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정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진행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3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 14조(특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이 특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15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2. 교권침해피해보상금(연간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서 심의 처리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신청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처리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교권침해피해보상금(연간1회한)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서 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권침해피해보상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의 각 호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교권침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동일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2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처리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교권침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로 합니다.
- ②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및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보서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판단 및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

- 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3. 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교원소청심사를 보험기간 중에 청구하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소청이 인용(처분의 취소·변경), 기각 등 심사 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는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430만원 한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

####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② 경정결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미지급된 보험금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추가지급 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3조(교원소청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교원소청"라 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서의 소청을 말합니다.

###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교원은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합니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장, 교감 및 교사
  3.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③ 조교,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허위진술 또는 허위증거 제출 행위 포함)에 의한 손해
2.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정한 청구의 취하, 청구의 각하

**【청구의 취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8조(소청심사청구의 취하)에서 정한 것으로 심사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의 각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 3. 교원의 4대 비위사건(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기인한 소청
- 4. 보험기간 이전에 교원소청 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의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피보험자의 소청 청구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 포함)
  - 2. 소청심사 결정 전 청구의 각하, 청구의 취하 등이 발생한 경우
  - 3. 소청심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의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피보험자의 소청 청구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 포함)
  - 2. 소청심사 결정 전 청구의 각하, 청구의 취하 등이 발생한 경우
  - 3. 소청심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 11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청 진행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청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5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 16조(특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이 특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1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 가족사이버 명예훼손피해보상금 특별약관

### 제1조(“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정의)

- ①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피보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
- ② “관련사건”이라 함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1. 가해자 1인이 범한 수개의 사이버 명예훼손
  2.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범한 사이버 명예훼손
  3. 2인 이상의 가해자가 동일 사이버공간에서 범한 사이버 명예훼손
- ③ 제2항 제3호에서 “동일 사이버공간”이라 함은 동일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주소 또는 동일한 모바일메신저 채팅방 등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
- ⑤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한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피보험자 개인으로 특정된 경우에 한하며, 제1조(“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정의) 제2항 각 호의 관련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의 접수 없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기명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제3자와 공모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5. 피해자가 특정한 사람이 아닌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인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의 소속원 또는 구성원인 경우
  6.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다만, 관련 사건에서 집합적 명사와 구별하여 피보험자 개인을 특정하여 피보험자 개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8. 피보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된 경우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죄명 및 가해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5.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금 특별약관

#### 제1조(용어의 정의)

- ① “인터넷 직거래사기”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 게시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피보험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별표168】 “기타관계법규” 참조))
- ③ 제1항에서 “물품 거래 등”이라 함은 거래대상이 적법한 것이고,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하며, 확정하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한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단,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는 제외됩니다.
- ④ 제1항에서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라 함은 중간 판매 또는 중개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각 개인(판매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 ⑤ “실제 금전손실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한 피보험자가 직접 송금한 금전손실액 원금(거래하기로 약정한 물품가격)을 말합니다. 단,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합니다)의 (70% 또는 10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가해자에게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한 것을 말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민법 제777조)

- 4. 기명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3.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4.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
  - 5. 차압, 구류, 몰수 파과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비용 또는 손해
  - 2.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 3.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 4.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 질병 또는 장애,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애
  - 5.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

### 제5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6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피보험자의 소송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권 및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합니다)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6.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제1조(“신6대가전제품”의 정의)

- ① “신6대가전제품”이라 함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신6대가전제품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 ③ 제2항의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신6대가전제품(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수리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상관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험효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제10항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가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2.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3.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14.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5.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 16.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손해
- 17.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18. 보험 목적(신6대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3.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4.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4조(보험금의 청구)**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발급한 고장수리 세부내역서 및 고장수리비용 영수증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연간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을 시작으로,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 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7.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제1조(“12대가전제품”의 정의)

- ① “12대가전제품”이라 함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12대가전제품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 ③ 제2항의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품(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수리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상관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험효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제10항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가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2.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3.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14.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5.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6.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손해

- 17.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18. 보험 목적(12대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3.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4.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4조(보험금의 청구)**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발급한 고장수리 세부내역서 및 고장수리비용 영수증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연간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을 시작으로,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홀인원비용(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골프장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홀인원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 가.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합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⑤ 제4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은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홀인원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조(“골프장”등의 정의)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홀인원비용}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begin{aligned} \cdot \text{계약1} : \text{보상액}(48) &= \text{실제 손해액}(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cdot \text{계약2} : \text{보상액}(32) &= \text{실제 손해액}(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end{aligned}$$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2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출인원  
 2. 피보험자가 깔때기흄(그린에 볼을 올리지만 하면 볼이 흄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흄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출인원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출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출인원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9.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골프장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알바트로스(Albatross)”라 함은 각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알바트로스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 가.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알바트로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합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⑤ 제4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은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알바트로스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조(“골프장”등의 정의)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알바트로스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알바트로스비용}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2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자(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2.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지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3.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알바트로스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알바트로스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II (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II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 비용	×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	---	--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④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3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변호사선임 확정 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7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을 확정하고, 변호사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3.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포기한 경우
- ⑥ 제5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하며, 이 금액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 ⑦ 제5항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이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변호사선임비용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⑧ 회사는 제7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제5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일로부

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제5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을 피보험자 또는 변호사에게 지급합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5항에 따른 보험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변호사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제7항에서 정한 보험금 반환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⑪ 제5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별표7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 수령에 관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회사양식)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단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경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정식재판)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정식재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frac{\text{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times \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begin{aligned} \cdot \text{계약1 : } & \text{보상액}(48) = \text{실제 손해액}(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cdot \text{계약2 : } & \text{보상액}(32) = \text{실제 손해액}(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end{aligned}$$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④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3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변호사선임 확정 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7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을 확정하고, 변호사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 3.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포기한 경우
- ⑥ 제5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하며, 이 금액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 ⑦ 제5항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이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변호사선임비용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⑧ 회사는 제7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제5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제5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을 피보험자 또는 변호사에게 지급합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5항에 따른 보험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변호사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제7항에서 정한 보험금 반환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⑪ 제5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7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별표7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 수령에 관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회사양식)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2.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 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및 불기소된 경우
  3. 제2호의 “약식기소”는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 ② 제1항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부상등급별 보상한도		
	1~3급	4~7급	8~14급
5천만원 II	5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별표7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3천만원 한도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별표7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 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 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특별약관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begin{aligned} \cdot \text{계약1 : } & \text{보상액}(48) = \text{실제 손해액}(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cdot \text{계약2 : } & \text{보상액}(32) = \text{실제 손해액}(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end{aligned}$$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 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5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⑥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변호사선임 확정 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7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을 확정하고, 변호사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 3.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포기한 경우
- ⑦ 제6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하며, 이 금액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 ⑧ 제6항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이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변호사선임비용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⑨ 회사는 제8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⑩ 제6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제6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을 피보험자 또는 변호사에게 지급합니다.
-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6항에 따른 보험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변호사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제8항에서 정한 보험금 반환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
  2.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 수령에 관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회사양식)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 특별약관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II (대인공제없음, 대물공제(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갱신형)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이하 「대인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함)(이하 「대물배상책임」이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4. 제1호의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거주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주택 또는 실제 임대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또는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의 배상책임손해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권리인(피신청인)의 손해 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보험계약자)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을 대신하는 상품이며, ‘공탁보증보험료’는 이러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 피보험자
  2.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3.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② 제1항에서 기명 피보험자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1사고당 1억원 한도)을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물배상책임」 및 「대인배상책임」 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누수사고와 누수 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누수사고와 누수이외의 사고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사고는 '누수사고'로 봅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 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제9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MG손해보험)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MG손해보험)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받습니다.

· 계약1 :	보상액(48)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계약2 :	보상액(32)	=	실제 손해액(80)	×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② 이 계약의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0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다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과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 13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6조(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다른 동종의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 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20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보통약관 제43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24조(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5조(특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특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26조(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제도성특약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2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제도성 특별약관 】

###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 납입)

-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2. 특정 신체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경우 또는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 병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사가 청약을 거절한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의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⑤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고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별표91】(특정부위 분류표))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고 합니다)(【별표92】(특정질병 분류표))
- ②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경우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내에 제1항 제1호 및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 ⑧ 제1항의 특정부위는 4개 이내에서, 특정질병은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할 수 있습니다.

###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39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

###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우리회사는 “회사”,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축차를 붙인것과 배기량이 125cc 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다.

###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39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

## 제1조(특약의 적용)

이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한 특별약관(이하 “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회사와 계약자간에 사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

- ① 보장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장특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회사 또는 계약자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특약(이하 “갱신전 보장특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특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갱신전의 보장특약이 최종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때에는 보장특약의 갱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갱신된 보장특약(이하 “갱신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내일 것
- ② 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갱신 후 보장특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간까지의 기간을 갱신후 보장특약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동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④ 제3항의 알릴의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를 적용합니다.

## 제3조(자동갱신 적용)

- ① 회사가 약관 또는 보험료 등(이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보장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1항의 갱신보장특약의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4조(갱신보장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갱신전보장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보장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갱신보장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당 보장계약을 해제합니다.
-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보장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제5조(갱신보장특약의 보장개시)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보장특약의 보장개시는 갱신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 제6조(갱신보험료)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동갱신 되는 보장보험료는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련 특별약관의 경우 연령증가와 의료비상승률에 연동되어 갱신시점에서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보장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6. 전자서명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보통약관(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168】(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계약 안내자료를 드림으로써 회사의 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을 따릅니다.



## 별표

### 【별표1】 장 해 분 류 표

#### ① 총칙

#####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장애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로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애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 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sup>주1)</sup>, 안전수지(Finger Counting)<sup>주2)</sup> 상태를 포함한다.
  -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운동장애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②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애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애'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애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10

###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pm 10\text{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 다. 컷바퀴의 결손

- 1)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컷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2) 컷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만 평가한다.

### 라. 평형기능의 장애

- 1)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 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애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 2)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 가) 뇌영상검사(CT, MRI)
-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 3. 코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 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의 지급률과 추상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애(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애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sup>2</sup>, 1/4 크기는 20cm<sup>2</sup>),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sup>2</sup>, 1/4 크기는 12cm<sup>2</sup>),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sup>2</sup>, 1/4 크기는 6cm<sup>2</sup>)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인접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애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 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애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 7. 체간골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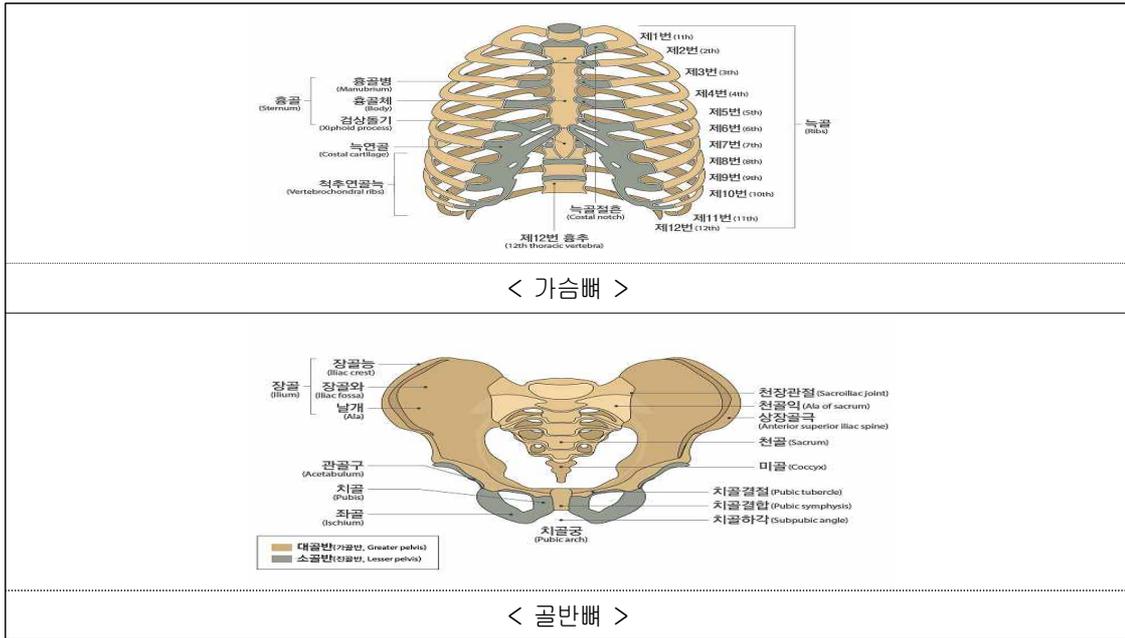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란 흉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8. 팔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애를 표시할 경우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sup>주)</sup>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애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sup>주)</sup>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뼈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외 발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10. 손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에는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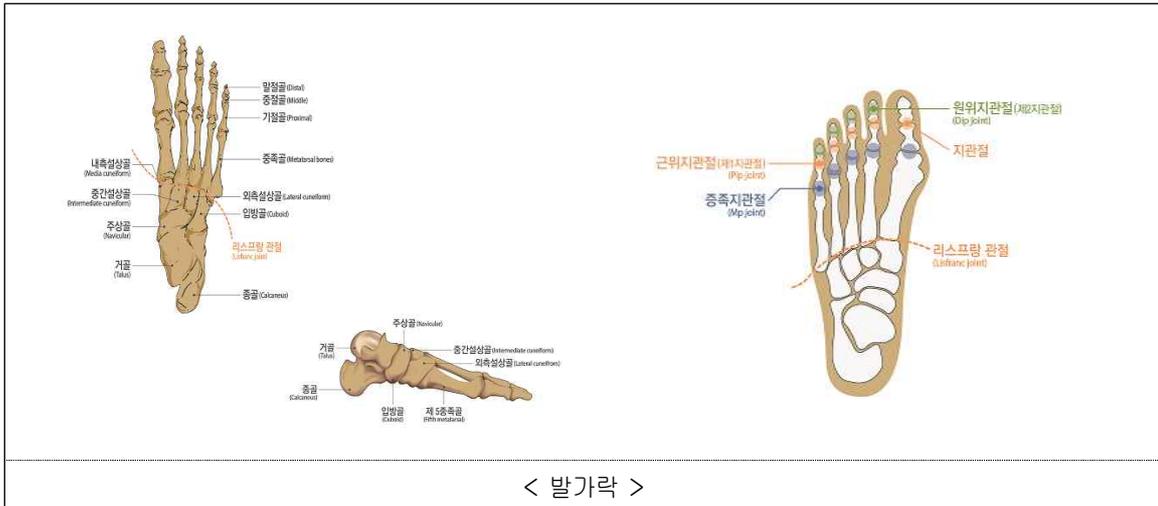
## 11. 발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5

###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도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체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체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애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애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ADLs 장애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애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 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마)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장애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나) 정신행동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sup>주)</sup>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sup>주)</sup>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sup>주)</sup>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란 3개월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차)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카) 정신행동장애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애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li> <li>-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li> <li>-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ul>
음식물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는 못하는 상태(5%)</li> </ul>
배변·배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li> <li>-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li> <li>-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li> </ul>
목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li> <li>-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li> </ul>
옷 입고 벗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li> <li>- 상, 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li> </ul>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 급 이 자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1종, 2종, 3종)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4종, 5종, 6종)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50%
		1년초과기간 :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성보험공시이율(1701)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단, 지급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 류 번 호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대상 악성 신 생물	분 류 번 호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종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3】 제자리의 신 생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 류 번 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  
골절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S02 (S02.5 제외)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  
화상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분류 항목	분류 번호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고관절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L5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8】 5대골절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머리의 으깬손상	S07
2. 목의 골절	S12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S22.0 ~ S22.1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대퇴골의 골절	S7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9】 중대한특정상해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중대한 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분류항목	분류번호
뇌손상	두개내 손상	S06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S2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S27
	복강내 기관의 손상	S36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37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10】 중증 화상 및 부식

중증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 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별표11】 외모특정상해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외모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 기 질병 (P00 ~ 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머리의 손상	S00-S09
2. 목의 손상	S10-S19
3. 여러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T00.0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T00.8 <sup>주1)</sup>
- 목을 포함한 머리의 열린 상처	T01.0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열린 상처	T01.8 <sup>주1)</sup>
- 목을 포함한 머리의 골절	T02.0
- 기타 복합 신체부위의 골절	T02.8 <sup>주1)</sup>
-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03.0
- 기타 복합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탈구, 염좌 및 긴장	T03.8 <sup>주1)</sup>
- 목을 포함한 머리의 으깬 손상	T04.0
- 기타 복합 신체부위의 으깬 손상	T04.8 <sup>주1)</sup>
4.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중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T20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26
5. 동상 중	

분류 항목	분류 번호
- 머리의 표재성 동상	T33.0
- 목의 표재성 동상	T33.1
- 조직괴사를 동반한 머리의 동상	T34.0
- 조직괴사를 동반한 목의 동상	T34.1

- 주1) 기타 복합 신체부위에 관한 사항(T00.8, T01.8, T02.8, T03.8, T04.8)은 안면부 및 두부, 목부위와 다른 부위의 상해가 동일사고로 인하여 중복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 주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12】 척추상해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척추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목의 골절	S12
2.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3
3.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0
4.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1
5.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2
6. 상완신경총의 손상	S14.3
7. 흉추의 골절	S22.0
8. 흉추의 다발골절	S22.1
9.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0
10. 흉추의 탈구	S23.1
11.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3.3
12.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0
13.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1
14. 흉추 신경근의 손상	S24.2
15. 요추의 골절	S32
16. 요추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
17.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0
18. 요수의 기타 손상	S34.1
19.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2
20. 말총의 손상	S34.3
21.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S34.4
2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  
**척추질환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척추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척추의 결핵(M49.0*)	A18.00
2. 척추의 악성 신생물	C41.2
3. 골반골, 천골(薦骨) 및 미추의 악성 신생물	C41.4
4. 척수막의 악성 신생물	C70.1
5. 척수의 악성 신생물	C72.0
6. 말총의 악성 신생물	C72.1
7. 척추의 양성 신생물	D16.6
8. 골반골, 천골(薦骨) 및 미추의 양성 신생물	D16.8
9. 척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1
10. 척수의 양성 신생물	D33.4
11. 척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1
12. 척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4
13.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6.1
14.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G55.1
15. 척추중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7.-†)	G55.2
16. 기타 등병중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5-M46†, M48.-†, M53-M54†)	G55.3
17. 마미 신경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G83.4
18. 척수의 기타 질환	G95
19. 척추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0
20. 척추측만증	M41
21. 척추골연골증	M42
22.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3
23. 강직척추염	M45
24.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M46
25. 척추증	M47
26. 기타 척추병증 (M48.0 척추 협착 / Spinal stenosis)	M48
2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M49
28. 경추간판장애	M50
29. 기타 추간판 장애	M51
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M53
31. 등통증	M54
3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M96.1
33. 척추후궁절제후 척추후만증	M96.3
34. (척추)부분탈구복합	M99.1
35.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M99.2
36. 신경관의 골성 협착	M99.3
37.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M99.4
38.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M99.5
39.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M99.6
40.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M99.7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4】  
십자인대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십자인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 또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 또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무릎의 내부장애	M23
2.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S83.5
3. (측부)(십자)인대와 복합된 (외측)(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S83.7

주1)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또는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또는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 또는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5】  
급여 십자인대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십자인대수술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정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9.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분류 항목	수 가 코드
1. 십자인대성형술	N0880
2. 십자인대성형술 - 복잡	N0881
3. 십자인대접합술	N0890

주)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기 진료행위 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6】  
반월판연골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반월판연골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 또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 또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무릎의 내부장애	M23
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S83.2
3. (측부)(십자)인대와 복합된 (외측)(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S83.7

주1)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또는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

-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또는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 또는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7】**  
**급여 반월판연골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반월판연골수술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9.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분류 항목	수 가 코드
1.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N0821
2.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	N0822
3.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 복잡	N0826
4. 반월판 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 - 복잡	N0827
5. 반월상 연골봉합술(내외 또는 외측)	N0823
6. 반월상 연골봉합술(내외 또는 외측) - 복잡	N0828
7. 반월상 연골봉합술(내외측 동시)	N0824
8. 반월상 연골봉합술(내외측 동시) - 복잡	N0829
9. 반월상 연골이식술	N0825
10. 반월상 연골이식술 - 복잡	N0820

주)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기 진료행위 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8】**  
**아킬레스건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아킬레스건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 또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 또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아킬레스힘줄염	M76.6
2.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S86.0

- 주1)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또는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또는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 또는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9】**  
**급여 아킬레스건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아킬레스건수술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9.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수 가 코 드
1. 아킬레스재건술	N0920
2. 아킬레스연장술	N0921
3.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절제,봉합,박리]	N0931
4.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것[이식,이전,교환,인공건성형]	N0932

주)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기 진료행위 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20】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또는 CABG)

1.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遠位部)의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관상동맥(심장동맥)확장술(인공혈관 등)과 다른 모든 내부동맥에 활용된 카테터(Catheter) 및 레이저 시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은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축상반제술(Rotational Atherectomy)
3. 제1항의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은 혈관촬영법을 통해 현격한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협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시술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심장병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 【별표21】 심장판막수술(Heart Valve Surgery)

1.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가지 기준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주는 수술  
나.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가.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예)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 【별표22】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Aorta Graft Surgery)

1.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류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2.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경피적혈관내 대동맥류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별표23】**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

1.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mm<sup>3</sup>미만 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총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이하 이고 동시에 다음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mm<sup>3</sup>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mm<sup>3</sup>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sup>3</sup>미만
3.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별표24】**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

1.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이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A81.0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진단확정은 EEG, MRI, CSF 또는 조직검사에 근거하여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신경과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단, 가족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fCJD, Familial Creutzfeldt-Jakob Disease)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별표25】**  
**말기 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1. 말기 폐질환이라 함은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 가.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 나. 평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2. 말기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인플루엔자 및 폐렴	J09 ~ J18
폐렴이 합병된 흉역	B05.2
수두폐렴	B01.2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B25.0
폐톡소포자충증	B58.3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J20 ~ J22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40 ~ J4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60 ~ J70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J80 ~ J84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85 ~ J86
흉막의 기타 질환	J90 ~ J94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J95 ~ J99
류마티스폐질환	M05.1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 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상기 1 ~ 2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① 1의 가. ~ 나.의 특징을 모두 보이나 2에서 정한 대상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② 2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지만 1의 가. ~ 나.의 특징을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
4.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26】

#### 말기 간경화(End Stage Liver Cirrhosis)

1. 말기 간질환(경화)이라 함은 만성 말기 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 ①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 ② 영구적인 황달
  - ③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 ④ 간성 뇌증
2.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3. 말기 간경화의 진단 확정에는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Scan), 복부 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별표27】

#### 말기 신부전증(End Stage Renal Failur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신장병(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함.

### 【별표28】

#### 간경변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간경변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알코올성 간염유증 및 간의 경화증	K70.2
알코올성 간경변증	K70.3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K71.7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4
간의 만성 수동울혈	K76.1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 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9】  
만성폐쇄성폐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및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J42
폐기종	J43
기타만성폐쇄성폐질환	J44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0】  
폐렴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폐렴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 류 번 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0-1】**  
**폐렴중증도(PSI : Pneumonia Severity Index) 지표 점수 산정**

PSI지표 점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렴 진료 지침에서 환자의 중증도나 사망위험도에 따라 입원여부, 일반병동 또는 중환자실 치료 등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폐렴 중증도 판정도구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인 자	점수
환자특성	남자	만 연령
	여자	만 연령 -10
	요양시설 거주자	+10
동반질환	악성종양	+30
	간 질환	+20
	울혈성 심부전	+10
	뇌혈관질환	+10
	신장질환	+10
신체검진소견	의식 변화(저하)	+20
	호흡수 $\geq 30$ /분	+20
	수축기 혈압 $< 90$ mmHg	+15
	체온 $< 35^{\circ}\text{C}$ 혹은 $\geq 40^{\circ}\text{C}$	+15
	맥박수 $\geq 125$ /분	+10
검사실 /방사선소견	동맥혈 pH $< 7.35$	+30
	BUN $\geq 30$ mg/dL	+20
	Sodium(혈청 나트륨) $< 130$ mEq/L	+20
	Glucose(혈청 포도당) $> 250$ mg/dL	+10
	Hgb $< 9$ g/dL (적혈구용적률 $< 30\%$ )	+10
	PaO <sub>2</sub> (대기하 동맥혈 산소분압) $< 60$ mmHg (SaO <sub>2</sub> $< 90\%$ )	+10
	흉막염(흉수저류)	+10

- 동반질환
  - 악성종양 (일년내내 모든 종양, 단, 피부 기저세포나 편평상피세포암제외)
  - 간질환 : 임상적 또는 조직학적 간경화나 만성 활동성 감염
  - 울혈성 심부전 : 병력, 신체검진 또는 검사소견으로 진단
  - 뇌혈관질환 : 임상적인 뇌졸중 또는 CT나 MRI로 증명된 경우
  - 신장질환 : 만성 신질환 또는 비정상적인 BUN이나 혈청 creatinine
- 의식 변화(저하) :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인식 상실이나, 최근 의식 혼탁(stupor, coma)

**【별표31】**  
**천식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천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 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32】 기관지확장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기관지확장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기관지 확장증	J47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 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33】 6대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6대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1. 다발경화증	G35
2. 운동신경세포병	G12.2
3.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4. 모야모야병	I67.5
5. 전신홍반루푸스	M32
6.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1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 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34】 호흡기질환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호흡기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급성상기도감염	J00 ~ J06
2. 상세불명의 상기도질환	J39.9
3.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4.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1, J42
5. 천식, 천식지속 상태	J45, J46
6. 폐렴, 재향군인병	J12 ~ J18, A48.1
7.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B25.0
8.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9. 수두폐렴	B01.2
10. 폐톡소포자충증	B58.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35】 총수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총수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총수의 질환	K35 ~ K3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36】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생식기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여성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내막의 제자리암종	D07.0
외음의 제자리암종	D07.1
질외의 제자리암종	D07.2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37】 자궁적출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자궁적출수술은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에 의한 수술 및 처치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수술	수술 및 처치 코드
복식 부분자궁적출술(Subtotal abdominal hysterectomy)	68.3
복식 전자궁적출술(Total abdominal hysterectomy)	68.4
질식 전자궁적출술(Vaginal hysterectomy)	68.5
복식 근치자궁적출술(Radical abdominal hysterectomy)	68.6
질식 근치자궁적출술(Radical vaginal hysterectomy)	68.7
골반 장기적출술(Pelvic evisceration)	68.8
기타 및 상세불명 자궁적출술(Other and unspecified hysterectomy)	68.9

### 【별표38】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사구체 질환	급성 신염증후군	N00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2
	만성 신염증후군	N03
	신증후군	N04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N08	
신세뇨관-간질 질환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0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1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N12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3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4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N1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 장애	N16	
신부전	급성 신부전	N17
	만성 신장병	N18
	상세불명의 신부전	N19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장애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6
	원인미상의 작은 신장	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방광염	N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1
	방광의 기타 장애	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N3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N37
	비뇨기계통의 기타장애	N39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음낭수종 및 정액류	N43
	고환의 염전	N44
	고환염 및 부고환염	N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생식기관의 염증성 장애	N49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장애	N5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의 장애	N51
	- A59.08 중 편모충 전립선염	A59.08 <sup>주)3</sup>
	- 남성 생식기관의 결핵	A18.14
	- 불거리고환염	B26.0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해당 분류번호는 대상질병에 기재된 특정 질병에 한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9】**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만성당뇨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1형 당뇨병	· 신장 합병증을 동반	E10.2
	· 눈합병증을 동반	E10.3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0.4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E10.5
2형 당뇨병	· 신장 합병증을 동반	E11.2
	· 눈합병증을 동반	E11.3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1.4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E11.5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신장 합병증을 동반	E12.2
	· 눈합병증을 동반	E12.3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2.4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E12.5
기타 명시된 당뇨병	· 신장 합병증을 동반	E13.2
	· 눈합병증을 동반	E13.3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3.4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E13.5
상세불명의 당뇨병	· 신장 합병증을 동반	E14.2
	· 눈합병증을 동반	E14.3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E14.4 E14.5
기타 당뇨병성 합병증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당뇨병성 백내장 · 당뇨병성 망막변증 · 당뇨병성 관절변증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 장애	G59.0 G63.2 H28.0 H36.0 M14.2 N08.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40】 식중독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기타 살모넬라감염	A02
2. 시겔라증	A03
3. 기타 세균성 장감염	A04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A05
5. 아메바증	A06
6. 기타 원충성 장질환	A07
7.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A08
8.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T61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T6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41】 특정전염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

대 상 전 염 병	분 류 번 호
콜레라	A00
장티푸스	A01.0
파라티푸스	A01.1 ~ A01.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A03.9
장출혈성대장균감염	A04.3
페스트	A20
파상풍	A33 ~ A35
디프테리아	A36
백일해	A37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일본뇌염	A83.0
홍역	B05
풍진	B06
볼거리	B26
탄저병	A22
브루셀라병	A23
렙토스피라병	A27
성홍열	A38
수막알균수막염	A39.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A41.5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A48.1 ~ A48.2
발진티푸스	A75
광견병	A82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A98.5
말라리아	B50 ~ B54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 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42】 新112대특정질병 분류표

#### ■ 112대특정질병 분류표

- |                    |               |
|--------------------|---------------|
| 1. 중증7대특정질병 분류표    | 5. 백내장 분류표    |
| 2. 14대특정질병(II) 분류표 | 6. 치핵 분류표     |
| 3. 20대특정질병 분류표     | 7. 후각특정질환 분류표 |
| 4. 68대생활질환질병 분류표   |               |

### 【별표42-1】 중증7대특정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7대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파킨슨병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다발경화증	다발경화증	G35
뇌성마비	뇌성마비	G80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조로증	조로증	E34.8
전신 홍반루푸스	전신 홍반루푸스 (M32.1 중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 홍반루푸스 제외) (M32.1 중 신세뇨관-간실신장병증 동반 전신 홍반루푸스 제외)	M32 (M32.1제외) <sup>주)3</sup> (M32.1제외) <sup>주)3</sup>
전신경화증	전신경화증	M34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해당 분류번호는 대상질병에 기재된 특정 질병에 한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2-2】**  
**14대특정질병(Ⅱ)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14대특정질병(Ⅱ)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당뇨병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3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I09
		허혈성 심질환	I20~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타형태의 심장질환		I30~I52	
칸디다심내막염		B37.6	
수막알균성 심장막염		A39.5	
수막알균성 심내막염		A39.5	
수막알균성 심근염		A39.5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		A39.5	
고혈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고혈압성 뇌병증	I67.4	
	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H35.0 <sup>주)4</sup>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I60~I69
간질환	바이러스 감염 간의 질환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톡소포자충간염	B15~B19 K70~K77 B25.1 B58.1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 궤양	K25 K26 K27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I70
만성하부 호흡기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	J40 J41 J42 J45 J46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재향균인병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폐렴이 합병된 흉역 수두폐렴 폐톡소포자충증	J12 J13 J14 J15 J16 J17 J18 A48.1 B25.0 B05.2 B01.2 B58.3
결핵	결핵 결핵의 후유증 결핵 관절염 척추의 결핵 뼈의 결핵 결핵성 방광염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결핵성 복막염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A15~A19 B90 M01.1 M49.0 M90.0 N33.0 N74.0 N74.1 K67.3 K93.0
신부전	신부전	N17~N19
대동맥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기관지·폐의 특정질환	폐기종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J43 J44 J47
수막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D3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4. 해당 분류번호는 대상질병에 기재된 특정 질병에 한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2-3】  
20대특정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20대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수막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수막알균수막염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 볼거리수막염 수두수막염 대상포진수막염 칸디다수막염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0 G01 A39.0 G02 A87.1 A87.0 B00.3 B05.1 B26.1 B01.0 B02.1 B37.5 B38.4 G03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아데노바이러스뇌염 엔테로바이러스뇌염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 뇌염이 합병된 홍역 볼거리뇌염 수두뇌염 대상포진뇌염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달리 분류된 질병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아메바성 뇌농양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G04 G05 A85.1 A85.0 B00.4 B05.0 B26.2 B01.1 B02.0 G06 G07 A06.6 G08 G09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0
패혈증	연쇄알균패혈증 기타 패혈증	A40 A41
급성체장염	급성체장염	K85
체장질환	체장의 기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담도 및 체장의 장애 거대세포바이러스체장염 볼거리체장염	K86 K87 B25.2 B26.3
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	G70.0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D33
부갑상선질환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0 E21
뇌하수체질환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E22 E23
뇌전증	뇌전증 뇌전증 지속상태	G40 G41
안면신경장애	삼차신경의 장애	G50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안면신경장애 기타 뇌신경의 장애	G51 G52
마비	편마비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기타 마비증후군	G81 G82 G83
수두증	수두증	G91
폐부종	폐부종	J81
특정호흡기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2 J84
사구체질환	급성 신염증후군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만성 신염증후군 신증후군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N00 N01 N02 N03 N04 N05 N06 N07 N08 (N08.3제외)
신세뇨관-간질질환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N10 N11 N12 N13 N14 N15 N16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5 N26 N27
녹내장	녹내장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0 H4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2-4】  
68대생활질환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68대생활질환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갑상선질환	갑상선의 장애 처치 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	E00 - E07 E89.0
		H06.2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황반변성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35.3
관절염 및 다발경화증	감염성 관절병증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류마티스 폐질환	M00 - M03 M05 - M14 J99.0
관절증	다발관절증 고관절증 무릎관절증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기타 관절증	M15 M16 M17 M18 M19
사지 후천변형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변형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M20 M21
관절장애	무릎뼈의 장애 무릎의 내부장애 기타 특정 관절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M22 M23 M24 M25
전립선 질환	전립선증식증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전립선의 기타장애	N40 N41 N42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음낭수종 및 정액류 고환의 염전 고환염 및 부고환염	N43 N44 N45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바르톨린선의 질환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	N71 N72 N73 N74 N75 N76 N77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자궁내막증 여성생식기탈출 여성생식관을 침범한 누공 여성생식관의 폴립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자궁경부의 이형성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외음부 및 회음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우월경, 소량및희발월경 과다,빈발및불규칙월경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병태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N80 N81 N82 N84 N85 N86 N87 N88 N89 N90 N91 N92 N93 N94 N95
담석증	담석증	K80
사타구니탈장	사타구니탈장	K40
편도염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J35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	J32
폐질환	폐 및 종격의 농양 농흉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달리 분류된 병태에서의 흉막삼출액 흉막판 기흉 기타 흉막의 병태	J85 J86 J90 J91 J92 J93 J94
소화계통의	식도의 양성신생물	D13.0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양성신생물	위의 양성신생물 십이지장의 양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소장의 양성신생물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D13.1 D13.2 D13.3 D13.9
간, 담관, 췌장의 양성신생물	간의 양성신생물 간외담관의 양성신생물 췌장의 양성신생물 내분비췌장의 양성신생물	D13.4 D13.5 D13.6 D13.7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 비강 및 부비동의 양성신생물 후두의 양성신생물	D14.0 D14.1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기관지의 양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상세불명의 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신생물	D14.2 D14.3 D14.4 D15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D16
조직의 양성신생물	중피조직의 양성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신생물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신생물	D19 D20 D21
유방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D24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남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5 D26 D28 D29
난소의 양성신생물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D30
눈의 양성신생물	각막의 양성신생물 망막의 양성신생물 맥락막의 양성신생물 섬모체의 양성신생물	D31.1 D31.2 D31.3 D31.4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D34 D35
비장질환	비장의 질환	D73
손목터널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G56.0
단일신경병증	팔의 단일신경병증 (손목터널증후군 제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기타 단일신경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G56 (G56.0제외) G90.6 G57 G58 G59.8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H59.8 중 미만성 총판성 각막염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	H15 - H22 H59.8 <sup>주)3</sup> H30 - H36 (H35.3제외) (H35.0제외) <sup>주)3</sup> (H36.0제외)
유리체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H43
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H46 - H48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외이의 질환	외이의 질환	H60 - H62
중이 및 유도의 질환	중이 및 유도의 질환	H65 - H75
귀경화증	귀경화증	H80
내이의 질환	내이의 질환	H81 - H83
귀의 기타장애	귀의 기타장애	H90 - H95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4 I77
하지의 정맥류	하지의 정맥류	I83
림프절염	비특이성 림프절염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I88 I89
급성 상기도감염	급성 상기도감염	J00 - J06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편도주위 농양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상기도의 기타 질환	J36 J37 J38 J39
식도질환	식도염 위-식도역류병 식도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K20 K21 K22 K23
위공장계양	위공장계양	K28
위십이지장질환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기능성 소화불량	K29 K30
특정부위의 탈장	대퇴탈장 배꼽탈장 복벽탈장 횡격막탈장 기타 복부탈장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K41 K42 K43 K44 K45 K46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크론병(국소성 장염) 궤양성 대장염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K50 K51 K52
특정장질환	장의 혈관장애 탈장의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장의 개실병	K55 K56 K57
복막의 질환	복막염 복막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결핵성 복막염 제외)	K65 K66 K67 (K67.3제외)
담낭담도질환	담낭염 담낭의 기타 질환 담도의 기타 질환	K81 K82 K83
통풍	통풍	M10
전신결합조직장애	경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피부다발근염	M30 M31 M33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경추상완증후군 기타 연조직장애 (어깨병변 제외)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제외)	M35 M53.1 M70 - M79 (M75제외) (M72.2제외)
척추변형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M40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척추축만증 척추골연골증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1 M42 M43
척추병증	강직척추염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증 기타 척추병증	M45 M46 M47 M48
추간판장애	경추간판장애 기타 추간판장애	M50 M51
근육장애	근염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 근육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근육장애	M60 M61 M62 M63
윤활막 및 힘줄장애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윤활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	M65 M66 M67 M68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M72.2
어깨병변	어깨병변	M75
골다공증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0 M81 M82
뼈의병증	골수염 골괴사 뼈의 파열병 뼈의 기타 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6 M87 M88 M89 G90.5
연골병증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기타 골연골병증 연골의 기타 장애	M91 M92 M93 M94
방광의 결석	방광의 결석	N21.0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방광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방광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결핵성 방광염 제외)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스트레스요실금 제외)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N30 N31 N32 N33 (N33.0제외) N37 N39 (N39.3제외) (N39.4제외)
유방의 장애	양성 유방형성이상 유방의 염증성 장애 유방의 비대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유방의 기타 장애 (단, 남성이 '유방의 장애(N60~N64)'로 진단 확정을 받고 시행한 '유방 절제술(Mastectomy)-피하절제[남성의 여성형 유방절제 포함] (Subcutaneous)'수술의 경우 제외)	N60 N61 N62 N63 N64
난소, 난관의 질환	난관염 및 난소염 난소, 난관 및 넓은 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N70 N83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

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해당 분류번호는 대상질병에 기재된 특정 질병에 한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42-5】 백내장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백내장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백내장	노년성 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7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42-6】 치핵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치핵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혈전증	치핵(제외 : 출산 및 산후기 합병(O87.2), 임신 합병(O22.4))	K64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42-7】 후각특정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후각특정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후각특정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1
	코폴립	J33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J34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3】**  
**7대특정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7대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I00 ~ 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 ~ I09
	허혈성 심질환	I20 ~ 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 I28
	기타형태의 심장질환	I30 ~ I52
	칸디다심내막염	B37.6
	수막알균성 심장막염	A39.5
	수막알균성 심내막염	A39.5
	수막알균성 심근염	A39.5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	A39.5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I60 ~ I69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B15 ~ B19
	간의 질환	K70 ~ K77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B25.1
	톡소포자충간염	B58.1
고혈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고혈압성 뇌병증	I67.4
	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H35.0 <sup>주)4</sup>
당뇨병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3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만성하부호흡기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4. 해당 분류번호는 대상질병에 기재된 특정 질병에 한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44】 여성특정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I00 ~ 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 ~ I09
	허혈성 심질환	I20 ~ 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 I28
	기타형태의 심장질환	I30 ~ I52
	칸디다심내막염	B37.6
	수막알균성 심장막염	A39.5
	수막알균성 심내막염	A39.5
	수막알균성 심근염	A39.5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	A39.5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I60 ~ I69
고혈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고혈압성 뇌병증	I67.4
	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H35.0 <sup>주)4</sup>
당뇨병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당뇨병성 망막변증 당뇨병성 관절변증 당뇨병에서의 사구체 장애	H36.0 M14.2 N08.3
신부전	신부전	N17~N19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 궤양	K25 K26 K27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4. 해당 분류번호는 대상질병에 기재된 특정 질병에 한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5】**  
**부인과질병 분류표 II**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부인과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제자리 신생물 2. 양성 신생물 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00-D09 D24-D28 D37-D44, D47.0, D47.2, D47.7, D47.9, D48
4. 유방의 장애 5.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6. 여성 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제외) (여성 불임 제외)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N60-N64 N70-N77, N80-N95
7. A18.17 중 자궁경부의 결핵 8. A18.17 중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	A18.17 <sup>주)3</sup> A18.17 <sup>주)3</sup>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해당 분류번호는 대상질병에 기재된 특정 질병에 한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6】  
여성만성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골다공증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2
	골연속성의 장애	M84
2. 관절염	관절병증 류마티스 폐질환	M00 ~ M25 J99.0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7】  
갑상선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갑상선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선천성 요오드결핍증후군	E00
2.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갑상선 장애 및 동류의 병태	E01
3. 무증상 요오드 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4.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E03
5. 기타 비독성 고이터	E04
6.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7. 갑상선염	E06
8. 갑상선의 기타 장애	E07
9.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89.0
10.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	H06.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8】  
안과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안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1-H59
2. A00-G99, H60-O99, R00-R99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안과전문의가 진단 및 수술한 눈 및 눈 부속기 관의 질병	

- 주) 1.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9】  
이비인후과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이비인후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귀 및 유도의 질환	H60-H95
2. A00-H59, I00~N99, R00-R99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진단 및 수술한 귀, 코, 인후 부 기관의 질병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0】  
3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1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 뇌의 악성신생물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3.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질환	C88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51】 여성특정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2. 외음의 악성신생물	C51
3. 질의 악성신생물	C52
4.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C53
5.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C54
6.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C55
7. 난소의 악성신생물	C5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7
9. 태반의 악성신생물	C5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2】  
특정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담낭의 악성신생물	C2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C24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뇌의 악성신생물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3】  
뇌졸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거미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 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5】  
뇌출혈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 번호
1. 거미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6】  
뇌혈관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I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8. 기타 뇌혈관 질환	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57】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협심증	I20
2. 급성 심근경색증	I21
3. 후속심근경색증	I22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I24
6. 만성 허혈성심장병	I2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58】 심장관련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심장관련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급성 류마티스열	I00 ~ 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 ~ I09
허혈성 심질환	I20 ~ 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 I28
기타형태의 심장질환	I30 ~ I52
칸디다심내막염	B37.6
수막알균성 심장막염	A39.5
수막알균성 심내막염	A39.5
수막알균성 심근염	A39.5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	A39.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9】**  
**특정류마티스관절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M06
류마티스폐질환	J99.0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0】**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① 아래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19년 8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li> <li>-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li> <li>-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애플리버셉트 aflibercept	잘트립주25mg/mL(애플리버셉트)
2	알렉티닙염산염 alectinib	알레센자캡슐150밀리그램(알렉티닙염산염)
3	아파티닙이말레산염 afatinib	지오텍립정2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텍립정3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텍립정4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4	엑시티닙 axitinib	인라이타정1밀리그램(엑시티닙) 인라이타정5밀리그램(엑시티닙)
5	보르테조미프삼합체 bortezomib	벨조미프주1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조미프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케이드주(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킨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보테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테조미프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테조미프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테조벨주(보르테조미프삼합체) 프로테조미프주(보르테조미프삼합체) 프로테조미프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6	카보잔티닙 cabozantinib	카보메텍스정20밀리그램(카보잔티닙) 카보메텍스정40밀리그램(카보잔티닙) 카보메텍스정60밀리그램(카보잔티닙)
7	카르필조미프 carfilzomib	키프롤리스주30밀리그램(카르필조미프) 키프롤리스주60밀리그램(카르필조미프)
8	세리티닙 ceritinib	자이카디아캡슐150밀리그램(세리티닙)
9	코비메티닙 cobimetinib	코텔릭정20밀리그램(코비메티닙)
10	크리조티닙 crizotinib	젤코리캡슐200밀리그램(크리조티닙) 젤코리캡슐250밀리그램(크리조티닙)
11	다브라페닙메실산염 dabrafenib	라핀나캡슐50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라핀나캡슐75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12	다사티닙 dasatinib	스프라이셀정10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2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5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7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80밀리그램(다사티닙)
13	엘로티닙염산염 erlotinib	광동엘로티닙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광동엘로티닙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디씨바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디씨바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로세타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로세타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로티닙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수출용) 엘로티닙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티닙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티닙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씨바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씨바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씨바정25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씨원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씨원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100mg(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150mg(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25mg(엘로티닙염산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4	에베로리무스 everolimus	아피니토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아피니토정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아피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에리니토정10mg(에베로리무스)
15	게피티니브 gefitinib	레피사정(게피티니브) 스펙사정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이레사정(게피티니브) 이레티닙정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이레피논정(게피티니브) 제피티닙정(게피티니브)
16	이브루티닙 ibrutinib	임브루비카캡슐140밀리그램(이브루티닙)
17	이매티닙메실산염 imatinib	글로팁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백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부렌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부렌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부렌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3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키백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키백필름코팅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키백필름코팅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류코백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류코백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유니팁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니백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니백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매티퀵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매팁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매팁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제이티닙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제이티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케어백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케어백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케어백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18	익사조밋시트레이트 ixazomib	닌라로캡슐2.3밀리그램(익사조밋시트레이트) 닌라로캡슐3밀리그램(익사조밋시트레이트) 닌라로캡슐4밀리그램(익사조밋시트레이트)
19	라파티닙티토실레이트 lapatinib	타이커브정250밀리그램(라파티닙티토실레이트)
20	렌바티닙메실산염 lenvatinib	렌비마캡슐10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21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nilotinib	타시그나캡슐15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타시그나캡슐20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22	올라파립 olaparib	린파자캡슐50밀리그램(올라파립)
23	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olmutinib	올리타정2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올리타정4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24	오시머티닙 osimertinib	타그리소정4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타그리소정8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25	팔보시클립 palbociclib	입랜스캡슐100mg(팔보시클립) 입랜스캡슐125mg(팔보시클립) 입랜스캡슐75mg(팔보시클립)
26	파조파닙염산염 pazopanib	보트리엔트정2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보트리엔트정4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27	포나티닙염산염 ponatinib	아이클루시그정1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아이클루시그정4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28	라도티닙염산염 radotinib	슈펙트캡슐1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슈펙트캡슐2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29	레고라페닙 regorafenib	스티바가정40밀리그램(레고라페닙)
30	록소리티닙인산염 ruxolitinib	자카비정5밀리그램(록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10밀리그램(록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15밀리그램(록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20밀리그램(록소리티닙인산염)
31	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sorafenib	넥사바정200밀리그램(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32	수니티닙말산염 sunitinib	수텐캡슐1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50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33	템시롤리무스 temsirolimus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34	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trametinib	매큐셀정0.5밀리그램(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매큐셀정2밀리그램(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35	반데타닙 vandetanib	카프렐사정100밀리그램(반데타닙) 카프렐사정300밀리그램(반데타닙)
36	베무라페닙 vemurafenib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베무라페닙)
37	비스모데깁 vismodegib	에리벤티캡슐150밀리그램(비스모데깁)
38	파노비노스타트락트산염 panobinostat	파리닥캡슐10밀리그램(파노비노스타트락트산염) 파리닥캡슐15밀리그램(파노비노스타트락트산염) 파리닥캡슐20밀리그램(파노비노스타트락트산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39	레날리도마이드 lenalidomide	레날도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7.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10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1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20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7.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리드정(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7.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알보젠레날리도마이드캡슐5밀리그램 알보젠레날리도마이드캡슐10밀리그램 알보젠레날리도마이드캡슐15밀리그램 알보젠레날리도마이드캡슐25밀리그램
40	보리노스타트 vorinostat	졸린자캡슐100밀리그램(보리노스타트)
41	브리가티닙 brigatinib	알룬브릭정30밀리그램(브리가티닙) 알룬브릭정90밀리그램(브리가티닙) 알룬브릭정180밀리그램(브리가티닙)
42	미도스타우린 midostaurin	라이담연질캡슐25밀리그램(미도스타우린)
43	니라파립 토실산염일수화물 niraparib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44	퍼투주맵 pertuzumab	퍼제타주(퍼투주맵)
45	트라스투주맵엠탄신 trastuzumabemtansine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맵엠탄신)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맵엠탄신)
46	트라스투주맵 trastuzumab	삼페닛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맵) 허셉틴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맵)(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허셉틴주44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맵) 허셉틴피하주사6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맵) 허주마주150mg(트라스투주맵)(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허주마주440mg(트라스투주맵)(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47	올라라투맵 olaratumab	라트루보주10밀리그램/밀리리터 (올라라투맵, 유전자재조합)
48	오비누투주맵 obinutuzumab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맵, 유전자재조합)
49	엘로투주맵 elotuzumab	엠펙리시티주300밀리그램(엘로투주맵, 유전자재조합) 엠펙리시티주400밀리그램(엘로투주맵, 유전자재조합)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50	실룩시맙 siltuximab	실반트주100밀리그램(실룩시맙, 유전자재조합) 실반트주400밀리그램(실룩시맙, 유전자재조합)
51	세룩시맙 cetuximab	얼비톡스주5mg/mL(세룩시맙)
52	블리나투모맙 blinatumomab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블리나투모맙, 유전자재조합)
53	브렌톡시맙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애드세트리스주(브렌톡시맙베도틴)
54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55	리톡시맙 rituximab	맙테라주(리톡시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맙테라피하주사(리톡시맙)(유전자재조합) 트록시마주(리톡시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56	라우시루맙 ramucirumab	사이람자주10밀리그램/밀리리터 (라우시루맙, 유전자재조합)
57	다라투무맙 daratumumab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58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센트릭주(아테졸리주맙)
59	니볼루맙 nivolumab	옵디보주2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60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유전자재조합)
61	탈리도마이드 thalidomide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밀리그램 탈라이드캡슐100mg(탈리도마이드) 탈라이드캡슐50mg(탈리도마이드) 탈로다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로다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리그로브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리그로브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62	포말리도마이드 pomalidomide	포말리스트캡슐1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2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3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4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63	이필리무맙 ipilimumab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 (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터 (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64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더발루맙)
65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 inotuzumab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66	아벨루맙 avelumab	바벤시오주(아벨루맙)
67	테르토모타이드 염산염 tertomotide	리아백스주(테르토모타이드염산염)
68	아베마시클립 abemaciclib	버제니오정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1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1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2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69	베네토글락스 venetoclax	벤클렉스타정10밀리그램(베네토글락스) 벤클렉스타정50밀리그램(베네토글락스) 벤클렉스타정100밀리그램(베네토글락스)

**【별표61】**  
**1~5종 수술 분류표 III**

1. 일반 질병 및 상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cm <sup>2</sup> 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cm <sup>2</sup> 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유방절제술(Mammotomy)는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근골(筋骨)의 수술 주1)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악골(下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3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수술은 제외]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 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1	
비뇨기계·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함)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1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50. 고환(睪丸), 부고환(副睪丸), 정관(精管), 정삭(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
	51. 음낭관혈수술	1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55. 질탈(腔脫)근본수술	1
내분비기계의 수술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4
신경계의 수술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
	61. 관혈적 척수종양(脊腫瘍) 절제수술	4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제외)	1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투브삼입술 포함)	1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1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3
	76. 안와내양절제수술	3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8. 안근(眼筋)관혈수술	1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1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3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8-1. 뇌, 심장	3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 주1) 근골(筋骨)의 수술에서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하며, 치(齒)·치은·치근(齒根)·치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도 제외합니다.
- 주2)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 주3) 상기 3항의 수술 중 남성이 '유방의 장애(N60~N64)'로 진단 확정을 받고 시행한 '유방절제술(Mastectomy)-피하절제[남성의 여성형 유방절제 포함](Subcutaneous)'수술의 경우 4항을 적용합니다.
- 주4) 상기 88-2항의 수술 중 '대장용종' 진단으로 시행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은 88-3항을 적용합니다.

## 2.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1-1. 기타피부암(C44)	5   3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 주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주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수술명	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주)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5종 수술 분류표Ⅲ 사용 지침)

-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Ⅲ」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혈(觀血)」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본(根本)」혹은 「근치(根治)」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 「1~5종 수술분류표Ⅲ」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1~5종 수술분류표Ⅲ」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1~5종 수술분류표Ⅲ」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분류표Ⅲ」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분류표Ⅲ」 중 「일반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 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및 검사,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1~5종 수술분류표Ⅲ」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별표62】**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항암방사선치료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체외조사에대한방사선모의치료및치료계획	
기본치료계획[1문조사]-제1회	HD010
기본치료계획[1문조사]-제2회부터	HD410
기본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1회	HD011
기본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2회부터	HD411
기본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1회	HD012
기본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2회부터	HD412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1문조사]-제1회	HD013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1문조사]-제2회부터	HD413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1회	HD014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2회부터	HD414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1회	HD015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2회부터	HD415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운동조사법]-제1회	HD016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운동조사법]-제2회부터	HD416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수술중방사선치료계획]	HD017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입체조형치료계획]-제1회	HD018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입체조형치료계획]-제2회부터	HD418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1회	HD019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2회부터	HD419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양성자치료계획]-제1회	HD020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양성자치료계획]-제2회부터	HD420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세기변조방사선치료계획]-제1회	HD041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세기변조방사선치료계획]-제2회부터	HD441
밀봉소선원치료에대한치료계획및모의치료	
외부접촉조사치료	HD021
강내치료, 관내치료	HD022
조직내치료	HD023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차폐물	HD031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보상체	HD032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고정기구	HD033
전립선암에Iodine-125영구삽입술[계획]	HD040
체내(체표면)선량측정	HX401
조사면검교정-필름검교정	HY402
조사면검교정-전기적영상검교정[2차원]	HY404
조사면검교정-전기적영상검교정[3차원]	HY405
체외조사-저에너지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1
체외조사-저에너지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문조사)부터]	HD054
체외조사-중에너지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2
체외조사-중에너지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문조사)부터]	HD055
체외조사-고에너지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3
체외조사-고에너지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문조사)부터]	HD056
회전조사-저에너지지방사선치료	HD057
회전조사-중에너지지방사선치료	HD058
회전조사-고에너지지방사선치료	HD059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입체조형치료	HD061
개봉선원치료-경구투여방법	HD071
개봉선원치료-정맥주사방법	HD072
개봉선원치료-기타방법	HD073
밀봉선원치료-외부근접(접촉)조사치료	HD080
밀봉선원치료-강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1치료기간당	HD081
밀봉선원치료-강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치료중단시	HD082
밀봉선원치료-강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방사성선원삽입당일	HD083
밀봉선원치료-강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익일부터	HD084
밀봉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1치료기간당	HD085
밀봉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치료중단시	HD086
밀봉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방사성선원삽입당일	HD087
밀봉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익일부터	HD088
밀봉선원치료-방사성입자의자입치료	HD089
전신조사-전신	HD091
전신조사-전립프절	HD092
전신피부전자선조사	HD093
정위적방사선분할치료	HD110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1회로치료종결]	HD112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2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1회로치료종결]	HD212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이용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5
양성자치료	HD121
세기변조방사선치료	HZ271
전립선암에Iodine-125영구삽입술[치료]	HD150

**【별표63】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항암약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분류 중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부신흔호르몬제	245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7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49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13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39
해독제	392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399
항악성종양제	421
기타의 종양치료제	429
방사성 의약품	431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17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항암면역요법제	639

**【별표64】  
대상포진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대상포진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 번호
대상포진	B0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5】  
대상포진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대상포진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 번호
대상포진눈병	B02.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6】  
통풍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통풍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 번호
통풍	M10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7】  
요로결석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요로결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 번호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0
하부요로의 결석	N21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8】  
3대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3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악성신생물(암)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2. 제자리신생물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4. 뇌혈관질환	1. 거미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I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8. 기타 뇌혈관 질환	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5. 허혈성심장질환	1. 협심증	I20
	2. 급성 심근경색증	I21
	3. 후속심근경색증	I22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I24
	6. 만성 허혈성심장병	I2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9】**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다약제내성결핵	U84.30
광범위약제내성결핵	U84.31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0】  
간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	B15 ~ B19 K70 ~ K77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간질환’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간질환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간장애	K77.0*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톡소포자충간염	B25.1+ B58.1+

- 주)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71】  
아나필락시스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아나필락시스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78.0
2.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T78.2
3. 혈청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0.5
4.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8.6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통행)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주) 상기와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7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 부상등급별 상해내용

부상등급	상해내용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li> <li>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li> <li>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li> <li>5. 척추(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li> <li>6. 척추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li> <li>7. 척추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li> <li>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li> <li>14. 화상·좌창·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li> <li>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li> <li>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li> <li>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li> <li>5. 척추 손상으로 불안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li> <li>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li> <li>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li> <li>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li> <li>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li> <li>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li> <li>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li> <li>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li> <li>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li> <li>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li> <li>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li> </ol>

	<p>행한 상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li> <li>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li> <li>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li> <li>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li> <li>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li> <li>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li> <li>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li> <li>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li> <li>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li> <li>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8. 위팔뼈목 골절</li> <li>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li> <li>10. 위팔뼈 위관절염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li> <li>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li> <li>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li> <li>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li> <li>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li> <li>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li> <li>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li> <li>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li> <li>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li> <li>4. 안정성 추체 골절</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li> <li>6. 위팔뼈 몸통 골절</li> <li>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li> <li>9. 노뼈 붓돌기 골절</li> <li>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li> <li>11. 손목 손배뼈 골절</li> <li>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li> <li>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li> <li>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li> <li>20. 무릎뼈 골절</li> <li>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li> <li>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li> <li>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li> <li>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li> <li>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li> <li>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li> <li>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li> <li>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li> <li>4. 심장 타박</li> <li>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li> <li>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li> <li>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9. 외상성 상부관절외손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li> <li>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li> <li>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li> <li>18. 노뼈목 골절</li> <li>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li> <li>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li> <li>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li> <li>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ol>

	<p>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p> <p>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7급	<p>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p> <p>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p> <p>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p> <p>5. 쇄골(빗장뼈) 골절</p> <p>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p> <p>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p> <p>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p> <p>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p> <p>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p> <p>15. 손목 부위 손배뼈·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p> <p>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p> <p>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p> <p>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p> <p>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p> <p>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p> <p>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8급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p> <p>3. 외상성 시신경병증</p> <p>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5. 복합 고막 파열</p> <p>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p> <p>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p> <p>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0. 위팔뼈 위관절염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2. 손허리뼈 골절</p> <p>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p> <p>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p> <p>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p> <p>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영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li> <li>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li> <li>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li> <li>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ul>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li> <li>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5. 복장뼈(흉골) 골절</li> <li>6. 추간판 탈출증</li> <li>7. 흉쇄관절 탈구</li> <li>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1. 손가락관절 탈구</li> <li>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li> <li>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17. 손가락·발가락 평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li> <li>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li> <li>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ul>
10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li> <li>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li> <li>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li> <li>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5. 외상성 상부관절외손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li> <li>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li> <li>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ul>
1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뇌진탕</li> <li>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li> <li>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li> <li>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ul>
1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li> <li>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li> <li>3. 척추 염좌</li> <li>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li> <li>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li> <li>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li> <li>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ul>
1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li> <li>2. 단순 고막 파열</li> <li>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li> <li>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li> <li>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ul>

1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li> <li>2. 손발가락 관절 염좌</li> <li>3. 팔다리의 단순 타박</li> <li>4. 1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li> <li>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	---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p> <p>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p> <p>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항 또는 하항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항 또는 하항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항 조정 요인과 하항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항 또는 큰 폭의 하항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p> <p>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p> <p>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p>	
머리	<p>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 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p> <p>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항 조정할 수 있다.</p> <p>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p> <p>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바. 의지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p> <p>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p> <p>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p> <p>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p>	
흉·복부	<p>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p>	
척추	<p>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로 본다.</p> <p>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라. 마미증후군은 척추손상으로 본다.</p>	
팔·다리	공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항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p> <p>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p> <p>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p> <p>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p> <p>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p> <p>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p>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p> <p>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수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p> <p>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p>
팔	<p>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간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간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다리	<p>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p> <p>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p> <p>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p> <p>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p> <p>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p> <p>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p> <p>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p> <p>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별표74】  
심장질환(특정 I)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심장질환(특정 I)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 류 번 호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4.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5】  
심장질환(특정 II)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심장질환(특정 II)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 류 번 호
1. 협심증	I20
2. 기타급성허혈성심장질환	I24
3. 만성허혈성심장병	I25
4. 급성 심장막염	I30
5. 심장막의 기타질환	I31
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7.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8.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9. 급성 심근염	I40
1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6】  
심장질환(특정 III)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심장질환(특정 III)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 류 번 호
1.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106.0
2. 폐쇄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협착	106.2
3.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134
4.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135
5.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136
6. 폐동맥판장애	137
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139
8. 심근병증	142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143
10. 발작성 빈맥	147
11. 심장세동 및 조동	148
12. 심부전	150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77】 심장질환(특정Ⅳ)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심장질환(특정Ⅳ)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 류 번 호
기타 심장부정맥	149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78】 관상동맥성형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관상동맥성형술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9.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수 가 코 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단일혈관	M6551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일차적중재술 등]	M6553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M6554
	추가혈관	M6552
경피적	단일혈관	M6561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	단일혈관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	M6563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일차적중재술 등]	M6565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M6566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	M6567
	추가혈관	M6562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추가혈관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	M6564
	단일혈관	M6571
	추가혈관	M6572

주)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기 진료행위 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79】 뇌정위적방사선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정위적방사선술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9.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분류 항목	수 가 코드
감마나이프이용	HD113
사이버나이프 이용	HD114
선형가속기 이용	HD115

주)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기 진료행위 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80】 특정뇌동맥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뇌동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 번호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I67.0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I67.1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1】  
혈관색전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혈관색전술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9.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수 가 코 드
뇌혈관(척추포함) 동맥류 - 보조물지지	M1661
뇌혈관(척추포함) 동맥류 - 기타의 경우	M1662

주)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기 진료행위 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82】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9.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수 가 코 드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 상심실성 부정맥 - 상심실성 부정맥 - 중격천자 - 심방세동 - 심방세동 - 중격천자 - 심방세동 - 하대정맥 - 삼첨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 - 심실성 부정맥	M6541 M6544 M6542 M6545 M0654 M6543
	삼차원(3-D)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 상심실성 부정맥 - 상심실성 부정맥 - 중격천자 - 심방세동 - 심방세동 - 중격천자 - 심실성 부정맥	M6546 M6549 M6547 M6540 M6548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 중격천자	M6550 M6556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 상심실성 부정맥 - 상심실성 부정맥 - 중격천자 - 심방세동 - 심방세동 - 중격천자 - 심방세동 - 하대정맥 - 삼첨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 - 심방세동 - 냉각풍선절제술 - 심방세동 - 냉각풍선절제술 - 중격천자 - 심실성 부정맥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 중격천자	M0657 M0653 M0658 M0655 M0659 M0651 M0652 M0661 M0662 M0656

주)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기 진료행위 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83】**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① 아래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0년 9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li> <li>-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li> <li>-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아비라테론 abiraterone	자이티가정250밀리그램(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미분화))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미분화))
2	아나스트로졸 anastrozole	에이덱스정(아나스트로졸) 아리미덱스정(아나스트로졸) 테바아나스트로졸정1밀리그램 아트로졸정(아나스트로졸) 페미젯정1밀리그램(아나스트로졸) 아나스토정(아나스트로졸)
3	비칼루타미드 bicalutamide	카소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 비카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50밀리그램 비카루드정 칼루타미정1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칼루타미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비카소정(비칼루타미드) 카덱스정(비칼루타미드) 카소비트(비칼루타미드) 프로세이드정(비칼루타미드) 프로카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 프로칼린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테바비칼루타마이드정50밀리그램
4	다로루타마이드 darolutamide	뉴베카정300밀리그램(다로루타마이드)
5	데가렐릭스 degarelix	퍼마곤주80밀리그램(데가렐릭스) 퍼마곤주120밀리그램(데가렐릭스)
6	엔잘루타마이드 enzalutamide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엔잘루타마이드)
7	에스트라머스틴 estramustine	에스트라시트캡슐140밀리그램(에스트라머스틴인산나트륨수화물)
8	엑스메스탄 exemestane	아로마신정25mg(엑스메스탄)
9	플베스트란트 fulvestrant	파슬로덱스주(플베스트란트)
10	고세렐린 goserelin	졸라덱스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11	레트로졸 letrozole	페마라정(레트로졸) 레나라정(레트로졸) 트로젯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레트론정(레트로졸) 브레트라정(레트로졸) 파누엘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테바레트로졸정2.5밀리그램
12	류프로렐린 leuprorelin	루피어데포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로렐린주사액(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4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30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2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주3.75mg(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2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13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medroxyprogesterone	파루탈정(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14	타목시펜 tamoxifen	광동타목시펜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광동타목시펜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디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모프렉스정1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모프렉스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목센정
15	토레미펜 toremifene	화레스톤정40밀리그램(토레미펜시트르산염)
16	트립토헤린 triptorelin	데카펩틸-데포(트립토헤린아세트산염) 데카펩틸주0.1밀리그램(트립토헤린아세트산염) 디페렐린피알3.75밀리그램주(초산트립토헤린) 디페렐린피알주11.25밀리그램(파모산트립토헤린) 디페렐린에스알주22.5밀리그램(트립토헤린파모산염)
17	메게스트롤 megestrol	메게시아정4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시아정16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네옥시아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애피트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제트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가프렉스정40밀리그램(초산메게스트롤) 메가프렉스정160밀리그램(초산메게스트롤)

**【별표84】**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① 아래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0년 10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の内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li> <li>-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li> <li>-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레보티록신 Levothyroxine	씌지로이드정0.02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로이드정0.037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로이드정0.0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로이드정0.07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로이드정0.112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로이드정0.1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로이드정0.1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로이드정0.2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록신정10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록신정12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록신정15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록신정2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록신정5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록신정7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씌지록신정88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콤지로이드정(부광리오탁스정)
2	리오티로닌 Liothyronine	테트로닌정5마이크로그램(리오티로닌나트륨) 엘트릭스정

**【별표85】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9.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분류 항목	수 가 코드
자기공명영상유도 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RZ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RZ566

주)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기 진료행위 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86】  
당뇨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7】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창상봉합술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창상봉합술 가.안면또는경부 (1)단순봉합	
(가)표재성인것	
3)길이 3.0cm이상~5.0cm미만	S0027
4)길이 5.0cm이상~7.5cm미만	S0028
5)길이 7.5cm이상~10.0cm미만	S0029
주: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30
(나)근육에달하는것	
1)길이 1.5cm미만	S0031
2)길이 1.5cm이상~3.0cm미만	S0032
3)길이 3.0cm이상~5.0cm미만	S0037
4)길이 5.0cm이상~7.5cm미만	S0038
5)길이 7.5cm이상~10.0cm미만	S0039
주: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40
(2)변연절제를 포함	
(가)표재성인것	
3)길이 3.0cm이상~5.0cm미만	SA027
4)길이 5.0cm이상~7.5cm미만	SA028
5)길이 7.5cm이상~10.0cm미만	SA029
주: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30
(나)근육에달하는것	
1)길이 1.5cm미만	SA031
2)길이 1.5cm이상~3.0cm미만	SA032
3)길이 3.0cm이상~5.0cm미만	SA037
	SA038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4)길이 5.0cm이상~7.5cm미만 5)길이 7.5cm이상~10.0cm미만 주: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39 SA040
가.안면과경부이외 (1)단순봉합	
(가)표재성인것 3)길이 5.0cm이상~10.0cm미만 주: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SB029 SB030
(나)근육에 달하는것 1)길이 2.5cm미만 2)길이 2.5cm이상~5.0cm미만 3)길이 5.0cm이상~10.0cm미만 주: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SB031 SB032 SB039 SB040
(2)변연절제를포함	
(가)표재성인것 3)길이 5.0cm이상~10.0cm미만 주: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 며, 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1 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SC029 SC030
(나)근육에달하는것 1)길이 2.5cm미만 2)길이 2.5cm이상~5.0cm미만 3)길이 5.0cm이상~10.0cm미만 주:길이 10cm이상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1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SC031 SC032 SC039 SC040

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8】**  
**급여 안면/경부 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창상봉합술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창상봉합술 가.안면또는경부 (1)단순봉합	
(가)표재성인것 3)길이 3.0cm이상~5.0cm미만 4)길이 5.0cm이상~7.5cm미만 5)길이 7.5cm이상~10.0cm미만 주: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가산하며,	S0027 S0028 S0029 S0030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p>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p> <p>(나)근육에달하는것  1)길이 1.5cm미만  2)길이 1.5cm이상~3.0cm미만  3)길이 3.0cm이상~5.0cm미만  4)길이 5.0cm이상~7.5cm미만  5)길이 7.5cm이상~10.0cm미만  주: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p> <p>(2)변연절제를 포함</p> <p>(가)표재성인것  3)길이 3.0cm이상~5.0cm미만  4)길이 5.0cm이상~7.5cm미만  5)길이 7.5cm이상~10.0cm미만  주: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p> <p>(나)근육에달하는것  1)길이 1.5cm미만  2)길이 1.5cm이상~3.0cm미만  3)길이 3.0cm이상~5.0cm미만  4)길이 5.0cm이상~7.5cm미만  5)길이 7.5cm이상~10.0cm미만  주: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증가될 때 마다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p>	<p>S0031 S0032 S0037 S0038 S0039 S0040</p> <p>SA027 SA028 SA029 SA030</p> <p>SA031 SA032 SA037 SA038 SA039 SA040</p>

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9】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2호, 2022. 3.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1. 【별표8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표89-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2. 【별표8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별표89-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3. 【별표8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단, 【별표89-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주) 1. NIHSS 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의 약자로 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전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8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약관에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 3.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뇌혈관질환	I60~I67
2.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I72.0
3. 후천성 동정맥루	I77.0
4.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Q28.3
5. 두개내손상	S06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89-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의 수술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 3.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1. 혈중제거를 위한 개두술	S4621, S4622
2. 뇌동맥류수술	S4641, S4642
3. 뇌동정맥기형적출술	S4653~S4658
4.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S4611, S4622
5.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4711~S4715
6. 뇌엽절제술	S4780
7. 뇌 기저부 수술	S4801~S4803
8. 중추신경계정위수술 - 혈중제거	S4756
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M6593, M6594, M6597
10. 경피적뇌혈관악물성형술	M6599
11.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1, M6602, M6605
12. 경피적혈전제거술	M6630, M6632, M6635~M6637,
13. 혈관색전술	M6639
14. 천두술	M1661~M1667, M6644
15.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N0333
16. 혈관내 죽종제거술	O0226, O0227, O2066
17. 경동맥결찰술	S4670
18. 뇌내시경수술	S4744
19.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HD113~HD115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수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90】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2호, 2022. 3.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1. 【별표9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표90-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별표90-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에 해당하는 약제를 투여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별표9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표90-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별표9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약관에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 3.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질환명	분류번호
1. 심장의 양성 신생물	D15.1
2.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3.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4. 허혈심장질환	I20~I25
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6.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1
7.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I70.0
8.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	I79.0, I79.1
10. 대동맥궁증후군(다가야수)	M31.4
11.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20~Q25
12.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4, Q26.8, Q26.9
13. 흉부 혈관의 손상	S25
14. 심장의 손상	S26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 【별표90-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의 수술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2호, 2022. 3.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1.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OA640, OA641, OA647~OA649, O1640~O1641, O1643~O1649
2. 심장 창상봉합술	O1660
3. 동맥관개존폐쇄술	O1671, O1672
4. 대동맥축착증수술	O1680
5.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	O1690
6. 심혈관단락술	O1701, O1702
7. 폐동맥결찰술	O1703, O1704

8. 심방중격결손조성술	O1705
9. 심방, 심실중격결손증수술	O1710, O1711, O1721~O1723
10. 판막협착증수술	O1730, O1740, O1750, O1760
11. 심방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	O1770
12. 판막성형술	O1781~O1784
13. 인공판막치환술	O1791~O1793, O1797
14. 인공판막재치환술	O1794~O1796, O1798
15.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O1799
16. 활로씨 4 중후군 근분수술	O1800
17. 심실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	O1810
18. 심내막상결손증 수술	O1821, O1822
19. 좌심실류절제술	O1823
20. 좌심실용적축소성형술	O1824
21. 좌심실, 우심실 유출로 성형술	O1825, O1826
22. 관상동맥 내막절제술	O1830
23. 발살바동 동맥류파열수술	O1840
24. 동정맥기형교정술	O1841
25.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O1851, O1852
26. 좌우폐동맥 성형술	O1861
27. 기능적 단심실증 교정술	O1873, O1874
28. 라스탈리씨수술	O1875
29. 총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	O1878
30. 대혈관전위증 수술	O1879
3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O0881~O0883, O0886~O0889
32. 인공심폐순환	O1890
33. 개흉심장마사지	O1895
34. 부분체외순환	O1901~O1902
35.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O1903~O1904, O1907
36. 국소관류	O1910
37. 대동맥내풍선펌프	O1921, O1922
38. 심낭루조성술	O1931
39. 심낭창형성술	O1932, O1935
40. 심막절제술	O1940
41. 폐동맥혈전제거술	O1950
42. 대동맥-폐동맥 창 폐쇄술	O1960
43. 심내이물제거술	O1970
44. 심장중양제거술	O1981, O1982
45. 심박기거치술	O2001, O2004, O2005, O2009, O0203~O0210, O0241~O0243
46. 부정맥수술	O2006, O2007
47.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O0211, O0212, O2211, O2212
48. 동맥류 절제술	O2021, O2022, O2031~O2033
49. 혈전제거술-심장	O0260
50. 경피적 동맥관개존 폐쇄술	M6510
51.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OZ751
52.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M6513
53. 경피적 심방중격절개술	M6521, M6522
54. 경피적 심장 판막성형술	M6531~M6533
55.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냉각절제술	M6541~M6543, M6546~M6548, M6550, M0651, M0657, M0658, M0661, M0662
56.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M6551~M6554
57.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M6561~M6564, M6565~M6567
58. 경피적 관상동맥축상반절제술	M6571, M6572
59.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M6580~M6582
60.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M6585
61.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M6595~M6597
62.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3~M6605
63.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	M6611~M6613
64.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M6651, M6652
65. 경피적 혈관내 축종제거술	M6620
66. 경피적 혈전제거술	M6632, M6634, M6638, M6639

67. 혈관색전술	M6644
68. 심장이식술	Q8080
69. 심장 및 폐이식술	Q8103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수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90-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의 약제성분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 3.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약제성분을 말합니다.

약제성분명	주사제
1. Alteplase	주사제
2. Tenecteplase	주사제
3. Urokinase	주사제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약제성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91】**  
**특정부위 분류표**

구 분	특 정 부 위
1	위, 십이지장
2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3	대장(맹장, 직장 제외)
4	직장
5	항문
6	간
7	담낭(쓸개) 및 담관
8	췌장
9	비장
10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11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12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13	식도
14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15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16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17	신장
18	부신
19	요관, 방광 및 요도
20	음경
21	질 및 외음부
22	전립선
23	유방(유선 포함)
24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5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26	난소 및 난관
27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8	갑상선
29	부갑상선
30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구 분	특 정 부 위
3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32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33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34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35	천골(영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36	왼쪽 어깨
37	오른쪽 어깨
38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39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40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41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42	왼쪽 고관절
43	오른쪽 고관절
44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45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46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47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48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49	쇄골
50	늑골(갈비뼈)

**【별표92】**  
**특정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지정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 목 명
1	담석증	K80	담석증
2	요로결석	N20 N21 N22 N23	신장 및 요관의 결석 하부 요로의 결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3	척추질환	M40 M41 M42 M43 M45 M46 M47 M48 M49 M50 M51 M53 M54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척추측만증 척추골연골증 기타 변형성 등병증 강직척추염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증 기타 척추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경추간판장애 기타 추간판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등통증
4	결핵	A15 A16 A17 A18 A19 B90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결핵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신경계통의 결핵 기타 기관의 결핵 좁쌀 결핵 결핵의 후유증
5	하지정맥류	I83	하지의 정맥류
6	골반염	N73 N74	기타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성 장애

구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목명
7	연골증	M00	화농성 관절염
		M0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관절의 직접감염
		M02	반응성 관절병증
		M0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감염후 및 반응성 관절병증
		M05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M07	건전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8	연소성 관절염
		M0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연소성 관절염
		M10	통풍
	관절증	M11	기타 결절 관절병증
		M12	기타 특정 관절병증
		M13	기타 관절염
		M14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관절염	M15	다발관절증
		M16	고관절증
		M17	우릍 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9	기타 관절증
		M93	기타 골연골병증
M94	연골의 기타장애		
8	심장질환	I00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I01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2	류마티스무도병
		I05	류마티스성 승모판 질환
		I06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질환
		I07	류마티스성 삼첨판 질환
		I08	다발판막 질환
		I09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I26	폐색전증
		I27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8	폐혈관의 기타 질환
		I30	급성 심장막염
		I31	기타 심장막의 질환
		I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3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4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6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7	폐동맥판장애
		I38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40	급성 심근염
		I4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2	심근병증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4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5	기타 전도장애		
I46	심장정지		
I47	발작성 빈맥		
I48	심방세동 및 조동		
I49	기타 심장부정맥		
I50	심부전		
I51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구 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 목 명
		I5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9	뇌혈관질환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G45 G46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뇌혈관질환에서의 뇌의 혈관증후군
10	고혈압	I10 I11 I12 I13 I1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이차성 고혈압
11	당뇨병	E10 E11 E12 E13 E14 O24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임신중 당뇨병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지정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지정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지정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9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관련>

1. 입원실
  -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4.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 이상이어야 한다.
  - 라.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마.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체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체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와 법령의 변경으로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94】  
만성폐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만성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폐기종	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기관지확장증	J4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60 ~ J7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0
폐부종	J81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J96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5】  
자궁내막증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자궁내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자궁내막증	N80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6】  
전립선비대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전립선비대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전립선증식증	N40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7】  
특정녹내장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녹내장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원발성 개방우각녹내장	H40.1
원발성 폐쇄우각녹내장	H40.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8】  
삼출성 황반변성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삼출성 황반변성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	H35.31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9】  
주요바이러스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바이러스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급성 C형 간염	B17.1
2. 델타-병원체가 있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B18.0
3.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B18.1
4.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	B18.2
5.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
6.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
7. 기타 명시된 질환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
8. 기타 병태를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
9. 상세불명의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0】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	---------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위, 십이지장	위의 양성 신생물	D13.1
	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D13.2
	위 및 십이지장의 폴립	K31.7
대장	맹장의 양성 신생물	D12.0
	충수의 양성 신생물	D12.1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2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3
	하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4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5
	상세불명의 양성 신생물	D12.6
	직장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7
	직장의 양성 신생물	D12.8
	직장폴립	K62.1
	결장의 폴립	K63.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101】 급여 암주요재활치료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단순운동치료[1일당]	MM101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MM102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	MM103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MM301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MM302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	MM111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MM112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MM113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	MM114
압박치료[1일당]	MM190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	MM200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MZ008
연하장애재활치료	MX141
항문직장및골반근의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MX031

**【별표 102】**  
**뇌·심혈관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뇌·심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뇌혈관질환(II)	거미막하출혈	160
	뇌내출혈	1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뇌경색증	163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심혈관질환(II)	급성심근경색증	121
	후속심근경색증	1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46.0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03】**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수치료-증가욕치료[1일당]	MM041
파라핀욕[1일당]	MM042
수치료-정규욕조치료[1일당]	MM043
수치료-회전욕치료(수, 족, 지)[1일당]	MM044
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1일당]	MM045
수치료-하버드탱크치료[1일당]	MM046
풀치료-보행풀[1일당]	MM047
풀치료-전신풀[1일당]	MM048
수치료-대조욕치료[1일당]	MM049
전기자극치료	MM060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	MM085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MM102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	MM103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MM105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	MM111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MM112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MM113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	MM114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MM120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	MM131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 2부위이상각각실시	MM132
기능적전기자극치료	MM151
운동점차단술[근육당]	MM161
유속치료[1일당]	MM170
압박치료[1일당]	MM190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	MM200
호흡재활치료[1일당]	MM290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MM301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MM302
심장재활-치료	MM453
이온삼투요법[1일당]	MX121
연하장애재활치료	MX14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MZ008

**【별표 104】  
급여 신경차단·파괴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신경차단·파괴술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신경 차단술	지주막하 신경차단술	LA210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LA321, LA322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	LA222~LA228
	경막외 저장기펌프 제거술	LA330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LA340, LA341, LA232~LA23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LA241~LA245, LA247~LA249, LA346, LA347, LA270~LA276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정차단술	LA251, LA253, LA352~LA359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LA261, LA264, LA265, LA361, LA362, LA366, LA367
신경 파괴술	지주막하신경파괴술	LB310
	경막외신경파괴술	LB320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파괴술	LB331, LB333~LB336
	척수신경및말초지파괴술	LB341~LB346
	교감신경절및신경총파괴술	LB351, LB353~LB355, LB412, LB413

**【별표 105】  
여성5대생활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5대생활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성대결절(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손목터널증후군 내향성 손발톱 족저근막염 하지정맥류	J38 G56.0 L60.0 M72.2 I8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06】  
탈장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탈장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사타구니 탈장 대퇴 탈장 배꼽 탈장 복벽 탈장 횡격막탈장 기타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탈장	K40 K41 K42 K43 K44 K45 K46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07】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내시경 종양제거 수술		Q7611~Q7789, QX706
간	간농양(농종) 수술	
	가. 개복에 의한 흡입 또는 주입술	Q7211
	나. 배액을 위한 간절개술	Q7212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다. 조대술 라. 낭종적출술	Q7213 Q7214
담낭및 담도	담도낭종수술 가. 우회술 나. 절제술 담도종양수술 가. 양성	Q7331 Q7332 Q7341
기관지 및 폐	폐쇄기절제술 가. 단일 나. 2-3개 다. 4-5개 라. 6개 이상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가. 단일폐엽절제술 나. 쌍폐엽절제술 다. 폐엽과 폐구역절제술 라. 소매폐엽절제술	O1401 O1403 O1404 O1405 O1410 O1421 O1422 O1423 O1424
췌장	췌장가성낭종수술 가. 조대술 나.외부배액법 다. 내부배액법 췌장양성종양(낭종, 선종) 절제	Q7541 Q7542 Q7543 Q7550
갑상선	갑상선수술 가. 갑상선엽 전절제술 (1) 편측 (2) 양측 나. 갑상선엽 아전절제술 (1) 편측 (2) 양측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P4551 P4552 P4553 P4554 P4558
남성생식기관	외성기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01
여성생식기관	외음부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66
	질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70
	자궁근정절제술 가. 복부접근 (1) 단순 (2) 복잡	R4124 R4127
	나. 질부접근	R4123
	다. 복강경술 (1) 단순 (2) 복잡	R4128 R4129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가. 3cm 미만 나. 3cm 이상(다발성 포함)	R4125 R4126
	자궁경관점막폴립절제술	R4240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R4241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부속기 종양 적출술 가. 양성	R4421

**【별표 108】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간, 담관 및 췌장	간의 양성신생물, 간내담관의 양성신생물	D13.4
	간외담관의 양성신생물	D13.5
	췌장의 양성신생물	D13.6
기관지 및 폐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D14.3
갑상선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D34
남성생식기관	남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9
여성생식기관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D26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8
	여성생식기관의 폴립	N84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09】  
개호유발특정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개호유발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기타 명시된 내분비 장애	조로증	E34.8
신경계통의 질환	헌팅톤병	G10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2
	운동신경세포병	G12.2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중증근무력증	G20 G30 G70.0
뇌출혈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0 I61 I62
동맥 및 소동맥질환	죽상경화증	I70
기타 폐질환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류마티스 관절염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M05 M06
관절증	고관절증 무릎관절증	M16 M17
척추병증	척추 협착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M48.0 M48.8
골다공증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10】 요실금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요실금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스트레스 요실금	N39.3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
상세불명의 요실금	R3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11】 급여 요실금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요실금수술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요실금수술-개복에 의한 수술	R3562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자가근막을 이용한 경우(근막채취료 포함)	R3564
요실금수술 질강을 통한수술-기타의 경우	R3565

**【별표112】  
치매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치매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치매에 병발된 섬망	F05.1
알츠하이머병	G30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3】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 음경, 고환)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 음경, 고환)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0
2.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1
3.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2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4】  
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비뇨기관(신장, 방광, 요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4
2.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5
3.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6
4.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
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8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5】  
위암 및 식도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위암 및 식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2. 위의 악성 신생물	C16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6】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소장의 악성신생물	C17
2. 결장의 악성신생물	C18
3. 직장구불결장접합부위의 악성신생물	C19
4. 직장의 악성신생물	C20
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C21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7】**  
**간암 · 담낭암 ·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2. 담낭의 악성신생물	C23
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C24
4.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8】**  
**심장암 및 뇌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심장암 및 뇌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7
2.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신생물	C38
3.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0
4. 뇌의 악성 신생물	C71
5.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72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19】 호흡기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호흡기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후두의 악성신생물	C32
2.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
3.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4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20】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질환	C88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21】**  
**카티(CAR-T) 보장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카티(CAR-T) 보장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카티(CAR-T)보장대상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악성신생물	분류번호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C83.3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C91.0

- 주) 1.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이 특별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제4항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에 따라 카티(CAR-T)보장 대상 암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22】**  
**카티(CAR-T)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① 아래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카티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の内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티(CAR-T)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킬리아주(티사젠렉류셀)

**【별표 123】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62호, 2022. 3.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 124】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4호, 2023.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표124-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V306은 제외)	
(【별표124-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7
(【별표124-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8
(【별표124-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V305
(【별표124-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표124-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수술을 받는 경우	V306
(【별표124-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50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 124-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4호, 2023.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3]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명 및 수술명을 말합니다.

**<중증도 기준>**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	-------	------

1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T20.2
	몸통의 2도 화상	T21.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T22.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3.2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4.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25.2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	T30.2
2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T20.3
	몸통의 3도 화상	T21.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T22.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3.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4.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	T30.3
3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중 안면부에 수상한 경우	T20.3
	몸통의 3도 화상(T21.3)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	T21.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3.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눈 및 부속기의 화상	T26.0~T26.4
4	호흡기도의 화상	T27.0~T27.3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T28.0~T28.3

<체표면적 기준>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1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2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T31.9
2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T31.1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2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T31.9

<수술명 및 수술코드>

구분	상 병 명	수술코드
1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2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 125】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

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가족성 근위축측삭경화증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0 G12.21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주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26】 파킨슨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파킨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파킨슨병 파킨슨병에서의 치매(G20+)	G20 F02.3*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주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27】 급성신우신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신우신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급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0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2) 상기 질병 이외에 신생아에게 적용하는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코드)」 질병분류번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

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28】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1.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8
	2.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C41
	3.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69-C72
	4. 다발성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0
	5. 림프성 백혈병	C91
	6. 골수성 백혈병	C92
	7. 단핵구성 백혈병	C93
	8.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9.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10.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12. 골수섬유증	D47.4
	1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2	1.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2.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4
	3.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5
	4.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
	5.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6. 소포성 림프종	C82
	7. 비소포성 림프종	C83
	8. 성숙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4
	9.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C85
	10.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11.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96
3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00-C14
	2.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3. 위의 악성 신생물	C16
	4.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5.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
	6.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
	7.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
	8.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2
	9.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7
	10.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39
	11.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12. 종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5-C49
	13. 호지킨림프종	C81
	14.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1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4	1.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소액암	1.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2.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19

구분	대상질환명	분류번호
	3. 직장의 악성 신생물 4.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5.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6. 유방의 악성 신생물 7.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8.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9. 요로의 악성 신생물 10. 부신의 악성 신생물 11.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12.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20 C21 C26 C50 C51-C58 C60-C63 C64-C68 C74 C75 C76-C80
유사암	1.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2.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3. 제자리신생물 4.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0.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1.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2.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13.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14.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16.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C44 C73 D00-D09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구분1에 해당하는 질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 【별표 128-1】 중증질환자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질환명	분류번호
1	1.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2.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3.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4. 다발성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5. 림프성 백혈병 6. 골수성 백혈병 7. 단핵구성 백혈병 8.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9.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10. 만성 골수증식질환 1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12. 골수섬유증 1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38 C40-C41 C69-C72 C90 C91 C92 C93 C94 C95 D47.1 D47.3 D47.4 D47.5
2	1.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2.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3. 췌장의 악성 신생물 4. 기관의 악성 신생물 5.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22 C24 C25 C33 C34

구분	대상질환명	분류번호
	6. 소포성 림프종 7. 비소포성 림프종 8. 성숙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9.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10.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11.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82 C83 C84 C85 C86 C88 C96
3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식도의 악성 신생물 3. 위의 악성 신생물 4. 소장외의 악성 신생물 5. 담낭의 악성 신생물 6.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7.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8. 후두의 악성 신생물 9. 흉선의 악성 신생물 10.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11. 피부의 악성 흑색종 12. 종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13. 호지킨림프종 14.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5. 진성 적혈구증가증 1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C00-C14 C15 C16 C17 C23 C30 C31 C32 C37 C39 C43 C45-C49 C81 C97 D45 D46
4	1. 수막의 양성 신생물 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2 D33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구분1에 해당하는 질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 【별표 128-2】 중증질환자 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질환명	분류번호
소액암	1. 결장의 악성 신생물 2. 직장구불결장점합부의 악성 신생물 3. 직장의 악성 신생물 4.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5.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6. 유방의 악성 신생물 7.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8.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9. 요로의 악성 신생물 10. 부신의 악성 신생물 11.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12.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18 C19 C20 C21 C26 C50 C51-C58 C60-C63 C64-C68 C74 C75 C76-C80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구분1에 해당하는 질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 128-3】**  
**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질환명	분류번호
유사암	1.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4
	2.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3. 제자리신생물	D00~D09
	4.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5.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6.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7.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8.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9.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10. 뇌 및 중추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11.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12.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3.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4.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6.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구분1에 해당하는 질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 128-4】**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4호, 2023.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 129】**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4호, 2023. 1. 1시행)” 제5조의2 별표5(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결핵질환	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질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 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	V000

구분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서에서 치료결과 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 130】**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4호, 2023. 1. 1시행)” 제5조 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I	<b>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b>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선천성 무피브리노제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제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D68.2	V009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D68.2	V009
	제12인자[하계만]의 결핍	D68.2	V009
	제13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제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콘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II	<b>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b>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V102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가족성선종성폴립증	D12.6 (M8220/0)	V28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증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II형 빈혈	D55.2	V164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쿠올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황폐	D61.9	V023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혈소판병증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	V108
	호중구감소 NOS	D70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코스트만병	D70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	V108
	베르너-슐츠병	D70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증(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튼](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I형결핍	D81.7	V111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조지증후군	D82.1	V111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증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밑샘염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D89.1	V294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취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벨슨증후군	E24.1	V114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가족성 부신코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부신발증	E27.2	V116
	부신출혈	E27.4	V116
	부신경색증	E27.4	V116
	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흑갈병	E70.2	V117
	알칼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눈백색증	E70.3	V117
	교차증후군	E70.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바르덴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E70.3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트립토판대사장애	E70.8	V11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단풍시럽뇨병	E71.0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부신백질디스트로피 [애디슨-윌더]	E71.3	V117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랜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시스틴증	E72.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시스틴뇨증	E72.0	V117
	하르트넵병	E72.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호모시스틴뇨	E72.1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시스타타이오닌뇨증	E72.1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고호모시스테인혈증	E72.1	V117
	요소화로대사장애	E72.2	V117
	아르지닌숙신산뇨	E72.2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글루타르산뇨	E72.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오르니틴혈증( I , II형)	E72.4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프롤린혈증( I , II형)	E72.5	V117
	감마글루타말회로의 장애	E72.8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선천성 젓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E74.0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코리병	E74.0	V117
	타루이병	E74.0	V117
	폼페병	E74.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허스병	E74.0	V117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이-삭스병	E75.0	V117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유코지질증 IV	E75.1	V117
	GM <sub>1</sub>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 <sub>3</sub>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파브리(-앤더슨)병	E75.2	V117
	니만-픽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체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라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바텐병	E75.4	V117
	얀스키-빌쇼스키병	E75.4	V117
	월만병	E75.5	V117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밴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I 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혈러증후군	E76.0	V117
	혈러-샤이에증후군	E76.0	V117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II 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헌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III, IV, VI, VII 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E76.2	V117
	유코지질증 III[거짓혈러다발디스트로피]	E77.0	V117
	유코지질증 II [ I -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유코지질증 I ]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헐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멘케스(꼬인모발)(강모)병	E83.0	V119
	월슨병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효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1	V120
	남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카다실	F01.1	V122
	레트증후군	F84.2	V122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헌팅톤병	G10	V123
	헌팅톤무도병	G10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보류된 힘줄반사율(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율(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본태성 떨림율(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G12.1	V123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어깨중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연소형, III형 [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 (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G12.2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과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다발경화증	G35	V022
	뇌간(~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척수(~의) 다발경화증	G35	V022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시신경척수염[대박병]	G36.0	V27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데제린-소타스병	G60.0	V169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G61.8	V126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중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뒤셴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어깨중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중증[뒤셴]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G71.1	V012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G71.1	V012
	증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우성[투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다발심 병	G71.2	V012
	선천성 근병증	G71.2	V012
	근섬유의 특정 형태 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G71.2	V012
	미세심 병	G71.2	V012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G71.2	V012
	중심핵 병	G71.2	V012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G73.1*	V25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G90.5	V17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V168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원추각막	H18.6	<b>V307</b>
	맥락막결손	H31.2	V295
	코초망막병증	H35.0	V260
	색소망막염	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V209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아이젠먼거복합	I27.8	V226
	아이젠먼거증후군	I27.8	V226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I42.1	V127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0	V127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V127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뢰플러심내막염	I42.3	V12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긴QT증후군	I49.82	V296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V29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성유증	J84.1	V236
	불완전상아질형성	K00.51	V310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K83.0	V262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홍터유사천포창	L12.1	V212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중증 화농성 한선염	L73.22	V309
	성인발병 스틸병	M06.1	V298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굿파스처증후군	M31.0	V13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수]	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M32.1	V136
	리브만-삭스병(I39.0*)	M32.1	V136
	루푸스 심장낭염(I32.8*)	M32.1	V136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M32.1	V136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M32.1	V136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M32.1	V136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M32.1	V136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다발근염	M33.2	V137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M34.1	V13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근병증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폐침범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건조증후군[췌그렌]	M35.0	V139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베체트병	M35.2	V139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두개골의 파젯병	M88.0	V213
	기타 뼈의 파젯병	M88.8	V213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M88.9	V213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 [킨빅]	M92.2	V299
	성인의 킨빅병	M93.1	V299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덴디-워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	Q04.3	V214
	큰뇌이랑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Q05.0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3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4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5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6	V179
	이분흉요추 NOS	Q05.6	V17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이분요천추 NOS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8	V179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9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Q16.1	V291
	소이증(小耳症)	Q17.2	V291
	총동맥간	Q20.0	V144
	동맥간좁속	Q20.0	V144
	타우시그-빙증후군	Q20.1	V144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이중출구좌심실	Q20.2	V144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3	V144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대동맥의 우측전위	Q20.3	V144
	단일심실	Q20.4	V225
	수정혈관전위	Q20.5	V144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좌측전위	Q20.5	V144
	심실내번	Q20.5	V144
	방실중격결손	Q21.2	V269
	총방실관	Q21.2	V269
	심내막용기결손	Q21.2	V269
	제1공심방중격결손(Ⅰ형)	Q21.2	V269
	팔로네징후	Q21.3	V269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Q21.3	V269
	대동맥폐동맥창	Q21.4	V269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아이젠먼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삼첨판폐쇄	Q22.4	V146
	에브스타인이상	Q22.5	V14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Q22.6	V146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3.0	V147
	이첨대동맥판막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Q23.1	V147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Q23.3	V147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Q23.4	V147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Q23.4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8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9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V272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대동맥의 폐쇄	Q25.2	V272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Q25.3	V27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좌상대정맥존속	Q26.1	V150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V150
	문맥결합이상	Q26.5	V150
	문맥-간동맥루	Q26.6	V150
	무설증(無舌症)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Q61.2	V264
	방광외반	Q64.1	V227
	방광이소증	Q64.1	V22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74.3	V292
	두개골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두개골의 불안전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삼각머리증	Q75.0	V265
	크루존병	Q75.1	V1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프란체스웨티 증후군	Q75.4	V182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연골무발생증	Q77.0	V22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치사성 단신	Q77.1	V228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Q77.2	V228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정상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어깨고관절 정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Q77.3	V228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연골무형성증	Q77.4	V228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5	V228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6	V228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8	V228
	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불안전골형성	Q78.0	V183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얼브라이트(-맥쿤)(-스턴버그)증후군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알베르스-선베르그증후군	Q78.2	V229
	카우라티-앵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종증	Q78.4	V230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올리에르병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V155
	횡격막결어	Q79.1	V155
	횡격막 탈출	Q79.1	V155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Q79.1	V155
	배꼽내장탈장	Q79.2	V155
	선천복벽탈장	Q79.2	V155
	복벽파열증	Q79.3	V155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V15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V15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V155
	부근	Q79.8	V155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근육의 결어	Q79.8	V155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힘줄의 결어	Q79.8	V155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선천성 협착띠	Q79.8	V155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X-연관비늘증	Q80.1	V300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Q80.1	V300
	할리퀸태아	Q80.4	V300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헤틀리츠증후군	Q81.1	V184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5.0	V156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V204
	에필로미아	Q85.1	V204
	부르느뷰병	Q85.1	V204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V216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Q87.0	V185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7.0	V185
	장복안구증후군	Q87.0	V185
	골덴하 증후군	Q87.0	V185
	로빈 증후군	Q87.0	V185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첨두다지유합증	Q87.0	V185
	첨두유합지증	Q87.0	V185
	단안증	Q87.0	V185
	외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입-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취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드 랑즈 증후군	Q87.1	V158
	두보위츠 증후군	Q87.1	V158
	프라더-윌리 증후군	Q87.1	V158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시클 증후군	Q87.1	V158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누난 증후군	Q87.1	V158
	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셰그렌-라손 증후군	Q87.1	V15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Q87.2	V24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위버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알포트 증후군	Q87.8	V267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V267
	젤웨어 증후군	Q87.8	V267
	좌지 증후군	Q87.8	V267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0	V159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1	V159
	21삼염색체증, 전위	Q90.2	V159
	21삼염색체증 NOS	Q90.9	V159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0	V160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1	V160
	18삼염색체증, 전위	Q91.2	V160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4	V160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5	V160
	13삼염색체증, 전위	Q91.6	V160
	13삼염색체증후군	Q91.7	V160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캐취22증후군	Q93.5	V217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핵형45, X	Q96.0	V021
	핵형46, X동인자(Xq)	Q96.1	V021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2	V021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3	V021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4	V021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0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2	V218
	취약X증후군	Q99.2	V245
III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IV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1
V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별표 131】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 1. 1시행)” 제5조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I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II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III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IV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편집조현병	F20.0	V161
	편집분열성 조현병	F20.0	V161
	파과형조현병	F20.1	V161
	해체성 조현병	F20.1	V161
	파과증	F20.1	V161
	긴장성 조현병	F20.2	V161
	긴장성 혼미	F20.2	V161
	조현병성 카탈렙시	F20.2	V161
	조현병성 긴장증	F20.2	V161
	조현병성 납굴증	F20.2	V161
	미분화조현병	F20.3	V161
	비정형조현병	F20.3	V161
	조현병후우울증	F20.4	V161
	잔류조현병	F20.5	V161
	만성 미분화조현병	F20.5	V161
	레스트추스탄트(조현병성)	F20.5	V161
	조현병성 잔류상태	F20.5	V16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단순형조현병	F20.6	V161
	기타 조현병	F20.8	V161
	체감장애조현병	F20.8	V161
	조현양상장애 NOS	F20.8	V161
	조현양상정신병 NOS	F20.8	V161
	상세불명의 조현병	F20.9	V161
	조현형장애	F21	V161
	잠재 조현병성 반응	F21	V161
	경계성 조현병	F21	V161
	잠재성 조현병	F21	V161
	전정신병적 조현병	F21	V161
	전구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신경증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정신병증성 조현병	F21	V161
	조현형인격장애	F21	V161
	망상장애	F22.0	V161
	편집증	F22.0	V161
	편집증정신병	F22.0	V161
	편집증상태	F22.0	V161
	망상분열증(만기의)	F22.0	V161
	민감망상	F22.0	V161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F22.8	V161
	망상성 이상형태공포증	F22.8	V161
	퇴행성 편집상태	F22.8	V161
	불평편집증	F22.8	V161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F22.9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0	V161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	F23.0	V161
	조현병 증상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부폐 델리랑뜨	F23.0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1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순환형 정신병	F23.1	V161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부폐 델리랑뜨	F23.1	V161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F23.2	V161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장애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정신병	F23.2	V161
	몽환정신병	F23.2	V161
	조현병성 반응	F23.2	V161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장애	F23.3	V161
	편집반응	F23.3	V161
	심인성 편집정신병	F23.3	V161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8	V161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9	V161
	단기 반응성 정신병 NOS	F23.9	V161
	반응성 정신병	F23.9	V161
	유도망상장애	F24	V161
	감응성 정신병	F24	V161
	유도편집장애	F24	V161
	유도정신병장애	F24	V161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양상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양상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F25.2	V161
	순환성 조현병	F25.2	V161
	혼합형 조현병성 및 정동성 정신병	F25.2	V161
	기타 조현정동장애	F25.8	V161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F25.9	V161
	조현정동정신병 NOS	F25.9	V161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V161
	만성 환각성 정신병	F28	V161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V161
	정신병 NOS	F29	V161
5	<b>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b>		
	도슨 봉입체뇌염	A81.1	V282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A81.1	V282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A81.1	V28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A81.2	V28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A81.2	V282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8	V282
	쿠루	A81.8	V282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9	V282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A81.9	V282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1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2	V103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3	V103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4	V103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5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B20.6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B20.6	V103
	다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7	V103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8	V103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9	V103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B20.9	V103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0	V103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1	V103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2	V103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3	V103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7	V103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8	V103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9	V103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0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B22.0	V103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1	V103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슬림병	B22.2	V103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7	V103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B23.0	V103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1	V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2	V103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8	V103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V103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B24	V103
	에이즈-관련복합 NOS	B24	V10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약물유발 무형성빈혈	D61.1	V283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D70	V285
	과당대사장애	E74.1	V286
	유전성 과당불내성	E74.1	V286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E74.1	V286
	수크레이스결핍	E74.3	V286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E74.3	V286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E74.3	V286
	신생물말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G13.0	V287
	신생물말림 변연부뇌병증(C00-D48+)	G13.1	V2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G13.8	V287
	파킨슨병	G20	V124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편측파킨슨증	G20	V124
	떨림마비	G20	V124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G20	V12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G63.0	V170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G63.0	V17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G63.0	V17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G63.0	V17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G63.0	V170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G63.0	V170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G63.0	V17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G63.0	V17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G63.0	V17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독성근신경장애	G70.1	V288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울혈성 심근병증	I42.0	V289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8	V289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V289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K51.0	V131
	궤양성 (만성) 직장염	K51.2	V131
	좌측 결장염	K51.5	V131
	기타 궤양성 대장염	K51.8	V131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K51.9	V131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V308
	중증 보통건선	L40.00	V280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M05.0	V223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펠티증후군	M05.0	V223
	류마티스폐질환(J99.0*)	M05.1	V223
	류마티스혈관염	M05.2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I32.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G63.6*)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근염(I41.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G73.7*)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I39.-*)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I52.8*)	M05.3	V223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8	V223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9	V223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V237
	건선척추염(L40.5†)	M07.2	V237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M07.3	V237
	과민성 혈관염	M31.0	V29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M45.0	V140
	강직척추염, 후두환추부	M45.1	V140
	강직척추염, 경부	M45.2	V140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M45.3	V140
	강직척추염, 흉추부	M45.4	V140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M45.5	V140
	강직척추염, 요추부	M45.6	V140
	강직척추염, 요천부	M45.7	V140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M45.8	V140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P22.0	V142
	유리질막병	P22.0	V142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P22.8	V142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P22.9	V142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별표 132】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4호, 2023. 1. 1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1.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병 2형(G30.0†)	F00.0	V8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F00.0	V80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F02.0	V8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0	V800
피크병	G31.00	V800
전두측두치매	G31.00	V800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G31.01	V800
비유장원발진행실어증	G31.02	V800
로그폐닉원발진행실어증	G31.03	V8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04	V800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04	V800
루이소체치매(F02.8*)	G31.82	V800
<p>II.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p> <p>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p>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병 1형(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F00.1	V810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F00.2	V810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F00.2	V8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0	V810
다발-경색치매	F01.1	V810
주로 피질성 치매	F01.1	V810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2	V810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V810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1	V810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 133】**  
**대상용종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대상용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맹장의 양성 신생물	D12.0
총수의 양성 신생물	D12.1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2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3
하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4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5
상세불명의 양성 신생물	D12.6
직장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7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직장의 양성 신생물	D12.8
결장의 폴립	K63.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34】**  
**특정다빈도8대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다빈도8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백내장	노년성 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7
대장용종	맹장의 양성신생물	D12.0
	총수의 양성신생물	D12.1
	상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2
	횡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3
	하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4
	구불결장의 양성신생물	D12.5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D12.6
	직장구불결장정합부의 양성신생물	D12.7
	직장의 양성신생물	D12.8
	결장의 폴립	K63.5
후각특정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1
	코폴립	J33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J34
피부종양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D17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3
특정피부질환	피부의 농양, 종기 및 큰종기	L02
	기타 피부염	L30
	손발톱장애	L60
	피부 및 피하조직의 모낭낭	L72
	티눈 및 굳은살	L84
생식기질환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모충증(N51.0*) 주1) A59.08†(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모충증) 중 편모충성 전립선염에 한함 - 불거리환염(N51.1*)	N40~N45, N47~N51 A59.08† <sup>주1)</sup>
	여성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sup>주2)</sup> ) 제외	B26.0† N70~N77 N74.0*제외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sup>주2)</sup> 제외 주2) A18.17†(여성생식기관의 결핵) 중 자궁경부의 결핵(N74.0*),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N74.1*)에 한함 제외	N74.1*제외
	여성 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유산자 제외) (여성 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N80~N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99
하지정맥류	하지의 정맥류	I83
유방의장애	유방의 비대	N6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에는 “비뇨생식계통의 결핵(A18.1)”으로 간주하며, “특정다빈도8대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가.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전립선장애(N51.0)”로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나.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N51.1)”로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다.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장애(N51.8)”로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35】**  
**뇌심장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뇌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뇌질환	거미막하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두개내손상	두개내손상	S06
뇌전증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일과성허혈발작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G45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파킨슨병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	G21
뇌수막염	뇌염, 척수염 및 뇌척추염	G04
허혈심장질환	협심증	I20
	급성심근경색증	I21
	후속 심근경색증	I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대동맥류 및 대동맥류 박리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흉부 혈관 및 심장의 손상	흉부 혈관의 손상	S25
	심장의 손상	S26
기타 형태의 심장병	급성 심낭염	I30
	심낭의 기타 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낭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	I34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I35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I36
	폐동맥판 장애	I37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심근병증	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심방실 차단 및 좌각 차단	I44
	기타 전도 장애	I45
	심장 정지	I46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성 부정맥	I49
심부전	I50	
심장 질환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 장애	I52	
류마티스 심장질환	심장 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	I01
	류마티스성 승모판 질환	I0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질환	I06
	류마티스성 삼첨판 질환	I07
	다발성 판막 질환	I08
	기타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	I0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36】**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CT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HA45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6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삼차원	HA52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CT 혈관조영	HA53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Cine CT	HA55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뇌조 CT	HA56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제한적 CT	HA44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851
뇌MR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일반-촬영료 등	HI1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일반-촬영료 등	HI1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일반-판독료	HJ1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일반-판독료	HJ1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1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5
뇌척수액검사	요추천자[뇌척수압측정포함]	C8000
뇌파검사	각성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1
	각성뇌파검사-18채널미만(이동뇌파를실시한경우)	F6142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1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이동뇌파를실시한경우)	FA142
	수면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5
	수면뇌파검사-18채널미만(각성뇌파검사와동시에실시한경우)	F6144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5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동시에실시한경우)	FA144
	특수뇌파검사-약물또는물리적유발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7
	특수뇌파검사-약물또는물리적유발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7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미만	F6148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이상	FA148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이상-나비뼈전극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	F6140
	보행뇌파검사-4시간 이상~8시간 이하	F6143
	보행뇌파검사-8시간 초과	F6146
	지속적 뇌파 감시[1일당]	F6149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외,1일당]-64채널미만	F6151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외,1일당]-64채널이상	F6153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내,1일당]-64채널미만	F6152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내,1일당]-64채널이상	F6154	
심장CT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고해상력	HA42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기타의경우	HA43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6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삼차원	HA52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CT 혈관조영	HA53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Cine CT	HA55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제한적 CT	HA44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834	
심장MR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일반-촬영료 등	HI1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일반-판독료	HJ124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일반-촬영료 등	HI1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일반-판독료	HJ1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40	
심장초음파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심초음파	EB430
	심장-경흉부 심초음파-단순	EB431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EB432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전문	EB433
	심장-부하 심초음파-약물부하	EB434
	심장-부하 심초음파-운동부하	EB435
	심장-태아정밀 심초음파	EB436
	심장-경식도 심초음파	EB611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심초음파	EB610
	심장-심장내 초음파	EB612

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37】**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혈관조영술	두경부동맥조영-추골동맥	HA601
	두경부동맥조영-총경동맥	HA602
	두경부동맥조영-외경동맥	HA603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	HA604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폐색검사(조영술료 포함)	HA606
	두경부동맥조영-전뇌동맥	HA605
관상동맥 조형술	흉부동맥조영-우심방조영	HA610
	흉부동맥조영-우심실조영	HA611
	흉부동맥조영-좌심실조영	HA612
	흉부동맥조영-좌심방조영	HA613
	관상동맥조영	HA670
	이식된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	HA680
	이식된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2개월관부터최 대3개월관	HA681
	이식된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과 동시촬영된 좌심실조영촬영	HA682

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38】 폐 관련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폐 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
2.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4
3.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	C39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39】 특정소화기관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소화기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소장의 악성신생물	C17
2. 결장의 악성신생물	C18
3.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19
4. 직장의 악성신생물	C20
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C21
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26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40】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2.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3.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4.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5.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6. 골수섬유증	D47.4
7.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41】  
4대특정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4대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1
2. 종피종	C45
3. 카포시육종	C46
4.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	C48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42】**  
**12대특정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12대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비강, 중이, 부비동, 후두암	
- 비강 및 중이의 악성신생물	C30
- 부비동의 악성신생물	C31
- 후두의 악성신생물	C32
3.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4.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신생물	C47
5.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9
6.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외음의 악성신생물	C51
- 질의 악성신생물	C52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C55
- 난소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C5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7
- 태반의 악성신생물	C58
7.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음경의 악성신생물	C60
- 고환의 악성신생물	C62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3
8. 요로의 악성신생물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	C64
- 신우의 악성신생물	C65
- 요관의 악성신생물	C6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신생물	C68
9. 눈 및 눈부속기의 악성신생물	C69
10. 부신의 악성신생물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4-C75
11.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2.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

- 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43】 뇌졸중(뇌출혈제외)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뇌출혈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뇌경색증	I63
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3.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44】 기타뇌혈관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기타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I64
2. 기타 뇌혈관 질환	I67
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4.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45】 기타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기타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2. 만성 허혈심장병	I25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46】 7대특정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7대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2. 위의 악성신생물	C16
3.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4. 담낭의 악성신생물	C23
5.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C24
6.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7.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
8.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4
9.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과내기관의 악성신생물	C39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47】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제외)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II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C5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C5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C61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
소장의 악성신생물	C17
결장의 악성신생물	C18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19
직장의 악성신생물	C20
항문 및 항문과의 악성신생물	C21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26
흉선의 악성신생물	C37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신생물	C38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뇌의 악성신생물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코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종피종	C45
카포시육종	C46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	C48
비강, 중이, 부비동, 후두암	
- 비강 및 중이의 악성신생물	C30
- 부비동의 악성신생물	C31
- 후두의 악성신생물	C32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신생물	C47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외음의 악성신생물	C51
- 질의 악성신생물	C52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C55
- 난소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C5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7
- 태반의 악성신생물	C58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음경의 악성신생물	C60
- 고환의 악성신생물	C62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3
요로의 악성신생물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	C64
- 신우의 악성신생물	C65
- 요관의 악성신생물	C6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신생물	C68
눈 및 눈부속기의 악성신생물	C69
부신의 악성신생물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4-C7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48】  
통합형전이암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암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림프절 전이암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간 및 간내담관 전이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7
종격·흉막·신경계통 전이암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1 C78.2 C79.4
뇌 및 뇌막 전이암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3
폐 관련 전이암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0 C78.3
골·골수·복막 전이암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5 C78.6
특정소화기관 전이암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4 C78.5 C78.8
특정전이암 I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79.0 C79.2 C79.6 C79.7 C80
특정전이암 II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0 C79.1 C79.81 C79.88 C79.9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49】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간 이식	1. 간 이식	A010	8
폐 이식	2. 폐 이식	A020	8
심장 이식	3. 심장 이식	A030	8
장 이식	4. 췌장 이식	A040	8
소장 이식	5. 소장 이식	A050	8
조혈모세포 이식	6. 조혈모세포 이식, 동종이식	A061	8
	7. 조혈모세포 이식, 자가이식	A062	8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신장 이식	8. 신장 이식	A070	8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개심술미동반	9.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개심술 미동반	A080	5
기관절개술	10.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A091	1
	11.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A092	1
	12.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미사용	A093	1
	13.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A094	1
	14.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A095	1
	15.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미사용	A096	1
사지 이식	16. 사지 이식	A100	8
뇌동맥류수술	17. 복잡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동반)	B011	8
	18. 단순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동반)	B012	8
	19. 복잡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미동반)	B013	8
	20. 단순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미동반)	B014	8
	21. 뇌동맥류 색전술(뇌졸중 동반)	B015	6
	22. 뇌동맥류 색전술(뇌졸중 미동반)	B016	6
	23. 뇌동맥류 복합 수술(뇌졸중 동반)	B017	8
	24. 뇌동맥류 복합 색전술(뇌졸중 동반)	B018	6
뇌혈관수술	25. 두개내 혈관 수술(뇌졸중 동반)	B021	8
	26. 두개내 혈관 수술(뇌졸중 미동반)	B022	8
	27.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맥류 색전술(뇌졸중 동반)	B023	6
	28.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맥류 색전술(뇌졸중 미동반)	B024	6
	29. 경피적 뇌혈관 수술(협착·폐쇄 및 혈전제거 동시의 경우)	B025	6
	30. 경피적 뇌혈관 수술(협착 및 폐쇄의 경우)	B026	6
	31. 경피적 뇌혈관 수술(혈전제거의 경우)	B027	6
혈중제거술및기타개두술(외상제외)	32. 혈중제거술(외상 제외)	B031	8
	33. 두개내 감압술(외상 제외)	B032	8
	34. 두개골 성형술(외상 제외)	B033	8
두개외 혈관수술	35. 두개외 혈관수술(뇌졸중 동반)	B041	4
	36. 두개외 혈관수술(뇌졸중 미동반)	B042	4
	37. 경피적 두개외 혈관수술	B043	4
뇌기저부 수술	38. 뇌기저부 수술	B050	8
뇌종양 절제술	39. 복잡 천막상부 종양절제술	B061	8
	40. 단순 천막상부 종양절제술	B062	8
	41. 복잡 천막하부 종양절제술	B063	8
	42. 단순 천막하부 종양절제술	B064	8
	43. 경피적 뇌신경계 종양 수술	B065	6
	44.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	B066	8
신경계 신경자극기 설치술	45. 신경계 신경자극기 설치술	B070	7
뇌전증 수술	46. 뇌전증 수술(전극삽입술 시행)	B081	7
	47. 뇌전증 수술(전극삽입술 미시행)	B082	7
정위수술	48. 중추신경계 정위수술(뇌종양 및 기타 병소발생술)	B091	6
	49. 중추신경계 정위수술(두개내출혈)	B092	6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50. 뇌정위 방사선 수술(두개내출혈 및 뇌혈관기형)	B093	6
	51. 뇌정위 방사선 수술(양성 뇌종양)	B094	6
	52. 뇌정위 방사선 수술(기타)	B095	6
	53. 중추신경계 체부 정위 방사선 수술	B096	6
뇌신경 수술	54. 뇌신경 수술	B100	6
뇌척수액 우회로조성술	55. 뇌척수액 우회로조성술	B110	4
외상 개두술	56. 혈중제거술(외상관련), 경막외 출혈	B121	7
	57. 혈중제거술(외상관련), 경막하 출혈	B122	7
	58. 혈중제거술(외상관련), 기타 뇌내 출혈	B123	7
	59. 두개내 감압술(외상관련)	B124	8
	60. 두개골 성형술(외상관련)	B125	8
기타 개두술	61. 기타 개두술	B130	7
천두술	62. 천두술(경막하 또는 경막외)	B141	4
	63. 천두술(뇌내)	B142	4
	64. 천두술(기타)	B143	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	65. 척수내 종양절제술	B151	6
	66.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동반)	B152	6
	67.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미동반)	B153	6
	68.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추고정술 동반)	B154	6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69. 청소년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B161	5
	70.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동반)	B162	5
	71.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미동반)	B163	5
기타 척추 수술	72.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동반)	B171	4
	73.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미동반)	B172	4
	74.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동반)	B173	2
	75.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미동반)	B174	2
	76.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동반)	B175	1
	77.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미동반)	B176	1
	척추 중재시술	78. 척추 중재시술(뼈에 시행한 경우)	B181
	79. 척추 중재시술(신경에 시행한 경우)	B182	1
신경절제술 및 척추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80. 척수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설치술 또는 교환술	B191	3
	81. 척수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시험적 거치술 또는 제거술	B192	1
기타 신경계수술	82. 주요 말초 및 뇌 신경 수술	B201	1
	83. 기타 말초 및 뇌 신경 수술	B202	1
	84. 수근관 이완술	B203	1
	85. 기타 근육, 건 및 인대 이완술	B204	1
	86. 기타 신경계 수술	B205	1
	복잡 척추수술	87. 복잡 척추고정술	B211
	88. 복잡 척추후궁절제술	B212	2
안부 관통상 수술	89. 복잡 안부 관통상 수술	C011	1
	90. 전안부 관통상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12	1
	91. 전안부 관통상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13	1
	92. 후안부 관통상 수술	C014	1
안와 수술	93. 복잡 안와 수술, 한쪽	C021	2
	94. 복잡 안와 수술, 양쪽	C022	2
	95. 단순 안와 수술	C023	2
안구수술(종양수술 포함)	96. 안구 수술(종양 수술 포함)	C030	2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망막 및 유리체 수술	97. 망막 및 유리체 수술(망막주위막 제거술 동반, 수정체 수술 동반)	C043	2
	98. 망막 및 유리체 수술(망막주위막 제거술 동반, 수정체 수술 미동반)	C044	2
	99. 망막 및 유리체 수술(망막주위막 제거술 미동반, 수정체 수술 동반)	C045	2
	100. 망막 및 유리체 수술(망막주위막 제거술 미동반, 수정체 수술 미동반)	C046	2
안구 표면재건술	101. 주요 각막이식수술	C051	2
	102. 기타 각막이식수술	C052	2
	103. 공막 및 각막윤부이식수술	C053	2
수정체소절개수술 (유리체절제술유무와무관)	104. 주요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61	1
	105. 기타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62	1
	106. 주요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63	1
	107. 기타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64	1
수정체대절개수술 (유리체절제술유무와무관)	108. 주요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71	1
	109. 기타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72	1
	11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73	1
후발성 백내장 수술	111. 후발성 백내장 수술	C080	1
녹내장 수술	112.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91	2
	113.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92	2
	114. 단순 녹내장 수술	C095	2
기타 안구내 수술	115. 기타 주요 안구내 수술	C101	1
	116. 기타 단순 안구내 수술	C102	1
사시 수술	117. 복잡 사시 수술	C111	1
	118. 단순 사시 수술	C112	1
안검 수술	119. 복잡 안검 수술, 제1형	C121	1
	120. 복잡 안검 수술, 제2형	C122	1
	121. 복잡 안검 수술, 제3형	C123	1
	122. 주요 안검 수술, 제1형	C124	1
	123. 주요 안검 수술, 제2형	C125	1
	124. 주요 안검 수술, 제3형	C126	1
	125. 기타 안검 수술	C127	1
눈물길 수술	126. 복잡 눈물길 수술	C131	1
	127. 주요 눈물길 수술, 한쪽	C132	1
	128. 주요 눈물길 수술, 양쪽	C133	1
	129. 기타 눈물길 수술(경비내시경 포함), 단안	C135	1
	130. 기타 눈물길 수술(경비내시경 포함), 양안	C136	1
결막 수술	131. 결막낭 재건술	C141	1
	132. 복잡 결막 수술	C142	1
	133. 단순 결막 수술	C143	1
기타 안구외수술	134. 기타 안구외 수술	C150	1
내이 수술	135. 귀 이식술	D011	5
	136. 주요 내이 수술	D012	3
	137. 단순 내이 수술	D013	2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중이 및 유양돌기 수술	138. 고실유양돌기 수술	D021	2
	139. 유양돌기 수술	D022	2
	140. 고실 수술	D023	2
	141. 이소골 재건술	D024	2
	142. 등골수술	D025	2
	143. 환기관삽입 고막절개술	D026	2
외이 및 귀 수술	144. 주요 외이 및 귀 수술	D031	1
	145. 단순 외이 및 귀 수술	D032	1
귀 및 코의 악성종양 수술	146. 귀 및 두개저 악성종양 수술	D041	7
	147. 비강, 부비동, 비인강 악성종양	D042	7
부비동개방 수술	148. 부비동 개방 수술(한 개, 한쪽)	D051	1
	149. 부비동 개방 수술(한 개, 양쪽)	D052	1
	150. 부비동 개방 수술(여러 개, 한쪽)	D053	1
	151. 부비동 개방 수술(여러 개, 양쪽)	D054	1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	152.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한 개, 한쪽)	D061	1
	153.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한 개, 양쪽)	D062	1
	154.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한쪽)	D065	1
	155. 복잡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한쪽)	D066	1
	156.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양쪽)	D067	1
	157. 복잡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양쪽)	D068	1
코 수술	158. 주요 코 수술	D081	1
	159.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	D082	1
	160. 단순 코 수술	D083	1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161.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D090	7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	162. 주요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경동맥소체 포함)	D101	7
	163. 단순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	D102	7
경부림프절제술	164. 경부림프절제술, 한쪽	D111	4
	165. 경부림프절제술, 양쪽	D112	4
안면골 수술	166. 악관절 수술	D121	2
	167. 주요 안면골 수술	D122	2
	168. 단순 안면골 수술	D123	2
두경부 재건술	169. 두경부 재건술	D130	2
타액선 수술	170. 이하선수술	D141	2
	171. 악하선 및 설하선 수술	D142	2
	172. 기타 타액선 수술	D143	1
	173. 타석제거술	D144	1
경부 수술	174. 경부 수술	D150	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175. 주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61	1
	176. 단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62	1
구강,인후두수술	177. 주요 구강 및 인두, 후두 수술	D171	1
	178. 단순 구강 및 인두, 후두 수술	D172	1
기타이비인후,구강 질환수술	179. 기타 이비인후, 구강질환 수술	D200	1
주요 흉부 수술	180. 기관 및 기관지 수술	E011	7
	181.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E012	7
	182.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 제외)	E013	7
	183. 기타 폐 수술	E014	7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184. 종격동 수술	E015	7
	185. 주요 흉곽 수술	E016	7
	186. 기타 흉곽 수술	E017	3
	187. 흉강경을 이용한 주요 수술	E018	7
	188. 흉강경을 이용한 기타 수술	E019	7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189.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E020	2
기타 호흡기계 수술	190.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	E032	1
	191. 호흡기계 기타 단순 수술	E033	1
	192. 기타 호흡기계 수술	E034	1
폐농양 배액술	193. 폐농양 배액술	E520	1
흉막삼출 배액술	194. 흉막삼출 배액술	E530	1
자동체내제세동기 시술	195. 자동체내제세동기 설치술 또는 제거술	F011	5
	196. 자동체내제세동기 교정술	F012	5
심장판막수술(심도자술사용)	197. 대동맥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1	8
	198. 승모판 또는 삼첨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2	8
	199. 폐동맥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3	8
심장판막수술(심도자술미사용)	200. 대동맥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1	8
	201. 승모판 또는 삼첨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2	8
	202. 폐동맥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3	8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203.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41	8
	204.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42	8
	205.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43	8
	206.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44	8
기타 심흉부 수술	207. 기타 심흉부 수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53	7
	208. 기타 심흉부 수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54	5
주요혈관복구수술(인공심장폐장치사용)	209. 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1	8
	210. 비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2	8
	211.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3	8
주요혈관복구수술(인공심장폐장치미사용)	212. 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1	8
	213. 비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2	8
	214.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3	7
대동맥 경피적 수술	215.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류 경피적 수술(파열 미동반)	F081	4
	216.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류 경피적 수술(파열 동반)	F082	4
	217. 흉부대동맥류 경피적 수술	F083	4
	218. 대동맥박리 경피적 수술	F084	4
정맥 및 대정맥 경피적 수술	219. 심부정맥혈전증 경피적 수술	F091	4
	220. 대정맥 필터설치를 위한 경피적 수술	F092	4
경도관 심장결손 폐쇄술	221. 경도관 심방중격결손 폐쇄술	F101	4
	222. 경도관 동맥관개존증 폐쇄술	F102	4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223. 기타 경도관 심장 결손 폐쇄술	F103	4
급성심근경색증의 경피적관상동맥수술(심각한합병증동반)	224.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동반, 단일혈관)	F111	4
	225.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동반, 다발혈관)	F112	4
급성심근경색증의 경피적관상동맥수술(심각한합병증미동반)	226.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단일혈관)	F121	4
	227.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다발혈관)	F122	4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228.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단일 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제외)	F133	4
	229.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단일 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포함)	F134	4
	230.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다발 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제외)	F135	4
	231.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다발 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포함)	F136	4
부정맥의경피적수술(3차원지도화기능포함)	232. 심실빈맥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1	4
	233.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2	4
	234. 발작성 심실상빈맥 및 심방조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3	4
부정맥의경피적수술(3차원지도화기능미포함)	235. 심실빈맥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1	4
	236.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2	4
	237. 발작성 심실상빈맥 및 심방조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3	4
경피적 풍선 판막성형술	238. 경피적 승모판 풍선 판막성형술	F161	4
	239. 경피적 대동맥 또는 폐동맥 풍선 판막성형술	F162	4
혈관 기형의 경피적 수술	240. 동정맥 기형의 경피적 색전술(두경부 제외)	F181	4
	241. 관상동맥 및 폐동맥 기형의 경피적 색전술(두경부 제외)	F182	4
말초동맥의 경피적 수술	242. 말초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의 경피적 수술	F192	4
	243. 말초동맥 동맥류 및 박리의 경피적 수술	F193	4
	244. 말초동맥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피적 수술, 여러 개	F194	4
	245. 말초동맥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피적 수술, 한 개	F195	4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246.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F200	4
체내심박조율기설치술(급성심근경색증,심부전,쇼크의경우)	247. 영구적 심박조율기 설치술	F211	5
	248. 영구적 심박조율기 교환술	F212	5
	249. 심박조율기 제거 및 전환술	F213	1
기타 혈관 복구 수술	250. 기타 혈관 복구 수술	F220	2
순환장애절단술(수족부제외)	251. 순환 장애 절단술(수족부 제외)	F230	7
순환 장애 수족부절단술	252. 순환 장애 수족부 절단술	F240	3
정맥 결찰 및 스트리핑	253. 정맥류 광범위 절제술(여러 개)	F253	1
	254. 정맥류 광범위 절제술(한 개)	F254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255. 정맥류 국소 절제술	F252	1
기타 순환기계 수술	256. 기타 순환기계 수술	F260	1
식도 수술	257. 식도 악성종양 근치 수술 및 식도 재건술	G011	7
	258. 기타 주요 식도 수술	G012	5
	259. 기타 단순 식도 수술	G013	4
직장절제술(림프절 절제동반)	260.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021	7
	261. 개복에 의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022	7
직장절제술(림프절 절제미동반)	262.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031	7
	263. 개복에 의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032	7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	264.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G041	7
	265.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악성종양 제외)	G042	7
주요십이지장수술	266. 주요 십이지장 수술	G050	7
식도정맥류수술	267. 식도 정맥류 수술	G060	5
위전절제술	268. 복강경을 이용한 위전절제술	G071	7
	269. 개복에 의한 위전절제술	G072	7
위아전절제술	270. 복강경을 이용한 위아전절제술	G081	7
	271. 개복에 의한 위아전절제술	G082	7
기타 위절제술	272.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위절제술	G091	5
	273. 개복에 의한 기타 위절제술	G092	5
	274.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설상절제술	G093	5
	275. 개복에 의한 기타 설상절제술	G094	5
소화성 궤양 수술	276. 복강경을 이용한 소화성 궤양 수술	G101	4
	277. 개복에 의한 소화성 궤양 수술	G102	4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278.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G111	4
	279. 개복에 의한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G112	4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280.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G121	7
	281. 개복에 의한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G122	7
결장절제술(림프절 절제동반)	282.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131	7
	283. 개복에 의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132	7
결장절제술(림프절 절제미동반)	284.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141	5
	285. 개복에 의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142	5
기타 대장 수술	286.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대장 수술	G151	4
	287. 개복에 의한 기타 대장 수술	G152	4
소장 및 장간막 수술	288.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소장 및 장간막 수술	G171	5
	289. 개복에 의한 주요 소장 및 장간막 수술	G172	5
	290. 장폐색 수술 및 기타 장 수술	G173	3
장루 수술	291. 장루 수술	G180	3
횡격막 탈장 수술	292. 횡격막 탈장 수술	G190	4
탈장수술, 서혜및대퇴부제외	293. 복강경을 이용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동반)	G201	1
	294. 개복에 의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동반)	G202	1
	295. 복강경을 이용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미동반)	G203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296. 개복에 의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미동반)	G204	1
총수절제술	297. 복강경을 이용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의 경우)	G211	3
	298. 복강경을 이용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G212	3
	299. 개복에 의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의 경우)	G213	3
	300. 개복에 의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G214	3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301. 복강경을 이용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한쪽	G221	1
	302. 복강경을 이용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양쪽	G222	1
	303. 개복에 의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한쪽	G223	1
	304. 개복에 의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양쪽	G224	1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동반)	305.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동반)	G230	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306.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한쪽	G241	1
	307.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양쪽	G242	1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308.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복잡 주진단의 경우), 한쪽	G251	1
	309.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한쪽	G252	1
	310.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양쪽	G253	1
복수 항문 수술	311. 복수 항문 수술	G260	1
치핵 수술	312. 주요 치핵 수술	G271	1
	313. 단순 치핵 수술	G272	1
항문 주위 농양 수술	314. 주요 항문 주위 농양 수술	G281	1
	315. 단순 항문 주위 농양 수술	G282	1
치루 수술	316. 주요 치루 수술	G291	1
	317. 단순 치루 수술	G292	1
치열 수술 및 항문 협착증 수술	318. 치열 수술 및 항문협착증 수술	G300	1
경항문 및 질접근 수술	319. 직장 질루 수술	G311	1
	320. 직장 탈출증 수술 및 괄약근성형술(직장류교정술 포함)	G312	1
화농성한선염 수술	321. 화농성한선염 수술	G320	1
기타 소화기계 수술	322. 기타 소화기계 수술	G332	1
소화기계 질환의 혈관색전술	323. 소화기계 질환의 혈관색전술	G340	3
위내시경 시술	324.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03	1
	325.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04	1
	326. 위내시경 시술, 당일퇴원	G505	1
결장경 시술	327. 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23	1
	328. 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24	1
	329.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525	1
구불결장경 시술	330. 구불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33	1
	331. 구불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34	1
소화기내시경시술, 화학요법을 동반한 경우, 재원기간 2일 이상	332. 소화기 내시경 시술, 화학요법을 동반한 경우, 재원기간 2일 이상	G540	1
소장내시경 시술	333. 소장내시경 시술	G550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소화관 협착을 위한 방사선하 시술	334. 소화관 협착을 위한 방사선하 시술	G560	2
소화기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335. 소화기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G570	2
간담도췌장 복합수술	336. 간담도췌장 복합수술	H010	7
간담도 복합수술	337. 주요 간담도 복합수술	H021	7
	338. 기타 간담도 복합수술	H022	5
담도췌장 복합수술	339. 담도췌장 복합수술	H030	7
간 절제술	340.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간 절제술	H041	7
	341. 개복에 의한 주요 간 절제술	H042	7
	342.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간 절제술	H043	5
	343. 개복에 의한 기타 간 절제술	H044	5
간 수술	344. 복강경을 이용한 간 수술	H051	4
	345. 개복에 의한 간 수술	H052	4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346.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H060	4
담도절제술(림프절 절제동반)	347. 복강경을 이용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H071	7
	348. 개복에 의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H072	7
담도절제술(림프절 절제미동반)	349. 복강경을 이용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미동반)	H081	5
	350. 개복에 의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미동반)	H082	5
주요 담도 수술	351.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담도 수술	H091	5
	352. 개복에 의한 주요 담도 수술	H092	5
담낭절제술	353.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1	4
	354.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2	4
	355.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103	4
	356.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104	4
	357.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5	4
	358.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6	4
	359.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미동반)	H107	4
	360.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미동반)	H108	4
췌장절제술	361.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절제술	H111	7
	362. 개복에 의한 췌장절제술	H112	7
췌장 수술	363.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 수술	H121	4
	364. 개복에 의한 췌장 수술	H122	4
기타 간담도 및 췌장 시술	365. 역행성담췌관내시경 시술	H142	3
	366. 담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H143	1
	367. 기타 간담도 및 췌장 수술	H144	3
	368. 경피적 담관경 시술	H145	3
	369. 경피적 담관 시술	H146	3
간담도 및 췌장의 경피적 시술	370.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 제외)	H152	3
	371. 담도협착을 위한 경피적 시술	H154	3
	372. 담석제거를 위한 경피적 시술	H155	3
	373.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의 경우), 소작술 동반	H156	6
	374.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의 경우), 소작술 미동반	H157	6
출혈성 정맥류에	375. 출혈성 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H500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대한 내시경 시술			
간암의 경피적 치료술	376. 간암의 경피적 치료술	H510	6
간담도 및 췌장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377. 간담도 및 췌장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H520	3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	378.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치환술의 경우)	I011	4
	379.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치환술 제외)	I012	3
고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80. 고관절 전재치환술	I021	4
	381. 고관절 전치환술	I022	4
	382. 고관절 부분치환술	I023	4
슬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83. 슬관절 전재치환술	I031	3
	384. 슬관절 전치환술	I032	3
	385. 슬관절 부분치환술	I033	3
기타 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86. 기타 관절 전재치환술	I041	2
	387. 기타 관절 전치환술	I042	2
	388. 기타 관절 부분치환술	I043	2
	389. 인공관절삽입물 제거술	I044	2
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 및 사지 재접합술	390. 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 및 사지 재접합술	I050	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	391. 척수내 종양절제술	I061	6
	392.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동반)	I062	6
	393.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미동반)	I063	6
	39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추고정술 동반)	I064	6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395. 청소년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I071	5
	396.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동반)	I072	5
	397.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미동반)	I073	5
기타 척추 수술	398.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동반)	I081	4
	399.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미동반)	I082	4
	400.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동반)	I083	2
	401.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미동반)	I084	2
	402.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동반)	I085	1
	403.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미동반)	I086	1
척추 증재시술	404. 척추 증재시술(뼈에 시행한 경우)	I091	1
	405. 척추 증재시술(신경에 시행한 경우)	I092	1
신경절제술 및 척추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406. 척수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설치술 또는 교환술	I101	3
	407. 척수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시험적 거치술 또는 제거술	I102	1
절단술	408. 주요 절단술	I111	7
	409. 기타 절단술	I112	3
골종양의 절제술	410.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재건술 동반)	I121	7
	411.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I122	7
	412.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기타)	I123	7
	413. 골양성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I124	2
골수염 및 농양 수술	414. 골수염 및 농양 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상완골, 전완골, 쇄골)	I131	2
	415. 골수염 및 농양 수술(기타)	I132	1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416. 근농양 배농술	I133	1
	417. 양쪽 또는 복수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41	3
	418. 한쪽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42	2
상완골, 경골 및 비골 수술	419. 상완골, 경골 및 비골 수술	I160	2
단단성형술	420. 단단성형술(수족지 제외)	I171	2
	421. 단단성형술(수족지)	I172	2
견부 수술	422. 회전근개 수술	I181	1
	423. 관절와순 수술	I182	1
	424. 복수 진단 견부 수술	I183	1
	425. 기타 견부 수술	I184	1
슬부 수술	426. 십자인대 수술	I191	1
	427. 반달연골 수술, 양쪽	I192	1
	428. 반달연골 수술, 한쪽	I193	1
	429. 기타 슬관절 수술	I194	1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430.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I200	1
족부 및 족관절 수술	431. 족부 및 족관절 힘줄인대 수술	I211	1
	432. 족관절 골연골 병변 수술	I212	1
	433. 기타 족부 및 족관절 수술	I213	1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434.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I220	1
완관절 및 수부 수술	435. 주요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51	1
	436. 단순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52	1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437. 미세혈관 조직이식	I261	3
	438. 기타 피판술	I262	2
	439. 피부 및 지방 이식술	I263	2
연조직 수술	440. 복잡한 연조직 수술	I271	1
	441. 주요 연조직 수술	I272	1
	442. 단순 연조직 수술	I273	1
기타 골절 수술	443. 골반 및 비구 골절 수술	I281	3
	444. 대퇴부 골절 수술	I282	3
	445. 슬관절 및 하퇴골 골절 수술	I283	3
	446. 족관절 및 족부 골절 수술	I284	2
	447. 견부 및 상완골 골절 수술	I285	3
	448. 전완부 골절 수술	I286	2
	449. 수부 골절 수술	I287	1
기타 결합조직 수술	450. 기타 결합조직 수술	I290	1
복잡 인공관절치환술	451. 복잡 양쪽 또는 복수 인공관절치환술	I301	4
	452.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주요(고관절, 슬관절)	I302	4
	453.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기타(견관절, 주관절, 족관절)	I303	2
	454.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주요(고관절, 슬관절)	I304	4
	455.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기타(견관절, 주관절, 족관절)	I305	2
	456. 복잡 인공관절부분치환술	I306	3
복잡 척추 수술	457. 복잡 척추고정술	I311	4
	458. 복잡 척추후궁절제술	I312	2
복잡 관절 수술	459. 복잡 사지골절정복술	I321	2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460. 복잡 관절고정술	I322	2
	461. 복잡 사지관절절제술	I323	1
	462. 복잡 가관절수술	I324	2
	463. 복잡 반월판연골절제술	I325	1
	464. 복잡 회전근개 수술	I326	2
복잡 근골격계 염증성 질환 수술	465. 복잡 화농성관절염절개술	I331	1
	466. 복잡 골수염 및 농양수술	I332	1
근골격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467. 근골격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I500	1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468.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J010	3
피판술, 피부이식술 및 변연절제술(피부 궤양, 봉소염의 경우)	469.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21	2
	470.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22	2
피판술, 피부이식술 및 변연절제술(피부 궤양, 봉소염 제외)	471.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31	2
	472.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32	2
기타 피부, 피하조직 수술	473. 피부 및 연조직 악성종양 적제술	J041	4
	474. 피부 및 연조직 수술	J042	1
	475. 기타 피부, 피하조직수술	J043	1
유방재건술	476.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J051	3
	477.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J052	3
주요 유방 수술	478. 근치 유방절제술	J061	7
	479. 유방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J062	7
	480. 유방절제술(악성종양 제외)	J063	2
단순 유방 수술	481. 진공흡입보조장치를 이용한 단순 유방 수술	J071	1
	482. 절개에 의한 단순 유방 수술	J072	1
액와 수술	483. 액와 림프 수술	J080	1
기타 유방 및 액와 수술	484. 기타 유방 및 액와 수술	J090	1
항문 주위 및 모소 수술	485. 항문 주위 및 모소 수술	J100	1
	486. 교감신경절제술	J110	2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절단술	487.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절단술(수족부 제외)	K011	7
	488.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수족부 절단술	K012	3
뇌하수체 수술	489. 천막상부 종양 절제술	K021	8
	490. 복잡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절제술	K023	8
	491. 단순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절제술	K024	8
부신 수술	492. 복강경을 이용한 부신수술	K031	4
	493. 개복에 의한 부신수술	K032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피부이식 및 상처 변연절제술	494.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유리 피판술	K041	2
	495.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기타 피판술	K042	2
	496.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피부 이식술	K043	2
부갑상선 수술	497. 내시경을 이용한 부갑상선 수술	K051	2
	498. 절개에 의한 부갑상선 수술	K052	2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	499.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양쪽)	K063	4
	500.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한쪽)	K064	4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	501.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양쪽)	K075	2
	502.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한쪽)	K076	2
기타 갑상선 수술	503. 기타 갑상선 수술	K080	1
기타내분비,영양및 대사장애수술	504. 복강경을 이용한 비만대사수술	K091	1
	505. 개복에 의한 비만대사수술	K092	1
	506.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수술	K490	1
복막투석 도관 삽입술	507. 복막투석 도관 삽입술	L010	2
신장 및 비뇨기계 신생물 수술	508. 주요 신장, 신우 및 요관 신생물 수술	L021	7
	509. 기타 신장, 신우 및 요관 신생물 수술	L022	7
	510. 주요 방광 및 골반 신생물 수술	L023	7
	511. 기타 방광, 골반 및 요도 신생물 수술	L024	5
	512. 경요도 요관 및 방광 신생물 수술	L025	4
	513. 전립선 신생물 수술	L026	4
	514.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비뇨기계 신생물 수술	L027	7
신장 및 신우 수술	515.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신우 수술	L031	4
	516. 개복에 의한 신장 및 신우 수술	L032	4
	517. 경피적 신장 및 신우 수술, 한쪽	L033	3
	518. 경피적 신장 및 신우 수술, 양쪽	L034	3
요관 수술	519. 요관 수술	L040	2
방광 수술	520. 개복에 의한 방광 수술	L051	4
	521. 경피적 방광 수술	L052	2
	522. 경요도 방광 수술	L053	1
전립선 수술	523. 전립선 수술	L060	2
요도 수술	524. 주요 요도 수술	L071	1
	525. 요도경하 요도 수술	L072	1
	526. 기타 요도 수술	L073	1
	527. 복잡 요실금 수술	L074	1
	528. 단순 요실금 수술	L075	1
요로 결석 수술	529. 복강경을 이용한 요로 결석 수술	L081	4
	530. 신장, 신우 및 요관 결석 수술	L082	4
	531. 경요도적 요관 결석 수술	L083	2
	532. 방광 및 요도 결석 수술	L084	4
	533. 연성내시경하 수술	L085	2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534.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복잡	L091	1
	535.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단순	L092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신경 자극기 설치술	536.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신경 자극기 설치술	L101	3
	537.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시험적 거치술	L102	1
요로 질환 수술	538. 경요도 요로 질환 수술	L111	1
	539. 외상 및 감염성 요로 질환 수술	L112	1
기타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시술	540. 기타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시술	L120	2
기타 신장 및 비뇨	541. 혈액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L131	2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기계 시술	542. 혈액투석 동정맥루의 경피적 수술, 복잡	L132	2
	543. 혈액투석 동정맥루의 경피적 수술, 단순	L133	2
	544. 기타 신장 및 비뇨기계 시술	L134	1
방광요도경 시술	545. 방광요도경 시술	L510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546.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L520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경화술	547.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경화술	L530	1
남성 골반 수술	548. 남성 골반 수술	M010	1
전립선 적출술	549. 주요 전립선 적출술	M021	4
	550. 기타 전립선 적출술	M022	3
기타 전립선 수술	551. 기타 전립선 수술	M030	1
음경 수술	552. 복잡 음경 수술	M041	1
	553. 단순 음경 수술	M042	1
	554. 페이로니 병 수술	M043	1
포경 수술	555. 포경 수술	M050	1
요도 수술	556. 주요 요도 수술	M061	1
	557. 단순 요도 수술	M062	1
음낭 수술	558. 복잡 음낭 수술	M071	1
	559. 단순 음낭 수술	M072	1
고환 수술	56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 고환 수술	M081	4
	561. 개복에 의한 복잡 고환 수술	M082	4
	562. 단순 고환 수술	M083	1
기타 고환 수술 및 생식기 적출술	563. 복강경을 이용한 정계정맥류	M091	4
	564. 개복에 의한 정계정맥류	M092	4
	565. 고환 및 생식기 적출술	M093	7
기타 남성생식기계 시술	566. 기타 남성생식기계 시술(악성종양의 경우)	M101	4
	567. 기타 남성생식기계 시술(악성종양 제외)	M102	1
방광요도경 시술	568. 방광요도경 시술	M500	1
자궁수술(악성종양의 경우)	569.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11	7
	570. 개복에 의한 자궁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12	7
주요자궁절제술(악성종양제외)	571.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외)	N021	2
	572. 개복에 의한 주요 자궁 절제술(악성종양 제외)	N022	2
단순자궁수술(악성종양제외)	573.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N031	2
	574. 개복에 의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N032	2
난소및부속기수술(악성종양의 경우)	575.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 및 부속기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41	7
	576. 개복에 의한 난소 및 부속기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42	7
난소수술(악성종양 제외)	577.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 수술(악성종양 제외)	N051	2
	578. 개복에 의한 난소 수술(악성종양 제외)	N052	2
부속기수술(악성종양 제외)	579. 복강경을 이용한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N061	2
	580. 개복에 의한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N062	2
자궁경부, 질및외음부수술(악성종양의 경우)	58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71	6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경우)	582. 개복에 의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72	6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 제외)	583.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 제외)	N081	1
	584.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 제외)	N082	1
기타 골반 수술 복원술	58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골반 수술	N091	1
	586. 개복에 의한 기타 골반 수술	N092	1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587.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01	1
	588. 개복에 의한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02	1
기타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589. 기타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10	1
복강경 수술 및 기타 난관 결찰술	590. 복강경 수술	N121	1
자궁경 수술	591. 자궁경 수술	N130	1
자궁소파술	592. 치료적 자궁소파술	N141	1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593.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161	1
	594. 개복에 의한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162	1
여성생식기계 경피적 혈관 수술	595. 여성생식기계 경피적 혈관 수술	N180	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596. 일반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1	1
	597. 고위험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2	1
	598. 질식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3	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599. 질식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2	1
	600. 일반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3	1
	601. 고위험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4	1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6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O081	4
	603. 개복에 의한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O082	4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604.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O091	4
	605. 개복에 의한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O092	4
자궁경관봉축술	606. 치료적 자궁경관봉축술	O102	1
분만 및 유산 후 관련 장애(수술시행)	607. 분만 및 유산 후 관련 장애(수술시행)	O110	1
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608. 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O120	1
분만 및 유산 관련 자궁적출술	609. 분만 및 유산 관련 자궁적출술	O130	2
비장 절제술	610. 성인의 복강경을 이용한 비장 절제술	Q012	4
	611. 성인의 개복에 의한 비장 절제술	Q013	4
림프종 및 백혈병(주요 수술시행)	612. 림프종 및 백혈병(주요 수술 시행)	R010	4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시행)	613.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 시행)	R020	4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614.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W010	8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근골격계 주요 수술	615.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근골격계 주요 수술	W020	5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616.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W030	6
다발성 중요 외상	617.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W040	4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시술 코드	수술시술 종류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하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18. 하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X011	3
	619. 하지 손상의 국소 피판 및 피부이식	X012	2
수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20. 수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X021	3
	621. 수부 손상의 국소 피판 및 피부이식	X022	2
기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22. 기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X030	3
하지 손상의 기타 수술	623. 하지 손상의 골 및 관절 수술	X041	2
	624. 하지 손상의 기타 수술	X042	1
수부 손상의 기타 수술	625. 수부 손상의 골 및 관절 수술	X051	2
	626. 수부 손상의 기타 수술	X052	1
기타 손상의 수술	627. 기타 손상의 수술	X060	1
중증화상(피부 이식 동반)	628.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Y010	5
중등도화상(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 동반)	629. 중등도 화상(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 동반)	Y020	2

주1) 상기의 「수술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수술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주2) 이 특약은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에서 분류된 「ADRG」중 다음의 「ADRG」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ADRG」에서 주진단 범주(MDC)에 해당하는 첫번째 자리(알파벳)를 제외하고 2,3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60” ~ “99”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ADRG」가 “B601”의 경우 첫 번째 자리(알파벳(B))를 제외하고 2,3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60”이므로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아래 표에 기재된 「ADRG」

수술시술코드	수술 및 시술명
B501	치료적 성분채집술
B502	신경계 면역요법
B510	뇌전증의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 감시
B520	자기뇌파검사 지도화
D070	코성형술
D180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D191	치조골 수술
D192	구강내 점막수술
D193	단순 혀 수술
D300	발치
D502	치아 보존치료
E031	호흡기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E501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이상(신대체요법 동반)
E502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이상(신대체요법 미동반)

수술시술코드	수술 및 시술명
E511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미만(신대체요법 동반)
E512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미만(신대체요법 미동반)
E540	경기관지 폐생검
E550	폐흉부질환의 침습인 생검
F051	심장 중격결손증 수술
F052	기타 복잡 심장 기형 교정술
F171	선천성 심장병 협착 질환의 경피적 혈관성형술(스텐트 사용)
F172	경피적 심장내 혈관성형술(스텐트 사용)
F173	순환기계의 경피적 풍선 혈관성형술
F501	심장 전기 생리 검사
F502	심장질환을 위한 심도자술 및 혈관조영술
F503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
F504	심근생검
F505	심낭천자
G161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수술
G162	주요 직장항문 기형 수술
G163	기타 직장항문 기형 수술
G331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H131	간담도 진단적 시술(악성종양의 경우)
H132	간담도 진단적 시술(악성종양 제외)
H530	진단적 역행성담체관내시경
I230	관절경검사
I240	생검을 포함한 골과 관절의 진단적 수술
I510	근골격계 질환의 침생검
J053	유두 및 유륜재건술
J500	유방 질환의 침습인생검
K500	갑상선 질환의 침습인생검
L113	선천성 요로 질환 수술
L500	요관경검사
M094	정관 수술
M510	전립선 생검
N122	복강경 검사 및 기타 난관 결찰술
N142	진단적 자궁소파술
N151	복강경을 이용한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N152	개복에 의한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N170	방사선원삽입요법(악성종양의 경우)
O041	일반 질식분만(초산)
O042	고위험 질식분만(초산)
O051	일반 질식분만(경산)
O052	고위험 질식분만(경산)
O061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일반 질식분만
O062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고위험 질식분만

수술시술코드	수술 및 시술명
O073	질식분만(복합 수술 동반)
O101	예방적 자궁경관봉축술
O141	분만 및 유산 관련 경피적 혈관 수술
O142	산욕기 관련 기타 경피적 혈관 수술
P010	입원후 5일 미만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시행)
P020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심흉복부/혈관 수술
P03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750g(중요 수술 시행)
P040	신생아, 입원시 체중 750-999g(중요 수술 시행)
P05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000-1249g(중요 수술 시행)
P06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250-1499g(중요 수술 시행)
P07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시행)
P080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시행)
P09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시행)
Q011	소아의 비장 절제술
Q020	기타 혈액 및 조혈기관 수술
R030	림프종 및 백혈병(기타 수술 시행)
R040	기타 신생물 질환(기타 수술 시행)
R500	치료적 성분채집술
T011	패혈증 수술(합병증 동반)
T012	패혈증 수술(합병증 미동반)
T013	외상 후 감염 수술
T014	수술 후 감염 수술
T015	기타 감염 질환 수술
U010	정신장애 치료목적의 수술
W05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혈관색전술
Y030	기타 화상(피부이식 동반)
Z010	기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수술

- ③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에서 규정한 “Error DGR” 및 “960 DGR”  
 - Error DRG : 961, 962, 963, 990, 999

※ “Error DRG”라 함은 “주진단 범주(MDC)”와 일치하지 않는 수술 등을 뜻합니다.

**【예시】**  
 거미막하출혈로 진단받고 경피적 심장판만성형술을 받은 경우는 주진단 범주(MDC)와 수술시 일치하지 않아 Error DGR가 생성되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960 DRG”라 함은 “Error DRG”는 아니지만 입원 2일 이내에 조기 사망한 환자(신생아 제외)를 뜻합니다. 다만, 통원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수술시술코드」는 보장합니다.

※ 이 특약에서 수술시술코드 및 ADRG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KDRG 버전 4.5(2023.1.1 기준)에서 정의된 ADRG코드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에서 정의된 수가코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에서 정의된 분류번호 기준이며, 향후 ADRG코드 및 수가코드, 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ADRG코드 및 수가코드, 분류번호에 준하여 수술시술코드 및 ADRG를 결정합니다.

**【별표 150】  
특정외상성뇌손상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미만성 뇌손상	S06.2
2. 초점성 뇌손상	S06.3
3. 경막외출혈	S06.4
4.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5.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
6.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S06.7
7. 기타 두개내손상	S06.8
8.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S06.9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51】  
특정외상성장기손상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심장의 손상	S26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S27
3. 복강내기관의 손상	S36
4.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37
5. 골반기관을 동반한 복강내기관의 손상	S39.6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52】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9.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분류항목	수가코드
1. 간헐적견인치료-경추견인	MM051
2. 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	MM052
3.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MM060
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MM070
5. 간섭파전류치료[ICT]	MM080
6.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MM085
7. 단순운동치료 [1일당]	MM101
8.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 [1일당]	MM102
9.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MM105
10.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MM112
11.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MM113
12.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1일당]	MM114
13.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MM151
14. 압박치료 [1일당]	MM190
15.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MM301
16.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MM302

**【별표 153】  
급여 유방재건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유방재건수술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1.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광배근-광배근피판	N7140
2.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광배근광배근보존피판(또는 흉배동맥천공지피판)	N7141
3.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광배근-확장광배근피판	N7142
4.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횡복직근유경횡복직근피판	N7143
5.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횡복직근양측유경횡복직근피판	N7144
6.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횡복직근유리횡복직근피판	N7145
7.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횡복직근유리횡복직근보존피판	N7146
8.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심하복벽천공지유리피판	N7147
9. 유방재건-보형물을 이용한 경우-유방확장기삽입및확장	N7148
10. 유방재건-보형물을 이용한 경우-영구보형물삽입유방절제와동시실시한경우	N7149
11. 유방재건-보형물을 이용한 경우-영구보형물삽입-유방확장기제거후실시한경우	N7150
12. 유방재건-보형물을 이용한 경우유방피막절제(유방피막बंध·절개·피판술포함)	N7151
13. 유방재건-유두·유륜재건-유두재건	N7152
14. 유방재건-유두·유륜재건-유륜재건	N7153

**【별표 154】  
급여 림프부종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림프부종수술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1. 림프부종수술(절제술)	P2136
2. 림프부종수술(림프관정맥문합술)	P2137
3. 림프부종수술(대망전치술)	P2138

**【별표 155】  
급여 피부재건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피부재건수술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1.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안면부)-25cm <sup>2</sup> 미만	S0171
2.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안면부)-25cm <sup>2</sup> 이상	S0172
3.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수족부)-25cm <sup>2</sup> 미만	S0173
4.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수족부)-25cm <sup>2</sup> 이상	S0174
5.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기타)-25cm <sup>2</sup> 미만	S0175
6.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기타)-25cm <sup>2</sup> 이상	S0176
7. 부분층피부이식술-기타(900cm <sup>2</sup> 이상)	N0170
8. 부분층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25cm <sup>2</sup> 미만)	N0173
9. 부분층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25cm <sup>2</sup> 이상)	N0174
10. 부분층피부이식술-기타(25cm <sup>2</sup> 미만)	N0175
11. 부분층피부이식술-기타(25cm <sup>2</sup> 이상~100cm <sup>2</sup> 미만)	N0176
12. 부분층피부이식술-기타(100cm <sup>2</sup> ~400cm <sup>2</sup> 미만)	N0178
13. 부분층피부이식술-기타(400cm <sup>2</sup> ~900cm <sup>2</sup> 미만)	N0179
14. 사체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 25cm <sup>2</sup> 미만)-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1
15. 사체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 25cm <sup>2</sup> 이상)-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2
16. 사체피부이식술(기타, 25cm <sup>2</sup> 미만)-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3
17. 사체피부이식술(기타, 25cm <sup>2</sup> 이상~100cm <sup>2</sup> 미만)-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4
18. 사체피부이식술(기타, 100cm <sup>2</sup> 이상~400cm <sup>2</sup> 미만)-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5
19. 사체피부이식술(기타, 400cm <sup>2</sup> 이상~900cm <sup>2</sup> 미만)-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6
20. 사체피부이식술(기타, 900cm <sup>2</sup> 이상)-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7
21. 사체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 25cm <sup>2</sup> 미만)	SB171
22. 사체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 25cm <sup>2</sup> 이상)	SB172
23. 사체피부이식술(기타, 25cm <sup>2</sup> 미만)	SB173
24. 사체피부이식술(기타, 25cm <sup>2</sup> 이상~100cm <sup>2</sup> 미만)	SB174
25. 사체피부이식술(기타, 100cm <sup>2</sup> 이상~400cm <sup>2</sup> 미만)	SB175
26. 사체피부이식술(기타, 400cm <sup>2</sup> 이상~900cm <sup>2</sup> 미만)	SB176
27. 사체피부이식술(기타, 900cm <sup>2</sup> 이상)	SB177
28.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있는것)	N0241
29. 반흔구축성형술및식피술(운동제한이있는것)-전층,25cm <sup>2</sup> 미만	N0242
30. 반흔구축성형술및식피술(운동제한이있는것)-전층,25cm <sup>2</sup> 이상	N0243
31. 반흔구축성형술및식피술(운동제한이있는것)-부분층,안면또는관절부,25cm <sup>2</sup> 미만	N0244
32. 반흔구축성형술및식피술(운동제한이있는것)-부분층,안면또는관절부,25cm <sup>2</sup> 이상	N0245
33. 반흔구축성형술및식피술(운동제한이있는것)-부분층,기타,25cm <sup>2</sup> 미만	N0246
34. 반흔구축성형술및식피술(운동제한이있는것)-부분층,기타,25cm <sup>2</sup> 이상~100cm <sup>2</sup> 미만	N0247
35. 반흔구축성형술및식피술(운동제한이있는것)-부분층,기타,100cm <sup>2</sup> ~400cm <sup>2</sup> 미만	NA241
36. 반흔구축성형술및식피술(운동제한이있는것)-부분층,기타,400cm <sup>2</sup> ~900cm <sup>2</sup> 미만	NA242
37. 반흔구축성형술및식피술(운동제한이있는것)-부분층,기타,900cm <sup>2</sup> 이상	NA243
38. 반흔구축성형술및국소피관술[운동제한이있는것]	N0249
39. 피판작성술-피부-국소(안면부)	SB161
40. 피판작성술-피부-원거리-수부이외[서혜부,복부,둔부,교차상지,교차하지등](안면부)	SB162
41. 피판작성술-피부-원거리-수부내[교차수지피판,무지구피판등](안면부)	SB163
42. 피판작성술-도서형(안면부)	SB164
43. 피판작성술-근(안면부)	SB165
44. 피판작성술(근-피부)(안면부)	SB166
45. 피판작성술-근막(안면부)	SB167
46. 피판작성술(근막-피부)(안면부)	SB168
47. 피판작성술-피부-국소(기타)	S0161
48. 피판작성술-피부-원거리-수부이외[서혜부,복부,둔부,교차상지,교차하지등](기타)	S0162
49. 피판작성술-피부-원거리-수부내[교차수지피판,무지구피판등](기타)	S0163
50. 피판작성술-도서형(기타)	S0164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51. 피판작성술-근(기타)	S0165
52. 피판작성술(근-피부)(기타)	S0166
53. 피판작성술-근막(기타)	S0167
54. 피판작성술(근막-피부)(기타)	S0168
55. 피판작성술-유리피판술[피부또는근육](기타)	SA161
56. 피판작성술-유리감각피판술[근육-신경](기타)	SA162
57. 피판작성술-유리복합조직이식술(유리건-피부피판술[피부-건-신경 또는 피부-건])(기타)	SA163
58. 피판작성술-유리복합조직이식술(유리근육-피부피판술[피부-근육-신경 또는 피부-근육])(기타)	SA164
59. 피판작성술-유리대망이식술, 유리공장이식술(기타)	SA165
60. 피판작성술-유리피판술[피부또는근육](안면부)	SC161
61. 피판작성술-유리감각피판술[근육-신경](안면부)	SC162
62. 피판작성술-유리복합조직이식술(유리건-피부피판술[피부-건-신경 또는 피부-건])(안면부)	SC163
63. 피판작성술-유리복합조직이식술(유리근육-피부피판술[피부-근육-신경 또는 피부-근육])(안면부)	SC164
64. 피판작성술-유리대망이식술, 유리공장이식술(안면부)	SC165

**【별표 156】**  
**심방세동 및 조동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심방세동 및 조동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심방세동 및 조동	I4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57】**  
**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무증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2. 의약품 및 기타 외인성 물질에 의한 갑상선기능저하증	E03.2
3. 감염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03.3
4. 갑상선의 위축(후천성)	E03.4
5. 점액부종혼수	E03.5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6. 기타 명시된 갑상선기능저하증	E03.8
7.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E03.9
8.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E06.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58】 뇌전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뇌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뇌전증	G40
2. 뇌전증 지속상태	G41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별표 159】 일과성뇌허혈발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일과성뇌허혈발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	G45.0
2. 경동맥증후군(대뇌반구성)	G45.1
3. 다발성 및 양쪽 뇌전동맥증후군	G45.2
4. 일과성 흑암시	G45.3
5. 기타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G45.8
6.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G45.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

- 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60】**  
**항암방사선치료후4대경증합병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치료후4대경증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방사선피부염	L58
2.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L59
3. 처치후 감상선기능저하증	E89.0
4. 처치후 뇌하수체기능저하증	E89.3
5.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	G62.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61】**  
**항암방사선치료후5대중증합병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치료후5대중증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B25.0
	폐렴이 합병된 흉역	B05.2
	수두폐렴	B01.2
	폐톡소포자충증	B58.3
	폐포자충증	B48.5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방사선에 의한 급성 폐증상	J70.0
	방사선에 의한 만성 및 기타 폐증상	J70.1
2. 뇌부종	뇌부종	G93.6
	방사선조사후 뇌병증	G93.81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3. 골괴사	골괴사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골괴사 턱의 염증성 병태	M87 M90.5 K10.2
4. 방사선장염	방사선에 의한 위장염 및 결장염 방사선직장염	K52.0 K62.0
5. 방사선방광염	방사선방광염	N30.4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62】**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2대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2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심장질환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4
	기타 전도장애	I45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I50
폐색전증	폐색전증	I26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63】**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3대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3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	---------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D70
혈소판감소증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D69.3
	기타 원발성 혈소판감소증	D69.4
	이차성 혈소판감소증	D69.5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신경병증	약물유발 다발신경병증	G62.0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	G62.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64】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순환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특정순환계질환	100 ~ 199 (단, 146.1, 146.9, 187, 195 제외)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65】  
욕창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욕창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sup>주1)</sup>	L89

- 주1)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 신체에 일정한 부위에 압력 혹은 마찰과 응전력이 결합한 압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가해짐으로써 모세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허혈성 조직 괴사로 생기는 피부나 하부 조직의 손상상태

- 주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66】**  
**중등증이상 욕창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중등증이상 욕창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 3단계 <sup>주1)</sup>	L89.2
2.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 4단계 <sup>주2)</sup>	L89.3

- 주1)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 3단계 : 밑에 있는 근막까지 확장된 피하조직의 괴사와 손상을 포함한 전층 피부손실을 동반한 욕창[압박]궤양
- 주2)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 4단계 : 근육, 뼈 또는 지지구조(즉, 힘줄 또는 관절낭)의 괴사를 동반한 욕창 [압박]궤양
- 주3)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 167】**  
**급여 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수혈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제2022-193호, 2022.9.1.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진료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료행위명칭	수가코드
전혈 320ml	X1001
전혈 400ml	X1002
신선액상혈장, 전혈 320ml기준	X2011
신선액상혈장, 전혈 400ml기준	X2012
농축적혈구, 전혈 320ml기준	X2021
농축적혈구, 전혈 400ml기준	X2022

진료행위명칭	수가코드
세척적혈구, 전혈 320ml기준	X2031
세척적혈구, 전혈 400ml기준	X2032
동결해동적혈구, 전혈 320ml기준	X2131
동결해동적혈구, 전혈 400ml기준	X2132
신선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	X2041
신선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X2042
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	X2051
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X2052
동결침전제제, 전혈 320ml기준	X2061
동결침전제제, 전혈 400ml기준	X2062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전혈 320ml기준	X2141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전혈 400ml기준	X2142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320ml기준	X2071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400ml기준	X2072
농축혈소판, 전혈 320ml기준	X2081
농축혈소판, 전혈 400ml기준	X2082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	X2091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	X2092
농축백혈구, 전혈 320ml기준	X2101
농축백혈구, 전혈 400ml기준	X2102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	X2111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	X2112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320ml기준	X2121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400ml기준	X2122
성분채집 적혈구(190ml)	X2515
성분채집 혈소판(250ml)	X2501
성분채집 백혈구(250ml)	X2502
성분채집 혈장(500ml)	X2504
세척혈소판(250ml)	X2516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집 혈소판(250ml)	X2511
복합성분채집 적혈구(190ml)	X2512

진료행위명칭	수가코드
복합성분채집 혈소판(250ml)	X2513
복합성분채집 혈장(300ml)	X2514

- ②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진료행위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해당 진료행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별표 168】 기타관계법규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 의무)】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보장 기간
  2. 계약의 해지·해제
  3. 보험료의 감액 청구
  4.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1.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
  3.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연계투자는 제4호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 계약의 해지·해제
  3. 증권의 환매(還買) 및 매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⑤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자율(만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근거
  2. 수익률 및 산출근거
  3. 계약의 해지·해제
  4. 이자·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⑥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의 해지·해제
  2. 신용에 미치는 영향
  3.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4.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⑦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기간
  2.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⑨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 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 의무)]**

- ①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②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2. 위험등급은 원금 손실 위험(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구분할 것
  3. 위험등급이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정한 위험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과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할 것(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의 환매(還買)나 매매가 용이한지에 관한 사항
  2. 환율의 변동성(외국화폐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원금 손실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④ 영 제13조제4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3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⑤ 영 제13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자율의 산출기준
  2. 신용카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의 위험성 및 관련 예시
    - 나.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을 포함한다)
- ⑥ 영 제13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연계·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 의무)]**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
-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른 위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

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금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삭제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삭제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 8. 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⑨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삭제
-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

와 같다.

-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신용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의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 1. 개인신용평점
-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 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체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상실
-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체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인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인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가. 암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라. 만성 간경화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의 수시 지정하는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기능영역은 별표4와 같다.
-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기능영역과 별표4의 평균 운동기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기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2.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않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 2)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

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 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 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	--	--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 부 기 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경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경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현철·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  
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  
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동차
    -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  
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  
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  
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하  
다)보다 넓은 자동차
    -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축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 특약 색인 (가나다순)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664
3대고액치료비양진단비 특별약관	237
3대질병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464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105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04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564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383
6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83
7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203
CT, MRI, 초음파, 뇌파, 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 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452
CT, MRI 검사지원비(치매, 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	622
MRI 검사지원비(3대질병, 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294
가족사이버 명예훼손피해보상금 특별약관	659
가족인터넷거래사기피해보상금 특별약관	660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II (대인공제없음, 대물공제(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갱신형) 특별약관	678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566
간경변증진단비 특별약관	176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12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345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 특별약관	401
간질환수술비 특별약관	3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12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350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특별약관	545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특별약관	315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413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특별약관	222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341
갑상선질환수술비 특별약관	209
강력범죄피해보상금 특별약관	121
개호유발특정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387
결핵진단비 특별약관	300
경증이상치매진단비 특별약관	572
계속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287
계속받는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285
계속받는암진단비 특별약관	271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특별약관	275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265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	279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자궁근종)(갱신형) 특별약관	343
골절김스치료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97
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98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99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96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특별약관	95
골절특정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10회한) 특별약관	148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일당(1일이상365일한도) 특별약관	616
관상동맥성형술보장(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	331
교권침해피해보상금(연간1회한) 특별약관	654
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655
교직원 질병·상해퇴직보험금(사망)(유치원) 특별약관	617
교직원 질병·상해퇴직보험금(직권면직, 사망)(유치원이외학교) 특별약관	618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특별약관	638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포함)(운전) 특별약관	634
☞ 교통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89
☞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90
☞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진단비 특별약관	427
☞ 급성신우신염진단비 특별약관	435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II 특별약관	251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250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7
☞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26
☞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25
☞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522
☞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521
☞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24
☞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23
☞ 김스치료비 특별약관	563
☞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진단비 특별약관	394
☞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91
☞ 뇌·심혈관질환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90회한) 특별약관	376
☞ 뇌전증진단비 특별약관	546
☞ 뇌정위적방사선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333
☞ 뇌졸중수술비II 특별약관	248
☞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247
☞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5
☞ 뇌졸중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14
☞ 뇌졸중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13
☞ 뇌졸중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510
☞ 뇌졸중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509
☞ 뇌졸중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12
☞ 뇌졸중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11
☞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252
☞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5
☞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 특별약관	568
☞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310
☞ 뇌혈관질환및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25%체증형) 특별약관	539
☞ 뇌혈관질환수술비II 특별약관	255
☞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253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6
☞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20
☞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19
☞ 뇌혈관질환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516
☞ 뇌혈관질환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515
☞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18
☞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17
☞ 다빈치로봇암수술비(최초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357
☞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298
☞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52
☞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54
☞ 대상포진눈병진단비 특별약관	290
☞ 대상포진진단비 특별약관	289
☞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특별약관	406
☞ 만성간질환(CP B등급이상)진단비 특별약관	364
☞ 만성당뇨합병증치료비 특별약관	193
☞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진단비 특별약관	363
☞ 말기간경화진단비 특별약관	174

말기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175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 특별약관	306
말기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73
민사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643
백내장진단비 특별약관	368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 특별약관	641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	688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685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10대진단) 특별약관	609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3대진단) 특별약관	597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5대진단) 특별약관	601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8대진단) 특별약관	605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 특별약관	420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10대진단용) 특별약관	489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8대진단용) 특별약관	486
부인과질병수술비II 특별약관	206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진단비 특별약관	396
산정특례(결핵)치료비(최초1회환)(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449
산정특례(뇌혈관)치료비(연간1회환)(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589
산정특례(심장)치료비(연간1회환)(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591
산정특례(암(유사암제외))치료비II(최초1회환)(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437
산정특례(유사암)치료비(최초1회환)(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441
산정특례(중복암및재등록암)치료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443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치료비(최초1회환)(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593
산정특례(중증외상)치료비(연간1회환)(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131
산정특례(중증치매)치료비(최초1회환)(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594
산정특례(중증화상)치료비(최초1회환)(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133
산정특례(희귀질환)치료비(최초1회환)(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450
삼출성황반변성진단비 특별약관	369
상급종합병원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치료통원비 특별약관	312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81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원비 특별약관	282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2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15회환) 특별약관	150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30회환) 특별약관	151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60회환) 특별약관	153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108
생활지원금(3대진단) 특별약관	479
생활지원금(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140
생활지원금(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483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 특별약관	399
수혈치료비(급여,연간1회환) 특별약관	620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인,운전)(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626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194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96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II 특별약관	200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662
심뇌혈관질환수술비II 특별약관	323
심방세동및조동진단비 특별약관	544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보장(급여,연간1회환) 특별약관	335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특별약관	403
심장질환(특정 I)진단비 특별약관	327
심장질환(특정 II)진단비 특별약관	328
심장질환(특정 III)진단비 특별약관	329
심장질환(특정 IV)진단비 특별약관	330
십자인대·반월판연골·아킬레스건수술비(각 연간1회환, 급여) 특별약관	570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122
☞	안과질환수술비 특별약관	210
☞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특별약관	668
☞	암사망보험금 특별약관	214
☞	암수술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230
☞	암수술비(유사암제외)(25%체증형) 특별약관	534
☞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특별약관	235
☞	암으로인한3대특정수술비(급여,각연간1회한) 특별약관	391
☞	암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 특별약관	374
☞	암주요통증완화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378
☞	암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308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224
☞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06
☞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03
☞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495
☞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492
☞	암직접치료통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01
☞	암직접치료통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498
☞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특별약관	218
☞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425
☞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72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216
☞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423
☞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70
☞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특별약관	301
☞	양성뇌종양진단비 특별약관	182
☞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586
☞	여성5대생활질환수술비 특별약관	380
☞	여성5대생활질환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386
☞	여성만성질병수술비 특별약관	207
☞	여성생식기암자궁적출수술비 특별약관	190
☞	여성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241
☞	여성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205
☞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13
☞	요로결석진단비 특별약관	292
☞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389
☞	요양병원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 특별약관	227
☞	육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 특별약관	557
☞	육창진단비 특별약관	556
☞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372
☞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특별약관	398
☞	유사암수술비 특별약관	233
☞	유사암수술비(25%체증형) 특별약관	537
☞	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221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3
☞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93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특별약관	577
☞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642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	686
☞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특별약관	212
☞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 특별약관	547
☞	일반상해1~5종수술비(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87
☞	일반상해1~8종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142
☞	일반상해2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77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75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74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72
☞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83
☞	일반상해수술비 특별약관	85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78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130
☞ 일반상해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137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79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73
☞ 자궁내막증진단비 특별약관	366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특별약관	629
☞ 자동차사고벌금비용II(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특별약관	624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운전) 특별약관	672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 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갱신형) 특별약관	675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II(운전) 특별약관	669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1급)(차등지급) 특별약관	117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II(1~14급)(차등지급) 특별약관	119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특별약관	115
☞ 자동차운전면허정지(120일한도)(영업용) 특별약관	632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영업용) 특별약관	631
☞ 장기요양진단비(1,2,3,4,5등급) 특별약관	584
☞ 장기요양진단비(1,2,3,4등급) 특별약관	583
☞ 장기요양진단비(1,2,3등급) 특별약관	581
☞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특별약관	580
☞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특별약관	578
☞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414
☞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별약관	367
☞ 전자서명 특별약관	689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84
☞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35
☞ 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462
☞ 주야바이러스질환진단비 특별약관	371
☞ 중대한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10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	171
☞ 중대한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70
☞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특별약관	172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112
☞ 중등도이상 기관지확장증진단비 특별약관	181
☞ 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177
☞ 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78
☞ 중등도이상 천식진단비 특별약관	180
☞ 중등도이상 폐렴진단비 특별약관	179
☞ 중증갑상선암 진단비 특별약관	408
☞ 중증치매진단비 특별약관	575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687
☞ 질병1~5중수술비III(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169
☞ 질병1~8중수술비(시술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특별약관	541
☞ 질병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157
☞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157
☞ 질병사망보험금 특별약관	155
☞ 질병수술동반입원비(2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164
☞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67
☞ 질병수술비(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 특별약관	319
☞ 질병수술비(백내장제외) 특별약관	317
☞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 특별약관	430
☞ 질병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433
☞ 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8대질병제외) 특별약관	321
☞ 질병실명진단비 특별약관	370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58
☞ 질병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 특별약관	436
☞ 질병입원치료수술비(종합병원) 특별약관	467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15회한) 특별약관	558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30회한) 특별약관	560
질병재활치료비(급여,연간60회한) 특별약관	561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60
질병후유장애보험금 특별약관	156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587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경부)(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특별약관	588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 특별약관	106
척추질환수술비(관혈/비관혈) 특별약관	188
총수염(맹장) 수술비 특별약관	187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416
탈장수술비 특별약관	382
통풍진단비 특별약관	291
통합형뇌관련진단비 특별약관	458
통합형심장관련진단비 특별약관	460
통합형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	455
통합형전이암진단비 특별약관	410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685
특정늑내장진단비 특별약관	368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334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특별약관	259
특정순환계질환항응고제치료비(와파린/NOAC)(급여,최초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554
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239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특별약관	146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특별약관	147
특정전염병진단비 특별약관	195
파킨슨병진단비 특별약관	428
폐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385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갱신형) 특별약관	32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II(갱신형) 특별약관	260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551
항암방사선치료비 특별약관	243
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진단비 특별약관	548
항암약물치료비 특별약관	245
항암양성지방사선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295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 특별약관	336
행정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	649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 특별약관	257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	256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78
허혈성심장질환동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33
허혈성심장질환동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31
허혈성심장질환동원비(연간10회한) 특별약관	528
허혈성심장질환동원비(연간30회한) 특별약관	527
허혈성심장질환동원비(종합병원)(연간10회한) 특별약관	530
허혈성심장질환동원비(종합병원)(연간30회한) 특별약관	529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453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304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301
호흡기암진단비 특별약관	405
호흡기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86
홀인원비용(갱신형) 특별약관	666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102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01

고객님, 이제 MG손해보험이 함께 하겠습니다.

